

2022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22. 9.

본 연차보고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추진 내용을 수록한 것이며, 2022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임



I	특수교육의 개요	13
	1. 특수교육의 정의	13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13
	3.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15
II	2022년 특수교육 현황	21
	1. 주요 현황	21
	2. 특수학교 현황	24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27
	4. 순회교육 현황	28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28
	6.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현황	29
III	2022년 특수교육 정책 추진 현황	33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33
	1)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33
	(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학생 비율	33
	(2) 특수학교 학생	34
	(3)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36
	(4) 일반학교 일반학급 학생	37
	(5)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38



차례

2) 특수교육기관 확충	39
(1) 특수학교	39
(2) 특수학급	42
3)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45
4)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48
5)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50
(1) 특수교육 담당교원 양성	50
(2) 특수교육 담당교원 현직연수	58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61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65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65
2) 일반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66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통합교육 지원 강화	70
4)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지원 강화	73
5)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75
6)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	81
7)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강화	83
3.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85
1)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 및 발전	85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87
3)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96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96
(2)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100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103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105
1) 장애이해교육 지속 실시	105
2)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07

3) 장애발견 진단·배치 체계 구축	111
4)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17
5. 장애학생 교육회복 지원	121
6.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실적	122
1)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122
2)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125
3)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지원	127
4)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129
5)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내실화를 위한 고등교육 지원	131
6)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132
7)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136
8) 생애주기별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139

I: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운영계획	143
II: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65


 표차례

〈표 1·1〉	특수교육 관련 법령	14
〈표 1·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15
〈표 1·3〉	연도별 특수학교 수	15
〈표 1·4〉	연도별 특수학교 학생 수	15
〈표 1·5〉	연도별 특수학급 수	15
〈표 1·6〉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15
〈표 1·7〉	연도별 학급 증설 현황	16
〈표 1·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16
〈표 1·9〉	연도별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17
〈표 2·1〉	2022년 특수교육 주요 현황	21
〈표 2·2〉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22
〈표 2·3〉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23
〈표 2·4〉	설립별 특수학교 현황	24
〈표 2·5〉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현황	24
〈표 2·6〉	시도별 특수학교 현황	25
〈표 2·7〉	시도별 학교과정 설치별 학교 수	26
〈표 2·8〉	특수학급 현황	27
〈표 2·9〉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현황	27
〈표 2·10〉	순회교육 현황	28
〈표 2·11〉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28
〈표 2·12〉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생 진로 현황	29
〈표 3·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33
〈표 3·2〉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34
〈표 3·3〉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34
〈표 3·4〉	설립별 특수학교 학생 수	35
〈표 3·5〉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36
〈표 3·6〉	학교급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36
〈표 3·7〉	연도별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수	37

〈표 3·8〉 학교급별 및 설립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37
〈표 3·9〉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현황	38
〈표 3·10〉 연도별 특수학교 수	39
〈표 3·11〉 설립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39
〈표 3·12〉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40
〈표 3·13〉 설립별 특수학교 수	41
〈표 3·14〉 연도별 특수학급 수	42
〈표 3·15〉 학교급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수	43
〈표 3·16〉 학교급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현원	44
〈표 3·17〉 유아특수교육기관 현황	45
〈표 3·18〉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수	45
〈표 3·19〉 공·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현황	46
〈표 3·20〉 유치원 및 장애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현황	47
〈표 3·21〉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현황	49
〈표 3·22〉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학부)	51
〈표 3·23〉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교육대학원)	54
〈표 3·24〉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현황	56
〈표 3·25〉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특수교육대학원)	57
〈표 3·26〉 특수교육 담당교사 자격 소지 현황	59
〈표 3·27〉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운영 현황	60
〈표 3·28〉 전국 초·중·고·특수·각종 학교의 시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21)	62
〈표 3·29〉 국·공립 학교와 사립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21)	63
〈표 3·30〉 학교급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21)	63
〈표 3·31〉 특수학급 설치 여부에 따른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21)	63
〈표 3·32〉 특수학교 시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21)	64
〈표 3·33〉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65
〈표 3·34〉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 이수 현황	67
〈표 3·35〉 통합학교 관리자 장애공감 연수 이수 현황	68
〈표 3·36〉 정다운학교 운영 현황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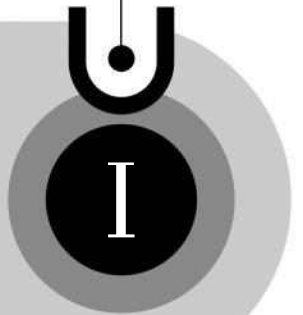

 표차례

〈표 3·37〉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71
〈표 3·38〉 통합교육지원단 및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현황	72
〈표 3·39〉 특수학교 순회교육 학생 수	73
〈표 3·40〉 특수학급 순회교육 학생 수	74
〈표 3·41〉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학생 수	74
〈표 3·42〉 치료지원 현황	75
〈표 3·43〉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현황	76
〈표 3·44〉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현황	77
〈표 3·45〉 특수학교 학생 통학버스 이용 비율	78
〈표 3·46〉 특수학교 통학차량 현황 및 안전교육 이수 현황	79
〈표 3·47〉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현황	80
〈표 3·48〉 병원학교 운영 현황	82
〈표 3·49〉 원격수업시스템 운영 기관 현황	83
〈표 3·50〉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현황	84
〈표 3·51〉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운영·지원 현황	86
〈표 3·52〉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현황	88
〈표 3·53〉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현황	89
〈표 3·54〉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지정·운영 현황	90
〈표 3·55〉 2022년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취업 현황	91
〈표 3·56〉 2022년도 2월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92
〈표 3·57〉 2022년도 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93
〈표 3·58〉 2022년도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취업 현황	94
〈표 3·59〉 전공과 설치 학교 현황	95
〈표 3·60〉 2022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97
〈표 3·61〉 연도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98
〈표 3·62〉 대학(원)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영역별 지원 현황	99
〈표 3·63〉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100
〈표 3·64〉 일반대학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개정 지표	101

〈표 3·65〉 원격대학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개정 지표	102
〈표 3·66〉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기관 개황	104
〈표 3·67〉 유·초·중·고등학교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현황	106
〈표 3·68〉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수 및 위원 수	108
〈표 3·69〉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학교 수('21)	108
〈표 3·70〉 특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109
〈표 3·71〉 일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109
〈표 3·7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현황	112
〈표 3·73〉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	113
〈표 3·74〉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원인	114
〈표 3·75〉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인 등록 현황	115
〈표 3·76〉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116
〈표 3·77〉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	117
〈표 3·78〉 교육예산 대비 시도 특수교육 예산 현황	118
〈표 3·79〉 시도 및 국립특수학교(급) 특수교육 예산	119
〈표 3·80〉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119
〈표 3·81〉 연도별 특수교육 총예산 비율	120
〈표 3·82〉 국립특수교육원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124
〈표 3·83〉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교과서 관련 사업	126
〈표 3·84〉 국립특수교육원 진로·직업교육 지원	128
〈표 3·85〉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130
〈표 3·86〉 국립특수교육원 고등교육 지원	131
〈표 3·87〉 국립특수교육원 집합연수 실적	132
〈표 3·88〉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실적	134
〈표 3·89〉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현황	136
〈표 3·90〉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137
〈표 3·91〉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지자체	140
〈표 3·92〉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사업 내용	140

2022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특수교육의 개요



1. 특수교육의 정의 / 13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 13
3.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 15

〈표 1·1〉 특수교육 관련 법령

법령	관련조항
대한민국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8조(의무교육), 제18조(특수교육)
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특수학교의 교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12조(의무교육),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21조(교원의 자격), 제55조(특수학교), 제56조(특수학급), 제58조(학력의 인정), 제59조(통합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제14조(위탁시의 협의),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제43조(교과), 제44조(학기), 제45조(수업일수), 제57조(분교장), 제58조(국·공립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전체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전체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진로전담교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제19조의2(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조(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1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3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표 1·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A)	'22(B)	B-A	
특수교육대상자 수	85,012	86,633	87,278	88,067	87,950	89,353	90,780	92,958	95,420	98,154	103,695	5,541	
학교 과정 별	장애영아	403	578	680	742	656	549	582	532	439	369	359	-10
	유치원	3,675	4,190	4,219	4,744	5,186	5,437	5,630	5,989	6,536	7,197	8,248	1,051
	초등학교	34,458	33,518	33,184	33,591	33,770	35,505	38,031	41,091	43,205	44,814	48,448	3,634
	중학교	21,535	22,241	22,159	21,108	19,793	19,218	18,788	18,462	19,140	20,212	21,462	1,250
	고등학교	21,649	22,466	22,973	23,422	23,943	23,655	22,584	21,502	20,655	20,169	19,867	-302
	전공과	3,292	3,640	4,063	4,460	4,602	4,989	5,165	5,382	5,445	5,393	5,311	-82
특수학교 수	156	162	166	167	170	173	175	177	182	187	192	5	
특수학급 수	8,927	9,343	9,617	9,868	10,065	10,325	10,676	11,105	11,661	12,042	12,712	670	
교원 수*	16,727	17,446	17,922	18,339	18,772	19,327	20,039	20,773	22,145	23,494	24,962	1,468	

* 국·공·사립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표 1·3〉 연도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연도	'62	'67	'72	'77	'82	'87	'92	'97	'03	'06	'09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학교 수	10	22	38	51	65	95	103	114	137	143	150	162	166	167	170	173	175	177	182	187	192

〈표 1·4〉 연도별 특수학교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67	'72	'77	'82	'87	'92	'97	'00	'08	'12	'15	'17	'18	'19	'20	'21	'22
학생 수	3,121	5,188	7,342	10,679	17,373	20,690	22,789	24,196	23,400	24,720	25,531	25,798	25,919	26,084	26,299	27,027	27,979

〈표 1·5〉 연도별 특수학급 수

(단위: 학급)

연도	'71	'76	'80	'85	'90	'95	'08	'09	'12	'16	'17	'18	'19	'20	'21	'22
학급 수	1	350	355	1,601	3,181	3,440	6,352	6,924	8,927	10,065	10,325	10,676	11,105	11,661	12,042	12,712

〈표 1·6〉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71	'82	'86	'91	'96	'08	'09	'12	'16	'17	'18	'19	'20	'21	'22
학생 수	30	7,665	30,876	28,795	26,087	37,857	39,380	44,433	46,645	47,564	48,848	50,812	52,744	54,266	57,948

〈표 1·7〉 연도별 학급 증설 현황

(단위: 학급)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학급 수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특수학교 학급	4,615	4,747	132	2.9%	4,843	96	2.0%	4,968	125	2.6%	5,114	146	2.9%	5,255	141	2.8%
일반학교 특수학급	10,325	10,676	351	3.4%	11,105	429	4.0%	11,661	556	5.0%	12,042	381	3.3%	12,712	670	5.6%
특수교육 지원센터	74	77	3	4.1%	72	-5	-6.5%	50	-22	-30.6%	59	9	18.0%	56	-3	-5.1%
계	15,014	15,500	486	3.2%	16,020	520	3.4%	16,679	659	4.1%	17,215	536	3.2%	18,023	808	4.7%

〈표 1·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단위: 명, %)

연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학생 수	일반학교 배치 학생 수			전체 학생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2013	25,522 (29.5)	45,181 (52.2)	15,930 (18.4)	61,111 (70.5)	86,633 (100)
2014	25,827 (29.6)	45,803 (52.5)	15,648 (17.9)	61,451 (70.4)	87,278 (100)
2015	26,094 (29.6)	46,351 (52.6)	15,622 (17.7)	61,973 (70.4)	88,067 (100)
2016	25,961 (29.5)	46,645 (53.0)	15,344 (17.4)	61,989 (70.5)	87,950 (100)
2017	26,199 (29.3)	47,564 (53.2)	15,590 (17.4)	63,154 (70.7)	89,353 (100)
2018	26,337 (29.0)	48,848 (53.8)	15,595 (17.2)	64,443 (71.0)	90,780 (100)
2019	26,459 (28.5)	50,812 (54.7)	15,687 (16.9)	66,499 (71.5)	92,958 (100)
2020	26,615 (27.9)	52,744 (55.3)	16,061 (16.8)	68,805 (72.1)	95,420 (100)
2021	27,288 (27.8)	54,266 (55.3)	16,600 (16.9)	70,866 (72.2)	98,154 (100)
2022	28,233 (27.2)	57,948 (55.9)	17,514 (16.9)	75,462 (72.8)	103,695 (100)

〈표 1·9〉 연도별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전체 학생 수
2015	2,088 (2.4)	3,491 (4.0)	47,716 (54.2)	11,134 (12.6)	2,530 (2.9)	10,045 (11.4)	2,045 (2.3)	2,770 (3.1)	1,935 (2.2)	4,313 (4.9)	88,067 (100)
2016	2,035 (2.3)	3,401 (3.9)	47,258 (53.7)	11,019 (12.5)	2,221 (2.5)	10,985 (12.5)	2,089 (2.4)	2,327 (2.6)	1,675 (1.9)	4,940 (5.6)	87,950 (100)
2017	2,026 (2.3)	3,358 (3.8)	48,084 (53.8)	10,777 (12.1)	2,269 (2.5)	11,422 (12.8)	2,038 (2.3)	2,040 (2.3)	1,626 (1.8)	5,713 (6.4)	89,353 (100)
2018	1,981 (2.2)	3,268 (3.6)	48,747 (53.7)	10,439 (11.5)	2,221 (2.4)	12,156 (13.4)	2,081 (2.3)	1,627 (1.8)	1,758 (1.9)	6,502 (7.2)	90,780 (100)
2019	1,937 (2.1)	3,225 (3.5)	49,624 (53.4)	10,200 (11.0)	2,182 (2.3)	13,105 (14.1)	2,204 (2.4)	1,409 (1.5)	1,763 (1.9)	7,309 (7.9)	92,958 (100)
2020	1,908 (2.0)	3,132 (3.3)	50,693 (53.1)	9,928 (10.4)	1,993 (2.1)	13,917 (14.6)	2,404 (2.5)	1,226 (1.3)	1,785 (1.9)	8,434 (8.8)	95,420 (100)
2021	1,826 (1.9)	3,026 (3.1)	51,788 (52.8)	9,695 (9.9)	1,874 (1.9)	15,215 (15.5)	2,450 (2.5)	1,114 (1.1)	1,799 (1.8)	9,367 (9.5)	98,154 (100)
2022	1,753 (1.7)	2,961 (2.9)	53,718 (51.8)	9,639 (9.3)	1,865 (1.8)	17,024 (16.4)	2,622 (2.5)	1,078 (1.0)	1,948 (1.9)	11,087 (10.7)	103,695 (100)

통계 자료 분석

○ 학생 수 변화 추이

- 2022년 특수교육대상자는 103,695명으로 '21년보다 5,541명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학교 배치 학생 수는 75,462명(72.8%)으로 '21년보다 4,596명이 증가함
- 장애영역별로는 자폐성장애, 발달지체 학생 비율이 각각 0.9%p, 1.2%p 증가함

○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교원 변화 추이

- 2022년 특수학교는 총 192교로 '21년보다 5교 증가하였으며,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총 12,712학급으로 '21년보다 670학급이 증가함
- 특수교육교원은 총 24,962명으로 '21년보다 1,468명이 증가함

2022년 특수교육 현황

II

1. 주요 현황 / 21
2. 특수학교 현황 / 24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 27
4. 순회교육 현황 / 28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 28
6.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현황 / 29

II 2022년 특수교육 현황

※ 기준일: 2022. 4. 1.

1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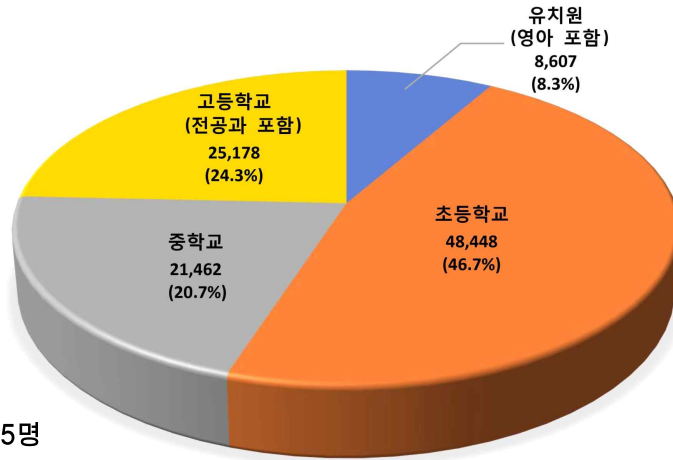
〈표 2·1〉 2022년 특수교육 주요 현황

(단위: 명, 교, 학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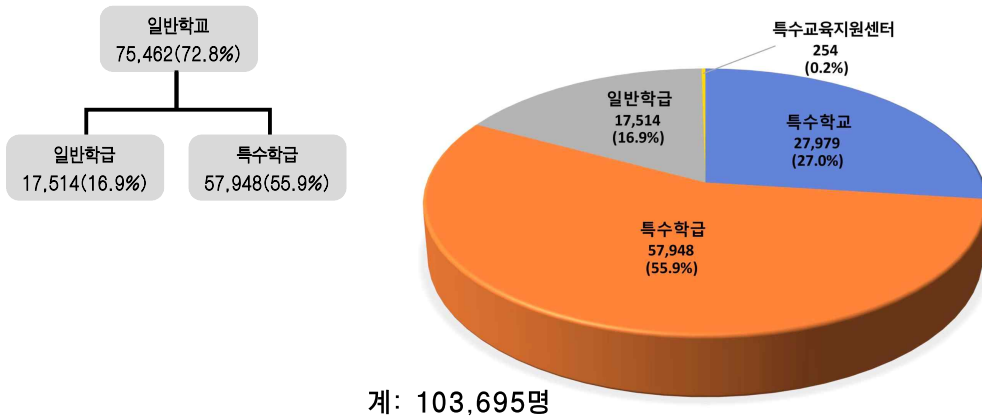
배치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수	27,979	57,948	17,514	254	103,695		
학 생 수	장 애 영 역 별	시각장애	1,077	226	450	-	1,753
		청각장애	589	675	1,689	8	2,961
		지적장애	14,420	34,162	5,120	16	53,718
		지체장애	3,913	3,308	2,357	61	9,639
		정서·행동장애	87	1,169	609	-	1,865
		자폐성장애	6,995	8,917	1,110	2	17,024
		의사소통장애	208	1,414	1,000	-	2,622
		학습장애	10	663	405	-	1,078
		건강장애	9	110	1,829	-	1,948
		발달지체	671	7,304	2,945	167	11,087
	계	27,979	57,948	17,514	254	103,695	
학 교 과 정 별	학 교 과 정 별	장애영아	105	-	-	254	359
		유치원	999	5,291	1,958	-	8,248
		초등학교	9,355	30,964	8,129	-	48,448
		중학교	6,162	11,317	3,983	-	21,462
		고등학교	6,251	10,172	3,444	-	19,867
		전공과	5,107	204	-	-	5,311
계	27,979	57,948	17,514	254	103,695		
학교 및 센터 수	192	11,928		198	12,318		
		9,056	8,109				
학급 수	5,255	12,712	16,617	56	34,640		
특수학교(급)교원 수*	9,866	13,632	-	1,464	24,962		
특수교육 지원인력 수	4,920	9,215	331	-	14,466		

* 국·공·사립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학교급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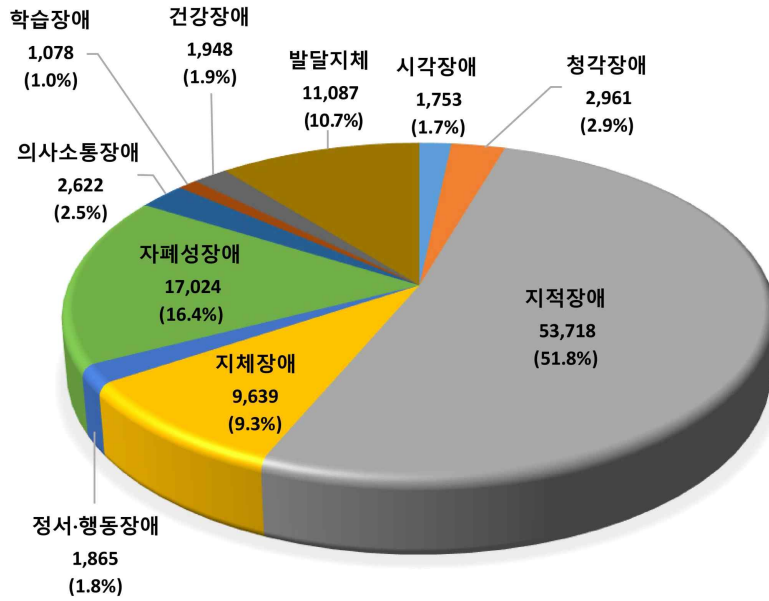


<표 2·2>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 명, %)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전체학생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27,979 (27.0)	57,948 (55.9)	17,514 (16.9)	75,462 (72.8)	254 (0.2)	103,695 (100)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계: 103,69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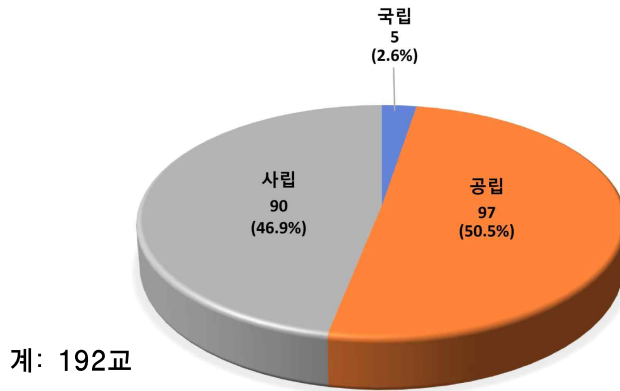
<표 2·3>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 명, %)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 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 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전체 학생 수
1,753 (1.7)	2,961 (2.9)	53,718 (51.8)	9,639 (9.3)	1,865 (1.8)	17,024 (16.4)	2,622 (2.5)	1,078 (1.0)	1,948 (1.9)	11,087 (10.7)	103,695 (100)

2 특수학교 현황

[설립별 특수학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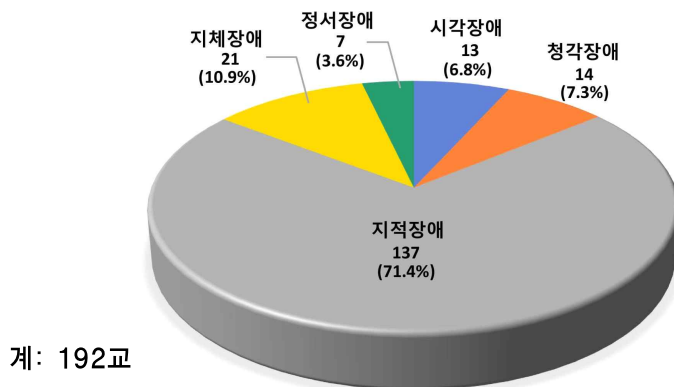


<표 2·4> 설립별 특수학교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구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국립	5	167	848	322
공립	97	3,131	16,673	5,891
사립	90	1,957	10,458	3,653
계	192	5,255	27,979	9,866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현황]



<표 2·5>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현황

(단위: 교)

장애영역	장애영역별 학교 수					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학교 수	13	14	137	21	7	192

〈표 2·6〉 시도별 특수학교 현황

(단위: 교)

시도	설립별 학교 수				장애영역별 학교 수					
	국립	공립	사립	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서울	3	11	18	32	3	4	16	6	3	32
부산	-	8	7	15	1	1	12	1	-	15
대구	-	5	6	11	1	1	6	2	1	11
인천	-	6	4	10	1	1	7	1	-	10
광주	-	3	2	5	1	-	3	1	-	5
대전	-	4	2	6	1	-	4	1	-	6
울산	-	2	2	4	-	1	3	-	-	4
세종	-	1	-	1	-	-	1	-	-	1
경기	2	14	22	38	-	2	32	3	1	38
강원	-	8	1	9	1	1	7	-	-	9
충북	-	3	7	10	2	1	4	2	1	10
충남	-	8	2	10	-	-	9	1	-	10
전북	-	6	4	10	1	1	6	2	-	10
전남	-	4	5	9	1	1	7	-	-	9
경북	-	3	5	8	-	-	7	-	1	8
경남	-	9	2	11	-	-	11	-	-	11
제주	-	2	1	3	-	-	2	1	-	3
계	5	97	90	192	13	14	137	21	7	192

〈표 2·7〉 시도별 학교과정 설치별 학교 수

(단위: 교)

시도	학교 수	학교과정 설치별 학교 수					
		영아학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서울	32	8	24	28	28	28	26
부산	15	6	10	12	13	11	9
대구	11	-	4	10	10	11	10
인천	10	1	7	9	10	9	8
광주	5	4	5	5	5	5	4
대전	6	3	5	6	6	6	6
울산	4	-	3	4	4	4	4
세종	1	1	1	1	1	1	1
경기	38	3	33	33	35	35	28
강원	9	-	6	9	9	9	8
충북	10	2	10	10	10	10	10
충남	10	2	5	9	9	10	9
전북	10	1	5	9	9	9	9
전남	9	-	5	9	9	9	9
경북	8	-	5	8	8	8	8
경남	11	-	7	11	11	11	11
제주	3	-	3	3	3	3	3
계	192	31	138	176	180	179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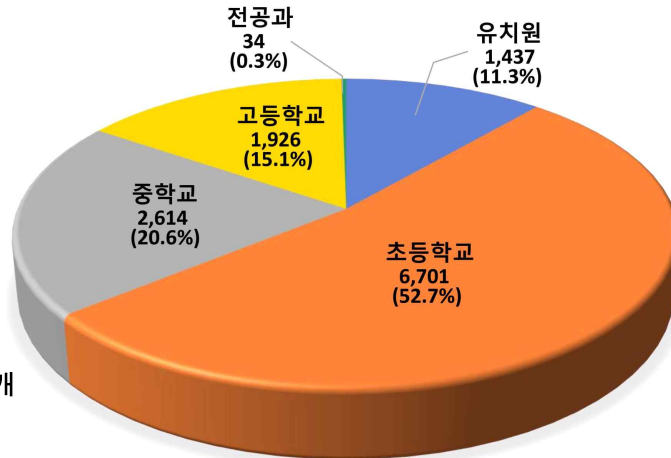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표 2·8〉 특수학급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학교급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유치원	1,141	1,437	5,291	1,473
초등학교	4,753	6,701	30,964	6,999
중학교	2,018	2,614	11,317	2,778
고등학교	1,126	1,926	10,172	2,312
전공과	18	34	204	70
계	9,056	12,712	57,948	13,632

[학교급별 특수학급 현황]



〈표 2·9〉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학교급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유치원	1,319	1,720	1,958
초등학교	3,538	7,839	8,129
중학교	1,894	3,814	3,983
고등학교	1,358	3,244	3,444
계	8,109	16,617	17,514

4 순회교육 현황

〈표 2·10〉 순회교육 현황

(단위: 명, 학급)

구분	학생 수										학급 수	교사 수
	기관					학교과정						
	가정	시설	병원	일반 학교	계	유치원 (영아포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특수학교에서 순회·파견	786	184	31	-	1,001	163	396	211	231	1,001	297	303
특수학급에서 순회·파견·겸임	507	218	10	54	789	79	335	164	211	789	248	262
특수교육지원센터	354	55	19	2,347	2,775	944	1,052	485	294	2,775	-	1,512*
계	1,647	457	60	2,401	4,565	1,186	1,783	860	736	4,565	545	2,077

* 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 교사 97명 포함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표 2·11〉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단위: 명, 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수	장애영아 수	장애영아 학급 수	배치 인력 현황		
			교사	일반직 공무원	기타 (치료사, 지원인력 등)
198	254	56	1,561	47	565

6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현황

〈표 2·12〉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생 진로 현황

(단위: 명, %)

구분	졸업자 수	진학		취업		비진학 · 미취업자 수	
		진학자 수 (대학/전공과)	진학률 (%)	취업자 수	취업률 (%)		
고등 학교	특수학교	2,167	1,307	60.3	59	6.9	801
	특수학급	3,497	1,795	51.3	559	32.8	1,143
	일반학급	1,098	698	63.6	53	13.3	347
	계	6,762	3,800	56.2	671	22.7	2,291
전 공 과	특수학교	2,517	29	1.2	1,096	44.1	1,392
	특수학급	99	2	2.0	76	78.4	21
	계	2,616	31	1.2	1,172	45.3	1,413
전체	9,378	3,831	40.9	1,843	33.2	3,704	

※ 진학률 = (당해년도 졸업자 중 진학자 수 / 당해년도 졸업자 수) × 100

※ 취업률 = {취업자 수 / (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2022년 특수교육 정책 추진 현황

III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33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65
3.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 85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 105
5. 장애학생 교육회복 지원 / 121
6.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실적 / 122

III

2022년 특수교육 정책 추진 현황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1)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학생 비율

- 2022년 4월 기준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1.8%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였으며,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표 3·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단위: 명, %)

시도	전체 학생 수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계
서울	66,386	395,328	205,876	207,602	875,192	926	6,148	2,900	3,392	13,366	1.4	1.6	1.4	1.6	1.5
부산	36,303	154,858	74,995	72,202	338,358	633	3,202	1,374	1,540	6,749	1.7	2.1	1.8	2.1	2.0
대구	32,168	121,485	61,975	59,373	275,001	458	2,300	1,085	1,468	5,311	1.4	1.9	1.8	2.5	1.9
인천	35,539	155,780	78,408	71,426	341,153	665	3,473	1,410	1,519	7,067	1.9	2.2	1.8	2.1	2.1
광주	20,998	83,935	43,586	41,692	190,211	218	1,471	735	794	3,218	1.0	1.8	1.7	1.9	1.7
대전	20,444	76,942	40,304	39,091	176,781	323	1,407	704	983	3,417	1.6	1.8	1.7	2.5	1.9
울산	14,765	66,445	32,955	29,558	143,723	235	1,263	583	738	2,819	1.6	1.9	1.8	2.5	2.0
세종	6,422	32,224	14,807	11,484	64,937	173	457	132	152	914	2.7	1.4	0.9	1.3	1.4
경기	153,345	778,093	383,915	339,570	1,654,923	2,144	12,277	5,102	5,627	25,150	1.4	1.6	1.3	1.7	1.5
강원	13,167	71,531	37,922	36,821	159,441	210	1,359	651	803	3,023	1.6	1.9	1.7	2.2	1.9
충북	14,999	83,835	42,601	39,152	180,587	435	1,970	856	1,231	4,492	2.9	2.3	2.0	3.1	2.5
충남	23,659	118,222	59,883	41,668	243,432	494	2,488	1,030	1,216	5,228	2.1	2.1	1.7	2.9	2.1
전북	18,740	91,434	49,166	48,107	207,447	384	1,884	848	954	4,070	2.0	2.1	1.7	2.0	2.0
전남	16,255	90,415	46,865	45,017	198,552	254	1,942	913	1,058	4,167	1.6	2.1	1.9	2.4	2.1
경북	31,387	127,382	63,810	62,986	285,565	387	2,448	1,185	1,501	5,521	1.2	1.9	1.9	2.4	1.9
경남	42,444	187,433	95,014	84,464	409,355	506	3,436	1,592	1,804	7,338	1.2	1.8	1.7	2.1	1.8
제주	5,946	41,628	20,126	18,093	85,793	162	923	362	398	1,845	2.7	2.2	1.8	2.2	2.2
계	552,967	2,676,970	1,352,208	1,248,306	5,830,451	8,607	48,448	21,462	25,178	103,695	1.6	1.8	1.6	2.0	1.8

*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장애영아 포함, 고등학교 과정은 전공과 학생을 포함

※ 연도별 비율: 2013(1.2%), 2014(1.2%), 2015(1.3%), 2016(1.3%), 2017(1.4%), 2018(1.4%), 2019(1.5%), 2020(1.6%), 2021(1.7%), 2022(1.8%)

(2) 특수학교 학생

- 2022년 4월 기준 특수학교의 재학생은 27,979명으로 2021년의 27,027명에 비해 952명이 증가함

〈표 3·2〉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학생 수	24,720	25,138	25,288	25,531	25,467	25,798	25,919	26,084	26,299	27,027	27,979

- 시도별,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설립 분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영역별 구성 비율에 차이가 있음

〈표 3·3〉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시도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소계
서울	302	258	1,536	936	11	1,239	7	-	1	190	4,480
부산	61	25	879	326	8	526	17	-	-	95	1,937
대구	54	34	993	268	9	333	30	1	1	107	1,830
인천	82	39	1,007	220	1	469	29	-	-	13	1,860
광주	98	16	563	162	-	229	5	1	-	16	1,090
대전	119	16	513	109	-	307	-	-	-	12	1,076
울산	17	26	468	65	4	159	1	1	-	5	746
세종	-	-	79	34	-	69	1	-	-	3	186
경기	40	33	2,928	628	11	1,572	37	1	1	83	5,334
강원	49	5	468	80	4	186	8	4	-	24	828
충북	131	88	684	158	9	230	6	-	1	22	1,329
충남	2	10	739	188	8	292	10	-	1	18	1,268
전북	50	8	682	133	3	198	21	-	-	36	1,131
전남	56	15	748	117	11	206	7	-	-	14	1,174
경북	-	4	977	105	-	330	17	-	4	6	1,443
경남	14	7	914	310	8	480	5	2	-	24	1,764
제주	2	5	242	74	-	170	7	-	-	3	503
계	1,077	589	14,420	3,913	87	6,995	208	10	9	671	27,979

- 설립별로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국립학교 848명(3.0%), 공립학교 16,673명(59.6%), 사립학교 10,458명(37.4%)임
 - － 사립특수학교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인건비,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음

〈표 3·4〉 설립별 특수학교 학생 수

(단위: 명, %)

시도	국립	공립	사립	계	사립학교 위탁비율
서울	467	1,760	2,253	4,480	50.3
부산	-	1,363	574	1,937	29.6
대구	-	1,075	755	1,830	41.3
인천	-	1,468	392	1,860	21.1
광주	-	839	251	1,090	23.0
대전	-	813	263	1,076	24.4
울산	-	513	233	746	31.2
세종	-	186	-	186	-
경기	381	2,753	2,200	5,334	41.2
강원	-	754	74	828	8.9
충북	-	513	816	1,329	61.4
충남	-	1,072	196	1,268	15.5
전북	-	679	452	1,131	40.0
전남	-	591	583	1,174	49.7
경북	-	417	1,026	1,443	71.1
경남	-	1,544	220	1,764	12.5
제주	-	333	170	503	33.8
계	848(3.0)	16,673(59.6)	10,458(37.4)	27,979(100)	37.4

(3)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 2022년 4월 기준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57,948명으로 2021년의 54,266명에 비해 3,682명이 증가함
 - 통합교육의 확산에 따라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 비해 670개의 특수학급이 증가함

〈표 3·5〉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학생 수	44,433	45,181	45,803	46,351	46,645	47,564	48,848	50,812	52,744	54,266	57,948

- 학교급별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유치원 5,291명, 초등학교 30,964명, 중학교 11,317명, 고등학교 10,376명(전공과 포함)임

〈표 3·6〉 학교급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	538	-	538	11	3,513	-	3,524	10	1,377	7	1,394	23	1,072	176	1,271	44	6,500	183	6,727
부산	-	208	-	208	6	1,732	3	1,741	-	588	-	588	4	495	60	559	10	3,023	63	3,096
대구	-	178	-	178	12	1,075	-	1,087	6	413	-	419	7	410	3	420	25	2,076	3	2,104
인천	-	360	-	360	5	2,073	-	2,078	-	679	4	683	-	559	45	604	5	3,671	49	3,725
광주	-	103	-	103	5	822	-	827	6	300	3	309	11	204	49	264	22	1,429	52	1,503
대전	-	240	-	240	-	883	-	883	-	346	13	359	-	309	43	352	-	1,778	56	1,834
울산	-	161	-	161	-	816	-	816	-	298	-	298	-	281	-	281	-	1,556	-	1,556
세종	-	156	-	156	-	306	-	306	-	74	-	74	-	67	-	67	-	603	-	603
경기	-	1,607	4	1,611	-	8,412	18	8,430	-	2,984	125	3,109	-	2,900	142	3,042	-	15,903	289	16,192
강원	3	142	-	145	6	977	-	983	-	335	-	335	7	260	-	267	16	1,714	-	1,730
충북	4	295	-	299	8	1,232	-	1,240	9	425	5	439	22	425	12	459	43	2,377	17	2,437
충남	2	384	-	386	4	1,805	-	1,809	5	644	23	672	4	560	16	580	15	3,393	39	3,447
전북	-	206	-	206	10	1,123	-	1,133	-	396	15	411	3	296	24	323	13	2,021	39	2,073
전남	-	191	-	191	4	1,513	-	1,517	-	533	18	551	-	404	27	431	4	2,641	45	2,690
경북	-	127	-	127	2	1,655	14	1,671	-	542	91	633	-	379	164	543	2	2,703	269	2,974
경남	-	325	-	325	3	2,381	13	2,397	5	766	102	873	6	639	108	753	14	4,111	223	4,348
제주	-	57	-	57	5	517	-	522	9	161	-	170	18	125	17	160	32	860	17	909
계	9	5,278	4	5,291	81	30,835	48	30,964	50	10,861	406	11,317	105	9,385	886	10,376	245	56,359	1,344	57,948

*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204명(대구 20명, 인천 14명, 경기 137명, 충북 33명) 포함

(4) 일반학교 일반학급 학생

- 2022년 4월 기준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17,514명으로 2021년의 16,600명에 비해 914명이 증가함

〈표 3·7〉 연도별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학생 수	13,746	15,930	15,648	15,622	15,344	15,590	15,595	15,687	16,061	16,600	17,514

- 학교급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유치원 1,958명, 초등학교 8,129명, 중학교 3,983명, 고등학교 3,444명임

〈표 3·8〉 학교급별 및 설립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	28	61	89	2	979	28	1,009	3	399	101	503	7	241	255	503	12	1,647	445	2,104
부산	-	98	170	268	2	778	2	782	-	285	57	342	9	247	68	324	11	1,408	297	1,716
대구	-	75	177	252	-	590	3	593	7	247	45	299	7	156	62	225	14	1,068	287	1,369
인천	-	87	164	251	2	675	3	680	-	320	12	332	-	200	15	215	2	1,282	194	1,478
광주	-	16	58	74	1	280	1	282	-	130	25	155	6	72	36	114	7	498	120	625
대전	-	16	19	35	-	234	1	235	-	111	8	119	-	81	31	112	-	442	59	501
울산	-	37	25	62	-	234	-	234	-	126	3	129	-	79	8	87	-	476	36	512
세종	-	8	-	8	-	70	-	70	-	27	-	27	-	19	1	20	-	124	1	125
경기	-	103	83	186	-	1,880	18	1,898	-	706	84	790	-	559	115	674	-	3,248	300	3,548
강원	1	35	4	40	-	161	-	161	-	107	21	128	7	103	22	132	8	406	47	461
충북	-	49	18	67	2	290	3	295	4	150	12	166	4	158	27	189	10	647	60	717
충남	-	42	20	62	2	263	-	265	-	70	30	100	1	72	11	84	3	447	61	511
전북	-	55	67	122	-	396	-	396	-	167	30	197	2	91	57	150	2	709	154	865
전남	-	29	16	45	-	100	2	102	-	78	23	101	-	40	14	54	-	247	55	302
경북	-	94	117	211	-	426	7	433	-	166	53	219	-	131	85	216	-	817	262	1,079
경남	-	63	82	145	-	475	9	484	3	250	61	314	4	185	86	275	7	973	238	1,218
제주	-	18	23	41	3	207	-	210	2	50	10	62	6	42	22	70	11	317	55	383
계	1	853	1,104	1,958	14	8,038	77	8,129	19	3,389	575	3,983	53	2,476	915	3,444	87	14,756	2,671	17,514

(5)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 2022년 4월 기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영아 학급 수는 56학급이며, 장애영아 수는 254명임
- 연령별로 1세 미만 24명, 1세 62명, 2세 168명이며, 교육유형별로 센터지원 영아 수는 166명, 순회교육 지원 영아 수는 88명임

〈표 3·9〉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현황

(단위: 학급, 명)

시도	센터 설치 장애영아 학급 수	연령별 지원 영아 수				교육유형별 영아 수		
		1세 미만	1세	2세	계	센터지원 영아 수	순회교육 영아 수	계
서울	10	6	13	36	55	55	-	55
부산	-	-	-	-	-	-	-	-
대구	7	1	2	5	8	8	-	8
인천	1	3	-	1	4	4	-	4
광주	-	-	-	-	-	-	-	-
대전	4	-	2	4	6	6	-	6
울산	-	-	2	3	5	-	5	5
세종	-	-	-	-	-	-	-	-
경기	27	9	23	44	76	19	57	76
강원	1	-	1	3	4	1	3	4
충북	1	-	1	8	9	2	7	9
충남	-	-	-	2	2	1	1	2
전북	-	-	-	1	1	-	1	1
전남	-	-	1	-	1	-	1	1
경북	-	5	11	9	25	17	8	25
경남	3	-	2	6	8	3	5	8
제주	2	-	4	46	50	50	-	50
계	56	24	62	168	254	166	88	254

2) 특수교육기관 확충

(1) 특수학교

■ 관련 법규

-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초·중등교육법 제55조)
-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2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2년 4월 기준 전국의 특수학교 수는 192교로 2021년 대비 5교 증가하였음

〈표 3·10〉 연도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학교 수	156	162	166	167	170	173	175	177	182	187	192

- 전국 192개 특수학교를 설립별로 구분하면 국립 5교, 공립 97교, 사립 90교로 사립학교 비율이 전체의 46.9%임
- 전국 192개 특수학교를 장애영역별로 구분하면 시각장애학교 13교, 청각장애학교 14교, 지적장애학교 137교, 지체장애학교 21교, 정서장애학교 7교로 지적장애학교가 전체의 71.4%임

〈표 3·11〉 설립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구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소계
국립	1	1	1	1	1	5
공립	2	3	85	6	1	97
사립	10	10	51	14	5	90
계	13	14	137	21	7	192

※ 장애영역별 구분은 주 장애영역을 말함

- 전국 192개 특수학교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기도에 38교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32교, 부산광역시 15교 등의 순임

〈표 3·12〉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시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서울	3	4	16	6	3	32
부산	1	1	12	1	-	15
대구	1	1	6	2	1	11
인천	1	1	7	1	-	10
광주	1	-	3	1	-	5
대전	1	-	4	1	-	6
울산	-	1	3	-	-	4
세종	-	-	1	-	-	1
경기	-	2	32	3	1	38
강원	1	1	7	-	-	9
충북	2	1	4	2	1	10
충남	-	-	9	1	-	10
전북	1	1	6	2	-	10
전남	1	1	7	-	-	9
경북	-	-	7	-	1	8
경남	-	-	11	-	-	11
제주	-	-	2	1	-	3
계	13	14	137	21	7	192

- 특수학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 국·공·사립특수학교,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공립특수학교, 그 외 시도교육청에는 공·사립 특수학교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표 3·13〉 설립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시도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3	11	18	32
부산	-	8	7	15
대구	-	5	6	11
인천	-	6	4	10
광주	-	3	2	5
대전	-	4	2	6
울산	-	2	2	4
세종	-	1	-	1
경기	2	14	22	38
강원	-	8	1	9
충북	-	3	7	10
충남	-	8	2	10
전북	-	6	4	10
전남	-	4	5	9
경북	-	3	5	8
경남	-	9	2	11
제주	-	2	1	3
계	5	97	90	192

■ 향후 과제

- 지역별 균형과 수요를 반영한 특수학교 신설 추진
- 예술·체육 및 직업교육 등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특수학교 설립 지원

(2) 특수학급

■ 관련 법규

-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항)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제56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2년 4월 기준 전국의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는 12,712학급으로 2021년보다 670개 학급이 증가함

〈표 3·14〉 연도별 특수학급 수

(단위: 학급)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학급 수	8,927	9,343	9,617	9,868	10,065	10,325	10,676	11,105	11,661	12,042	12,712

- 학교급별 특수학급은 유치원 1,437학급, 초등학교 6,701학급, 중학교 2,614학급, 고등학교 1,960학급(전공과 포함)으로 초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이 전체 특수학급의 52.7%를 차지함
- 설립별 특수학급은 국립 46학급, 공립 12,391학급, 사립 275학급으로 총 12,712학급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국·공립 특수학급이 전체 특수학급의 97.8%를 차지함

〈표 3·15〉 학교급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수

(단위: 학급)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	139	-	139	2	801	-	803	2	308	2	312	3	236	35	274	7	1,484	37	1,528
부산	-	53	-	53	1	348	1	350	-	128	-	128	1	81	11	93	2	610	12	624
대구	-	44	-	44	2	260	-	262	1	91	-	92	1	72	2	75	4	467	2	473
인천	-	101	-	101	1	411	-	412	-	139	1	140	-	103	7	110	1	754	8	763
광주	-	26	-	26	1	166	-	167	1	65	1	67	2	35	9	46	4	292	10	306
대전	-	61	-	61	-	181	-	181	-	81	2	83	-	52	9	61	-	375	11	386
울산	-	42	-	42	-	167	-	167	-	67	-	67	-	49	-	49	-	325	-	325
세종	-	44	-	44	-	68	-	68	-	24	-	24	-	14	-	14	-	150	-	150
경기	-	464	1	465	-	1,710	3	1,713	-	680	31	711	-	534	21	555	-	3,388	56	3,444
강원	1	35	-	36	1	220	-	221	-	81	-	81	1	61	-	62	3	397	-	400
충북	1	76	-	77	2	290	-	292	2	103	1	106	3	76	3	82	8	545	4	557
충남	1	97	-	98	1	407	-	408	1	153	6	160	1	109	4	114	4	766	10	780
전북	-	58	-	58	2	266	-	268	-	88	5	93	1	56	4	61	3	468	9	480
전남	-	59	-	59	1	382	-	383	-	145	5	150	-	82	4	86	1	668	9	678
경북	-	34	-	34	1	395	2	398	-	136	21	157	-	79	29	108	1	644	52	697
경남	-	88	-	88	1	522	2	525	1	183	27	211	1	122	24	147	3	915	53	971
제주	-	12	-	12	1	82	-	83	2	30	-	32	2	19	2	23	5	143	2	150
계	3	1,433	1	1,437	17	6,676	8	6,701	10	2,502	102	2,614	16	1,780	164	1,960	46	12,391	275	12,712

*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34학급(대구 2학급, 인천 2학급, 경기 26학급, 충북 4학급) 포함

-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2022년 4월 기준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유치원 3.5명, 초등학교 4.7명, 중학교 4.7명, 고등학교 5.8명임

〈표 3·16〉 학교급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현원

(단위: 명)

시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계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정원	4	6	6	7	4	6	6	7	4	6	6	7
서울	3.3	5.4	5.2	5.4	3.9	4.4	4.5	4.6	3.6	4.9	4.8	5.0
부산	3.7	5.3	5.6	6.0	3.9	5.0	4.6	6.0	3.8	5.1	5.1	6.0
대구	3.3	5.1	4.9	6.9	4.0	4.1	4.6	5.6	3.7	4.6	4.7	6.3
인천	3.6	5.3	5.0	6.3	3.6	5.0	4.9	5.5	3.6	5.2	4.9	5.9
광주	2.9	4.6	5.0	6.4	4.0	5.0	4.6	5.7	3.4	4.8	4.8	6.1
대전	3.2	5.0	5.1	6.8	3.9	4.9	4.3	5.8	3.6	4.9	4.7	6.3
울산	2.3	4.6	4.7	7.0	3.8	4.9	4.4	5.7	3.1	4.8	4.6	6.4
세종	3.0	5.1	5.2	6.5	3.5	4.5	3.1	4.8	3.3	4.8	4.1	5.6
경기	3.4	5.8	5.8	6.0	3.5	4.9	4.4	5.5	3.4	5.4	5.1	5.7
강원	3.0	3.6	4.4	5.2	4.0	4.4	4.1	4.3	3.5	4.0	4.3	4.8
충북	3.0	4.1	4.4	6.0	3.9	4.2	4.1	5.6	3.4	4.2	4.3	5.8
충남	3.4	4.5	4.7	5.9	3.9	4.4	4.2	5.1	3.7	4.5	4.4	5.5
전북	3.2	4.9	5.2	6.1	3.6	4.2	4.4	5.3	3.4	4.5	4.8	5.7
전남	3.4	4.8	6.1	7.1	3.2	4.0	3.7	5.0	3.3	4.4	4.9	6.0
경북	2.7	4.5	5.1	7.1	3.7	4.2	4.0	5.0	3.2	4.4	4.6	6.1
경남	2.5	4.2	4.8	5.7	3.7	4.6	4.1	5.1	3.1	4.4	4.5	5.4
제주	2.8	4.4	5.2	5.6	4.8	6.3	5.3	7.0	3.8	5.4	5.3	6.3
평균	3.1	4.8	5.1	6.2	3.8	4.7	4.3	5.4	3.5	4.7	4.7	5.8

* 유치원에 장애영아 포함, 고등학교에 전공과 포함

■ 향후 과제

- 지역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
- 예술, 체육, 직업교육 등 특정 분야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성화된 학급 설치·운영 추진

3)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관련 법규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2년 4월 기준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138교 293학급(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10교 63학급 포함), 일반유치원 특수학급이 1,141교 1,437학급으로 총 1,279교 1,730학급이 운영되고 있음

〈표 3·17〉 유아특수교육기관 현황

(단위: 교, 학급)

구분	특수학교 유치원		유치원 특수학급	계
	특수학교 유치원 전체(A)	전체(A) 중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학교 수	138	10	1,141	1,279
학급 수	293	63	1,437	1,730

- 2022년 4월 기준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특수학교 내 유치원에 999명(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240명 포함), 유치원 특수학급에 5,291명, 유치원 일반학급에 1,958명으로 총 8,248명임

〈표 3·18〉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구분	특수학교 유치원		유치원 특수학급	유치원 일반학급	계
	특수학교 유치원 전체(A)	전체(A) 중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학생 수	999	240	5,291	1,958	8,248

- 2022년 4월 기준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비는 공립유치원 6,131명, 사립유치원 1,108명으로 총 7,239명이 지원받고 있음
- 1인 월 교육비 평균은 공립유치원 173.7천 원, 사립유치원 472천 원임

〈표 3·19〉 공·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현황

(단위: 명, 천 원)

시도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대상자 수	1인 최고지원액(월)	대상자 수	1인 최고지원액(월)
서울	566	236	61	684
부산	306	150	170	401
대구	253	150	177	401
인천	447	150	164	401
광주	119	191	58	450
대전	256	150	19	381
울산	198	180	25	450
세종	164	310	-	-
경기	1,710	196	87	480
강원	177	160	4	401
충북	344	150	18	557
충남	426	150	20	543
전북	261	150	67	481
전남	220	150	16	550
경북	221	150	117	451
경남	388	180	82	491
제주	75	150	23	430
계	6,131	173.7	1,108	472

- 특수교육대상유아는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일반유치원의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에 배치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표 3·20〉 유치원 및 장애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

특수학교 유치원	교육부('22.4.1.기준)			보건복지부('21.12.31.기준)				합계
	유치원		소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소계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전일제 통합학급 운영 유치원						
138	1,141	1,319	2,598	178	1,030	944	2,152	4,750

■ 향후 과제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홍보 강화
- 유아단계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합유치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 일반 유치원 배치 희망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 강화 및 통합교육 여건 개선
-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를 통해 유치원 입학 과정 지원

4)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 관련 법규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거나 순회교육을 제공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2022년 4월 기준 특수학교 42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56학급, 총 98학급의 장애영아 학급이 설치되었음
- 특수학교에서 무상교육 지원을 받는 장애영아 수는 105명,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장애영아 수는 254명으로 총 359명의 장애영아가 무상교육 지원을 받고 있음
- 연령별 현황은 1세 미만 28명, 1세 101명, 2세 230명으로 총 359명임

〈표 3·21〉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현황

(단위: 명, 학급)

시도	연령별 지원 영아 수				배치기관별 지원 영아 수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합 계		
	1세 미만	1세	2세	계	영아 학급 수	지원 영아 수	영아 학급 수	지원 영아 수			영아 학급 수	지원 영아 수
센터지원 영아 수								순회지원 영아 수	계			
서울	7	20	51	78	11	23	10	55	-	55	21	78
부산	-	6	17	23	9	23	-	-	-	-	9	23
대구	1	2	5	8	-	-	7	8	-	8	7	8
인천	3	2	1	6	1	2	1	4	-	4	2	6
광주	2	9	5	16	5	16	-	-	-	-	5	16
대전	-	9	10	19	3	13	4	6	-	6	7	19
울산	-	2	3	5	-	-	-	-	5	5	-	5
세종	-	-	1	1	1	1	-	-	-	-	1	1
경기	9	25	50	84	4	8	27	19	57	76	31	84
강원	-	1	3	4	-	-	1	1	3	4	1	4
충북	1	6	9	16	4	7	1	2	7	9	5	16
충남	-	1	9	10	3	8	-	1	1	2	3	10
전북	-	-	4	4	1	3	-	-	1	1	1	4
전남	-	1	-	1	-	-	-	-	1	1	-	1
경북	5	11	10	26	-	1	-	17	8	25	-	26
경남	-	2	6	8	-	-	3	3	5	8	3	8
제주	-	4	46	50	-	-	2	50	-	50	2	50
계	28	101	230	359	42	105	56	166	88	254	98	359

■ 향후 과제

- 영유아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체계를 통해 장애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기관) 연계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장애영아 조기 교육을 위한 무상교육 홍보 및 지원 강화
-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및 유아특수학교에 영아대상 특수학급 확대

5)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1) 특수교육 담당교원 양성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교원 양성 및 연수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 교사 양성과정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강화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무시험검정 기준: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38학점, 교직과목 22학점,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은 특수교육교원 양성대학을 졸업하는 경우 또는 일반교육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경우에 부여됨
- 2022년 기준 특수교육 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한 대학은 37개교이고, 승인 인원은 1,492명임

〈표 3·22〉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학부)

(단위: 교, 개, 명)

설립별	대학명	계열	학과 및 전공명	입학 정원	승인 인원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국립	공주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46	46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부산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18	18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전남대	사범대학	특수교육학부 유아특수교육전공	15	1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학부 초등특수교육전공	15	15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교육학부 중등특수교육전공	15	15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창원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한국교통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학과	13	13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한국체육대	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한국교원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9	9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계	7		9	181	181	
사립	가야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17	17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9	9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가톨릭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직업교육
	강남대	사범대학	초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건양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경주대	교육과	특수체육교육학과	4	4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광주여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전공	22	22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전공			18	18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미술	

(단위: 교, 개, 명)

설립별	대학명	계열	학과 및 전공명	입학 정원	승인 인원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사립	극동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학과	14	14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학과	14	14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영어, 체육
	나사렛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남부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25	25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단국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대구대	사범대학	유아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재활과학대	직업재활학과	38	3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대구한의대	재활보건대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미술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대전대	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상담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백석대	사범학부	유아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과	60	6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특수체육교육과	40	4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부산장신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세한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순천향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신라대	체육계열	체육학부 특수체육전공	20	2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영남대	사범대학	특수체육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단위: 교, 개, 명)

설립별	대학명	계열	학과 및 전공명	입학 정원	승인 인원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사립	유원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용인대	사범대학	특수체육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우석대	사범대학	유아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과	34	34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원광대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27	27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위덕대	교육과	특수교육학부 초등특수교육전공	21	21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교육학부 중등특수교육전공	21	21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이화여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인제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5	2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전주대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조선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중부대	사범계	특수교육과		20	20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특수체육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한국국제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체육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계	30		47	1,344	1,291	
총계	37		56	1,525	1,472	

- 2022년 기준 17개 대학의 교육대학원에서 23개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표 3·23〉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교육대학원)

(단위: 교, 개)

설립별	대학원명	설립 년도	수업 형태	'22학년도 운영전공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국립	공주대	1986	계절	중등특수교육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1999		초등특수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1997		유아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부산대	2001	야간	유아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1999		초등특수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1999		중등특수교육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서울대	1999	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창원대	1997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한국교통대	2013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한국교원대	1997	계절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립 계	6			10	
사립	광운대	2014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대구대	1984	계절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단위: 교, 개)

설립별	대학원명	설립 년도	수업 형태	'22학년도 운영전공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사립	순천향대	1999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2011	야간	특수체육교육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아주대	2001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영남대	1999	계절 · 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용인대	1998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우석대	1986	계절	특수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1996		유아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이화여대	1993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인제대	1998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전주대	2000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조선대	1999	계절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사립 계	11			13	
계	17			23	

- 2022년 기준 9개의 교육대학교에 설치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표 3·24〉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현황

(단위: 명)

교육대학명	형태	수업형태	'22학년도 입학정원	'22학년도 운영전공
서울교육대학교	전문대학원	야간	총정원제 운영	초등특수교육 유이특수교육
부산교육대학교	특수대학원	야간		초등특수교육
대구교육대학교		계절·야간		초등특수교육 뇌기반 특수체육
경인교육대학교	전문대학원	계절·야간		특수교육
춘천교육대학교	특수대학원	계절·야간		초등특수교육
청주교육대학교		계절		초등특수교육 및 학습행동전문가
공주교육대학교		주간·계절		글로벌 특수교육·학습장애
전주교육대학교		야간		초등특수교육
진주교육대학교		야간		초등특수교육

- 2022년 기준 3개 대학의 특수교육대학원에서 17개 교사 재교육과정 운영

〈표 3·25〉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특수교육대학원)

(단위: 교, 개)

설립별	대학원명	설립년도	수업형태	'22학년도 운영전공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국립	공주대	1998	야간	중등특수교육전공	재교육과정
		1998		초등특수교육전공	재교육과정
		1998		유아특수교육전공	재교육과정
		1998		특수직업교육전공	재교육과정
국립 계	1			4	
사립	단국대	1997	야간	유아특수교육전공	재교육과정
		1997		초등특수교육전공	재교육과정
		1997		중등특수교육전공	재교육과정
		1997		언어치료	재교육과정
		1997		물리·작업치료	재교육과정
		1997		심리치료	재교육과정
		2012		직업재활교육	재교육과정
		2014		장애인평생교육	재교육과정
		2016		학습장애·난독증교육	재교육과정
	대구대	계절	1997	초등특수교육	재교육과정
			1997	유아특수교육	재교육과정
			1997	지적학습발달장애교육	재교육과정
			1997	감각운동발달장애교육	재교육과정
사립 계	2			13	

■ 향후 과제

- 특수교육 현장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일반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과정의 교육과정 강화 및 전공 교수 확보
- 미래사회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특수교사 양성 및 지원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강화

(2) 특수교육 담당교원 현직연수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자질 함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현직연수는 국립특수교육원, 시도교육청(직속기관인 시도교육연수원 포함) 및 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국립특수교육원은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통해 특수교육교원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과 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등은 특수교육 교사 자격연수(유·초·중등)와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시도별 특수교육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 소지율은 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 포함)가 99.4%, 특수학급이 99.0%, 전체 99.2%로 나타남

〈표 3·26〉 특수교육 담당교사 자격 소지 현황

(단위: 명, %)

시도	특수학교 (센터 포함)				특수학급				합계			
	현원*	소지자	미소지	자격 소지 비율	현원	소지자	미소지	자격 소지 비율	현원	소지자	미소지	자격 소지 비율
서울	1,594	1,585	9	99.4	1,573	1,573	-	100.0	3,167	3,158	9	99.7
부산	698	682	16	97.7	674	670	4	99.4	1,372	1,352	20	98.6
대구	733	729	4	99.5	514	514	-	100.0	1,247	1,243	4	99.7
인천	653	652	1	99.8	804	804	-	100.0	1,457	1,456	1	99.9
광주	426	424	2	99.5	324	323	1	99.7	750	747	3	99.6
대전	399	396	3	99.2	436	433	3	99.3	835	829	6	99.3
울산	286	286	-	100.0	333	330	3	99.1	619	616	3	99.5
세종	71	70	1	98.6	150	146	4	97.3	221	216	5	98.0
경기	2,219	2,214	5	99.8	3,971	3,911	60	98.5	6,190	6,125	65	99.1
강원	395	390	5	98.7	419	406	13	96.9	814	796	18	97.8
충북	554	550	4	99.3	576	568	8	98.6	1,130	1,118	12	98.9
충남	531	526	5	99.1	813	797	16	98.0	1,344	1,323	21	98.5
전북	458	457	1	99.8	484	482	2	99.6	942	939	3	99.7
전남	464	464	-	100.0	680	671	9	98.7	1,144	1,135	9	99.3
경북	533	529	4	99.2	713	709	4	99.4	1,246	1,238	8	99.3
경남	757	755	2	99.7	1,002	999	3	99.7	1,759	1,754	5	99.7
제주	193	188	5	97.4	166	165	1	99.4	359	353	6	98.4
계	10,964	10,897	67	99.4	13,632	13,501	131	99.0	24,596	24,398	198	99.2

* 특수학교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는 제외

- 2022년 현재 특수교육교원 연구회는 975개이며 12,520명이 특수교육 관련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표 3·27〉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천 원)

시도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수	회원 수	지원 예산
서울	37	590	39,316
부산	95	826	70,520
대구	79	766	47,350
인천	74	859	81,335
광주	92	1,222	47,786
대전	58	722	30,071
울산	8	63	8,000
세종	13	321	11,969
경기	3	146	8,000
강원	69	734	89,000
충북	70	728	85,740
충남	114	1331	112,100
전북	26	248	28,000
전남	44	785	82,500
경북	76	1,333	105,872
경남	105	1,586	115,640
제주	12	260	18,260
계	975	12,520	981,459

■ 향후 과제

- 특수교육교원의 교과별 수업 전문성 및 장애유형별 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기회 확대
 - －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과정 운영
-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교과 연수 제공 확대
- 특수교육교원 연수과정의 질 제고 및 참여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다양화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 관련 법규

- 각급 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교육책임자가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하여야 함(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조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음
- 2021년 9월 기준 전국의 초·중·고·특수·각종 학교는 총 12,231교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93.8%임

〈표 3·28〉 전국 초·중·고·특수·각종 학교의 시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21)

(단위: 교, %)

시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서울	1,363	95.8	98.5	94.2	89.9	75.3	86.9	92.9	96.8	79.8	70.1	73.4	86.7
부산	634	97.5	99.5	97.2	95.9	92.1	94.2	92.9	98.9	98.4	97.0	95.3	96.3
대구	465	99.8	99.6	99.6	99.6	98.7	97.6	97.4	99.4	98.9	94.6	98.1	98.5
인천	545	96.7	97.1	96.7	96.7	90.3	93.8	87.5	97.8	91.4	74.1	79.1	91.0
광주	321	97.2	99.7	98.1	94.4	85.7	86.9	94.7	98.8	96.0	97.2	83.2	93.8
대전	310	99.0	100.0	100.0	99.4	90.3	95.8	97.7	100.0	99.0	96.8	89.7	97.1
울산	249	97.2	99.6	98.0	96.8	97.6	95.6	93.6	100.0	99.6	98.8	97.6	97.7
세종	99	99.0	99.0	99.0	96.0	90.9	97.0	91.9	99.0	99.0	97.0	94.9	96.6
경기	2,527	98.2	98.9	98.1	96.1	91.7	92.8	93.5	98.6	95.8	94.0	91.5	95.4
강원	665	97.3	97.6	97.4	96.7	94.6	83.3	81.4	95.6	95.3	92.9	89.5	92.9
충북	495	98.2	98.2	97.8	97.2	97.0	90.1	92.9	98.6	96.0	91.1	88.9	95.1
충남	738	97.8	98.4	96.6	94.9	85.6	83.1	91.5	98.1	95.3	94.3	82.2	92.5
전북	774	97.3	98.3	97.3	94.7	88.4	77.9	95.0	97.7	97.8	97.3	93.8	94.1
전남	872	94.3	96.9	94.8	93.8	93.8	68.7	92.9	95.5	94.8	93.2	86.2	91.4
경북	978	96.7	97.8	97.2	94.9	96.0	90.5	95.0	96.4	95.9	95.4	90.8	95.1
경남	1,000	98.7	98.8	97.3	95.9	97.9	85.1	97.5	98.9	97.5	95.4	92.9	96.0
제주	196	99.5	98.5	99.5	99.5	95.4	99.0	96.9	99.5	99.5	95.4	98.5	98.3
계	12,231	97.4	98.5	97.1	95.3	90.9	87.9	93.2	97.9	94.5	91.2	88.4	93.8

※ 단순 설치율 현황

- 설립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공립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95.0%, 사립학교는 87.3%의 평균 설치율을 보임

〈표 3·29〉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21)

(단위: 교, %)

구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국·공립	10,436	98.3	98.8	97.9	96.2	93.2	90.7	93.9	98.4	95.4	92.2	89.6	95.0
사립	1,795	92.5	96.7	92.5	89.8	77.3	71.2	89.1	95.0	89.0	85.3	81.7	87.3
계	12,231	97.4	98.5	97.1	95.3	90.9	87.9	93.2	97.9	94.5	91.2	88.4	93.8

- 학교급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94.5%, 중학교 93.5%, 고등학교 92.6%, 특수학교 99.1%, 각종 학교 83.4%의 평균 설치율을 보임

〈표 3·30〉 학교급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21)

(단위: 교, %)

구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초등학교	6,308	97.8	98.1	97.4	95.8	93.0	89.1	94.2	97.8	95.0	91.6	89.0	94.5
중학교	3,262	97.5	99.0	97.4	95.3	89.4	86.2	92.4	98.3	94.2	90.9	87.5	93.5
고등학교	2,394	96.2	99.0	96.2	93.7	86.8	86.4	91.3	97.6	93.6	90.4	87.9	92.6
특수학교	187	99.5	97.9	100.0	100.0	100.0	98.4	98.9	99.5	96.8	99.5	99.5	99.1
각종학교	80	90.0	87.5	88.8	88.8	82.5	73.8	82.5	92.5	86.3	71.3	73.8	83.4
계	12,231	97.4	98.5	97.1	95.3	90.9	87.9	93.2	97.9	94.5	91.2	88.4	93.8

- 특수학급 설치 여부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특수학급 설치 학교는 평균 96.4%, 미설치 학교는 평균 89.2%의 설치율을 보임

〈표 3·31〉 특수학급 설치 여부에 따른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21)

(단위: 교, %)

구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특수학급 설치 학교	7,868	99.1	99.5	99.0	97.4	94.8	94.8	94.9	99.5	96.8	93.5	91.2	96.4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4,363	94.4	96.6	93.7	91.5	83.9	75.3	90.1	95.0	90.3	86.9	83.4	89.2
계	12,231	97.4	98.5	97.1	95.3	90.9	87.9	93.2	97.9	94.5	91.2	88.4	93.8

- 2021년 9월 기준 전국의 특수학교는 187교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99.1%임

〈표 3·32〉 특수학교 시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21)

(단위: 교, %)

시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서울	32	100.0	93.8	100.0	100.0	100.0	96.9	96.9	96.9	93.8	100.0	100.0	98.0
부산	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구	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인천	10	9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1
광주	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0.0	100.0	100.0	98.2
대전	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울산	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세종	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기	38	100.0	94.7	100.0	100.0	100.0	97.4	97.4	100.0	94.7	100.0	100.0	98.6
강원	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7.5	87.5	87.5	96.6
충북	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충남	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북	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남	8	100.0	100.0	100.0	100.0	100.0	87.5	100.0	100.0	100.0	100.0	100.0	98.9
경북	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남	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주	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	187	99.5	97.9	100.0	100.0	100.0	98.4	98.9	99.5	96.8	99.5	99.5	99.1

※ 단순 설치율 현황

■ 향후 과제

- 특수·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제고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점검·관리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관련 법규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4월 기준 유치원 742명, 초등학교 858명, 중학교 397명, 고등학교 161명으로 총 2,158명의 학생이 순회교육을 받고 있음

〈표 3·33〉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단위: 명)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45	35	15	16	111
부산	93	25	14	4	136
대구	45	29	22	9	105
인천	1	-	-	3	4
광주	37	12	7	-	56
대전	3	5	-	-	8
울산	43	36	15	5	99
세종	1	1	1	1	4
경기	64	159	42	8	273
강원	26	52	24	6	108
충북	41	29	17	17	104
충남	46	85	30	6	167
전북	52	101	49	9	211
전남	42	45	46	15	148
경북	65	72	49	38	224
경남	105	119	62	20	306
제주	33	53	4	4	94
계	742	858	397	161	2,158

■ 향후 과제

- 통합교육 협력교수 모형을 개발하고,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연수 강화
-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 조정, 정기상담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 강화

2) 일반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반학교 교원에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
-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 일반교사 양성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직과정의 세부 이수기준 중 교직소양 영역에 '특수교육학 개론' 과목을 포함하여 2009년부터 시행함(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161호, 2008.1.8.)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초·중등 교육법 제59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일반학교 통합학급 담당교사 49,205명이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에 참여함
- 통합학교 관리자 교(원)장 10,302명이 장애공감 관련 연수 과정에 참여함
- 안정적인 통합교육 환경조성 및 일반·특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모형 개발을 위해 '정다운학교' 104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12교에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표 3·34〉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 이수 현황

(단위: 명)

시도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				계
	3~15시간 미만	15~29시간	30~59시간	60시간 이상	
서울	5,047	556	575	791	6,969
부산	1,005	434	533	1,496	3,468
대구	444	406	564	1,319	2,733
인천	517	509	486	1,527	3,039
광주	76	174	260	626	1,136
대전	400	49	230	1,310	1,989
울산	224	196	196	756	1,372
세종	143	55	64	140	402
경기	3,646	1,321	1,467	4,293	10,727
강원	461	103	176	262	1,002
충북	451	405	257	942	2,055
충남	911	501	484	727	2,623
전북	785	293	510	527	2,115
전남	793	311	477	319	1,900
경북	907	508	411	978	2,804
경남	1,221	760	554	1,558	4,093
제주	191	111	197	279	778
계	17,222	6,692	7,441	17,850	49,205

〈표 3·35〉 통합학교 관리자 장애공감 연수 이수 현황

(단위: 명)

시도	통합학교 관리자 장애공감 연수 이수 현황	
	특수(통합)교육 연수 이수 교(원)장 수	전체 통합학교 교(원)장 수
서울	1,020	1,266
부산	672	726
대구	510	546
인천	551	633
광주	262	322
대전	321	335
울산	270	270
세종	118	123
경기	2,102	2,216
강원	436	515
충북	463	478
충남	563	657
전북	619	643
전남	488	632
경북	802	842
경남	934	957
제주	171	193
계	10,302	11,354

〈표 3·36〉 정다운학교 운영 현황

(단위: 교)

시도	정다운학교 운영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2	3	2	1	8
부산	1	3(2)	-	-	4(2)
대구	4	15(2)	3	2	24(2)
인천	1	2(1)	1	2	6(1)
광주	-	-	-	-	-
대전	1	2	2	-	5
울산	-	1(1)	-	-	1(1)
세종	-	-	-	-	-
경기	4	5	8	3	20
강원	-	4(1)	-	-	4(1)
충북	-	3	2	1	6
충남	-	3	-	1	4
전북	2	4	2	-	8
전남	1	1	1	-	3
경북	-	3(2)	1	-	4(2)
경남	1(1)	1(1)	-	-	2(2)
제주	-	3(1)	2	-	5(1)
계	17(1)	53(11)	24	10	104(12)

※ 괄호 안의 학교 수는 연구학교 수

■ 향후 과제

- 정다운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및 장애·비장애학생 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통합교육 지원 강화
- 통합교육 지원 전문인력 배치 확대 및 협력교수 지원 등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추진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통합교육 지원 강화

■ 관련 법규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도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 포함)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2년 4월 기준, 전국에 198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은 교사 1,561명, 일반직 47명, 치료사와 지원인력을 포함한 기타 인력 565명으로 모두 2,173명임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설 설비비,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구입, 운영비 등 지원 예산은 약 1,577억 원임

〈표 3·37〉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시도	센터 수	교사			일반직			기타 (전체 계약직임)				전체	연간 지원 예산 (총액)
		정규	계약	계	정규	계약	계	치 료 사	사회 복무 요원	기타	계		
서울	12	107	7	114	-	-	-	-	-	38	38	152	13,731
부산	6	48	19	67	8	-	8	-	2	4	6	81	7,519
대구	5	84	17	101	4	-	4	-	11	1	12	117	8,660
인천	6	92	6	98	-	-	-	7	-	3	10	108	6,023
광주	3	45	-	45	1	-	1	-	2	11	13	59	3,960
대전	5	53	1	54	6	-	6	3	1	5	9	69	6,446
울산	3	40	1	41	-	-	-	39	-	6	45	86	3,428
세종	1	17	2	19	1	-	1	5	3	9	17	37	3,306
경기	27	346	-	346	1	5	6	45	3	46	94	446	22,052
강원	18	42	4	46	1	1	2	31	-	14	45	93	5,423
충북	11	98	-	98	4	-	4	13	1	11	25	127	17,950
충남	15	82	12	94	6	-	6	37	1	22	60	160	16,553
전북	15	87	-	87	6	-	6	2	-	27	29	122	10,275
전남	23	68	4	72	-	-	-	26	-	21	47	119	7,018
경북	24	96	-	96	-	-	-	11	1	22	34	130	7,805
경남	21	143	6	149	3	-	3	72	2	7	81	233	15,360
제주	3	30	4	34	-	-	-	-	-	-	-	34	2,236
계	198	1,478	83	1,561	41	6	47	291	27	247	565	2,173	157,745

-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통합교육지원단 173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47개를 운영하고 있음

〈표 3·38〉 통합교육지원단 및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시도	통합교육지원단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지원단 수	구성인원 수	센터 수	거점 영역
서울	11	186	5	지체중복(1), 시각(2), 청각(2)
부산	6	59	4	지체(1), 발달(1), 시각(1), 청각(1)
대구	5	139	3	시각(1), 청각(1), 정서(1)
인천	6	86	2	시각(1), 청각(1)
광주	3	66	1	시·청각(1)
대전	3	27	1	시·청각(1)
울산	3	30	1	시·청각(1)
세종	1	22	-	-
경기	23	280	5	시각(1), 청각(1), 시·청각(1), 지체중복(1), 건강(1)
강원	18	169	2	시각(1), 청각(1)
충북	8	91	4	시각(2), 청각(1), 발달(1)
충남	5	54	2	시·청각(1), 정서(1)
전북	14	133	4	시각(1), 청각(1), 지체(1), 정서(1)
전남	22	188	3	시·청각(3)
경북	23	194	4	시·청각(4)
경남	19	198	4	시·청각(4)
제주	3	22	2	시·청각(2)
계	173	1,944	47	

■ 향후 과제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담당 교육전문직, 교사, 행정직원 및 상담사 등의 전문인력 배치·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제공

4)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지원 강화

■ 관련 법규

-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2년 4월 기준 특수학교 297개 순회·파견학급에서 303명의 교사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총 1,001명으로, 기관별로 가정 786명, 시설 184명, 병원 31명이며, 학교급별로 유치원(장애영아 포함) 163명, 초등학교 396명, 중학교 211명, 고등학교 231명임

〈표 3·39〉 특수학교 순회교육 학생 수

(단위: 학급, 명)

구분	학생 수										학급 수	교사 수
	기관					학교과정						
	가정	시설	병원	일반 학교	계	유치원 (장애영아 포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특수학교에서 순회·파견·겸임	786	184	31	-	1,001	163	396	211	231	1,001	297	303

- 2022년 4월 기준 일반학교 특수학급 248개의 순회·파견학급에서 262명의 교사들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수학급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총 789명으로, 기관별로 가정 507명, 시설 218명, 병원 10명, 일반학교 54명이며, 학교급별로 유치원 79명, 초등학교 335명, 중학교 164명, 고등학교 211명임

〈표 3·40〉 특수학급 순회교육 학생 수

(단위: 학급, 명)

구분	학생 수										학 급 수	교 사 수
	기관					학교과정						
	가정	시설	병원	일반 학교	계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계		
특수학급에서 순회·파견·겸임	507	218	10	54	789	79	335	164	211	789	248	262

- 2022년 4월 기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1,512명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 순회교사가 순회교육을 지원하는 학생 수는 총 2,775명으로, 기관별로 가정 354명, 시설 55명, 병원 19명, 일반학교 2,347명이며, 학교급별로 유치원(장애영아 포함) 944명, 초등학교 1,052명, 중학교 485명, 고등학교 294명임

〈표 3·41〉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학생 수

(단위: 학급, 명)

구분	학생 수										교 사 수
	기관					학교과정					
	가정	시설	병원	일반 학교	계	유치원 (장애영아 포함)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계	
특수교육지원센터	354	55	19	2,347	2,775	944	1,052	485	294	2,775	1,512*

* 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 교사 97명 포함

■ 향후 과제

- 가정·병원·시설 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육 지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확대
- 순회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해 순회교육 전담인력 확대 및 역량강화 연수 등 전문성 신장 기회 확대
- 일반학교 순회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 확대 및 순회교사와 통합학급 일반교사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

5)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관련 법규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 교육감은 가족지원과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하고,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한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2년 63,387명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과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3·42〉 치료지원 현황

(단위: 명, 천 원)

구분	지원 인원	지원 예산
서울	9,256	15,981,192
부산	3,821	5,511,420
대구	5,298	6,108,120
인천	5,003	1,209,906
광주	2,536	3,353,760
대전	1,880	2,092,800
울산	1,491	3,186,328
세종	785	1,413,600
경기	11,581	18,543,420
강원	2,409	4,022,081
충북	3,302	4,949,618
충남	3,220	5,230,013
전북	3,324	4,817,388
전남	1,685	3,435,560
경북	4,251	8,803,600
경남	2,189	5,820,071
제주	1,356	1,655,738
계	63,387	96,134,615

-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2022년 4월 기준 국고·지방비 지원 등 유급 특수교육 지원인력과 사회복무요원 총 13,370명이 배치됨
- 국고·지방비 지원 등 유급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8,893명으로 특수학교 2,943명, 특수학급 5,821명, 일반학급에 129명이 배치됨
- 사회복무요원은 4,477명으로 특수학교 1,759명, 특수학급 2,625명, 일반학급에 93명이 배치됨

〈표 3·43〉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현황

(단위: 명)

시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계
	유급					사회복무요원	유급					사회복무요원	유급						
	국고·지방비	자치단체(자활후원단체)	기타	소계	소계		국고·지방비	자치단체(자활후원단체)	기타	소계	소계		국고·지방비	자치단체(자활후원단체)	기타	소계	소계		
서울	407	3	-	410	451	861	848	67	10	925	447	1,372	2	-	-	2	6	8	2,241
부산	308	-	-	308	64	372	304	26	-	330	81	411	1	-	-	1	-	1	784
대구	241	-	-	241	116	357	313	-	-	313	136	449	3	-	-	3	7	10	816
인천	231	-	-	231	22	253	443	5	-	448	24	472	-	-	-	-	-	-	725
광주	84	-	-	84	77	161	160	13	-	173	62	235	-	1	-	1	1	2	398
대전	213	-	-	213	65	278	349	-	-	349	122	471	-	-	-	-	-	-	749
울산	128	-	-	128	139	267	218	-	-	218	152	370	2	-	-	2	3	5	642
세종	34	-	-	34	5	39	111	-	-	111	5	116	-	-	-	-	-	-	155
경기	268	-	-	268	309	577	872	-	1	873	948	1,821	-	-	-	-	11	11	2,409
강원	70	-	-	70	71	141	179	-	27	206	7	213	72	-	-	72	-	72	426
충북	168	-	-	168	33	201	226	-	-	226	29	255	5	-	-	5	-	5	461
충남	150	-	11	161	35	196	392	-	-	392	51	443	5	-	-	5	2	7	646
전북	142	-	-	142	21	163	247	-	-	247	70	317	8	-	-	8	5	13	493
전남	98	-	-	98	61	159	211	4	-	215	128	343	12	-	-	12	4	16	518
경북	113	-	-	113	149	262	354	-	-	354	140	494	14	-	-	14	46	60	816
경남	213	-	-	213	95	308	397	-	-	397	196	593	1	-	-	1	6	7	908
제주	61	-	-	61	46	107	44	-	-	44	27	71	3	-	-	3	2	5	183
계	2,929	3	11	2,943	1,759	4,702	5,668	115	38	5,821	2,625	8,446	128	1	-	129	93	222	13,370

- 교통비는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학생 28,233명 중 통학버스 이용학생 16,259명을 제외하고 14,402명(학부모 포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배치 학생 75,462명 중 통학버스 이용학생 3,377명을 제외하고 31,543명(학부모 포함)을 지원하고 있음
- 교통비 지원예산은 약 471억 원임

〈표 3·44〉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시도	특수학교(센터 포함)						일반학교					
	전체 학생 수	학교 통학 버스 이용 학생 수	교통비 지원자 수 (학부모 포함)			교통비 지원 예산	전체 학생 수	학교 통학 버스 이용 학생 수	교통비 지원자 수 (학부모 포함)			교통비 지원 예산
			유치원	초등 학교	중·고등 학교				유치원	초등 학교	중·고등 학교	
서울	4,535	2,157	194	1,118	1,452	4,799	8,831	-	-	-	1,734	507
부산	1,937	1,245	-	342	401	182	4,812	-	-	807	574	338
대구	1,838	904	-	590	560	2,468	3,473	56	-	314	773	489
인천	1,864	1,149	13	97	252	2,391	5,203	232	81	48	711	577
광주	1,090	653	6	192	264	351	2,128	33	106	261	484	634
대전	1,082	635	34	79	155	1,491	2,335	8	129	154	400	490
울산	751	488	2	133	268	177	2,068	-	90	307	551	553
세종	186	97	4	27	25	75	728	45	43	48	56	67
경기	5,410	2,861	271	1,949	3,114	9,916	19,740	-	2,109	5,314	5,211	4,369
강원	832	543	10	92	148	230	2,191	447	126	804	516	985
충북	1,338	846	26	351	492	2,035	3,154	302	166	929	936	1,061
충남	1,270	1,004	19	73	42	3,611	3,958	419	146	143	487	316
전북	1,132	870	2	33	73	1,650	2,938	484	61	376	552	485
전남	1,175	723	10	95	286	386	2,992	423	103	514	956	936
경북	1,468	782	12	165	335	897	4,053	486	137	800	1,003	1,585
경남	1,772	1,036	5	167	300	1,200	5,566	430	181	754	718	1,241
제주	553	266	6	60	58	175	1,292	12	62	502	266	438
계	28,233	16,259	614	5,563	8,225	32,034	75,462	3,377	3,540	12,075	15,928	15,071

- 2022년 6월 기준 전국 192개 특수학교에서 통학버스 808대를 운영하며, 특수학교 재학생 26,978명(순회교육 지원학생 1,001명 제외) 중 16,259명(60.3%)의 학생을 통학 지원하고 있음

〈표 3·45〉 특수학교 학생 통학버스 이용 비율

(단위: 명, 대, %)

시도	학생 수			통학버스 수	이용학생 수	이용비율
	전체학생 수(A)	순회교육 학생 수(B)	계(A-B)			
서울	4,480	231	4,249	110	2,157	50.8
부산	1,937	46	1,891	53	1,245	65.8
대구	1,830	70	1,760	49	904	51.4
인천	1,860	110	1,750	45	1,149	65.7
광주	1,090	56	1,034	36	653	63.2
대전	1,076	22	1,054	32	635	60.2
울산	746	65	681	27	488	71.7
세종	186	7	179	5	97	54.2
경기	5,334	45	5,289	154	2,861	54.1
강원	828	15	813	32	543	66.8
충북	1,329	94	1,235	53	846	68.5
충남	1,268	42	1,226	47	1,004	81.9
전북	1,131	15	1,116	46	870	78.0
전남	1,174	51	1,123	29	723	64.4
경북	1,443	-	1,443	38	782	54.2
경남	1,764	108	1,656	41	1,036	62.6
제주	503	24	479	11	266	55.5
계	27,979	1,001	26,978	808	16,259	60.3

- 특수학교 통학차량 총 808대 중 464대는 학교 소유, 344대는 임대 형태로 운영
- 안전교육은 운영자(학교장), 운전자, 통학지원인력 총 1,860명이 이수

〈표 3·46〉 특수학교 통학차량 현황 및 안전교육 이수 현황

(단위: 교, 대, 명)

시도	특수 학교 수	통학차량 현황						안전교육 이수		
		전체 통학 차량 수	운영 차종(대수)			운영 형태(대수)		운영자 (학교장)	운전자	통학지원 인력
			16인승 이하	17인~35인승 이하	36인승 이상	학교소유	임대			
서울	32	110	3	32	75	68	42	31	109	106
부산	15	53	-	24	29	53	-	15	53	78
대구	11	49	-	16	33	8	41	11	49	49
인천	10	45	1	7	37	7	38	10	40	43
광주	5	36	-	10	26	8	28	5	36	35
대전	6	32	1	2	29	14	18	6	31	53
울산	4	27	-	20	7	27	-	4	27	27
세종	1	5	-	-	5	4	1	1	5	10
경기	38	154	5	44	105	85	69	38	155	163
강원	9	32	1	10	21	32	-	9	32	32
충북	10	53	2	20	31	29	24	10	52	56
충남	10	47	-	24	23	20	27	10	47	47
전북	10	46	2	24	20	25	21	10	46	46
전남	9	29	-	4	25	21	8	9	29	29
경북	8	38	1	5	32	27	11	8	38	38
경남	11	41	-	15	26	27	14	11	41	41
제주	3	11	-	2	9	9	2	3	11	15
계	192	808	16	259	533	464	344	191	801	868

- 급식비는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학생 28,233명 중 27,972명,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배치학생 75,462명 중 71,909명에게 지원하고 있음
- 급식비 지원예산은 약 900억 원임

〈표 3·47〉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시도	특수학교(센터 포함)						일반학교					
	전체 학생 수	지원 학생 수	급식비 보조금(1인 1식)			급식비 지원 예산	전체 학생 수	지원 학생 수	급식비 보조금(1인 1식)			급식비 지원 예산
			유치원	초등 학교	중·고등 학교				유치원	초등 학교	중·고등 학교	
서울	4,535	4,480	5,426	5,801	5,801	6,868	8,831	8,831	4,951	5,256	6,042	9,020
부산	1,937	1,937	3,890	3,890	3,890	1,401	4,812	4,812	2,500	3,310	4,320	3,201
대구	1,838	1,830	6,967	6,967	6,967	2,353	3,473	3,473	4,841	5,521	7,383	3,727
인천	1,864	1,860	4,300	4,300	4,300	1,520	5,203	5,203	2,990	3,000	3,675	5,126
광주	1,090	1,090	8,581	8,581	8,581	1,777	2,128	2,128	2,960	5,174	5,813	2,696
대전	1,082	1,073	3,700	3,700	3,700	1,038	2,335	2,333	2,800	3,500	4,600	1,713
울산	751	746	4,065	4,065	4,065	597	2,068	2,068	2,600	2,900	3,800	1,296
세종	186	186	6,106	6,106	6,106	216	728	725	6,606	5,502	5,998	810
경기	5,410	5,334	3,761	3,692	4,431	3,890	19,740	16,192	3,092	3,265	4,005	11,767
강원	832	828	4,290	4,290	4,290	702	2,191	2,191	2,030	2,960	3,610	1,323
충북	1,338	1,329	8,715	8,715	8,715	2,143	3,154	3,154	2,567	5,043	6,318	3,070
충남	1,270	1,268	2,360	3,640	4,640	1,020	3,958	3,958	2,320	3,330	4,140	2,620
전북	1,132	1,127	3,700	3,700	3,700	792	2,938	2,938	2,800	3,000	3,700	1,797
전남	1,175	1,174	3,898	3,898	3,898	870	2,992	2,992	2,914	2,809	3,367	1,723
경북	1,468	1,443	5,910	5,910	5,910	1,770	4,053	4,053	4,200	4,200	4,690	4,310
경남	1,772	1,764	3,581	4,885	7,068	2,204	5,566	5,566	2,877	5,202	6,679	5,650
제주	553	503	3,840	3,840	3,840	359	1,292	1,292	3,240	3,240	3,930	829
계*	28,233	27,972*	83,090	85,980	89,902	29,520	75,462	71,909	56,288	67,212	82,070	60,678

* 급식을 하지 않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254명) 및 기타 7명 미포함

■ 향후 과제

-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유형 다양화 및 역량 강화 등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활용한 효율적 교육 지원 추진 및 학생 1인당 치료지원 평균 비용 확대
- 시도별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대상자 선정, 대상자별 적합한 지원 영역, 치료지원 적정단가 산출 등 효율적 제공 방법 강구

6)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

■ 관련 법규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2년 4월 기준 건강장애학생은 1,948명으로,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시스템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병원학교는 2022년 36교로, 45명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월 평균 이용 건강장애학생 수는 515명임

〈표 3·48〉 병원학교 운영 현황

(단위: 명)

시도	병원명 또는 병원학교명	월평균 이용 학생 수	담당 인력 수
서울(9)	국립정신건강센터 참다울학교	1	특수교사 2
	고려대학교구로병원 병원학교	3	사회복지사 1
	삼성서울병원 병원학교	64	일반교사 1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	122	평생교육사 1, 일반교사 1
	서울성모병원 병원학교	60	직원1(의료사회복지사1명 휴직중)
	서울아산병원 병원학교	20	의료사회복지사 1
	연세암병원 병원학교	67	일반교사 1, 심리상담사 1
	원자력병원 병원학교	18	의료사회복지사 1
	한양대학교병원 병원학교 누리봄 교실	10	일반교사 1
부산(3)	동아대학교 병원학교	7	특수교사 1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학교	5	특수교사 1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학교	2	특수교사 1
대구(4)	경북대학교 병원학교	11	특수교사 1
	계명대학교 동산병원학교	10	특수교사 1
	대동병원학교	1	특수교사 1
	영남대학교 병원학교	9	특수교사 1
인천(1)	인하대학교 병원학교	3	특수교사 1
광주(1)	전남대학교 어린이병원 학마을 병원학교	6	특수교사 1
대전(1)	충남대학교 병원학교	6	특수교사 1
울산(1)	울산대학교병원 병원학교	6	특수교사 1
경기(5)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병원학교	2	특수교사 1
	국립암센터 병원학교	9	특수교사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병원학교	4	특수교사 2
	파주시티재활요양병원 병원학교	7	특수교사 2
	한서중잉병원 병원학교	7	특수교사 2
강원(1)	강릉아산병원학교	-	특수교사 1
충북(1)	충북대병원학교	2	특수교사 1
충남(3)	국립공주병원어울림병원학교	1	특수교사 1
	단국대학교병원학교	4	특수교사 1
	아람메디컬병원학교	4	특수교사 1
전북(1)	전북대학교병원 병원학교	3	특수교사 1
전남(2)	느티나무병원학교	-	특수교사 1
	여미사랑병원학교	22	특수교사 2
경남(2)	경상대학교병원어린이병원학교	4	특수교사 1
	부산대학교어린이병원학교	15	특수교사 2
제주(1)	제주대학교병원학교	-	특수교사 1
계	36	515	45

- 건강장애학생 학습 지원을 위해 3개 기관에서 원격수업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강장애학생 등은 2,162명이고, 월 평균 이용 학생 수는 2,010명임

〈표 3·49〉 원격수업시스템 운영 기관 현황

(단위: 학급, 명, 일)

기관명	학급 수	강사 수	전체 학생 수			월 평균 이용 학생 수	개별학생 평균 이용일 ('22.3.1.~5.31.)
			건강 장애	기타	계		
꽃밭무지개교실(서울특별시교육청)	14	11	250	47	297	276	40
꿈사랑학교(경상남도교육청)	46	27	608	130	738	725	89
한국교육개발원	38	36	865	262	1,127	1,009	55
계	98	74	1,723	439	2,162	2,010	184

■ 향후 과제

- 초등학교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확대 및 질 관리 강화
- 디지털 문해교육, AI 윤리교육 등 디지털 소양 함양교육 강화
- 건강장애학생 고교학점제 맞춤형 운영 모델 개발
- 병원학교 유관기관 및 관계자 간 협력체계 운영 활성화

7)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강화

■ 관련 법규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및 일반학급의 통합교육 지원 강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전국 790개 기관과 연계하여 1,622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39,925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음
-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451개 기관과 연계하여 80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20,718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음

〈표 3·50〉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현황

(단위: 기관, 개, 명)

시도	문화예술			체육		
	연계 기관 수	운영 프로그램수	참여 학생 수	연계 기관 수	운영 프로그램수	참여 학생 수
서울	69	201	4,366	27	70	1,171
부산	124	364	5,904	50	153	2,261
대구	136	230	3,971	75	118	2,932
인천	63	63	1,091	22	27	380
광주	30	49	1,969	13	27	1,464
대전	20	16	309	8	9	256
울산	18	29	943	6	13	713
세종	14	17	305	11	15	434
경기	103	118	3,622	51	60	1,024
강원	33	39	965	16	18	351
충북	25	48	1,120	12	20	423
충남	35	248	6,745	23	101	2,539
전북	10	13	1,726	10	10	1,131
전남	14	27	1,058	64	67	1,905
경북	55	103	2,870	51	74	3,173
경남	34	47	2,452	10	17	212
제주	7	10	509	2	10	349
계	790	1,622	39,925	451	809	20,718

■ 향후 과제

- 장애학생 문화예술·맞춤형 체육활동의 지속적 지원 필요
- 장애학생 건강체력의 체계적 관리 및 증진을 위한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 시스템 도입·정착 필요

3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1)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 및 발전

-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한다)의 장은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자유학기를 운영함(교육부 고시 제2022-3호,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2년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서 자유학기(년)제 및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자유학기제(한 학기)는 2교,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두 학기)는 178교에서 운영함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 수는 46명, 자유학년제 참여 학생 수는 2,287명으로 총 2,333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음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프로그램 9,130개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진로체험활동 3,942회(누적수)를 운영함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담당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교사연구회가 184개 조직·운영되고 있으며, 1,357명이 연수 이수함

〈표 3·51〉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운영·지원 현황

(단위: 교, 명, 개)

시도	중학교 과정 특수학교 수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현황				진로체험활동 운영 현황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문성 향상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꿈길에 등록된 프로그램	진로체험 활동 결과 현황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교사 연구회 현황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연수 이수 인원
		운영교	참여학생	운영교	참여학생				
서울	28	-	-	28	387	485	336	32	335
부산	13	-	-	13	158	671	249	13	32
대구	10	-	-	10	247	429	225	2	26
인천	10	-	-	10	144	216	235	8	142
광주	5	-	-	5	76	324	290	4	142
대전	6	-	-	6	79	401	43	7	81
울산	4	-	-	4	51	1,578	459	4	19
세종	1	1	17	-	-	59	13	1	-
경기	35	-	-	35	408	1,081	606	38	259
강원	9	-	-	9	58	411	8	9	5
충북	10	-	-	10	96	533	373	9	40
충남	9	-	-	9	110	411	297	11	71
전북	9	-	-	9	80	436	226	26	47
전남	9	1	29	8	54	823	101	-	22
경북	8	-	-	8	139	427	161	7	58
경남	11	-	-	11	155	746	235	10	34
제주	3	-	-	3	45	99	85	3	44
계	180	2	46	178	2,287	9,130	3,942	184	1,357

■ 향후 과제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자유학기-진로연계학기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탐색 및 진로 설계 지원 강화
-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특수학교 교육과정 혁신 및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담당 교원 역량 강화
- 지역단위 진로체험지원 협의체 운영 활성화,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로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강화
-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 및 질 관리 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 강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하며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제1항)
 -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제3항)
-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

■ 현황 및 추진 실적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과정 전문화 및 특성화 지원, 현장중심 직업교육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
- 일반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학생의 현장실습 중심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특수학교 학교기업(30교) 내실화 지원
 - ※ 교육부 지정 특수학교 학교기업 25개 운영
 - ※ 시도교육청 지정 특수학교 학교기업 5개 운영(경기도교육청 2개, 부산광역시교육청 1개, 충청북도교육청 1개, 경상북도교육청 1개)

〈표 3·52〉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현황

개관 연도	학교명	교육청	설립별	장애유형	사업직종
2010	대구5교통합	대구	사립	시각·청각·지체·지적장애·정서장애	커피바리스타, 사무용지, 제과·제빵, 세탁 등
	전주선화학교	전북	공립	청각장애	커피바리스타, 도자기, 천연비누, 직업체험 등
2011	한빛맹학교	서울	사립	시각장애	예술, 스포츠 등
	대전혜광학교	대전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천연비누, 운동화 전문세탁 등
	부산혜성학교	부산	공립	지적장애	도자기, 원예, 천연비누, 조립, 임가공, 직업체험 등
2012	꽃동네학교	충북	사립	지적장애	제과·제빵 등
	미추홀학교	인천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조명장치, 천연비누, 직업체험 등
	순천선혜학교	전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콩나물, 세탁 등
	속초청해학교	강원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직업체험 등
	광주선광학교	광주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비누, 도자기 등
	천안인애학교	충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목장갑, 도자기, 공예품 등
2013	성은학교	경기	공립	지적장애	공예, 원예 등
	청주맹학교	충북	사립	시각장애	천연비누, 향초 등
	울산해인학교	울산	공립	지적장애	자동차 부품제조, 세차, 신발세탁 등
	창원천광학교	경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양피즘, 공예, 자동차 부품제조 등
	공주정명학교	충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장갑, 핸드페인팅, 직업체험 등
	태백러온학교	강원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세차, 공예, 건설·기계 재활용 등
	부천상록학교*	경기	공립	지적장애	스팀세차, 허브재배, 천연비누 등
	부천혜림학교*	경기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식품제조가공, 소독, 직업체험 등
	서울맹학교	서울	국립	시각장애	점자도서 출판
	한국선진학교	경기	국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식품제조, 임가공업 등
2014	대전원명학교	대전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면장갑, 가구, 임가공 등
2015	안동영명학교	경북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보안문서파쇄, 운동화세탁, 직업체험 등
2016	포항명도학교	경북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세차, 직업체험 등
2017	한국경진학교	경기	국립	정서장애	커피바리스타, 버섯재배·유통, 임가공업, 직업체험 등
2018	서산성봉학교	충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건조식품, 위생용품 제조
	부산해마루학교*	부산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재배·원예, 도자기, 비누, 직업체험 등
2019	소림학교	전남	사립	청각장애	커피바리스타, 직업체험 등
	상희학교*	경북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및 체험학습
	청주성신학교*	충북	사립	정서장애	커피바리스타

* 시도교육청 지정 특수학교 학교기업임

※ 사업직종은 학교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2022년 현재 교육부 지정 35교 및 시도교육청 지정 17교가 운영 중임
 - －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장애학생에게 현장실습 위주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인근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직업훈련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장애학생 직업교육 거점학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표 3·53〉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현황

시도	지정연도 및 운영학교												전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서울	상암고	경복고		(문현고) (서울문화고)	(경기고)			관악고						3(3)
부산	동래원예고*		부산 전지공업고											1
대구	대구과학 기술고					대구농업 마이스터고								2
인천			강남영상 미디어고			박문여고		인화여고					(계산 공업고)	3(1)
광주	광주전자 공업고													1
대전		동대전고												1
울산														-
세종														-
경기	성남테크노 파학교 이천제일고	인양공업고 은행고 (포천일고) (안성고)	수원 정보파학교			(오산정보고)								5(3)
강원			영서고											1
충북	제천제일고		청주농고				충북산업파학교							3
충남	공주생명 파학교	금산산업고 논산공업고	당진정보고 서천고	(온양용화고) (천안공업고)	(태안고)	주산산업고 (부여정보고)		(청양고)	(서산 중앙고)					6(6)
전북					(이리공업고)** (장계공업고)** (고창여고)**	(진안제일고)** (해리고)** (무주고)** (합일고)**	이리고			(전주생명 파학교)	(전북 유니텍고)			1(2)
전남	목포 공업고		전남 기술과학고				순천공업고							3
경북		김천생명 파학교						(인동고)						1(1)
경남		이리고 김해생명 파학교												2
제주	제주고	함덕고		(표선고)**		(제주중앙 여고)**							(서귀포산업 파학교)	2(1)
계	9	10(2)	8	(4)	(2)	3(2)	3	2(2)	(1)	(1)	(1)	(1)	(2)	35(17)

* 동래원예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이관

** 시도교육청 지정 거점학교로 한시적 운영

※ ()안의 학교는 시도교육청 지정 거점학교

-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 · 고등학교 기본 교육과정의 ‘진로와 직업’ 교과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는 2022년 49교가 운영 중이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72교 지정 · 운영
 - 지역 및 학교 여건을 반영한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현장실습 운영 및 장애학생 직업역량 강화 도모

〈표 3 · 54〉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지정 · 운영 현황

지정연도	운영 학교	합계
2015	부산해마루학교, 대전원명학교, 원주청원학교, 청주혜원학교, 진주혜광학교	5
2016	울산행복학교, 다원학교, 다솜학교, 함평영화학교, 제주영송학교	5
2017	대구보명학교, 미추홀학교, 성은학교, 아산성심학교, 전주은화학교, 경산자인학교, 경남은혜학교	7
2018	부산솔빛학교, 대구덕희학교, 광주선광학교, 대전성세재활학교	4
2019	광주선명학교, 울산태연학교, 세종누리학교, 한길학교, 청주혜원학교, 충주혜성학교, 공주정명학교, 나사렛새꿈학교, 한울학교, 전북푸른학교, 목포인성학교, 경남은광학교	12
2020	서울정민학교, 부산솔빛학교, 대구덕희학교, 광주선광학교, 광주선명학교, 광주선우학교, 대전성세재활학교, 대전가원학교, 울산태연학교, 세종누리학교, 한길학교, 새얼학교, 청주혜원학교, 충주혜성학교, 청주성신학교, 송덕학교, 공주정명학교, 나사렛새꿈학교, 보령정심학교, 성광온누리학교, 천안늘해랑학교, 한울학교, 전북푸른학교, 목포인성학교, 경희학교, 구미혜당학교, 경남은광학교, 김해은혜학교	28
2021	서울정민학교, 서울정진학교, 밀알학교, 성베드로학교, 부산혜원학교, 대구남양학교, 대구선명학교, 대구선보학교, 대구보명학교, 인천인혜학교, 광주선명학교, 광주선우학교, 대전가원학교, 대전해든학교, 울산혜인학교, 울산행복학교, 세종누리학교, 의왕정음학교, 용인다움학교, 새얼학교, 한길학교, 청주혜원학교, 충주혜성학교, 송덕학교, 청주성신학교, 꽃동네학교, 공주정명학교, 아산성심학교, 성광온누리학교, 천안늘해랑학교, 당진꿈나래학교, 나사렛새꿈학교, 서산성봉학교, 보령정심학교, 한울학교, 전북푸른학교, 나주이화학교, 순천선혜학교, 여수여명학교, 소림학교, 은광학교, 덕수학교, 목포인성학교, 함평영화학교, 경희학교, 구미혜당학교, 김해은혜학교, 의령은광학교	48
2022	서울정민학교, 서울정진학교, 밀알학교, 부산혜원학교, 대구보명학교, 대구덕희학교, 대구남양학교, 대구선명학교, 대구이룸고등학교, 인천인혜학교, 인천정인학교, 광주선우학교, 대전가원학교, 대전해든학교, 울산혜인학교, 울산행복학교, 메아리학교, 세종누리학교, 새얼학교, 의왕정음학교, 용인다움학교, 청주혜원학교, 충주혜성학교, 송덕학교, 청주성신학교, 공주정명학교, 아산성심학교, 성광온누리학교, 천안늘해랑학교, 당진꿈나래학교, 나사렛새꿈학교, 서산성봉학교, 보령정심학교, 예산꿈빛학교, 다솜학교, 군산명화학교, 나주이화학교, 순천선혜학교, 여수여명학교, 광양햇살학교, 소림학교, 은광학교, 덕수학교, 목포인성학교, 함평영화학교, 경희학교, 구미혜당학교, 김해은혜학교, 의령은광학교	49

-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위해 교육·복지·고용 관계 부처 윈스톱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 －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적시 제공 및 체계적 진로·직업교육 이력 관리를 위해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일원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22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2,167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59명으로 취업률은 6.9%임

〈표 3·55〉 2022년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시도	졸업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보건·의료	제품 제조	농림 어업	정보통신 기술	식품가공·제과 제빵	이료	영업·판매	청소·세탁	식음료 서비스	문화·예술	사무 보조	사서 보조	기타	소계	
서울	357	287	1	3	-	1	2	-	-	-	-	1	5	-	3	16	22.9
부산	134	60	-	3	-	-	-	-	-	-	-	-	-	-	-	3	4.1
대구	149	97	-	1	-	-	-	-	-	-	-	-	-	-	1	2	3.8
인천	118	57	-	4	-	1	-	-	-	-	1	-	-	-	-	6	9.8
광주	95	32	-	-	-	-	-	-	-	-	-	-	-	-	1	1	1.6
대전	88	69	-	-	-	-	-	-	-	-	-	-	-	-	-	-	-
울산	56	32	-	-	-	-	-	-	-	-	-	1	-	-	-	1	4.2
세종	20	16	-	-	-	-	-	-	-	-	-	-	-	-	-	-	-
경기	398	133	-	9	-	-	2	-	1	1	-	1	2	-	8	24	9.1
강원	68	57	-	-	-	-	-	-	-	-	1	-	-	-	-	1	9.1
충북	92	82	-	1	-	-	-	-	-	-	-	1	-	-	-	2	20.0
충남	86	64	-	-	-	-	-	-	-	-	-	-	-	-	-	-	-
전북	101	46	-	-	-	-	-	-	-	-	-	-	1	-	-	1	1.8
전남	102	51	-	-	-	-	-	1	-	-	-	-	-	-	1	2	3.9
경북	120	98	-	-	-	-	-	-	-	-	-	-	-	-	-	-	-
경남	145	118	-	-	-	-	-	-	-	-	-	-	-	-	-	-	-
제주	38	8	-	-	-	-	-	-	-	-	-	-	-	-	-	-	-
계	2,167	1,307	1	21	-	2	4	1	1	1	2	4	8	-	14	59	6.9

※ 취업률 = {취업자 수 / (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 2022년 2월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3,497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559명으로 취업률은 32.8%임

〈표 3·56〉 2022년도 2월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시도	졸업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보건·의료	제품 제조	농림 어업	정보 통신 기술	식품 가공·제과 제빵	이료	영업·판매	청소·세탁	식음료 서비스	문화·예술	사무 보조	사서 보조	기타	소계	
서울	409	99	3	6	-	1	3	-	5	21	35	-	23	7	17	121	39.0
부산	203	111	6	4	2	-	-	-	-	1	4	-	6	-	5	28	30.4
대구	137	107	-	-	-	-	-	-	-	-	1	-	-	-	-	1	3.3
인천	195	125	3	6	-	-	-	-	-	2	7	-	-	-	2	20	28.6
광주	106	64	-	3	-	-	1	-	-	1	2	-	-	-	1	8	19.0
대전	110	71	-	-	-	-	-	-	-	5	3	2	2	-	1	13	33.3
울산	90	76	-	-	-	-	-	-	-	1	-	-	-	-	-	1	7.1
세종	22	9	-	-	-	-	-	-	-	1	1	2	-	1	1	6	46.2
경기	1,046	499	9	52	-	-	22	-	2	14	13	1	26	2	30	171	31.3
강원	100	46	-	4	-	-	-	-	1	2	-	-	6	-	1	14	25.9
충북	131	72	-	2	-	-	-	-	1	3	8	-	6	-	2	22	37.3
충남	213	100	-	12	-	-	5	-	1	7	8	2	6	3	6	50	44.2
전북	113	68	-	2	-	-	2	-	-	2	2	-	-	-	1	9	20.0
전남	134	75	-	4	2	-	1	-	1	6	2	-	-	1	2	19	32.2
경북	176	96	3	3	1	1	2	-	-	6	5	-	3	-	2	26	32.5
경남	253	136	5	12	1	-	2	-	-	12	1	2	6	-	5	46	39.3
제주	59	41	-	-	-	-	1	-	-	1	2	-	-	-	-	4	22.2
계	3,497	1,795	29	110	6	2	39	-	11	85	94	9	84	14	76	559	32.8

※ 취업률 = {취업자 수 / (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 2022년 2월 고등학교 일반학급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 1,098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53명으로 취업률은 13.3%임

〈표 3·57〉 2022년도 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시도	졸업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보건·의료	제품 제조	농림 어업	정보통신 기술	식품 가공·제과 제빵	이료	영업·판매	청소·세탁	식음료 서비스	문화·예술	사무 보조	사서 보조	기타		소계
서울	159	97	1	1	-	-	-	-	-	-	4	1	1	-	2	10	16.1
부산	86	56	1	-	-	-	-	-	-	-	-	-	-	-	-	1	3.3
대구	92	73	-	3	-	-	-	-	-	-	-	-	-	-	1	4	21.1
인천	53	21	-	1	-	-	-	-	-	-	1	-	-	-	1	3	9.4
광주	42	25	-	1	-	-	-	-	-	-	-	-	-	-	-	1	5.9
대전	35	22	-	-	-	-	2	-	1	-	-	-	-	-	2	5	38.5
울산	24	21	-	1	-	-	-	-	-	-	-	-	-	-	-	1	33.3
세종	7	5	-	-	-	-	-	-	-	-	-	-	-	-	-	-	-
경기	253	162	-	-	-	-	2	-	-	-	3	-	-	-	1	6	6.6
강원	28	17	-	1	-	-	-	-	-	-	1	1	-	-	-	3	27.3
충북	41	26	-	-	-	-	-	-	-	-	-	-	-	-	1	1	6.7
충남	29	18	-	1	-	-	1	-	-	1	-	-	-	-	-	3	27.3
전북	59	37	-	-	1	-	-	-	-	-	-	-	-	-	-	1	4.5
전남	8	4	-	-	-	-	-	-	-	-	-	-	-	-	1	1	25.0
경북	65	36	1	-	-	-	-	-	-	-	-	-	1	-	3	5	17.2
경남	93	64	-	1	-	-	1	-	-	-	-	-	-	-	2	4	13.8
제주	24	14	-	-	-	-	-	-	-	-	-	1	2	-	1	4	40.0
계	1,098	698	3	10	1	-	6	-	1	1	9	3	4	-	15	53	13.3

※ 취업률 = {취업자 수 / (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 2022년 2월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2,517명 중 1,096명 취업으로 취업률은 44.1%임

〈표 3·58〉 2022년도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시도	이수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보건·의료	제품제조	농림어업	정보통신기기	식품가공·제과제빵	이료	영업·판매	청소·세탁	식음료서비스	문화·예술	사무보조	사서보조	기타	소계	
서울	325	9	-	12	-	3	-	19	1	3	13	2	10	1	13	77	24.4
부산	114	-	6	24	1	-	1	3	-	18	2	3	2	-	-	60	52.6
대구	190	2	17	36	-	-	6	2	1	22	9	3	9	-	7	112	59.6
인천	169	3	3	9	-	1	-	8	-	5	22	1	5	2	9	65	39.2
광주	67	1	3	13	-	-	1	8	-	5	3	1	-	-	3	37	56.1
대전	173	2	7	2	-	-	2	7	2	5	5	4	11	-	3	48	28.1
울산	107	1	1	19	-	1	-	-	2	7	7	5	4	-	8	54	50.9
세종	22	-	-	4	-	-	-	-	-	1	3	-	1	2	-	11	50.0
경기	343	2	9	87	-	1	8	-	2	22	32	1	17	4	29	212	62.2
강원	106	-	1	8	-	-	-	2	-	7	12	-	11	-	1	42	39.6
충북	149	3	1	15	-	1	4	8	1	9	1	-	9	-	3	52	35.6
충남	137	-	2	33	-	1	1	-	-	10	7	-	4	-	3	61	44.5
전북	83	2	5	3	-	-	1	4	-	6	9	-	3	1	1	33	40.7
전남	109	1	3	13	-	-	5	3	-	18	5	-	2	2	19	70	64.8
경북	188	2	5	24	-	1	7	-	1	42	3	3	12	1	2	101	54.3
경남	197	-	2	7	-	-	3	-	-	9	-	-	2	-	15	38	19.3
제주	38	1	-	4	-	-	1	-	1	7	5	-	5	-	-	23	62.2
계	2,517	29	65	313	1	9	40	64	11	196	138	23	107	13	116	1,096	44.1

※ 취업률 = {취업자 수 / (이수자 수 - 진학자 수)} × 100

- 2022년 전국 163개 특수학교에 전공과 과정 709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5,107명이 배치되어 있음
- 2022년 대구, 인천, 경기, 충북 일반학교 18교에 전공과 34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204명의 학생이 배치되어 있음

〈표 3·59〉 전공과 설치 학교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구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특수학교	163	709	5,107
일반학교	18	34	204
계	181	743	5,311

■ 향후 과제

-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위해 중도중복장애학생 생애주기별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적시 제공 및 체계적 이력관리를 위한 범부처 취업지원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현장 안착 도모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현황 조사 실시 계획 수립 추진
- ‘진로진학상담’ 전문 자격을 갖춘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지원을 통해 특수학교 진로 및 직업교육의 체계성 및 연계성 강화
- 현장중심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및 사회 변화에 발맞춘 직무 개발을 통해 장애학생 진로의 다양화 및 직업역량 강화 도모
-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우수사례 발굴·보급, 성과관리 등을 통해 장애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의 전문화 지원
- 양질의 일경험 기회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 부처 연계 강화 및 현장 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3)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 관련 법규

- 대학에 특별지원위원회를 두어 장애학생 지원 계획 수립,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등을 수행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학생 지원, 편의제공,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등을 담당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학습보조기기 등 물적지원, 지원 인력 배치 등 인적지원, 취학편의 지원, 정보접근 지원, 편의시설 설치 등을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2년 2월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6,762명의 진학률을 보면, 특수학교 졸업생은 60.3%, 특수학급 졸업생은 51.3%,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졸업생은 63.6%이며 전체 진학률은 56.2%임

〈표 3·60〉 2022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단위: 명, %)

시도	졸업생 수				진학자 수													진 학 륜
					전공과			전문대학			대학교			계				
	특수 학교	특수 학급	일반 학급	계	특수 학교	특수 학급	일반 학급	특수 학교	특수 학급	일반 학급	특수 학교	특수 학급	일반 학급	특수 학교	특수 학급	일반 학급	소계	
서울	357	409	159	925	255	28	-	2	26	28	30	45	69	287	99	97	483	52.2
부산	134	203	86	423	57	49	-	-	51	13	3	11	43	60	111	56	227	53.7
대구	149	137	92	378	90	81	4	-	14	33	7	12	36	97	107	73	277	73.3
인천	118	195	53	366	52	98	4	1	17	5	4	10	12	57	125	21	203	55.5
광주	95	106	42	243	28	38	-	-	7	4	4	19	21	32	64	25	121	49.8
대전	88	110	35	233	66	59	2	-	3	5	3	9	15	69	71	22	162	69.5
울산	56	90	24	170	32	61	2	-	9	5	-	6	14	32	76	21	129	75.9
세종	20	22	7	49	16	5	-	-	1	-	-	3	5	16	9	5	30	61.2
경기	398	1,046	253	1,697	126	342	4	5	57	40	2	100	118	133	499	162	794	46.8
강원	68	100	28	196	51	37	4	1	4	3	5	5	10	57	46	17	120	61.2
충북	92	131	41	264	80	51	2	-	12	8	2	9	16	82	72	26	180	68.2
충남	86	213	29	328	64	72	2	-	13	2	-	15	14	64	100	18	182	55.5
전북	101	113	59	273	43	53	2	2	9	11	1	6	24	46	68	37	151	55.3
전남	102	134	8	244	51	50	1	-	15	1	-	10	2	51	75	4	130	53.3
경북	120	176	65	361	97	64	7	1	15	8	-	17	21	98	96	36	230	63.7
경남	145	253	93	491	118	65	1	-	54	26	-	17	37	118	136	64	318	64.8
제주	38	59	24	121	8	26	2	-	4	4	-	11	8	8	41	14	63	52.1
계	2,167	3,497	1,098	6,762	1,234	1,179	37	12	311	196	61	305	465	1,307	1,795	698	3,800	56.2

- 1995년부터 장애학생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포함)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2022년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포함)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전문대학 23개교 87명, 대학 85개교 832명으로 총 919명임

〈표 3·61〉 연도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단위: 교, 명)

학년도	전문대학		대학교		합계	
	실시대학	학생	실시대학	학생	실시대학	학생
2010	19(12)	51	80(75)	601	99(87)	652
2011	14(14)	60	89(77)	574	103(91)	634
2012	16(16)	97	90(84)	566	106(100)	663
2013	25(17)	185	97(89)	649	122(106)	834
2014	23(16)	84	98(80)	637	121(96)	721
2015	23(18)	54	98(84)	753	121(102)	807
2016	24(15)	48	100(88)	768	124(103)	816
2017	(15)	46	(97)	832	(112)	878
2018	(16)	56	(100)	888	(116)	944
2019	(16)	50	(71)	905	(87)	955
2020	(25)	95	(93)	898	(118)	993
2021	(24)	94	(107)	797	(131)	891
2022	(23)	87	(85)	832	(108)	919

※ 괄호는 최종 등록기준 학교 수, 대상은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제외)

※ 출처: 대학정보공시 4-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결과('22. 6월 기준)

- 2022년 6월 기준 대학(원)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인력은 231개 대학에 2,132명임
- 교육지원인력 유형은 학내 이동 및 대필 등을 지원하는 일반교육지원인력과 수어 통역, 속기, 점역 등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학습·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전문 교육지원인력으로 나뉨

〈표 3·62〉 대학(원)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영역별 지원 현황

(단위: 교, 명)

구분	학교 수	교육지원인력 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지원	구분 없음	계	
일반 교육지원인력	대학(원)	137	74	7	1,556	1,637
	전문대학	51	-	-	251	251
	원격대학	2	6	-	3	9
	소계	190	80	7	1,810	1,897
전문 교육지원인력 (원격 포함)	대학(원)	34	180	23	-	203
	전문대학	4	9	6	-	15
	원격대학	3	13	4	-	17
	소계	41	202	33	-	235
계	231	282	40	1,810	2,132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사업 신청서 접수 기준), 한국장학재단

■ 향후 과제

-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개선 및 대학 진학 지원 강화를 통해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
- 장애학생이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22.2.)’ 과제 추진

(2)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 관련 법규

-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제2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여건 개선 유도를 위하여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실시 및 2021년 2월 결과 공표
- 평가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일반대학 323개 대학 403개 캠퍼스, 원격대학 20개 대학, 총 343개 대학 423개 캠퍼스 실시
- 평가분야는 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의 3개 영역이며, 평가대상 대학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한 후 종합평가 결과를 산출하는 3단계 과정으로 실시
- 평가결과는 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요망의 4단계 등급으로 평가하였으며, 등급별 현황은 ‘최우수’ 등급이 39개(9.2%)이고, ‘우수’ 93개(22.0%), ‘보통’ 177개(41.8%), ‘개선요망’ 114개(27.0%)로 나타남
- 2020년은 2017년에 비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70.9점으로 안정적인 ‘보통’ 등급으로 나타남

〈표 3·63〉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등급	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요망	전체
캠퍼스 수(%)	39(9.2)	93(22.0)	177(41.8)	114(27.0)	423(100)

※ 등급(100점 만점): 최우수 90점 이상, 우수 80~90점 미만, 보통 65~80점 미만, 개선요망 65점 미만

- 2021년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시대에 적합한 용어의 정의, 작성 지침 세분화 등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지표 개정 연구를 실시하였음
- 2021년 개정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지표를 적용하여 2022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예비조사를 추진하고 있음

〈표 3·64〉 일반대학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개정 지표(고등교육법 제2조제1~4호, 6~7호)

영역	부문	항목 수	
		부문별	영역별
선발·지원 체제 (22%)	1.1 전형(4%) 1.2 정보제공(6%) 1.3 지원 계획 및 체제(12%)	3 2 5	10
교수·학습 (38%)	2.1 교수·학습 지원 체제 및 운영(10%) 2.2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구비와 활용(5%) 2.3 학습지원(13%) 2.4 평가지원(2%) 2.5 장학지원(2%) 2.6 상담·진로 및 취업지원(6%)	5 3 6 1 1 4	20
시설·설비 (40%)	3.1 매개시설(7%) 3.2 내부시설(12%) 3.3 위생시설(8%) 3.4 안내 및 기타시설(4%) 3.5 강의실(1%) 3.6 도서관(1%) 3.7 강당(1%) 3.8 식당(1%) 3.9 체육관(1%) 3.10 기숙사(1%) 3.11 무장애 교육환경 구축 실적(3%)	6 7 3 4 1 1 1 1 1 1 1 2	28
3개 평가영역	20개 평가 부문	58개 평가 항목	
만족도 (2점)	4.1 교수·학습 만족도(가산점, 1점)	5	10
	4.2 시설·설비 만족도(가산점, 1점)	5	
가산점 영역	2개 가산점 부문(2점)	10개 가산점 항목	
총계	20개 평가 부문, 2개 가산점 부문	58개 평가 항목, 10개 가산점 항목	

〈표 3·65〉 원격대학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개정 지표(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영역	부문	항목 수	
		부문별	영역별
선발·지원 체제 (22%)	1.1 전형(4%)	3	10
	1.2 정보제공(6%)	2	
	1.3 지원 계획 및 체제(12%)	5	
교수·학습 (51%)	2.1 교수·학습 지원 체제 및 운영(10%)	4	21
	2.2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구비와 활용(4%)	2	
	2.3 학습지원(27%)	9	
	2.4 평가지원(3%)	1	
	2.5 장학지원(2%)	1	
	2.6 상담·진로 및 취업지원(5%)	4	
시설·설비 (27%)	3.1 매개시설(7%)	6	19
	3.2 내부시설(11%)	7	
	3.3 위생시설(6%)	3	
	3.4 안내 및 기타시설(3%)	3	
3개 평가 영역	13개 평가 부문	50개 평가 항목	
만족도 (2점)	4.1 교수·학습 만족도(가산점, 2점)	5	5
가산점 영역	1개 가산점 부문(2점)	5개 가산점 항목	
총계	13개 평가 부문, 1개 가산점 부문	50개 평가 항목, 5개 가산점 항목	

■ 향후 과제

- 교육환경 변화 및 대학유형을 고려하여 2021년에 개정한 지표로 2022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가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 대학유형별(4년제 및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 실태평가를 실시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이 미흡한 대학 및 교육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는 대학 등을 대상으로 2022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컨설팅 운영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관련 법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음(평생교육법 제15조의2제1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장애인 평생교육 접근성 제고
 -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21년에 15개 → '22년에 32개 지정·운영
 - － '21년도에는 총 540개 프로그램(지역별 특화, 일자리 연계,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24,058명의 장애인이 참여
- 장애인 교육권 제고를 위한 교육부-장애인단체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21.10.~)
- 제2차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22. 1.~10.)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등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내실 있는 교육 지원 환경 구축
 - * 전문인력 양성 연수(68명, 16시수), 종사자 평생교육 역량강화(175명, 6시수), 종사자 장애인 인권 역량 강화(1기 183명, 6시수), 전문인력 양성 연수(68명, 16시수)
- 전국 1,158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기관에서 85,461명의 학습자가 12,067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21년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응답기관 기준)

〈표 3·66〉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기관 개황

(단위: 교, 명)

구분	기관 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87	1,289	2,988
교육청 인가·등록	62	666	2,118
지자체 지정·위탁	25	623	870
일반 평생교육기관	166	932	7,730
평생학습관	115	599	5,667
대학(원) 부설	25	168	430
시민사회단체부설	8	28	360
언론기관 부설	6	24	31
원격형태	5	25	1,154
지식·인력개발 형태	4	76	29
사업장 부설	2	8	16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1	4	43
특수교육 기관	10	59	171
특수학교	10	59	171
장애인복지시설	895	9,787	74,572
거주시설	133	971	2,793
지체장애인시설	3	9	75
청각·언어장애인시설	2	3	26
지적장애인시설	39	302	1,152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32	288	1,157
단기거주시설	18	153	202
공동생활가정	39	216	181
지역사회재활시설	460	6,515	63,354
장애인복지관	199	3,695	43,382
주간보호시설	224	2,659	16,270
장애인체육관	3	49	330
수어통역센터	21	42	437
생활이동지원센터	5	10	70
점자도서관	7	57	2,863
재활치료시설	1	3	2
직업재활시설	302	2,301	8,425
근로사업장	21	133	846
보호작업장	258	1,934	7,008
직업적응훈련시설	23	234	571
계	1,158	12,067	85,461

※ 출처: 2021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2020. 1. 1. ~ 20. 12. 31.기준)

■ 향후 과제

- 제2차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보급
- 장애인 평생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
- 장애인 문해교육 증진을 위해 장애 성인 학력인정 문해교육 강사 양성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1) 장애이해교육 지속 실시

■ 관련 법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
-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조제2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학교급별 맞춤형 장애이해교육을 위해 콘텐츠를 배포하고, ‘찾아가는 장애이해 교실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유아 및 초·중등학생을 위한 학교급별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자료 제작·배포
- ‘장애인의 날’ 장애이해교육 특별방송(라디오, TV)을 송출하고, 각급학교에서 특별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수업을 실시함
 - 2021년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한 유·초·중·고등학교 수는 18,912교이고 실시 비율은 93.3%임

〈표 3·67〉 유·초·중·고등학교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현황

(단위: 교, %)

시도	전체 유·초·중·고 학교 수	연 2회 이상 실시 학교 수	실시 비율
서울	2,078	2,048	98.6
부산	998	998	100.0
대구	783	783	100.0
인천	906	845	93.3
광주	590	590	100.0
대전	546	486	89.0
울산	432	415	96.1
세종	159	159	100.0
경기	4,622	4,077	88.2
강원	1,016	884	87.0
충북	807	793	98.3
충남	1,223	1,223	100.0
전북	1,244	953	76.6
전남	1,348	1,283	95.2
경북	1,587	1,450	91.4
경남	1,628	1,621	99.6
제주	311	304	97.7
계	20,278	18,912	93.3

※ 2021. 12. 31. 기준

2)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관련 법규

-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제3항, 제4항 신설, 2019. 12. 10.)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해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의2 신설, 2019. 12. 10.)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200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및 내외부 위원 2,513명을 구성함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일반학교, 특수학교 등 총 4,740교를 모니터링하고, 현장 어려움을 지원함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접수를 위한 온라인 지원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과 17개 시도교육청에 운영 중임
- 통합교육 환경 및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유아용 교육자료(장애공감활동 지원자료 1~3, 교사용 안내자료, 학부모용 안내자료)를 개발·보급함

〈표 3·68〉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수 및 위원 수

(단위: 개, 명)

시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수
서울	11	175
부산	6	74
대구	5	111
인천	6	67
광주	3	48
대전	3	34
울산	3	45
세종	2	18
경기	32	374
강원	18	201
충북	11	158
충남	15	201
전북	14	169
전남	23	305
경북	24	272
경남	21	228
제주	3	33
계	200	2,513

※ 인권지원단 구성(최소 8명 이상): 센터장(담당과장) 1명, 장학사(연구사) 1명,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1명, 특수학교(급) 교장(감) 1명,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1명, 장애학생 보호자 1명,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전문가 1명, 상담전문인력 1명, 기타 법률 전문가, 장애인권 전문가, 의료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

〈표 3·69〉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학교 수('21)

(단위: 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모니터링 학교 수	177	133	263	472	515	595	447	260	440	501	494	443	4,740

- 2022년 특수교육교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 강좌는 232개임
- 2022년 일반교육교원 대상 전체 연수과정 5,608개 중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를 포함한 연수과정은 428개임

〈표 3·70〉 특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단위: 개)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강좌 수	19	9	18	7	3	6	1	1	34	22	16	23	13	24	14	22	-	232

〈표 3·71〉 일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단위: 개)

시도	일반교육교원 대상 연수과정 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포함 연수과정 수
서울	665	34
부산	436	27
대구	406	23
인천	385	14
광주	1,191	14
대전	491	20
울산	236	6
세종	67	12
경기	179	68
강원	40	20
충북	369	27
충남	346	23
전북	35	27
전남	32	27
경북	211	32
경남	149	44
제주	370	10
계	5,608	428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교폭력, 학습권리, 학교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온라인·대면)를 실시함
- 온라인 조사(전수조사)는 특수교육대상자(초등학교 4학년~전공과) 총 69,012명 중 17,256명이 참여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도교육청별 예방·대응 계획을 수립함
 - － 주요 결과로서 학교폭력 영역은 따돌림 6.5%, 언어폭력 4.3%, 신체 폭력 2.1% 순으로 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함. 학습권리 영역은 전체 응답자의 0.7%가 ‘교·내외 활동참여 배제 경험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학교생활 영역은 전체 응답자의 0.8%가 ‘도움 제공자로부터 착·탈의 지원 시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1.8%가 ‘도움 제공자의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함
- 대면 조사(표본조사)는 지적, 정서·행동, 자폐성장애 학생을 장애 유형, 학교 유형, 지역을 층화 변수로 조사 대상자를 표집하였으며 총 516명이 참여함
 - － 대면 조사 결과로서 17건이 인권침해 사안으로 확인되었으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자 유형은 학교폭력 영역에서 비장애학생 14건, 장애학생 2건, 학습권리 영역에서 교사 1건, 학교생활 영역은 해당 사항이 없었음
 -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는 전체 27건 중 상담 19건, 교육 프로그램 지원 5건, 화해 2건, 물리적 분리 1건 순이었으며, 가해자 조치는 전체 31건 중 교육 프로그램 지원 14건, 교내 봉사 및 사과 10건, 상담 5건, 물리적 분리 2건 순이었음

■ 향후 과제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유·초·중·고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내실화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대상별(교직원, 학생 등) 인권감수성 교육 강화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할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대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학교 내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장애인권 핵심교원 및 행동지원 전문교사 양성 등 관련 연수 확대
-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에 따른 인권침해 주요 현황 진단·분석 및 예방·대응책 마련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3) 장애발견 진단·배치 체계 구축

■ 관련 법규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및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 진단·평가를 시행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진단·평가 시행결과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2년 특수교육 요구 학생의 선정·배치 현황은 44,931명의 신청을 받아 41,435명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하여 92.2%의 배치율을 보임

〈표 3·7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현황

(단위: 명)

시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배치 비율
	신청자 수	배치자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서울	1,373	1,253	3,145	2,774	1,090	954	120	99	5,728	5,080	88.7
부산	609	594	1,384	1,288	1,205	988	-	-	3,198	2,870	89.7
대구	563	563	844	825	857	752	13	13	2,277	2,153	94.6
인천	531	526	1,747	1,682	942	832	8	8	3,228	3,048	94.4
광주	357	357	614	576	474	380	-	-	1,445	1,313	90.9
대전	243	243	905	872	261	236	14	14	1,423	1,365	95.9
울산	214	199	788	658	334	293	6	5	1,342	1,155	86.1
세종	67	67	349	336	96	95	-	-	512	498	97.3
경기	1,769	1,510	7,106	6,786	2,248	2,052	101	96	11,224	10,444	93.1
강원	218	217	651	591	241	225	5	5	1,115	1,038	93.1
충북	389	388	1,119	1,110	431	413	25	25	1,964	1,936	98.6
충남	380	372	1,346	1,200	244	202	5	5	1,975	1,779	90.1
전북	342	334	859	813	676	560	1	1	1,878	1,708	90.9
전남	357	350	1,023	977	213	206	-	-	1,595	1,535	96.2
경북	279	276	1,124	1,054	689	616	30	27	2,122	1,973	93.0
경남	467	466	1,812	1,610	746	616	60	59	3,085	2,751	89.2
제주	154	154	387	374	209	191	70	70	820	789	96.2
계	8,312	7,869	25,203	23,526	10,956	9,611	458	427	44,931	41,435	92.2
영아	140	136	-	-	-	-	458	427	598	563	94.1
유	852	835	4,669	4,168	2,699	2,254	-	-	8,202	7,239	88.3
초	2,654	2,387	11,717	10,781	4,547	3,903	-	-	18,864	17,018	90.2
중	2,405	2,258	4,890	4,692	2,147	1,958	-	-	9,350	8,817	94.3
고	2,261	2,253	3,927	3,885	1,563	1,496	-	-	7,638	7,522	98.5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재배치자 수 포함

- 202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는 405명이며, 이 중 만 6세는 253명, 만 7세는 67명, 만 8세 이상은 85명으로 나타남

〈표 3·73〉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

(단위: 명)

시도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							
	만 6세		만 7세		만 8세 이상		소계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서울	54	16	7	1	11	7	72	24
부산	46	15	18	7	13	4	77	26
대구	99	34	27	14	32	14	158	62
인천	2	-	-	-	-	-	2	-
광주	-	-	1	1	2	-	3	1
대전	5	1	5	2	1	1	11	4
울산	-	-	-	-	-	-	-	-
세종	1	-	-	-	2	-	3	-
경기	20	7	-	-	5	2	25	9
강원	-	-	2	-	-	-	2	-
충북	-	-	-	-	-	-	-	-
충남	-	-	1	1	2	1	3	2
전북	6	3	2	-	11	5	19	8
전남	2	1	-	-	3	1	5	2
경북	5	1	2	1	1	-	8	2
경남	13	5	2	1	2	-	17	6
제주	-	-	-	-	-	-	-	-
계	253	83	67	28	85	35	405	146

- 2022학년도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원인은 ‘학교 적응이 어려워서’가 30.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장애가 호전된 후 입학시키기 위해서’가 20.5%로 나타남

〈표 3·74〉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원인

(단위: 명, %)

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원인						계
	인근에 특수교육 기관이 없어서	치료나 수술 등을 위해서	장애가 호전된 후 입학시키기 위해서	학교 적응이 어려워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타	
서울	6	3	28	10	14	11	72
부산	-	21	5	13	37	1	77
대구	6	40	19	72	21	-	158
인천	-	1	-	-	-	1	2
광주	-	-	2	1	-	-	3
대전	-	4	5	-	1	1	11
울산	-	-	-	-	-	-	-
세종	-	-	1	1	-	1	3
경기	-	3	7	4	-	11	25
강원	-	1	-	1	-	-	2
충북	-	-	-	-	-	-	-
충남	-	-	-	2	-	1	3
전북	-	-	7	10	1	1	19
전남	-	1	1	-	1	2	5
경북	-	-	4	2	2	-	8
경남	-	5	4	8	-	-	17
제주	-	-	-	-	-	-	-
계	12 (3.0)	79 (19.5)	83 (20.5)	124 (30.6)	77 (19.0)	30 (7.4)	405 (100)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인 등록 현황은 특수학교 27,979명 중 27,089명(96.8%), 특수학급 57,948명 중 35,501명(61.3%), 일반학급 17,514명 중 7,365명(42.1%),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254명 중 97명(38.2%)임

〈표 3·75〉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인 등록 현황

(단위: 명, %)

장애영역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전체
		특수학급	일반학급		
지체장애	749	890	945	7	2,591
뇌병변장애	3,461	2,544	1,364	72	7,441
시각장애	929	197	348	-	1,474
청각장애	584	660	1,540	8	2,792
언어장애	251	1,886	469	-	2,606
지적장애	13,930	20,719	1,854	6	36,509
자폐성장애	7,146	8,492	733	-	16,371
정신장애	9	23	6	-	38
신장장애	3	10	28	-	41
심장장애	1	14	18	-	33
호흡기장애	1	4	12	2	19
간장애	1	8	14	1	24
안면장애	-	2	3	-	5
장루·요루장애	3	7	17	-	27
뇌전증장애	21	45	14	1	81
계	27,089 (96.8)	35,501 (61.3)	7,365 (42.1)	97 (38.2)	70,052 (67.6)

- 전국에 193개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786명의 운영위원이 1,863회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참석함

〈표 3·76〉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단위: 개, 명, 회)

시도	위원회 수	구성원									운영실적 (‘21. 6.~ ‘22. 5.)
		교장 (감)	특수 교사	대학 교원	공무원	의사	보호자	사회 복지사	기타	계	
서울	12	16	40	2	36	1	10	-	7	112	152
부산	6	13	10	5	23	2	2	3	6	64	52
대구	5	8	7	5	15	3	4	-	1	43	53
인천	6	9	18	-	18	-	4	-	7	56	76
광주	3	3	3	3	14	3	2	-	1	29	71
대전	3	5	8	1	12	1	2	1	7	37	35
울산	3	3	6	1	7	1	6	-	3	27	42
세종	1	2	1	1	8	1	1	-	-	14	12
경기	26	56	71	4	49	4	26	7	18	235	323
강원	18	21	61	4	24	-	15	2	9	136	141
충북	11	11	21	6	27	5	13	8	11	102	116
충남	15	27	40	8	52	4	16	5	7	159	144
전북	15	27	55	3	29	5	16	4	9	148	135
전남	23	38	101	6	20	7	14	9	23	218	152
경북	24	32	64	8	42	11	26	8	18	209	194
경남	19	28	45	5	27	11	17	11	15	159	124
제주	3	13	7	2	3	2	5	-	6	38	41
계	193	312	558	64	406	61	179	58	148	1,786	1,863

■ 향후 과제

- 영유아 건강검진과 조기교육 연계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자체, 병의원, 보건소 등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 체계 마련

4)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외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기존 특수학급당 연간 평균 운영경비는 유치원 37,186천 원, 초등학교 29,685천 원, 중학교 31,394천 원, 고등학교 37,197천 원임
- 신설 특수학급의 연간 평균 운영경비는 유치원 60,594천 원, 초등학교 53,610천 원, 중학교 52,421천 원, 고등학교 58,726천 원임

〈표 3·77〉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

(단위: 천 원)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존	신설	기존	신설	기존	신설	기존	신설
서울	44,012	64,012	26,521	66,521	28,724	68,724	36,333	76,333
부산	40,801	65,619	30,883	57,883	31,454	58,454	38,590	65,590
대구	31,147	63,067	28,024	51,774	30,583	54,333	34,660	58,414
인천	32,451	64,855	26,680	53,445	43,659	59,858	31,157	59,093
광주	61,480	111,480	39,171	89,171	39,764	64,764	49,279	99,279
대전	35,095	55,095	16,349	36,349	17,793	37,793	21,877	41,877
울산	32,290	36,245	26,450	34,220	25,188	28,017	45,230	39,996
세종	45,603	53,003	45,454	55,454	46,046	56,046	53,529	63,529
경기	21,159	49,159	30,056	58,056	26,706	48,706	33,475	61,475
강원	21,101	44,918	22,836	46,653	25,470	49,287	26,808	50,625
충북	20,901	70,901	21,218	71,218	23,617	73,617	31,487	81,487
충남	50,395	55,395	43,259	48,259	45,823	50,823	47,812	52,812
전북	45,648	62,648	35,840	52,840	36,372	53,372	37,253	54,253
전남	31,136	51,136	24,781	44,781	24,732	44,732	33,085	53,085
경북	38,622	62,237	35,308	52,920	35,043	49,912	41,268	47,988
경남	33,748	53,748	24,302	44,302	26,499	46,499	31,987	51,987
제주	46,574	66,574	27,520	47,520	26,218	46,218	38,519	40,519
평균	37,186	60,594	29,685	53,610	31,394	52,421	37,197	58,726

※ 특수학급 운영비: 특수학급 기본 운영비 및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특수교육 지원인력(인건비 제외),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비, 특수학급 관련 특별교부금사업, 기타 통학비, 급식비 지원 등 특수학급 예산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예산은 3조 2,373억 원으로 시도교육청 총교육예산 대비 3.8%의 비율을 나타냄

〈표 3·78〉 교육예산 대비 시도 특수교육 예산 현황

(단위: 천 원, %)

시도	시도교육청 총교육예산	특수교육 예산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연수비	기타	계	비율
				전체(A)	전체(A) 중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					
서울	10,639,300,000	325,982,074	104,975,240	31,194,253	30,136,253	2,519,910	8,170,266	404,134	473,245,877	4.4
부산	4,875,337,718	126,311,901	55,133,089	24,931,940	4,523,873	75,431	224,917	170,000	206,847,278	4.2
대구	4,102,928,826	84,720,208	46,374,323	11,243,173	274,935	291,774	234,798	1,195,317	144,059,593	3.5
인천	4,840,044,156	108,773,918	71,530,871	5,698,153	3,243,305	1,219,543	116,539	66,355	187,405,379	3.9
광주	2,592,032,048	46,439,348	41,493,967	38,465,691	1,704,388	1,845,868	214,807	1,772,014	130,231,695	5.0
대전	2,534,377,685	103,703,963	43,290,132	1,712,790	1,436,790	62,000	107,797	743,642	149,620,324	5.9
울산	2,128,328,265	48,638,173	28,978,350	3,254,716	908,016	72,091	58,992	958,800	81,961,122	3.9
세종	870,443,226	21,107,160	7,405,296	22,004,974	1,289,777	536,600	32,552	1,055,561	52,142,143	6.0
경기	20,072,648,499	370,952,625	131,468,416	46,842,984	8,276,000	7,424,000	522,853	2,704,000	559,914,878	2.8
강원	3,667,032,000	68,010,505	26,351,303	24,610,983	4,569,615	1,318,200	240,338	133,000	120,664,329	3.3
충북	3,182,017,922	76,480,160	46,908,037	16,169,434	65,527	1,221,901	450,546	328,062	141,558,140	4.4
충남	4,451,163,476	119,739,319	67,009,761	10,064,731	2,501,184	332,100	991,782	1,935,444	200,073,137	4.5
전북	4,071,915,153	93,124,587	55,976,606	14,194,812	4,147,603	2,099,911	167,149	72,539	165,635,604	4.1
전남	4,333,000,000	70,332,269	50,130,846	8,092,000	1,992,000	31,100	126,060	923,719	129,635,994	3.0
경북	5,116,154,000	107,203,358	61,966,185	10,078,825	1,308,909	1,098,327	636,163	7,519,881	188,502,739	3.7
경남	6,049,568,885	145,423,191	87,548,981	15,875,903	2,023,990	3,349,828	693,100	1,656,800	254,547,803	4.2
제주	1,365,114,317	28,299,826	21,040,387	21,000	-	24,000	58,500	1,763,000	51,206,713	3.8
계	84,891,406,176	1,945,242,585	947,581,790	284,456,362	68,402,165	23,522,584	13,047,159	23,402,268	3,237,252,748	3.8

※ 국고, 지방비,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 및 기타 재원 등을 포함한 총 예산 기준임

- 2022년도 시도 및 국립특수학교(급) 특수교육 예산은 시도교육청 3조 2,373억, 국립 특수학교 636억, 국립학교 특수학급 48억을 합하여 총 3조 3,056억 원임

〈표 3·79〉 시도 및 국립특수학교(급) 특수교육 예산

(단위: 천 원)

구분	특수교육 예산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연수비	기타	소계	
시도	1,945,242,585	947,581,790	284,456,362	23,522,584	13,047,159	23,402,268	3,237,252,748	
국립	특수학교	33,168,942	14,980,157	13,778,256	1,533,193	137,818	-	63,598,366
	특수학급	2,058,109	1,926,389	779,590	4,941	2,510	2,834	4,774,373
계	1,980,469,636	964,488,336	299,014,208	25,060,718	13,187,487	23,405,102	3,305,625,487	

- 2022년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는 31,878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09천 원 감소함

〈표 3·80〉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단위: 천 원)

연도	특수교육비	수혜학생 수	1인당 특수교육비
2002	443,073,183	54,470	8,134
2003	564,394,700	53,404	10,568
2004	666,840,034	55,374	12,042
2005	822,051,094	58,362	14,085
2006	1,051,284,265	62,538	16,810
2007	1,145,295,143	65,940	17,369
2008	1,352,939,269	71,484	18,926
2009	1,545,753,946	75,187	20,559
2010	1,667,641,925	79,711	20,921
2011	1,966,284,753	82,665	23,786
2012	2,138,496,638	85,012	25,155
2013	2,245,781,336	86,633	25,923
2014	2,076,048,794	87,278	23,787
2015	2,227,638,518	88,067	25,295
2016	2,376,062,265	87,950	27,016
2017	2,653,497,809	89,353	29,697
2018	2,759,503,150	90,780	30,398
2019	2,984,447,992	92,958	32,105
2020	3,134,043,528	95,420	32,845
2021	3,188,731,273	98,154	32,487
2022	3,305,625,487	103,695	31,878

- 2022년도 특수교육 총예산은 3조 3,433억 원으로 2021년도에 비해 약 945억 원 증가된 금액이며, 2022년 6월 기준 교육 예산의 4.0%를 차지함

〈표 3·81〉 연도별 특수교육 총예산 비율

(단위: 천 원)

연도	교육 예산*	특수교육 예산**	비율(%)
2010	38,595,975,000	1,667,641,925	4.3
2011	41,618,722,000	1,966,284,753	4.7
2012	45,752,654,000	2,138,496,638	4.7
2013	49,643,947,000	2,245,781,336	4.5
2014	49,986,533,000	2,076,048,794	4.2
2015	50,325,564,676	2,227,638,518	4.4
2016	51,225,455,330	2,376,062,265	4.6
2017	57,003,830,743	2,664,432,153	4.7
2018	63,872,934,485	2,783,412,270	4.4
2019	70,743,520,000	3,039,704,368	4.3
2020	72,097,627,000	3,174,800,528	4.4
2021	70,429,061,000	3,248,756,273	4.6
2022	83,362,762,000	3,343,304,487	4.0

* 전체 교육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

** 시도교육청 및 국고 예산

■ 향후 과제

- 지역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발전 및 안정적인 재정 확보

5 장애학생 교육회복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맞춤프로그램)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필수적인 학습, 의사소통, 사회성 및 디지털리터러시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교육청에서 지원
 - * (시각장애) 점자·묵자 문해력 향상, (청각장애) 학교 수업 문자·수어통역 지원을 통한 학력 향상, (지체 및 발달장애) 언어 및 사회성 향상 등 장애특성별 집중 지원
- (심리·정서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장애학생 가족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의 심리·정서 회복 지원 및 양육스트레스 해소
 - * 가족체험(여행), 공예체험, 문화·예술 관람, 가족사진 촬영, 집콕키트, 형제·자매 지원 등
 - ※ 참여가족: ('21) 4,000여 가족 → ('22) 4,500여 가족
- (자녀양육 정보제공) 부모상담*(개별·집단면담), 학부모 워크숍, 부모지지 및 자조 모임 지원, 자녀 양육 및 교육 관련 정보 제공 등 강화
 - * 장애자녀 교육에 대한 이해, 상황별 갈등관리 방법, 특수교육 정보 제공, 장애학생 양육 방법 및 교육, 학부모 감정 코칭 등
- (체험활동) 교육부·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업무협약 체결('21.11.19.)하고 안전한 산림복지시설(숲체원, 치유의 숲 등)을 활용하여 장애학생과 가족 대상 체험 활동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
 - ※ 장애학생 체험활동 및 가족캠프: ('21) 1,456명 → ('22) 5,000명
- (행동중재 프로그램 지원) 행동중재 거점 지원센터(5곳)를 지정하고 특수교사 대상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과정(연수) 운영(150명), 심각한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중재 프로그램 지원(600명)

■ 향후 과제

- 장애학생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 및 가족 지원 강화
- 특수교육교원 대상 산림복지프로그램 활용 마음건강 회복 연수 운영
-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사업 강화 및 성과보고회 등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

6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실적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계의 연구·개선, 특수교육교원의 연수,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 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특수교육담당 교원 등의 연수,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1)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3년에 실시될 특수교육 실태조사(VI) 본조사의 내실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사 부문, 내용, 절차 방법 등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3 특수교육 실태조사(VI) 예비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을 위해 시대·문화적 상황을 반영한 '자폐성장애 검사도구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3~'27)' 시작에 따른 특수교육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 체계를 마련하고자 '특수교육 전달 체계 내실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2023년 4세대 지능형 NEIS 개별화교육계획 시스템 개발·구축에 따른 NEIS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세부 지침안(훈령, 고시 등) 개발 및 안내를 위해 'NEIS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운영지원 자료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양육·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 운영(온맘 사이트) 및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의 협업을 통한 ‘2022 특수교육통계 및 연차보고서 발간’으로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기관 및 인력,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특수교육 관련 주요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2022년 6월,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변천과 미래 특수교육의 방향 탐색’을 주제로 국내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 11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별 특수교육 정책 방향 탐색’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 2022년 4월, 특수교육교원 및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 의욕 고취 및 우수 논문 발굴 확산을 위해 ‘특수교육연구’ 제29권 제1호를 발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 (318개 기관)에 배부함
- 2022년 6월, 현장 사례 및 정책 홍보를 통한 통합교육 여건 조성 및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현장특수교육 제29권 제1호’를 발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등(12,000개 기관)에 배부함
- 국내외 특수교육 관련 기관 및 방문자에게 우리원 안내, 역점 사업 및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릿(국·영문) 발간 및 SNS(유튜브, 팬밴드 등)를 운영하고 있음

〈표 3·82〉 국립특수교육원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특수교육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특수교육 실태조사(VI) 예비조사 • 국립특수교육원 자폐성장애 검사도구 개발(2/2년) 	550
특수교육 정책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전달 체계 내실화 방안 연구 • NEIS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운영 지원 자료 개발 	110
특수교육 기초자료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특수교육통계 발간 • 202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발간 	25
특수교육 학술교류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9회 국내세미나 및 제28회 국제세미나 • 「특수교육연구」 제29권 발간(연 3회) • 「현장특수교육」 제29권 발간(연 2회) • 국내외 교류 협력 • 국립특수교육원 홍보(리플릿 발간 및 SNS 운영 등) 	175
사업관리 및 대외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협의회 운영, 2021 회계연도 특수교육 성과분석 	36
계	조사 2건, 연구 2건, 사업 4건, 행사 1건 등	896

■ 향후 과제

- ‘2023 특수교육 실태조사(VI)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내실화 있고 효율적인 ‘2023 특수교육 실태조사(VI) 본조사’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 자폐성장애 검사도구 활용방법 안내 및 홍보 강화 방안 마련
- 특수교육 현장과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특수교육 기초연구 수행
- 장애자녀 부모 지원을 위한 종합시스템(온맘 사이트) 운영의 내실화와 현장 요구에 부응한 콘텐츠 개발 및 제공
- 특수교육 현안에 적합한 국내세미나와 국제세미나 주제 선정 및 참여자 확대
- ‘특수교육연구 제29권 제2호, 제3호’ 및 ‘현장특수교육 제29권 제2호’ 발간을 통해 특수교육 현장에 최신 정보 제공
- 유관기관과 교육 현장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강화를 통해 국립특수교육원 사업의 대국민 홍보 및 현장성 강화

2)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확대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및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각론(교과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하기 위해 17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1개 과제),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공통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16개 과제)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현장성 높은 국정 도서를 개발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내·외적 체제, 편찬개발비 계상 기준 및 관리 지침, 현장적합성 검토 체제 등 편찬 지침을 개발하고 있음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에 따른 2024년 적용 국정 특수교육 교과용도서(초등학교 1~2학년군)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유아에 대한 통합교육 확대 및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따른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 일반유아교사 대상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자료를 개발하고 있음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보급된 특수교육 교과용도서(203책 전자저작물 71종)의 체계적 질 관리를 위해 특수교육 초·중·고등학교 현장 교사 중심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내용 분석, 편찬지침 검토 등 특수교육 교과용도서의 현장 활용성을 강화하고 있음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해 개별화교육, 나이스, 장애 학생건강체력평가(PAPS-D),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음

〈표 3·83〉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교과서 관련 사업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교육과정 개발 연구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	120
	•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교과(군)) 시안 개발 연구	436
	•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일상생활 활동) 시안 개발 연구	114
	•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창의적 체험활동) 시안 개발 연구	40
	• 2022 개정 특수교육 공통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186
	• 2022 개정 특수교육 선택 중심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254
교과용도서 연구 및 개발	• 2022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편찬 지침 개발 연구	30
	• 2022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개발	2,015
교수·학습자료 개발	• 장애유아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500
현장 지원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모니터링단 운영 및 현장지원	110
계	연구·개발 29종, 42책, 현장 지원 2건 등	3,805

■ 향후 과제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안착을 위해 평가 방안 개발, 보조교과서 개발, 연수, 컨설팅 등 후속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에 따른 국정 교과용도서의 연차별 개발 시 현장검토 강화로 교과용도서의 현장 활용도 제고
- 장애유형·특성 등을 반영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학교 운영 내실화 및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학교 현장 지원 강화

3)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학교에서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 지원 및 학교(급)별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연계성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교과연계 전환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 전국 단위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성과 파악을 위한 체계적 조사 필요에 따라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현황조사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장애학생의 사회통합 실현을 도모하고자 특수교육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현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도를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 및 진로 지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음
 -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복지·고용 연계 및 협업을 통한 장애학생 취업지원 유관기관 공동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음
 - ※ 국립특수교육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개발원 공동 주최
 - － 특수학교 학교기업과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및 기타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시도교육청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 지원 우수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학부모용 ‘진로레터’를 제공하고 있음

〈표 3·84〉 국립특수교육원 진로·직업교육 지원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교파연계 전환역량 향상 프로그램 개발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현황조사 	400
진로·직업교육 현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 연수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워크숍 • 장애학생 취업지원 유관기관 공동워크숍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컨설팅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학부모용 '진로레터' 제공 	40
계	연구 2건, 현장지원 사업 5건	440

■ 향후 과제

-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과 다양한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용 콘텐츠 개발·보급
- 지역 및 여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현장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현장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현장지원 사업 추진

4)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른 시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실태 조사용 교육자료(영상)를 제공하고 있음
- 학교급별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학교교육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한 초등학생용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음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전국 200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 장애학생 인권침해 유형 분석 및 우수사례 등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 점검 결과를 수합하고 있음
 -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매뉴얼 제작·보급을 지원하고 있음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의 은폐 및 축소 방지를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익명으로 관련 사안을 제보할 수 있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장애공감 사진 및 홍보영상을 학교, 장애인권 유관 기관의 장애인식개선 자료로 제공하고, 전시회 등으로 범국민 장애공감문화를 조성하고 있음
-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활성화 및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3·85〉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인권보호 관련 연구·자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실태 조사용 교육자료 제공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초등학생용) 	400
인권보호 현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지원(워크숍, 현장지원 결과 수합등)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운영(인권지원 관련 모니터링, 인권침해 사안 접수 등) 	5
장애공감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공감 사진 및 홍보영상 수상작 대여 및 전시 장애공감문화 조성 관련 사업 	1
교육자료 개발·보급 2건, 현장지원 사업 4건		406

■ 향후 과제

- 범국민 대상 및 학교급별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지원의 내실화 및 장애학생 인권 보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 현행화

5)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내실화를 위한 고등교육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1개의 연구와 2개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1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지표 개정연구에서 제기된 지표(안)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202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지표의 적합성 검증을 통해 지표를 수정하고, 평가 방법의 절차, 평가 진행 방법 개선 등 효율적인 평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예비조사’ 연구를 추진함
-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의 후속조치로 ‘개선 요망’ 등급의 대학과 ‘평가 미참여’ 대학의 차기 평가 준비 역량 및 장애대학생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컨설팅 운영’ 사업을 추진함
- 장애학생 고등교육 전문단체 및 유관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대학교 장애학생지원 협의회 등) 간 협조 체제 구축 및 장애학생 지원 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고등교육 유관기관 협의회’를 추진하고 있음

〈표 3·86〉 국립특수교육원 고등교육 지원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조사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예비조사	71
협력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컨설팅 운영 • 장애학생 고등교육 유관기관 협의회	29
계	조사 1건, 협력 2건	100

■ 향후 과제

-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여건 개선 유도를 위하여 2022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실시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요망’ 대학 및 희망대학 컨설팅 지원 확대

6)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일반 교원, 교육전문직, 학부모, 공무원 등 특수교육 관련인을 대상으로 집합연수 59개 과정(6,855명), 원격연수 6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2022년 7월 말 기준 집합연수 27개 과정 6,089명 이수(목표대비 88.8%), 원격연수는 62개 과정에서 7,335명 이수함

〈표 3·87〉 국립특수교육원 집합연수 실적

(단위: 명)

구분	과정명	이수 인원	대상
직무 연수	보건교사의 장애학생 지원 역량 강화	85	특수·일반학교 보건교사
	특수교사의 장애학생 성교육 역량 강화	256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장애학생 인권교육 핵심교원 역량 강화	289	특수학교(급) 교사 및 시도교육청 장애학생 인권보호 담당자
	특수교육 지원센터 담당교사 역량 강화	232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1기)	150	유치원, 특수교사, 장애유아 담당 보육교사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2기)	150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3기)	180	
	시각중복장애학생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기초)	16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31	특수학교(급) 교사
	특수교사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	42	특수학교(급)교사(진로직업담당)
	특수교사의 에듀테크 활용 수업 역량 강화	157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스쿨포유 초등 온라인 교사
	특수학교 관리자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	247	특수학교 관리자
	유치원 관리자의 장애공감문화 조성(1기)	326	유치원 원장(감), 교육전문직
	유치원 관리자의 장애공감문화 조성(2기)	140	
	초등학교 관리자의 장애공감문화 조성(1기)	1,379	초등학교 교장(감), 교육전문직
	초등학교 관리자의 장애공감문화 조성(2기)	414	
	중·고등학교 관리자의 장애공감문화 조성(1기)	941	중고등학교 교장(감), 교육전문직
	중·고등학교 관리자의 장애공감문화 조성(2기)	312	

구분	과정명	이수 인원	대상
	유치원 교사의 장애공감문화 조성	175	유치원 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장애 공감 문화 조성	158	초·중·고등학교 교사
전문 교육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경찰위원 장애 공감 문화조성(기초)	138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경찰위원(신규 담당자)
	학교재직 일반직 공무원의 장애 공감 문화조성	155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대학교 일반직 공무원
협업 연수	시각장애 교직원의 K-에듀파인 웹 접근성 활용 역량 강화	21	시각장애 교원(스크린리더사용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정책 및 시스템 이해	22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교사
	건강장애학생 교수·학습 및 지원 역량 강화	22	
	특수교사를 위한 산림교육 체험(1기)	22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특수교사를 위한 산림교육 체험(2기)	29	
계		6,089	-

〈표 3·88〉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실적

(단위: 명)

영역	과정명	이수인원	대상*
직무 연수	(신규) 특수교육 디지털 교육자료 만들기	59	교원/전문직
	(신규) 특수교육 영상 교육자료 만들기	30	교원/전문직
	(신규) 블렌디드 특수교육 수업하기	88	교원/전문직
	(신규) 실시간 쌍방향 특수교육 수업하기	46	교원/전문직
	특수교육 지원인력 관련 규정과 근로계약의 이해	14	교원/전문직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와 복무 관리	8	교원/전문직
	장애대학생 지원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67	대학담당자
	특수교육 수업전문성 향상	49	교원 등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현장 활용	91	교원 등
	장애학생 국어과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33	교원 등
	장애학생 수학과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23	교원 등
	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역량 강화 기초	51	교원 등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	56	교원 등
	장애학생 안전교육을 위한 첫 걸음	288	교원 등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수업전문성 강화	52	교원 등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가는 긍정적 행동지원(기초)	213	교원 등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가는 긍정적 행동지원(심화)	75	교원 등
	장애학생 문제행동 증재	209	교원 등
	교사를 위한 장애유형별 지도 역량 입문	385	교원 등
	시각장애학생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29	교원 등
	청각장애학생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22	교원 등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64	교원 등
	모두를 위한 통합학급 운영 기본	334	교원 등
	초·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행역량 강화	57	교원 등
	현장 중심의 통합교육(유치원)	456	교원 등
	현장 중심의 통합교육(초등학교)	515	교원 등
	현장 중심의 통합교육(중학교)	282	교원 등
	현장 중심의 통합교육(고등학교)	168	교원 등
	(신규) (학부모) 시각장애아동 양육 및 진로지도	28	공통
	(신규) (학부모) 청각장애아동 양육 및 진로지도	21	공통

영역	과정명	이수인원	대상*
	(신규) (학부모) 지적장애아동 양육 및 진로지도	86	공통
	(신규) (학부모) 지체장애아동 양육 및 진로지도	48	공통
	(신규) (학부모) 자폐 및 정서장애아동 양육 및 진로지도	250	공통
	(신규) (학부모) 장애아동의 의사소통의 실제	290	공통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긍정적 행동지원	65	공통
	특수교육 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기본	99	공통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전문성 강화	86	공통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고급	77	공통
	NEW! 장애학생의 인권과 성교육	1,089	공통
	슬기로운 장애인식개선 생활	750	공통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해	83	공통
자율 연수	미디어교육과 저작권 이해	43	공통
	보조교과서 및 교수·학습자료 현장 활용	59	공통
	시각장애학생 보행지도	59	공통
	한국수어 이해와 활용(기초)	57	공통
	정서행동검사 바로 알기	69	공통
	2018 기초학습능력검사(NISE-B·ACT) 실시방법의 이해	82	공통
	적응행동검사 바로 알기	113	공통
자격 연수	재활복지 미전환 치료교사 자격전환 연수	117	해당 교원
	특수교육 희소교과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연수	0	해당 교원
계		7,335	-

* 대상 구분: 교원 등(교원, 교육전문직, 지원인력), 공통(학부모 등 일반 국민 포함)

■ 향후 과제

- 특수·일반교육 교원의 장애학생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운영
- 특수교육 지원영역과 인력 다양화에 따른 지원영역, 지원인력별 맞춤형 연수 확대
- 2022년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용도서 편찬에 따른 현장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 개설 필요
- 수요자의 연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집합, 온라인연수 등 연수 방법 다양화

7)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 운영,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운영 및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학생 원격교육 플랫폼 운영 및 콘텐츠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인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운영,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 3개 내역사업에 대한 2021년 운영 결과 이용자 만족도는 78.2점(목표 76.6점)과 접속 횟수 2,912,677회(목표 2,700,000회)로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함

〈표 3·89〉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현황

사이트 명	지원 내용	주 이용자
에듀에이블 (eduable.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수학습 자료 - 장애학생 클립형 동영상 수업자료 제공 - 수업지원 콘텐츠 및 수업 자료 제공 •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탑재, 관련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1교시, UCC 탑재 및 홍보 • 시각장애학생·교사용 대체자료(EBS 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 수능특강 및 수능완성, 학습참고서 대체자료 제공 •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별 온라인 학습 자료 - 기본 교육과정 및 공통·선택 교육과정 운영 자료 - 시도교육청, 각급학교, 외부기관의 교육활동 지원 자료 공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 학교 및 가정이나 병원 등 다양한 교육환경에서도 교육 지원이 가능한 클립형 동영상 100종, 교과(사회, 과학) 및 창의적 체험활동 멀티미디어 콘텐츠 20종, 실감형 자료(VR·AR) 40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인 에듀에이블(eduable.net) 등을 통해 지원 예정임
- 비대면 무인(주문·결제) 시스템 확대 보급 등과 같은 사회 변화에 따라 장애학생의 비대면 디지털 기기·상용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무인정보단말기 활용 교육 콘텐츠 2종(요식업·교통)을 개발하고 있음

- 장애학생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2종(퍼지컬 컴퓨팅, AI 교육)을 개발하고 있음
-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한 연구 보고서 1종 발간 예정
- 장애학생의 정보화 역량 신장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여가생활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경진대회, e스포츠대회, 문화행사 등 전국 단위의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있음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구축('22년 43개) 및 체험버스 운영('22년 50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유형별 정보 접근성이 보장된 원격수업, 장애학생별 맞춤형 콘텐츠의 제공 등을 위하여 장애학생 원격교육 플랫폼(class.nise.go.kr)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발달장애 청소년의 기초 건강체력 관리 및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주)두산과 협력하여 '발달장애 청소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표 3·90〉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운영 • 장애학생 정보화 교육 자료 개발 • 특수교육 정보화 연구 •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 장애학생 소프트웨어 교육 자료 개발 	1,268
장애학생 원격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원격교육 플랫폼 운영 • 발달장애학생 기본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 지체 및 발달장애 실감형 자료 개발 •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및 체험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구축·운영 • 실감형 콘텐츠 체험버스 운영 	8,021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정보관 운영 • 전산정보시스템 관리·운영 	455
유관기관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 청소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두산) 	-
계	연구 2건, 개발 4건, 운영 6건, 행사 1건, 협력 1건	9,744

■ 향후 과제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학습권 보장 및 장애학생 원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운영) 순회교육, 가정이나 병원 등 학교가 아닌 환경에 있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환경에서도 교육 지원이 가능한 맞춤형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및 지원 지속 확대 필요
 -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 및 여가생활 기회 제공, 교원, 대학생, 일반인 등에 대한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전국 규모 대회 운영 지속 필요
 - (장애학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제4차 산업혁명 및 미래 교육환경에 장애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영역별 소프트웨어 교육자료 개발
 -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 지원) 장애학생 원격교육 등 온라인 학습지원을 위한 플랫폼의 운영과 및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 필요

8) 생애주기별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및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주요 업무(평생교육법 제19조의2)

- 계획: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계획
- 조사: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
- 연구·개발: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및 의사소통 도구 개발
- 교육: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 협력: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 내실화를 위해 2022년에는 제2차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기초 연구 1건,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3종, 온라인 콘텐츠 각 3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자료 1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온라인 콘텐츠 2종 개발 및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보조도구 기능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활성화를 위한 인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5회)’와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장애인 평생교육 이해력 향상 및 직무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연수(5회)’,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제정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0-247호, 2020.12.30.)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교원연수과정(2회)’를 실시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단위의 기초 통계 자료 확보를 위해 ‘2022년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 지역에 기반한 장애인의 역량 개발과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를 통해 32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표 3·91〉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지자체

연도	계속지원	신규지원
2020 (10개)	-	[경기] 광명시, 오산시 [부산] 서구, 부산진구, 남구, 사하구, 연제구, 사상구 [전북] 군산시 [충북] 청주시 (10개 지자체)
2021 (19개)	-	[경기] 김포시, 수원시, 안산시, 의정부시, 이천시 [대구] 수성구, 달서구 [부산] 동구, 동래구, 서구, 사상구, 연제구, 수영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전남] 순천시 [전북] 김제시 [충남] 당진시, 아산시 [충북] 충주시 (19개 지자체)
2022 (32개)	[경기] 김포시, 수원시, 안산시, 의정부시, 이천시 [대구] 수성구, 달서구 [부산] 동구, 동래구, 서구, 사상구, 연제구, 수영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전남] 순천시 [전북] 김제시 [충남] 당진시, 아산시 [충북] 충주시 (19개 지자체)	[강원] 춘천시 [경기] 광명시, 용인시 [경북] 김천시 [광주] 남구, 북구, 서구 [대구] 동구 [부산] 남구, 영도구 [서울] 서대문구 [전북] 전주시 [충북] 청주시 (13개 지자체)

〈표 3·92〉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사업 내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기초 연구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평생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자료 개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보조도구 기능 개선 	1,150
교육·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연수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교원연수과정 연수 	70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 	150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연계체제 구축 협의회 	35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1,500
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및 물품 구입 등 	43
계	연구·개발 6건, 연수 3건, 조사 1건, 협의회 1건, 현장 지원 1개 등	2,948

■ 향후 과제

-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자체 수 및 예산 확대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교재·교구 등 개발 보급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평생학습 자원(장애인 지원 기관, 편의시설, 지원서비스 등)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을 위한 체계 구축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운영계획

부록
I

- 서울특별시교육청 / 145
- 부산광역시교육청 / 157
- 대구광역시교육청 / 170
- 인천광역시교육청 / 180
- 광주광역시교육청 / 191
- 대전광역시교육청 / 204
- 울산광역시교육청 / 219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236
- 경기도교육청 / 247
- 강원도교육청 / 260
- 충청북도교육청 / 272
- 충청남도교육청 / 286
- 전라북도교육청 / 302
- 전라남도교육청 / 308
- 경상북도교육청 / 323
- 경상남도교육청 / 336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348

서울특별시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II 2022년도 추진 실적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기회 확대
 - 2022 특수학급 설치 현황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2021	116	126	465	774	207	302	95	266	883	1,468
2022	129	140	474	803	212	312	100	274	915	1,529
증감	↑13	↑14	↑9	↑29	↑5	↑10	↑5	↑8	↑32	↑61

- 2)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급) 다양화·특성화
 -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른 특수학교 설립 추진
- 3)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기회 확대
-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대안교육 위탁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1)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신장
 - 가) 수업혁신을 위한 특수학교 연구부장 네트워크 운영: 32교(6분임)
 - 나) 저경력1교사 연수: 2022. 4. 12.~4. 28.(484명)
 - 다) 특수학교 관리자 수업혁신 워크숍: 2022. 5. 12.~5. 13.(69명)
 - 라) 특수학교 나눔과 배움 연수: 6. 14.~6. 23.(400명 예정)
 - 마) 수업나눔 축제 운영: 2022. 11월 예정
 - 바) 특수교사 수업 성장 직무연수: 2022. 8. 1.~8. 5.(30시간, 30명 예정)
 - 사) 수업공유 플랫폼(SELC) 운영·관리: 연중
 - 아) 신규 및 통합학급 담당교원 직무연수: 국립특수교육원 위탁 운영: 연중
- 2) 특수교육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회복탄력성 향상 지원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학교별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 3)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 확대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가)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운영: 5교
 - 나) 현장중심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11단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를 특수학급 미설치교 '학교담당자 지정' 운영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지원 및 통합교육 실행 지원
- 2) 특수·일반교육교원 협력 강화
 - 가) 더공감교실 시범학교 운영: 유·초·중·고 8교
 - 나) 특수·일반교육교원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연구·실천을 위한 더불어 통합공동체 운영
- 3) 장애유형 및 지역 중심의 통합교육 지원 확대
 - 가) 장애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 나) 장애유형별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 중복장애
- 4)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교육 담당 교원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가) 교육지원청 주관 일반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 나) 통합교육 담당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 2) 통합교육 담당 교원의 지원 강화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학교 여건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호)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담당자 연수 지원
 - 나)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사업 추진: 협의체 2단 구성·운영, 교육부 지정 시범학교 운영 지원, 교원 연수 지원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및 고등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운영 지원 방안 등

2) 특수학급 장학 지원 내실화

- 가) 특수학급 교사 대상 컨설팅 장학 운영: 2022. 3월~12월(교육지원청별 자율 실시)
- 나) '통합교육 및 특수학급 운영 자율점검표'를 활용한 지원장학: 상·하반기 지원 장학 시

라.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1)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 국·공·사립 총 30교
- 나) 교원 및 학부모 연수 및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지구별 자율장학회 실시
- 다) 2022년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학교기본운영비(사립: 통합교부사업비) 교부(교당 10,000천 원 내외)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자유학년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례 나눔 워크숍: 2회

3)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체험 지원 강화

마.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특수학교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2)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바.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2) 특수학교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3) 건강관리지원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

사.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실무사 운영·관리 강화

2) 특수교육 지원인력(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지무원) 역량 강화

- 가) 신규 채용 특수교육실무사 대상 30시간 원격 직무연수 의무 실시

- 나) 교육지원청별 연 4회 특수교육 지원인력 연수 실시

3) 사회복지무원 교육 강화

4)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 운영 다양화

5)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지원인력 인건비 편성

- 가) 학교별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인력 인건비를 학교운영비로 예산 편성 권장

- 나) 교육지원청별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아.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

-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안정적 실행 지원을 위한 자료집 개발: 1종
- 2) 개별화교육 운영 내실화
 - 나이스 개별화교육계획 의견수렴 협의체 구축·운영: 2022. 3월~12월

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건강장애학생 선정 및 교육지원 제공: 건강장애학생 선정 여부 확인, 요보호 대상자 선정
- 2) 병원학교 운영 지원(9교): 병원학교 운영 예산 지원(병원학교 재적생 수, 일일 평균 학생 수, 운영 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장학, 순회교육, 업무담당자 워크숍 등
- 3) 원격수업(꿀맛무지개교실) 지원
- 4)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담임교사 연수, 병원학교 강사 및 보호자 교육 강화
- 5) 건강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차.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1센터
- 2)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연수, 교수·학습 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 통합교육지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3) 연수 및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전문성 강화
- 4)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 5) 지역 중심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기능 강화
- 6)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전문화·특성화
 - 가) 시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중부, 강서양천)
 - 나)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동부, 남부)
 - 다) 지체중복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북부)

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1) 치료지원
- 2) 가족지원: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
- 3)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4) 통학지원

- 가) 특수학교: 통학버스 이용이 어려운 시각, 청각, 지체장애학생(전공과 포함)
- 나) 일반학교(중·고): 실제 통학거리 2km이상인 학생 혹은 2km이내이지만 독립적인 보행이 어려운 시각, 청각, 지체장애학생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 1)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강화
 - 가)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 운영 지원
 - 나) 중·고 특수학급 찾아가는 체육 전문 순회강사 운영: 40교(협력수업 모델 시범운영교 4개교 포함)
- 2)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역량 개발 지원

- 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급)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진로·직업교육 운영비 지원
 - 특수학교: 고등학교 및 전공과 학급 수, 진로전담교사 배치에 따른 차등 교부
 - 특수학급: 급당 학생 수에 따른 차등 교부
 - 2)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 가)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지원: 서울정민학교, 서울정진학교, 밀알학교 (3교)
 - 나) 학교급 간 진로·직업교육 중점 운영학교: 성베드로학교(1교)
- 3)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운영 지원 확대: 25교 배치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 가) 2022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지침 및 매뉴얼 개정, 연수: 2022. 6월~7월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과 안전이 강화된 현장실습 운영 및 점검: 2022. 7월~2023.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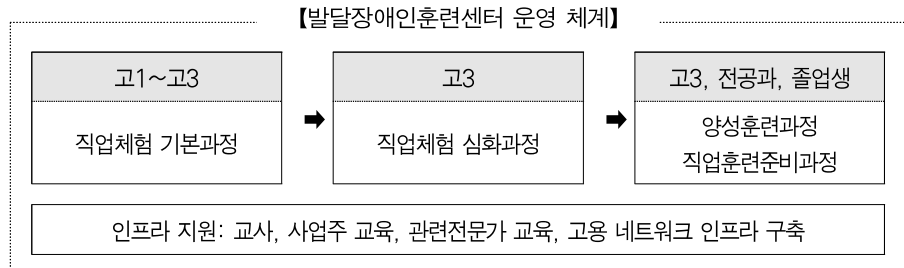
2)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활성화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학교: 총 6교 운영

연번	관할청	학교명	프로그램 및 담당 지역	지정 연도
1	서부	상암고	제과·제빵, 바리스타, 찾아가는 이미지메이킹교육 등	2010
			서부, 남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2	중부	경복고	대인서비스, 바리스타, 제과·제빵, 디저트과정, 가족공예 등	2011
			중부, 동부,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3	강동 송파	문현고	제과·제빵, 도예, 가족공예, 원예 등	2013
			강동송파, 강남서초,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4	북부	서울	바리스타, 찾아가는 진로직업교육(이미지메이킹, 생활원예, 목공예), 제과·제빵 등	2013
		문화고	동부, 성북강북,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5	강남 서초	경기고	찾아가는 진로직업교육(이미지메이킹, 컴퓨터 자격증), 바리스타, 귀속속공예 등	2014
			강남서초, 동작관악,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6	남부	관악고	바리스타자격증, 목공, 이미지메이킹, 하자ON 진로체험, 랩카카데미, 뮤지컬댄스, 마스크라이어 등	2017
			남부, 강서양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3) ‘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효율적 운영: 2개소(약 1,500명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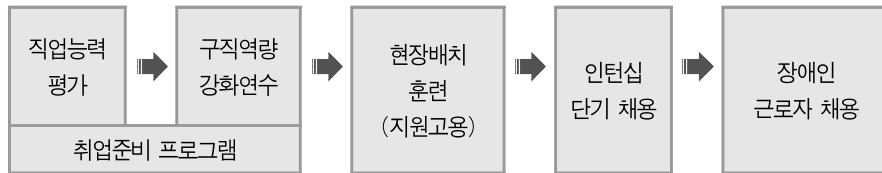
-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협업하여 설립·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전용 진로·직업훈련 전문기관
- 나) 발달장애학생에게 적합한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모델 제시 및 기업이 참여한 리얼세팅 직업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운영



4) ‘장애학생 희망일자리사업’ 운영 내실화

- 가) 특수학교(급) 고3·전공과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기타 장애학생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대상
- 나) 고3·전공과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직업교육과 고용 연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커리어 점프 관점의 고용 전환 프로그램

다) 추진절차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장애공감문화 조성

-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 2)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이해교육 강사풀 구축·활용
 - 나)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11청
 - 다) 맞춤형 장애이해교육·홍보 콘텐츠 배포·활용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지원 강화
 - 가) 온라인 인권보호 신고센터 구축
 -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실태조사 매년 실시
- 2) 장애학생 행동지원 체계 구축
- 3)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4) 장애학생의 인권교육 강화
- 5)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내실화
- 6)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피해 예방
- 7) 영역별 전문가로 구성된 '행동중재특별지원단' 운영
- 8)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문화 확산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및 운영
-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 3) 특수학교(급)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계획 수립 시 안전계획 포함
- 4)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5)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

라.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체계 구축
-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운영 내실화
- 3)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 4)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 5)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배치

마.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방과후학교 운영
 - 가) 특수학급: 학교(급) 여건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비 차등 지원(급당 2,000천 원~3,000천 원)
 - 나) 특수학교: 학교별 여건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비 차등 지원(부서당 4,000천 원)
- 2)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및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 가)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29학급 운영
 - 나) 공·사립 특수학교: 29교 94학급 운영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원 확충 및 역량 강화
- 2)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학교 운영 지원
- 3)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급 운영비: 유치원(학급당 4,000천 원), 초·중·고(정액분 학급당 3,000천 원, 차액분 차등 교부)
 - 나) 특수학급 신·증설비: 유치원 20,000천 원, 초·중·고 40,000천 원
 - 다) 특수학급 이전비: 유·초·중·고 학급당 20,000천 원 내외
 - 라) 노후 특수학급 환경개선비: 유·초·중·고 학급당 20,000천 원 내외
 - 마) 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 직업교육비: 학급당 1,500천 원 교부, 차액분 차등 교부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특수학교 신설

학교명(가칭)	예정지	장애영역	개교 예정
서울동진학교(가칭)	중랑구 신내동 일원	지적장애	2025. 9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지원단' 구축 및 운영

- 1)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전문가 지원을 통한 학교의 통합교육 실행 역량 강화 지원
- 2) 특수·일반교육 교원, 교수, 학부모, 행동지원전문가 등 특수교육 전문가로 구성
- 3) 교육과정 운영, 학급운영, 행동문제 중재지원 등 학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실시

나.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거점기관 구성 및 운영

- 1)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거점기관으로 지정하여 내실있는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운영
- 2) 관내 통합학급 운영 유치원 간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 지원
- 3)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재원 유아의 통합교육 지원

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화

- 1)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특수교육 교육과정지원단 구성·운영
- 2) 학교 여건 및 장애 특성을 반영한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3) 유아특수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긍정적 행동지원 안착 등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 4) 유아특수학교 운영 협의체 구성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모델 연구
- 5)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지원
- 6) 교육과정 분권화·자율화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침 수립
- 7)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라.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 1)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 운영 지원
- 2) 중·고 특수학급 찾아가는 체육 전문 순회강사 운영
 -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마. 특수학급 운영 지원 내실화

- 1) 특수학급 교사 대상 컨설팅 장학 운영
- 2) ‘통합교육 및 특수학급 운영 자율점검표’를 활용한 지원 장학
- 3) 교육지원청별 연수 계획에 따른 특수학급 교사 연수 운영(교육과정, 수업, 통합교육 관련)

바. 특수교육 전문성 신장

- 1) 특수학교(급)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 2) 수업혁신을 위한 학교관리자 워크숍, 저경력교사 연수, 직무연수 운영, 수업 나눔 축제 등 실시
- 3) 특수학교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4)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사. 개별화교육계획 현장성 강화 지원

- 1) 나이스 기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을 위한 지원
- 2) 개별화교육 작성 내실화를 위한 연수 운영

아.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건강장애학생 선정 및 교육지원 제공: 건강장애학생 선정 여부 확인, 요보호 대상자 선정
- 2) 병원학교 운영 지원 및 원격수업(꽃밭무지개교실) 지원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특수학교(급)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진로·직업교육 운영비 지원

나.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및 학교급 간 진로·직업교육 중점 운영학교 지원

다.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운영 지원 확대

- 특수학교 미배치교 배치 및 수업·상담 역량 강화 연수

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 1) 2022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지침 및 매뉴얼 개정, 연수
- 2)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과 안전이 강화된 현장실습 운영 및 점검

마.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활성화: 총 6교 운영

바. '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운영

-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협업하여 설립·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전용 진로·직업 훈련 전문기관
- 2) 발달장애학생에게 적합한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모델 제시 및 기업이 참여한 리얼세팅 직업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운영

사. '장애학생 희망일자리사업' 운영 확대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1) 일반학교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교 구성원에 대한 존중 교육 실시
- 2)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실시

나.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조성

- 1) 교육과정 연계 장애공감수업 운영
- 2) 2020~2022년 개발·보급한 학교급별 장애이해공감문화조성 교육지원자료 활용
- 3)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콘텐츠 개발

부산광역시교육청

I 부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기본 방향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2. 추진 방향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나.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다.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핵심역량 강화

3. 중점 추진과제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1)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2)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 3)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 4)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6)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 7)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8) 치료지원
- 9) 통학지원
- 10) 특수교육 지원인력 지원
- 11)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
- 12)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 13)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 지원
- 14)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확충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지원 내실화

- 1)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

- 3)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 4) 특수교육 교실수업 개선
- 5) 특수학교(급) 컨설팅 장학
- 6) 특수(일반)교육 교원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7) 특수교육 연구 활동
- 8)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계절학교 운영
- 9) 문화·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 10) 특수학교(급) 환경개선 지원

다.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희망찬 내일을 여는 My JOB 프로젝트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 1) 장애공감문화 조성 '세울림' 교육활동
- 2)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3) 장애학생 안전 강화

II 2022년도 추진 실적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유치원 의무교육 상담 담당자 지정·운영
- 2)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지원: 순회교육 및 지원인력 지원
- 3)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거점유치원 5개원 운영
- 4) 유치원-초등학교 연계를 통한 초등학교 입학 과정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 1)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홍보: 연중
- 2)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을 위한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홍보: 연중
- 3)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주관 특수교육대상 유아 순회교육 실시: 연중
- 4) 특수교육대상 영아학급 운영: 특수학교 6교(9학급)

다.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 1) 전문적 진단·평가 지원체제 구축: 6개 팀(시교육청 1, 교육지원청 5)
- 2) 진단·평가 지원체제를 활용한 전문성 강화: 진단·평가위원 전문가 연수(연 1회)
- 3)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선정·배치 업무 처리

라.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 1)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 조정 지원 강화
- 2) 특수교육대상자 평가 관리(평가조정, 수행평가, 원격수업 등) 안내
- 3) 장애학생 편의 시설 확충: 노후 특수학급 환경 개선
- 4) 장애인 편의 시설 관련 부서와의 협업 강화

마.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배치
 - 가) 인력현황: 총 89명(전문직8, 순회교사67, 행정직8, 사회복지무원2, 기타인력4)
 - 나) 거점지원센터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발달장애), 동래특수교육지원센터(시각장애), 해운대특수교육지원센터(청각장애)
- 2)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순회교사 근무여건 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
 - 가) 근무여건: 행정기관 복무 준수, 학생 방학 기간 활용 개인 연찬 기회 확대
 - 나) 인센티브 부여
 - (1) 전보 시 급지점(최고점) 부여 및 전보가산점 부여
 - (2) 업무겸임 순회교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가산점 및 교육전문직 전형 시 별도 가산점 부여
 - (3) 순회교육 유공교원 표창: 매년 7명
- 3)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 지역 여건, 수요자 요구 등을 고려한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및 통합교육 지원 역할 강화

센터명	부산특수 교육지원센터	서부특수 교육지원센터	남부특수 교육지원센터	북부특수 교육지원센터	동래특수 교육지원센터	해운대특수 교육지원센터
특색사업	진로·직업교육	장애영유아교육	지체장애교육	발달장애교육	시각장애교육	청각장애교육

- 4)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 가) 전문기관 연계 치료지원 실시: 치료기관(352개소)
 - 나)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부산직업능력개발원, 장애인복지관 등(24기관)

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8기관(시각, 청각, 지체, 발달장애 등 유형별 2기관) 및 인형극 공연 단체 1기관

라) 지역사회중심 기관연계형 직업교육 대학생 자원봉사자 지원: 고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바.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 순회교사 증원: '21.(65명) → '22.(67명)
- 2) 채택(시설) 순회교육 및 일반학교 통합교육 순회교육 지원 확대: 192명(유 107, 초 49, 중 25, 고 11)
- 3)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육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구축(5교) 및 학교 겸임 순회교사 운영(2교)
- 4)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역량강화 연수 운영: 연 2회(상반기 3월, 하반기 8월)

사.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지원: 병원학교(3교, 월평균 14명), 원격수업(월평균 120명)
- 2) 건강장애학생 지원 담당교사 연수 실시: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9월)
- 3) 건강장애학생 지원 학부모 교육 실시: 연 1회(6월)
- 4)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5교(초 3, 중 2), 컨설팅(연중)

아. 치료지원

- 1) 지원영역: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기타 관련서비스 등 11개 영역 지원
- 2) 지원방법(대상자 수): 치료지원카드시스템(마중물카드)을 통한 지원(3,812명)
- 3) 치료지원기관 현장점검 및 지원 강화: 치료지원 전담팀 운영(6팀, 총 16명)

자. 통학지원

- 1) 지원방침: 학생 및 학부모 1일 최대 2회 대중교통 요금 지원
- 2) 지원시기(대상자 수): 연 3회 학기별 지원(2,124명)

차. 특수교육 지원인력 지원: 784명(교육청 지원 613명, 자활센터 지원 26명, 사회복지무 요원 145명)

카.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

- 1)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한 보조공학실 운영(총 3실)
- 2) 보조공학기기 정보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가이드북 비치
- 3) 장애유형별 거점 보조공학기기 대여시스템 구축(홈페이지)

다.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 1) '장애학생 인권보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공: 인권침해사례, 인권침해 대처법, 인권감수성 검사자료 등 제공
- 2)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시스템 운영(spe.pen.go.kr)

과. 특수교육대상자 가족 지원: 기관연계 찾아가는 가족 지원(40가족), 장애학생 가족 상담(60가족)

하.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확충

- 1) '22. 특수학급 신(증)설: 24학급(유 11, 초 8, 중 4, 고 1)
- 2) '23. 특수학급 신(증)설 수요 조사: '22. 6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합교육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가)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 교육(지원)청별 통합교육지원단(6팀) 구성
 - 나) 유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거점유치원 운영(5개원)
 - 다)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육 운영 및 통합교육지원실 구축 확대
- 2)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지원 강화
 - 가)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
 - 나)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교사 지원, 대학 연계 교육활동 지원 자원봉사자 운영
 - 다)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지원 프로프램 운영(20교)
- 3)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 강화
 - 가) 연구·선도학교 '정다운학교' 운영: 연구학교 2교, 선도학교 2교
 - 나)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함께하는 주제 중심의 통합교육 연구회 운영(1팀)
 - 다)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 협의회 운영, 장애학생 지원 전담부서(담당자) 지정
- 4) 일반학교 교원의 특수(통합)교육 역량 강화
 - 가) 일반학교 교원의 특수(통합)교육 관련 연수 강화, 통합교육 지원 자료보급
 - 나) 통합교육 활동 강화: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문화·예술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운영 권장
 - 다) 장애공감문화 확산

나.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1)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가) 교육공동체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1) 학교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및 분석

(2) 지역여건,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 반영 노력

* 기본교육과정은 교과군(별) 30% 범위, 공통교육과정은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편성·운영

나) 감염병 상황 등에 따른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1)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학사운영 방안 마련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 원격수업 운영

다)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편성·운영(2교)

라) 특성화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1) 고교학점제 모형개발 학교 운영(1교)

(2)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1교, 진로 집중학년제 운영 1교

(3) 현장 및 실습중심의 진로·직업교육 운영

— 직업교육 특성화 지원: 특수학교 3교(부산해마루학교, 부산혜원학교, 부산은애학교)

— 현장중심 전공과 실습 지원: 특수학교 9교(38학급)

— 원예체험 학습장 지원(4교),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15교), 다목적 직업
훈련실(12교)

마) 교육활동 전반에서의 인성교육

(1) 1학교 1인성 브랜드 실천 학교별 인성교육계획 수립·운영

(2) 인성교육중심 수업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3) 전 교원의 인성교육 관련 연수 연 1시간 이상 이수

바) 학생주도의 학생자치 활동 강화 및 참여와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

(1) 교육과정에 학생 자치활동 시간 확보 권장(월 1회 이상) 및 운영 내실화

(2) 교육과정 연계 민주시민 교육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

1)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가)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안내: '22. 1월

나) 나이스 기반 개별화교육계획: 치료지원 등 관련서비스 포함하여 작성

2) 개별화교육 운영

- 가) 교육과정 성취기준 중심 개별화교육계획 편성·운영
- 나) 국정 교과용 도서 및 학교(급)별·교과별 프로그램 자료 활용
- 다) 개별화교육지원 컨설팅: 지구별 자율장학 협의회, 학교컨설팅지원센터 활용

3)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 수립·운영

- 가) 개별화교육지원팀과 병행하여 긍정적 행동 지원팀 구성
- 나) 장애유형별 문제행동 중재 매뉴얼 및 가이드북 활용: 부산광역시교육청 제작(2014)
- 다)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특수학교 15교, 통합학교 20교 지원 운영
- 라) 긍정적 행동지원단 운영
 - (1) 현장지원단과 외부자문단으로 구성,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 (2)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전문기관(대학) 위탁 운영, 10명

라.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1)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 가) '자유학년제 운영지원단' 구성·운영(4명) 및 컨설팅(학교별 연간 2회 이상)
- 나) 교원 및 학부모 인식 개선을 통한 참여 공감대 확산

2)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 가) 자유학년제 활동 운영 내실화
- 나)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학교별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 다) 학습공동체 구축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 지원: 교과연구회 운영(13팀)
- 라)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직업탐색 프로그램' 운영 지원(영남권 선도교육청)

3)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 가)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
- 나) 교실수업과 연계된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설계 지원
- 다) 학교별 안전한 체험처 관리 및 체계 확립

마. 특수학교(급) 장학

1) 특수학교 장학

- 가) 학년초 현장지원장학: 학교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편성 협의('22. 4월, 15교)

- 나) 학기중 현장지원장학: 교육실습, 방과후학교, 지원인력 운영, 학교 현안 등 협의
- 다) 학년말 현장지원장학: 외부 전문가 참여 학교교육 성과관리, 자체자율장학 평가 등
- 라) 특수학교 지구자율장학협의회 운영: 연 2회(수업공개 및 주제·사례발표)
- 마) 특수학교 내 자율장학: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등

2) 특수학급 장학

가) 특수학급 현장지원장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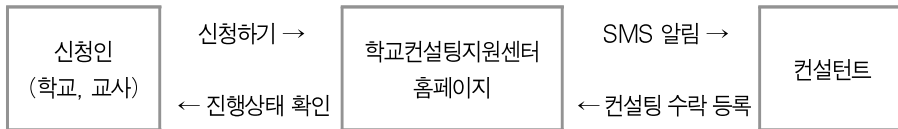
※ 특수학급 교육과정 및 통합교육 지원, 특수학급 신·증설, 노후 환경 개선 등 현안 협의 등

나) 특수학급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운영: 46개 지구

- (1)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수업공개, 사례발표 등 자율적 운영
- (2)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를 통한 동료장학 컨설팅: 연 4회 이상

3) 학교컨설팅지원센터(<http://consulting.pen.go.kr>) 활용 컨설팅 장학

- 가) 영역: 수업, 교육과정, 생활교육, 평가, 학교생활기록, 긍정적 행동지원 등
- 나) 특수학교(급) 컨설팅 장학 신청 절차



바. 특수(일반)교육 교원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1)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교자체 연수 활성화
- 2) 일반학교 교(원)장 및 교(원)감 대상 특수(통합)교육 지원 역량강화 연수
- 3) 통합학급 담임교사 특수교육 직무연수 이수 강화(60시간 이상)
- 4) 특수교육 직무연수 개설 확대

사. 특수(통합)교육 수업 개선 연구 활동

- 1) 특수교육지원단 운영 지원: 5팀(긍정적 행동지원, 통합교육, 수업, 자유학년, 교육과정) 33명
- 2) 특수교육 정책연구(선도)학교 운영
 - 가) 통합교육 연구·선도학교(정다운학교): 연구 2(문현초, 민안초), 선도 2(정관유, 다대초)
 - 나) 보완대체의사소통(AAC) 활용 연구학교 운영: 1교(부산해남학교)

- 3) 특수(통합)교육 연구활동 지원
 - 가) 특수학교별 자유학년제 연구회 운영: 13교(13팀)
 - 나) 특수·일반교사가 함께하는 주제 중심의 통합교육 연구회 운영: 1팀
 - 다)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연구회 운영: 1팀
 - 라) 일반학교 내 특수(통합)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권장

아.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계절학교 운영

- 1) 학생의 희망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한 문·예·체 중심의 특기·적성 프로그램 개설·운영
- 2) 유관기관 연계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및 계절학교 운영: 25기관
- 3) 장애특성을 고려한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4) 특수학교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6교

자. 문화·예술·체육 교육 강화

- 1) 특수학교(급) 문화예술체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2) 특수학교 1인 1기 문예체 교육 및 특수학교(급) 문화예술체육 동아리 지원 (특수학교(급) 22교)
- 3) 장애학생 스포츠클럽 등 1인 1기 배양
- 4) 제1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8종목, 선수 54명)

차. 특수학교(급) 환경개선 지원

- 1) 노후 특수학급 환경개선 지원(22교 25학급)
- 2) 특수학교(급) 학급 신·증설에 따른 교실환경개선비 지원(26교 28학급)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급) 직업교육 지원

- 1)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지원: 부산해성학교 「꿈이룸」, 부산해마루학교 「에코해마루」
- 2)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운영: 특수학급 고등학생 대상 기초작업기술, 직업직무기능 프로그램 운영(10교 84명)
- 3) 직업교육 거점센터(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고등학교 특수학급 고등학생 대상 식품가공, 제과·제빵, 바리스타 운영(24교 179명)
- 4) 장애학생 자격취득과정 운영 지원: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전공과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참여형(21교 235명), 개인 참여형(7교 16명)

5) 진로·직업 지원 연수 및 진로 상담

나. 기관연계 직업교육 지원

- 1) 지역사회중심 기관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등학교 특수학급 배치 2, 3학년(40교 123명), 서구장애인복지관 등 18개 기관, 22개 프로그램 운영
- 2) 장애학생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 일반고 3학년(2교 3명), 부산직업능력개발원 특화훈련(외식산업, 실무작업 분야)위탁 교육
- 3) 장애학생 기관연계 직업평가 운영: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1, 3학년 특수교육대상자(30교 174명),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평가팀 연계
- 4)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특수학교(급) 고, 전공과 배치 특수교육대상자(32교 270명), 에어부산 등 10개 직종 직무체험 프로그램 운영

다. 장애학생 취업·진학 지원

- 1)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협의체 운영: 부산시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11개 기관(위원 14명) 참여
- 2) 장애학생 진로설계 아카데미 운영: 특수학교(급)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교원 대상 연수, 특강, 상담, 체험 운영
- 3)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운영: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3학년 및 전공과 배치 특수교육대상자(12명), 한국장애인개발원 위탁 현장실습 운영
- 4)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 특수학교(급) 고, 전공과 배치 특수교육대상자(110여 명), 영남권역 소재 대학교 교육과정 기반 대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
- 5) 학습중심 현장실습(취업연계) 운영 지원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가. 장애공감문화 조성 '세울림' 교육활동

- 1) 장애인식개선 교육지원
 - 가)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장애이해교육 계획 포함 안내
 - 나) 학교·교육청 직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연 1회 이상
 - 다) 교과서의 장애관련 내용 교육 충실: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장애이해교육 내용 지도 자료 활용
 - 라)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연 2회 이상(학기별 1회, 학년초 권장) 의무 실시

- 마) 특수학급 미설치교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비 지원: 147교
- 2) ‘세울림’ 교육활동
 - 가) 찾아가는 ‘세울림’ 장애이해교실 운영: 초·중·고등학교 400학급
 - 나) ‘세울림’ 인형극 공연: 유치원 100개원
 - 다) ‘세울림’ 공모전 운영: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및 비장애학생(52명 교육감 시상)
 - 라) 장애공감문화조성을 위한 문화공연: 초·중·고등학교 20교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장애학생 대상 성·인권교육 강화
 - 가) 장애학생 대상 찾아가는 성·인권교육 실시: 60교
 - 나) 교사, 학부모 대상 인권 및 성교육 연수: 연 2회
- 2)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교육의 내실화: 인권보호 예방상담프로그램(30교), 비장애학생 대상 찾아가는 장애인권교육(60교), 찾아가는 인권보호 인형극(20개 유치원)
- 3)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 가) 인권지원단: 총 6팀(시교육청 1팀, 교육지원청 5팀, 74명)
 - 나) 정기 현장지원 및 특별지원 실시: 연중
- 4) 장애학생 인권보호 실천프로그램 운영: 2교(신촌초, 학산여교)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가) 특수학교(급) 학생 안전사고 예방활동 학교교육계획 반영 및 수립: ‘22. 2월
 - 나) 장애학생 학교 담당자(재난대응 조력자) 지정·운영
 - 다) 장애학생 등·하교 시 보호자와 학생 안전 사항 인수인계 철저
 - 라)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전원 및 특수교육실무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마) 장애학생 교육실습,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사고 예방 강화
- 2)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
 - 가) 초등 1, 2학년 ‘안전한 생활’ 교과를 통한 안전의식 함양
 - 나) 7개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른 체험중심의 안전한 교육실시
 - ※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필수 반영)

- 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실종·유괴 예방
 - (1) 신고의무자(교직원, 강사 등) 교육 실시: 학기별 1회 이상(필수)
 - (2) 아동학대예방의 날(매년 11. 19.)과 예방주간 운영
 - (3) 매뉴얼에 따른 미인정 결석 학생(유아) 관리
- 3) 특수학교 안심 알리미 사업 지원
 - 가) 특수학교 재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에게 실시간 알림
 - 나) 위치추적 단말기 및 이용료 지원: 특수학교 13교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 지원: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홍보: '22. 11월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결과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 '22. 12월
- 다.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 1) 특수교육대상자 상급학교 진학 시 재진단·평가: '22. 7월~9월
 - 2) 특수교육대상자 상급학교 진학 선정·배치: '22. 10월
- 라. 특수교육 순회교사 역량강화 연수: '22. 8월
- 마.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역량강화 연수: 교사 연수('22. 9월), 학부모 연수('22. 6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합교육
 - 1) 통합교육 성과보고회: '22. 12월
 - 2)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담당자 워크숍: '22. 8월
 - 3) 특수(통합)교육 정책연구 결과 보고회: '22. 11월
- 나. 특수학교(급) 장학
 - 1)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기말 현장지원: '22. 11월
 - 2) 특수학급 현장지원
 - 가)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현장지원: 학교급별 5교 지원, 고(10학급)
 - 나)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46지구

다. 특수(일반)교육 교원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1) 일반학교 교(원)장 대상 특수(통합)교육 지원 역량강화 연수: '22. 7월
- 2) 진단·평가위원 전문가 연수: '22. 7월
- 3) 특수교육교사 수업역량 강화 연수: '22. 10월

라. 특수(통합)교육 수업 개선 연구 활동

- 1) 연구학교(정다운학교, AAC 연구학교) 실천-정리단계 협의회 지원: '22. 7월, 11월
- 2) 특수학교(급) 수업컨설팅 결과 분석: '22. 12월
- 3)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성과보고회: '22. 11월
- 4) 특수교육지원단(5팀) 전체 워크숍 운영: '22. 12월

마. 문화·예술·체육 교육 강화

- 1)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예선대회: '22. 7월
- 2) 교육감기 장애학생체육대회: '22. 9월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2022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실시: '22. 10월

나.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컨설팅 운영 지원: '22. 11월

다. 장애학생 일자리 참여 현황 및 현장실습 운영 점검: '22. 11~12월

라. My JOB 프로젝트 실시 결과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 '22. 12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가. 찾아가는 '세울림' 장애이해교실 운영: '22. 6~11월(초·중·고등학교 400학급)

나. '세울림' 인형극 실시: '22. 6~11월(유치원 100개원)

다. '세울림' 공모전 운영: '22. 5~6월(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및 비장애 학생)

라. 장애공감문화조성을 위한 문화공연: '22. 6~11월(초·중·고등학교 20교)

마. 교사, 학부모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연수 실시: '22. 9월

대구광역시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생애 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2. 추진 목표

- 가. 국가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 나.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 다.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

3. 추진 중점과제

-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다.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II 2022년도 추진 실적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 1) 즐거운 배움으로 꿈이 영그는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한 「대구특수교육원」 개원
 - 가) 대구특수교육지원센터 수직 증축 및 명칭 변경을 통한 대구특수교육원 개원(2021. 12. 8. 개원, 2022. 4. 22. 개원식, 소속: 유아특수교육과)
 - 나) 학생 맞춤형 체험교육, 연수 및 연구, 학부모 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 등 특수교육의 중심 역할 수행
- 2) 특수학교(급) 설립의 다양화, 특성화
 - 가) 직업교육중점 특수학교 개교(고등학교 30학급)
 - 교명: 대구이룸고등학교
 - 규모: 30학급(학생 수용 인원: 210명)
 - 개교: 2022. 3. 1.

나) 맘껏 놀이 중점 완전통합 단설유치원 개교

- 교명: 대구인지유치원
- 규모: 12학급(일반학급 6, 특수학급 6)
- 개원: 2022. 3. 1.

다) 2022학년도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운영

- 신설: 12학급(유 8, 초 3, 중 1)
- 증설: 12학급(초 10, 중 1, 고 1)

나. 특수교육교원 증원 및 전문성 제고

1) 특수교육교원 연차적 증원

- 가) 2022년 공립 특수교원 40명 증원 배치
- 나) 사서 및 전문상담교사, 장애교원 지원교사, 정원 외 기간제 교원 배치
- 다)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학교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 권장
- 라)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학교 교원 1명 추가 배치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업무 지원

-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직무연수 및 행동중재 전문가 연수 운영
- 나) 진단평가 및 보조공학기기 활용 등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
- 마) 문화예술 등 중점 운영학교에 관련 전공 특수교사 우선 배치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1)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평가 안내
- 나)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및 기타 편의시설 지속설치로 Barrier Free 구축

2) 특수교육환경 개선

- 가) 특수학급 급당 신(증)설비 지원: 급당 2,375만 원
- 나) 특수교육환경 리노베이션을 통한 교실환경 개선
 - 특수학교(급) 노후 직업관 환경개선 공사: 2교 3,924,332천 원
 - 특수학급 리노베이션: 14교 1,545,000천 원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통합교육지원 순회교사(45명)를 통한 통합학급 교사와 협력 수업, 통합교육 지원, 문제행동 중재, 장애이해 교육 등 실시

나) 교수, 의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으로 구성된 통합교육지원단(특수교육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별 5팀)을 구성하여 기본·정기 현장지원 강화

※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138명(대구특수교육원 21명, 동부지원청 29명, 서부지원청 23명, 남부지원청 39명, 달성지원청 26명)

다) 통합교육지원실(일반학교 내에 설치하는 통합교육 전담실) 10개교 운영

라) 다양한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21교 운영, 특색 있는 통합교육 프로그램 5개 운영

2) 대학 연계 특수학급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운영

가) 사업기간: 2022. 4. ~ 2022. 12.

나) 사업내용: 대구교육청-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봉사활동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예비특수교사 실습 운영비 지원

* 특수교사 수업 보조, 장애학생 교육활동 및 원격수업 지원, 교수·학습자료 및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학습꾸러미 제작 지원 등

다) 지원학교: (1학기) 15교(유 3, 초 10, 중 1, 고 1), 대학생 18명(2학기) 특수학급 수요조사 후 지속적으로 예비특수교사 지원 예정

라) 지원예산: 10,000천 원

3)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가) 유치원 통합교육 성과 제고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4개원 운영

나)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25개교 운영

다)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3개소)

－ 대구광명학교(시각장애), 대구영화학교(청각장애), 대구덕희학교(정서장애)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3시간 이상 이수)

2) 통합학급교사와 특수교사 통합교육 역량강화 연수 운영

- 3) 자격연수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1개 이상 포함 운영
- 4)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육교원이 함께하는 통합교육 연구회 3개 운영
- 5) 예비교사 통합교육 소양 강화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1) 특수교육 대구미래역량교육과정 편성·운영(대구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2-5호)
- 2) 특수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문화예술 및 직업교육 중점학교, 중도 중복장애교육과정 운영)
- 3) 특수학교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설계 및 성찰 주간 운영(11교, 17,500천 원 지원)
- 4) 특수교육 교육과정 직무연수 실시(A반: 관리자 및 전문직, B반: 수업지원단 및 특수교사, 각 15시간)
- 5) 특수교육 전문학습공동체 운영(52팀, 교원 340명)
- 6) 2022 특수교육 장학자료 발간(개별화교육계획,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전공과 교육과정)
- 7)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중도중복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시설, 재택 순회 및 병원학교 운영
- 2) 자료제작 및 구입, 여비, 운영비 지원 등 순회교육 지원 범위 확대
- 3) 순회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방법, 가족지원 방법 등

마.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 1)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여건 개선
 - 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 구축(심리안정실 등)
 - 나)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 2)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시범 운영 2교(세명, 보명)
 -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운영 예산 지원(20,000천 원)
- 3) 중도중복장애학생 자립생활 프로그램 운영 2교(예아람, 광명)
 - 중도중복장애학생 자립생활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15,000천 원)
- 4)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 운영 2교(성보, 보건)
 - 학교와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한 지원(81,000천 원)

바.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지원

- 1) 인력 지원 현황: 총 827명(실무원 568명, 사회복지무원 259명)
- 2) 특수교육지원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가) 신규채용 지원인력 3개월 이내 직무연수 연 30시간 이상(사회복지무원은 복무기간 내 90시간)
 - 나) 자체연수 강화: 지원 대상학생 맞춤형 학교별 자체연수 실시, 학기별 1회 이상
 - 다) 집합연수: 1, 8월 중 실시 예정(연 2회)

사.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 1)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내실화 방안 안내(2022. 2월)
- 2) 특수학교(급) 담임장학 시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3)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통한 지원
- 4)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원격수업 관련 내용 포함 작성

아.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및 병원학교 운영 강화
 - 가) 병원학교 4학급(영남대학교병원, 대동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병원) 운영
 - 나) 병원학교별 정규 특수교사 1명 배치
 - 다)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과지도를 위한 대학생자원봉사자 활용 및 특기·적성교육 실시
 - 라) 병원학교별 건강장애담당교원 연수회 실시 및 전국병원학교 홈페이지 홍보를 통한 건강장애이해 증진
 - 마) 병원학교별 학교복귀지원프로그램 지원 및 1:1 맞춤형 찾아가는 학교복귀 지원프로그램 운영
- 2) 원격수업 운영 지원 강화
 - 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꿈사랑학교, 스쿨포유) 운영
 - 나) 교과 선택권 확대, 창의적 체험활동 제공 등 교육내용 다양화
 - 다) 건강장애 선정절차 과정 중에도 필요시 선교육지원 등 교육 공백 최소화
 - 라) 스쿨포유 초등과정(5학년) 화상강의 전담교사 배치·운영(대구특수교육원 내 위치)

자. 특수교육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 구축
- 2) 특수교육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 가) 특수교육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5개(대구특수교육원 1개원, 교육지원청 4개 센터)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노력
 -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정원을 81명에서 98명으로 증원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라) 특수교육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
 - 마) 특수교육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직업·체육프로그램 운영
 - 바) 유관기관 연계 '장애학생인권지원단' 기능 강화(총 101명)
 - 관할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상담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인권지원단 구성
 - ※ 대구특수교육원(23명, 내부위원-6명, 외부위원-17명)
 - 대구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16명, 내부위원-6명, 외부위원-10명)
 - 대구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17명, 내부위원-6명, 외부위원-11명)
 - 대구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22명, 내부위원-5명, 외부위원-17명)
 - 대구달성특수교육지원센터(23명, 내부위원-4명, 외부위원-19명)
 - 더봄학생 중심으로 관할경찰서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활동
 -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특별 지원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 '위드심포니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한 장애학생 문화예술분야 진로 직업교육 지원
- 2) 고교 특수학급 연합 '빛솔합창단', 보명학교 '소리나무합창단' 등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 3) 지역대학 연계 특수학교(급) 특수교사 문화예술교육 직무연수(실기) 운영을 통한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지도 역량 강화
- 4) 대학연계 찾아가는 문화예술체육 교실 운영(60교), 문화예술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한 장애학생 1인 1기 계발 및 문화예술 지원 강화(학생동아리 10팀)

3.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학년제 확대·발전

- 1)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지원단 운영
- 2)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컨설팅 실시(2회)
- 3)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찾아가는 맞춤형 직업탐색 프로그램 지원: 10개 특수학교
- 4) 자유학년제 운영 자료 제공 및 연수: 발달장애인용 직업흥미검사도구, 나만의 진로 가이드북
- 5)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10개 특수학교
- 6) 진로체험버스 운영: 2교(예아람, 남양)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정착
 - 가)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2교(남양, 선명)
 - 나) 학교 간 진로직업교육 중점 운영 2교(성보, 보명)
 - 다) 중도·중복 장애학생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1교(보건)
 - 라) 전문직업인 양성 특화 교육과정 운영 3교(예아람, 성보, 보명)
 - 마)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내실화
 - 5교 연합 학교기업 운영(보명, 광명, 영화, 보건, 덕희학교)
 - 바) 특수학교(급) 전공과 연구회 운영(중심교: 대구선명학교)
 - 전공과 운영 사례집 발간
 - 사) 진로직업 업무 전담 지정
 - 진로전담교사 특수학교 교당 1명 배치
 - 현장실습 전담교사 배치(특수학교 교당 1명)
- 2)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 사후관리 체계 확립
 - 가)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 협의체 운영 지속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학교기업, 거점학교, 특수학교 전공과,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구)청,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등
 - 나) 장애특성에 적합한 진단 및 직업평가 체계 구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등 직업평가 협업

- 다) '학교 내 장애학생일자리' 사업 내실화
 - 4개 공립특수학교 36명, 특수교육원 및 4개 특수교육지원센터 10명 적용
 - 취업 전 직장 적응훈련, 사회 적응훈련 강화, 추후 사업체 취업으로 연계
- 3)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강화
 - 가) 한국장애인개발원 총괄 위탁,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수행기관 지정 운영
 - 나) 고3, 전공과 특수교육대상자 현장 맞춤형 일자리 적용(연 12명)
- 4) 특수교사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
 - 가) 특수교사 진로직업교육 실기 직무연수 과정 개설(하계 방학 중, 7개 과정 예정)
 - 나) 특수교사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 실기 직무연수(하계 방학 중 6개 과정 예정)
- 5) 대구특수교육원-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협업 운영 활성화
 - 가) 진로직업 및 특수체육 프로그램 운영(1학기 1,849명)
 - 진로직업 11과정, 특수체육 2과정 운영
 - 나) 학교 내 장애학생 일자리 운영 협업(10명)
 - 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양성과정 대상자 모집 및 취업 지원
- 6) 장애학생 직업실기 자격취득 지원 10교(특수학교 7교, 특수학급 3교)
 - 바리스타, 조향사, 정리수납전문가, 드론, 플로리스트 등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1) 유·초·중·고등학교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의무 실시
- 2) 교직원 대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고용노동부), 장애인식개선 교육(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각 1회 의무 실시
- 3) 유·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 장애인식개선 교육 예산 운영(학교별 100만 원)

나. 지역사회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공연활동 활성화

- 1) 대구교육의 자랑 특수학교(급) 연주단 및 합창단 홍보 강화
 - 위드심포니오케스트라(대구예아람학교), 빛솔합창단(고교특수학급 연합)
 - 그 외 특수학교별 특화 연주, 합창, 밴드 등 팀 운영 지원
- 2) 대구학생동아리한마당, 대구학생문화센터 운영 프로그램 출연 기회 마련
- 3) 신문 및 뉴스보도, 방송출연을 통한 장애 공감 메시지 확대
- 4) 장애인 문화예술분야 취업 도전 및 현장 현장 인식개선 노력
- 5) 대구교육박물관 내 특수교육관 지속 운영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설립 다양화

- 1) 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 2) 12학급 이하의 작은 규모·단일과정 특수학교, 특화된 분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

나. 특수교육교원 증원 및 전문성 제고

- 1)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 통합교육 업무 지원 교사 배치 추진
- 2) 특수교사 진로직업 실기 직무연수 실시(2018~),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교원 직무연수(2019~),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 실시(2021~)
- 3) 특수학교(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장학활동 강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통합교육지원 순회교사의 계속적 배치를 통한 찾아가는 통합교육 실시
- 2) 행동분석가, 교수, 대학연계 등을 통한 '행동중재지원센터' 운영
- 3) 통합교육 연구학교, 정다운학교 운영을 통한 통합교육 협력 모델 개발 및 특수·일반교사의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지원 강화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관리자 특수교육 직무연수 지속 추진
- 2) 특수교육 교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교수평기 설계 및 성찰 주간 운영
- 3) 통합학급교사와 특수교사 통합교육 역량강화 연수 지속 운영

3.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내실화 운영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보급

나. 대구특수교육원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협의체 구축 및 프로그램 확충으로 학생 체험 활동 지원 강화

다. 특수학교(급) 전공과 연구회 자체 컨설팅 및 협업 강화, 안전한 현장실습 강화

라. 특수학교 진로 전담교사, 현장실습 전담교사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활동 강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장애인식개선 영상 콘텐츠(영화 ‘학교 가는 길’) 지원(235교 5,000학급)

나.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제 강화

다. ‘위드심포니오케스트라’ 작은 연주회 및 정기연주회 개최, ‘빛솔합창단’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기본 방향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함께하는 삶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실현

2. 추진 방향

- 가. 장애유형별 특성·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 나. 안정적인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학생 통합교육 내실화 도모
- 다. 예방중심 지원체계 구축으로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 라.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으로 장애학생의 미래생활 역량 강화

3. 중점 추진과제

-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 2) 특수교육 배움중심 수업지원 강화
 - 3)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지원
 - 4)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 나. 통합교육 지원 체제 강화
 - 1) 무장애학교 조성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2) 장애이해교육 강화
 - 3)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 4)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2) 장애학생 인권존중 교육
 - 3) 더봄학생 및 위기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 4) 장애학생 행동지원 체제 강화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 배치
- 2) 순회 특수교육 지원
- 3) 장애학생 직업전환 프로그램 운영
- 4)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5)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 6) 장애유형별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7)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 8)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지원

마.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 1)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 2) 진로·직업교육 특성화·전문화
- 3)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내실화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 강화
- 4) 현장실습 및 일자리 사업 운영 확대
- 5) 교사 및 학부모 진로·직업교육 역량강화

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1)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 지원
- 2)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 3)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4) 특수교육 지원인력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II 2022년도 추진 실적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 1)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 가) 특수학급 신증설(64개): 유치원 14학급, 초등학교 37학급, 중학교 9학급, 고등학교 4학급
 - 나) 특수학급 노후화 환경개선(33교): 유치원 1원, 초등학교 14교, 중학교 11교, 고등학교 7교
 - 다) 특수학교 전공과 증설: 1교(인천청인학교) 2학급

- 2) 특수학교 설립의 다양화·특성화
 - 예술특화직업교육 운영: 4교
 - 공립 특수학교형 중도중복장애학급 운영: 4교, 8학급

나.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1)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향상
 - 가) 특수교육교원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
 - 특수교육 배움중심 수업지원단 활동: 특수학교(급) 특수교사 53명
 - 특수교육 수업지원단 역량 강화 직무연수: 66명(6시간)
 - 나) 특수교육대상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
 - 공립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컨설팅 및 연수: 6교 6명, 10회 20시간
 -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 연수: 15명(150시간)
 - 보완대체의사소통전문가 과정(기초) 연수: 100명(15시간)
 - 다) 특수교육교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교간형 27개, 449명
- 2) 특수교육교원 심리상담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돈움터 연계 지원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 2) 장애영역별 보조공학기기 지원
 - 중도중복장애학생 및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청각·시각) 중심 지원: 53교 64명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순회교육 지원(순회) 특수교사 확대 배치: 4개 센터 5명 증원
- 2) 대학연계 장애학생 교육지원: 총 18명(근로장학 18명)
- 3) 통합교육지원 협의체 구성: 학교 관리자 및 교원, 유관 외부 전문가 등 6개청 104명
- 4) 다름다운 통합교육 중심 학교: 5교(유 1, 초 1, 중 1, 고 2)
- 5) 통합교육 활성화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정다운학교' 1교(청람초교)
- 6)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교육(지원)청별 1개단, 총 6개 지원단 운영

7)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상담 실시: 64교 84명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찾아가는 청각장애 이해교육: 29교
- 2) 청각장애 교원 문자 통역 지원: 6교 7명
- 3) 영화와 도서로 시작하는 장애공감 수업 레시피 지원: 90교

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지역 여건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2)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 중도중복장애학급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교사 1명 지원센터 배치
 - 중도중복장애학급 거점학교(1교) 운영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사례 공유
- 3)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수 및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강화 도모
 -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육과정 역량강화 연수(6시간)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 순회교육 지원 확대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지원 확대: 특수학급 미설치교 지원 방안 다양화, 특수학급 설치교 지원 강화
- 3)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도모: 교과 학습 및 정서행동 지원 자료 개발
- 4) 특수교육대상자 순회수업 지원: 총 70교(유 36개원, 초 20교, 중 10교, 고 4교)
- 5) 오미크론 대응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지원: 35교(초 13교, 중 5교, 고 11교, 특수학교 6교)
- 6) 유치원 통합학급 장애이해교육: 21개원

마.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 1) 중도중복장애특수학급 설치 확대: 초 10학급, 중 5학급, 고 3학급, 특수학교 8학급
- 2) 중도중복장애특수학급 거점학교 운영: 양지초교 1교
- 3)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전문 지원인력(간호사): 7교 10명 지원
- 4) 특수교육-치료(의료기관) 협의체 구성: 13명
- 5) 중도중복장애학생 특별건강관리지원: 4교 10명, 병원 1기관 연계(20,000천 원)

바.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지원

- 1)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636명
- 2) 특수교육 원격연수 지원: 2시간(예정)

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내실화

- 1)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지원
- 2)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특성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 지원 강화

아. 건강장애학생 지원 강화

- 1)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지원
 - 가) 병원학교 운영: 인하대병원학교
 - 나) 전문인력 지원: 병원학교 파견 특수교사 1명, 초등 원격수업 특수교사 3명
 - 다) 원격수업 지원: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초·중·고 98명(요보호 포함 122명)
- 2) 건강장애학생 적응 지원
 - 가)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심리상담 지원(5명), 학습지원(10명), 공예프로그램(24명), 원격 악기교육(5명)
 - 나) 건강장애 담당교사, 담임교사 대상 업무지원 및 수시상담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확장 이전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가) 특수교육 전문인력 배치 확대: 특수교사 5명 증원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진단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1회
- 3)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3개(청각, 시각, 장애영·유아)
- 4)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14개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1) 일반학교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지원: 유·초·중·고 대상 91개 운영
- 2) 특수학교 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지원: 9교 850명

3.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발전

- 1) 인천 중학교 과정 설치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전면 운영: 10교
- 2)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맞춤형 직업탐색 프로그램 운영: 10교
- 3) 자유학년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학습공동체 조직: 9팀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특성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가) 진로교육 집중학년제 운영을 통한 진로체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5교
 - 나)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2교
 - 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자립생활 중심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3교
 - 라) 예술 분야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예술 특화교육과정 운영: 3교
(미추홀학교: 발달장애, 음악 / 인천해광학교: 시각장애, 음악 / 인천인혜학교: 발달장애, 미술 / 인천연일학교: 발달장애, 음악, 미술)
 - 마) 특수학교 학교기업 마을연계 직업교육 운영: 1교(미추홀학교)
 - 바)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내실화: 4교(바리스타 자격증반 외 16개 직종 직무 교육, 학부모·교사 진로직업역량 강화 교육)
 - 사) 전공과 설치 확대 및 개별 맞춤형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교육과정 운영(특수학교 전공과: 8교 42학급, 대학형 전공과 1교 2학급, 일반학교 전공과: 2교, 2학급)
- 2) 장애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및 일자리사업 활성화
 - 가) 장애학생 현장적응 역량강화를 위한 '산업체도제교육형현장실습' 확대 운영: 상반기 100명
 - 나)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운영: 4개 수행기관, 상반기 24명
 - 다)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 및 학교내 일자리 참여 강화
 - 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CJ로지스틱스 연계 물류산업 현장실습 운영: 5명
- 3)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체계 강화
 - 가) 인천 교육·고용·복지 진로직업지원 협의체 구축(13기관) 및 협의회 개최(4회)
 - 나) 물류산업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교육청-공단-CJ택배-SL로지스틱스

다) 진로직업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직업교육 거점센터 진로직업프로그램 운영: 강남영상미디어고(4개교 6학급), 인화여고(19개교 30학급), 계산공업고(22개교 30학급), 박문여고(19개교 26학급), 인천특수교육지원센터(21개교 77학급)
- 2022 인천 장애학생 전환지원을 위한 진로정보지 개발·보급, 진로 소식지 내일ON 발행(계간지)

라) 인천 교육·고용·복지 진로직업지원 협의체 진로직업지원 역량강화 공동 워크숍 개최(특수교사, 특수취업지원관 90명, 6시간)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 1)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2) 일반학교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3) 각급 학교, 교육기관별 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4) 영화와 도서로 시작하는 장애공감 수업 영상 지원: 중학교 50교, 고등학교 40교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6개
 - 가)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정기 현장지원: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지원 실시
 - 나) 일반학급 대상 인권존중 교육 실시
 - 다) 특수학급 대상 자기주장 및 자기결정 교육 실시
- 2) 장애학생 인권(성)교육 강화
 - 가) 초·중·고등학교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인권교육 연 2회 실시
 - 나) 찾아가는 특수학급 성교육 및 인권교육 실시
 - 다) 찾아가는 개별 성인지 교육 실시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특수학교 등·하교 안전계획 수립·운영: 10교
-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강조: 1회
- 3)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현장 점검 1회(10교)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체제 구축

-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교육적 조치 협의체 운영: 6개 센터

-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강화 및 선정·배치 절차 준수
 - 매뉴얼 제작 보급(1회)

마.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제 강화

- 1)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개인별, 학교별 방과후교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개인별, 학교별 방과후교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6,141명, 3,415백만 원
- 2) 특수학교(급) 종일반 운영: 93학급, 종일제강사 93명 배치(사립 12학급, 공립 81학급)
- 3)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3,886명, 3,087백만 원
- 4)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1,406명, 305백만 원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특수교육 운영 예산 지원 확보
 - 특수교육진로직업(885백만 원), 특수교육운영(각종 교육지원사업, 926백만 원) 특수교육전문성제고(102백만 원),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552백만 원)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지원(14,227백만 원), 특수교육 환경개선(4,468백만 원)
- 2) 지역 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청각장애, 시각장애, 장애영·유아, 3개 운영, 41백만 원)
- 3) 특수학교 시설·설비 확충 지원
 - 공사립 특수학교 6교, 878백만 원
 - 공사립 특수학교 전자칠판 설치 지원: 108학급 540백만 원
- 4) 특수학급 신·증설 및 환경개선비 지원: 신증설 55교, 환경개선 33교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 1) 일반학교(원) 설립 계획 시 특수학급 설치 계획 포함 조치
- 2) 특수학급 정원 확보와 특수학급 신·증설 연계 추진
- 3) 특수학교 진학 수요 파악 후 특수학교 학급 증설 추진

나. 특수교육교원 및 통합학급교원 전문성 강화

- 1) 신규특수교사 역량강화 및 통합학급 통합교육 직무연수 실시
- 2) 특수교육교원 교과지도, 자유학년제, 특수교육 핵심영역 및 장애유형별 역량 강화 연수
- 3) 특수교육 행복 수업나눔을 통한 협력수업 우수사례 공유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1)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및 현장 활용 지원
- 2) 무장애학교 조성을 위한 환경 구축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학생, 학부모, 교사의 통합교육지원 요구 수렴 및 지원 형태 다양화
- 2) '다름다운 통합교육' 거점 학교 운영 자료 공유 및 우수사례 일반화
- 3) 대학연계 장애학생 교육지원 확대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유·초·중·고등학교 관리자 연수 실시
- 2) 유치원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실행을 위한 협력교수 사례 공유
- 3) 일반학교 통합학급 담당교사 역량 강화
 - 가) 통합학급 담당교사 대상 연수과정 참여 적극 홍보
 - 나)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통합학급 교사 연수 실시

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및 적용을 위한 연수 지원
- 2)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특수학급 미설치교 및 과밀학급 순회교육 강화
- 2) 특수교육 핵심분야 전문가 인력풀 구축 연수를 통한 순회교사 역량 강화

마.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 1) 중도중복장애특수학급 전문가팀 컨설팅 지원(의료 및 보조공학기기)
- 2)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 지원인력 대상 연수 지원

바.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지원

- 1)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
- 2) 특수교육실무사 집합연수 기회 확대

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강화

-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안내
- 2) 특수교육대상자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아.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한국교육개발원 원격수업 운영: 초·중·고등학생 지원
- 2) 병원학교 운영: 인하대병원학교
- 3) 원격수업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6월~12월)
- 4) 병원학교 교사 및 일반학교 담임교사 대상 컨설팅: 4회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6월~12월)
- 2) 장애영·유아 내방 특수교육 및 치료지원(6월~12월)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강화

- 1) 일반학교 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평가(12월)
- 2) 특수학교 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평가(12월)

3.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가.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발전**

-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맞춤형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가(10교, 7월~12월)
- 2) 자유학년제 학습공동체 교사 수업 나눔과 공유(11월)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특성화

- 1)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학교기업, 및 예술특화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2) 「대학형 전공과」 운영 및 2023 신입생 선발(7월~8월)
- 3) 교육·고용·복지 진로직업 협의체 학부모대상 진로진학 설명회 개최(11월)
- 4)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운영(30명, 9월~12월)
- 5) 산업체도제교육형 및 물류산업 학습중심 현장실습 하반기 사업 운영(9월~12월)
- 6) 직무위탁교육 및 진로직업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하반기 사업 운영(8월~12월)

- 7) 장애학생 대학생생활체험 프로그램 운영(4월~10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 1) 유·초·중·고등학교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확대
- 2) 고등학교 찾아가는 인권존중 교육 확대
- 3) 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연수 실시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정기 현장지원 및 특별지원
- 2)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 대상 인권(성)교육 및 인권감수성 프로그램 지원
- 3) 특수학교 교육감소속 근로자 및 보호자 인권교육 지원
- 4)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굴 및 사례 공유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특수학교 교육계획에 안전 계획 수립 및 점검: 2학기 1회
- 2) 학교 실정을 고려한 상황별(교통, 화재, 지진 등) 실질적인 안전대피훈련 실시
- 3) 재난상황 대비 장애 유형별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상황별 매뉴얼 정비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체제 구축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협의회 운영(6월~12월)
- 2) 취학의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적령 취학 독려(8월~12월)
- 3) 상급학교 진학 학부모 상담 및 설명회(8월~12월)

마.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제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및 통학비 지속적 지원
- 2) 특수학교(급) 종일반 운영 확대
- 3)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확대 지원: 보건복지부 발달재활바우처 사용자 중복 지원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특수학교(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2) 특성화 거점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장애유형별 지원 강화
- 3)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현장 지원
- 4) 통합교육지원단 구축에 따른 맞춤형 통합교육 운영 확대

광주광역시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목표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2. 추진 방향

가. 국가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나.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다.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

3. 중점 추진 과제

구분	세부 추진 내용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1-1. 특수교육기관 확충 1-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1-3.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2-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2-2.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2-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2-4.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2-5.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2-6.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내실화 2-7.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2-8.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2-9.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2-10.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3.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3-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지원 강화 3-2.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3-3.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4-1.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4-2.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4-3. 장애학생 안전 강화 4-4.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4-5.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제 강화 4-6.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II 2022년도 추진 실적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 특수학교(급) 수용률 고려한 학급 신·증설 실시

배치 유형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일반학급			총 계
	유	초	중	고	소계	공립	사립	소계	
신설	4	2	2	0	8	0	0	0	8
증설	1	0	1	0	2	5	1	6	8

- 2) 특수학교(급) 설립의 다양화·특성화
 - 유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4교 5학급)
 - 지역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1) 특수교사 배치 개선
 - 가)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의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 권장
 - 나) 장애학생, 가족 등 상담 및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 다) 진로교육법 시행에 따라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를 점진적으로 배치
- 2) 예비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가) 교실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 나) 지구별 특수교육 협의회를 통해 특수교육 및 특수학급 운영 관련 정보 공유 등 교실 수업 개선
-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 가)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교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나) 교육지원청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심리 및 법률 상담 지원

다.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평가 방안 마련

- 나)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등 보조공학기기 대여 시스템 구축
 -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 편의를 위해 통학차량 및 지원인력 지원, 통학비 지원 등 통학지원
- 2)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가)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사 배치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 나)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기회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2원 운영
 - 다)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 유아학비 외 사립유치원 추가지원: 1인당 월 10만 원 범위 내 실제 경비 추가 지원
 -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 가)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대학생 자원봉사제 운영(28교 41명), 통합교육 동아리 운영(11교)
 - 나)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및 운영
 -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전문적 교육지원을 위해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각 및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 3)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 강화
 - 특수·일반교사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정보공유, 협력교수 등 협업 강화
-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가)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권장
 - 나) 예비 특수교사 교육실습 시, 통합학급 운영 등 통합교육 관련 실습 적극 권장

2)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육교원이 함께 하는 학습공동체 권장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1) 지역 여건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정 교과(진로와 직업)를 중심으로 중점학교 운영 지원

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

나)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강화

3)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학교(급)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특수교육 현장연구 및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위한 특수교육 실천사례연구 운영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 순회교육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나) 의료기관, 복지시설, 가정에 있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교 영·유아 순회학급 10학급 운영

2)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수업 지원을 주 3회 이상으로 확대 권장

마.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심리안정실 등 특수학교 교실 환경 여건 개선

2)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생활기능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3) 의료기관,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체장애 특수학교에 특수교육-치료지원 연계망 구축

바.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실무사 운영·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 지원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 우선 지원
- 나) 학교별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계획 수립·운영 및 연수 실시
- 다) 특수교육실무사가 처리하여야 할 업무 명확화
- 라) 특수교육실무사 순환근무제 실시

2)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지요원 배치 및 교육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 나) 학교별 사회복지요원 대상 장애이해·인권 교육 등 연수계획 수립·운영

사.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가)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 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 나)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 다)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 라)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

아.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제공

- 가)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위해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
- 나)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병원학교 운영: 학마을 병원학교 1학급 운영
- 다) 병원학교 위탁 운영: 여미사랑 병원학교(화순), 느티나무 병원학교(나주)

2) 원격수업 운영 지원 강화

가) 건강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운영 및 정규 교과 콘텐츠 제공 등 교육지원 강화

나) 원격수업 위탁 운영: 한국교육개발원, 꿈사랑학교

3)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전문직, 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직원, 전문상담 및 통합교육 지원 등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전보 우대, 전문성 신장 기회 우선 제공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가) 지역 여건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전문적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 센터를 특성화하여 운영: 진로·직업교육, 시·청각장애교육,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장애영유아교육 등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치료지원비(월 120천 원 범위 내) 지원, 학생 및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 보조기 지원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가) 진로상담 및 직업평가, 사업체 직무체험 등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직무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1)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나)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체험 기회 제공 및 문화향유권 확대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및 장애학생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3.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지원 강화

-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운영 지원
 -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확대·운영을 위해 다양한 운영 방안 모색
 - 나)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자유학기과 특수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제, 고등학교 진로·직업교육과정 등과 연계를 통한 미래 진로설계 지원 강화
 - 특수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제 운영 2교: 광주선광학교, 광주선명학교
 -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1교: 광주선우학교
 - 다)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자유학기제 지원 체계 확립
-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가) 장애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학생중심의 수업 활성화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으로 학생이 행복한 교실수업 개선
 - 나)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개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보급
- 3)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 및 질 관리 지원
 - 가) ‘꿈길’ 시스템을 통한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 온라인 매칭 확대 및 진로 체험처 점검·활용 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질 관리
 - 나) 학교 주관 체험처 활용 결과의 누적·통계 관리로 현장 업무부담 경감 및 질 관리 효율화
- 4)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 가)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양질의 체험처 및 프로그램 확충으로 학생 체험활동 지원 강화
 - 나)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광주광역시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장애학생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가) 지역사회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꿈길’ 등을 활용하여 양질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강화
 - 나)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특수학교 1교(광주선우학교)
 - 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2)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착
 - 가)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여 학생 보호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유관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효율화 도모
- 3)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 가) 지역사회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의 활성화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 다) 장애학생의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가 원스톱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연계한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 협의체' 구성
- 4)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안정적 배치 지원
 - 가)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배치 및 운영 지침 마련 안내
 - 나)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특수학교 5교
 - 다)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사 연수 및 정기 협의 실시
- 5)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체계 강화
 - 학부모 대상 자녀의 진로·취업 등 미래 진로설계를 위한 충분한 자료 제공

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 1) 학령기 의무교육(초·중·고)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성인에 대한 학력보완 등 맞춤형 교육 및 지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 (2017. 7. 1.)
- 2) 장애인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5기관(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기관 포함)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 1)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가) 유·초·중·고 학생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다) 교육청(직속기관) 및 학교 소속 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2)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홍보 강화

- 가) 유·초·중·고등학생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및 홍보 콘텐츠 활용 안내
- 나) 관내 기관 및 학교 대상 장애 인권 주간 운영(2022. 4. 18.~4. 29. 2주간)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 내실화

- 가)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연계
- 나)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점검 내실화

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가) 교육청 전문직, 지역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나)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 기능 수행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육, 연수 및 지역 내 학교 지원 활동

3)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가) 유·초·중·고 비장애학생 대상으로 장애인권을 포함하여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실시 정착화
- 나)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다)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 등 신설·강화

4)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지원단과 연계한 행동지원 전문가단 운영
- 나) 가족 및 전문가 협력을 통한 문제행동 예방 및 조기 대처 지원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특수학교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및 운영
- 2) 교육 현장 특성을 고려한 재난상황별(교통, 화재, 지진 등) 실질적인 안전대피 훈련 실시
- 3)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부모교육 및 상담,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홍보
- 나)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경우,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진단·평가 팀 구성·운영
- 나)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 라)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및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마.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제 강화

1)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

- 가) 지원이 필요한 가정(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 중 희망자 우선 지원
- 나)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29학급, 급당 운영비 2,000천 원 지원
- 다)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11학급, 급당 운영비 2,000천 원 지원

2)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운영

- 가) 특수교육대상자 소질·적성 계발, 사회적응력 신장, 직업교육, 학생·학부모의 요구, 학교 여건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별 지원
- 나) 특수학교(급) 교내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월 550천 원 지원
- 다) 학교 밖 특기적성교육비 개별지원: 월 100천 원 내 실비지원

3) 방학프로그램 운영

- 가) 특수학교(급)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한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 나) 학교, 지역사회 비영리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선정에 의한 방학학교 프로그램 운영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교육 전담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 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인력 적정 배치
- 나)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인력의 연수 등 역량 강화

2)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급 신·증설 시 교육 환경구축 운영비 지원: 급당 50,000천 원 지원

- 나) 특수학급 지원을 위한 목적성 예산(특수학급 운영비, 직업교육 운영비) 지원
- 다) 통합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운영비 편성(학교표준교육비의 1% 내외 권장)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 1) 유·초·중·고등학교 설립 시, 특수교육대상자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 2) 특수학교 과밀, 원거리 통학 해소 등을 위해 특수학교 신설 추진(2023년 3월 1교 개교 예정)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1) 지구별 특수교육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지원
- 2) 특수교육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위한 특수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추진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1) 학교단위 평가 시 특수교육대상자가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평가조정 적용
- 2) 특수교육대상자 및 담당교사가 보조공학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현장 지원
- 3)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지원
- 4)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추진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 특수교육 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60시간 이상) 참여
- 2) 통합학교 교(원)장의 특수교육 관련 집합연수 실시: 3시간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1)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을 위한 2023학년도 광주광역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발·보급
- 2)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지원을 통한 직업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및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 1)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 파악 및 순회교육 실시
- 2) 학생의 문제행동 중재, 건강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 요청 시 컨설팅 실시 및 협력 지원

마.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지원

- 특수교육 지원인력 대상으로 맞춤형 학생 지원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바.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 1)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현황 점검
- 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관련 컨설팅 실시 및 우수사례 공유

사.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시스템 운영 지원
- 2) 건강장애학생 학교적응력 신장 및 학업격차 최소화를 위한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생애주기별 전환교육프로그램 장학자료 개발·보급
- 2) 특수교육지원센터 홍보, 특수교육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특수교육 지원 체계 구축

자.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장애학생 문화체험 활동 운영 및 지원
- 2)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운영

3.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지원 강화

- 담당교원 역량 강화 및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교원 연수 및 운영성과발표회 운영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장애학생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 2)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질 높은 진로교육 제공을 위한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운영

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기현장지원 실시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연수 실시
- 2) 행동지원전문가단 운영을 통해 문제행동 중재 방법 등 컨설팅 실시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특수학교(급) 노후시설 개선 및 수업환경 개선 지원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 1)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실시
- 2) 초·중·고등학교 및 전공과 진학을 위한 부모, 교사 대상 설명회 및 진단·평가 실시

마.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제 강화

- 1)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및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운영
- 2) 방학학교 프로그램 운영 기관 선정 및 지원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특수학급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실시

대전광역시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역량 강화

가. 추진 방향

- 1)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
- 2)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 3) 가정, 학교, 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나. 중점 추진 과제

-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2) 통합교육 지원 강화
- 3)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II 2022년도 추진 실적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 1) 특수교육기관 확충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기회 확대
 - 가) 직속기관 ‘대전특수교육원’ 운영을 통한 특수교육 지원 행정력 강화
 - 나)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 특수학교 191학급 운영(전년 대비 5학급 증가)
(대전맹학교 23, 대전혜광학교 39, 대전가원학교 49, 대전해든학교 30, 대전성세재활학교 15, 대전원명학교 35)
 - 특수학급 386학급 운영(전년 대비 8학급 증가)
- 2) 특수학교(급)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가) 장애학생의 재능 발굴과 진로 탐색 지원을 위해 특정 분야에 특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기반 마련
 - 나) 고교학점제 도입 등에 대비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위한 학점제형 운영 방안 검토

3) 특수학급 설립의 다양화, 특성화 고려

- 가) 12학급 이하의 작은 규모·단일과정, 특화된 분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 설립 방안 검토
 -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내 6학급 설립('22년 12월 예정)
- 나) 유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유치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 통합유치원은 유치원 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 담임 및 협력교수 형태로 운영
 - 어울림유치원 개원('22년 4월)
- 다) 지역 여건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
 - 중·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분야 중점 특수학급(통합형 직업교육 거점 학교) 3교 운영
 - 병원학교, 병원과전학급 등 병원 내 특수교육기회 제공 확대

나.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1) 특수교육 교원 배치 개선

- 가)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2학급 이상 설치교 진로·직업중심교사 배치(24명)
- 나)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담당교사 배치를 통한 진로·직업교육 운영 지원
- 다) 시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에 수어·점자 등 관련 자격 교원 배치

2) 전문성 신장

- 가) 특수교사의 교과별 수업 및 장애유형·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 연수 확대
-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특수교육 교원 대상 장애인권교육 핵심교원 연수 및 전달 연수(국립 특수교육원)
 - 특수학교 관리자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사안 대처 역량 강화 연수(5시간 이상)
 - 일반교원 대상 자격연수 과정 및 60시간 이상 직무연수 과정에 장애 이해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과목 1개 이상 개설
- 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 확대
- 라) 교실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조직·운영 활성화 지원

3) 특수교육 교원 심리상담 소진 예방을 위한 에듀힐링센터 프로그램 연계 강화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평가 방안 마련
 - 학교단위 평가 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평가조정 적용
- 나)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강화
 - 특수교육원(지원센터) 내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및 특수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한 보조공학기기 검색·대여시스템 활용
 - 시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한 지원 및 활용 연수 등 현장지원
- 다) 시교육청 장애학생편의지원위원회 운영
- 라) 개정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실 환경 구성 및 노후 특수학급 환경개선(15교 내외)
- 마) 학교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 편의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등 대책 마련

2)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권장

라.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내실화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체계 구축

- 가)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나)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 파악
 - 특수교육원(지원센터) 홈페이지, 부모교육 및 상담,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 적극 홍보
- 다)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 영아학급 및 특수교육 지원센터 영아교육지원실 운영

2) 무상(의무)교육 및 취학 홍보

- 가) 국가시책 '특수교육 지원 강화' 사업 언론보도 및 매체 활용 홍보
 - 교육청 홈페이지, 전광판, 라디오 캠페인 등을 활용한 특수교육 홍보 및 콘텐츠 게재
 - 특수교육 관련 기초 정보 제공 및 특수교육기관 홍보지를 제작하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배부(연 2회 이상)

- 3)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유치원)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진단·평가
 - 특수교육원(지원센터)의 진단·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역 내 교원, 의사, 임상심리사, 치료사 등 지역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진단·평가팀 구성·운영
- 4)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영아의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를 통해 유치원 입학 과정 지원
 - 나) 유치원·초등학교 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진학 과정 지원
 - 장애를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하는 일이 없도록 부모 대상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안내
- 5) 취학의무 면제(유예)자에 대한 학교 배치
 - 가)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및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나) 과연령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 학령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과연령 장애인의 생활연령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하는 등 교육 기회(평생교육 포함) 제공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 6)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적합한 교육환경 배치, 심사 청구 등 및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 협의

마. 특수학교(급) 운영 개선

- 1)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특수학교 운영 개선
 - 장애영유아상담,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진로·직업 및 전환교육상담지원 등 지역사회의 장애인 대상 지원 확대
- 2)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특수학급 운영 개선
 - 가) 노후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 및 거점형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
 - 나) 특수교육 이해 증진을 위해 학기별 1회 장애 인식개선 및 장애학생 인권 보호교육 및 연수 실시
 - 다) 관리자, 특수·통합학급 담당교사, 보호자 등으로 구성된 통합교육협의회 학기별 1회 이상 운영(개별화교육지원팀과 병행 가능)

2.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특수교육 관련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통합교육 지원단' 운영

나) 일반학교(유치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특수학급 미설치교의 순회교육 등 지원을 위한 거점형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

다) 일반학교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강화

- 특수교사 양성 대학과 연계하여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등) 교육활동 지원

라)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

마)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거점지원센터 확대 운영

- 시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와 지역사회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통합교육 활성화 지원

2)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 특수·일반교사 협업을 통한 다양한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보급

3) 통합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비장애학생 지원 강화

- 장애학생 도우미로 활동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및 모범학생 표창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관리자 및 통합학급 교사 등)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가) 일반학교(유치원) 관리자 대상 장애 인식개선, 장애인권 등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 '통합학급 관리자 특수교육 이해' 연수 시 관련 내용 반드시 포함

나)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다) 일반학교 교원(유·초·중) 자격연수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강좌 포함 운영

- 라) 순회교육대상학생 및 건강장애학생 관련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 2) 통합교육 및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연수 참여
 - 가) 관리자, 일반교사, 특수교사 등 국립특수교육원 연계 통합교육 연수 참여 권장
 - 나) 유·초·중·고교 교원의 장애 인식개선 및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원 원격연수 참여 권장
- 3)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 특수·일반교육 교원이 함께하는 통합교육연구회 등 다양한 교사학습 공동체 운영 권장

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지역 여건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가) 학교 특성, 학생·교사·보호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 나) 고등학교 과정 진로와 직업 중점학교 운영 지원
 - 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교육과정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 나)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통합교육계획 수립·운영
-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활용
 - 가)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발달단계,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지원 확대
 - 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보완자료 및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 다) 원격수업용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 4)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강화
 - 가) 시·청각장애, 중도중복장애학생 등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 나) 영아 교육과정 및 전공과 교육과정 운영
- 5)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 조치 지원
 - 가)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및 교수·학습 자료의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 나) 학교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이해도 제고,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 강화 연수
- 다)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학교(급)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6)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현장 지원
 - 가)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장학자료 개발 및 현장 의견 수렴
 - 나)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학교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이해도 제고, 교수·학습 및 평가 연수
 - 다) 감염병 상황 등에 따른 특수학교(급) 학사운영 방안 마련
- 7) 2022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추진
 - 통합교육 확대에 따른 일반 교육과정과의 연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과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개정
- 8) 고교학점제 시범운영 및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준비
 - 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고교학점제 운영
 - 국립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 방향 모색 및 운영 모형 개발
 - 일반고등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지원체계 마련
- 9)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
 - 가) 코로나19 등 교육 여건 변화에 따라 장애유형별 정보 접근성, 맞춤형 콘텐츠,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운영
 - 나)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AI기술 기반 음성인식 자막 지원 서비스 제공
 - 다) 첨단기술 연계 복합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및 체험버스 지원

라.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지원

-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가) 보호자, 특수교육 교원, 일반교육 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 포함

- 다) 매 학기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및 결과를 교사 및 보호자에게 통보
 - 라) 개별화교육계획 관련 법정 기한 준수(지원팀 구성, IEP 작성, 전출학교 송부)
 - 마) 통합교육지원실 교사가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
- 2)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가) 교육과정 및 교과의 특성, 학생의 장애정도에 따른 다양한 학생집단 편성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를 고려하여 특수교육 지원인력 활용 확대
 - 3)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적 요구와 구체적인 실행의 연계성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 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
- 마.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제공
 - 가)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
 - 나) 건강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기관별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 2) 병원학교 운영의 내실화
 - 가) 건강장애학생의 원인별 유형이나 지역여건을 고려 및 맞춤형 병원학교 운영 및 연간 계획 수립
 - 나) 병원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운영
 - 3)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연수, 병원학교 보호자 교육 강화
 - 가) 건강장애학생 교과교육·심리적응 지도 등 소속학교 교원 및 보호자 교육 실시
 - 나) 보건실, 도서실 등에 건강장애학생 이해 자료를 비치하여 활용
 - 4)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 적응력 신장 및 학업 격차를 최소화하여 건강장애 학생의 안정적 학교복귀 지원

- 5)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 가)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 나) 소속학교 출결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을 포함하여 처리
- 6) 원격수업 운영 지원 강화

3.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특수교육원(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전문인력 및 시설 확충을 통한 지원 기능 강화
 - 가) 특수교육 전문인력 및 순회교사 배치 연차적 확대
 - 나) 전담인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 확대
 - 다) 근무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보 우대, 전문성 신장 기회 우선 제공 등
-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기능 강화
 - 가) 지역 여건 및 기능을 고려한 특성화 특수교육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나) 일반학교(유치원) 배치 순회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계획 수립·운영
 - 다) 특수교육대상영아 지원을 위한 진단도구, 교재·교구, 부모 지원 및 무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3) 특수교육원(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관계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복지관, 직업교육 관계 기관 및 산업체 등 의료·교육·보육·직업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나) Wee센터 등 교육(지원)청 내 센터 간 업무 협력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강화
- 4) 장애영아 교육 지원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교육지원실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나) 개별화가족서비스지원팀 구성 및 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

나.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순회교육 지원 범위
 - 가) 각급학교,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나)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다) 순회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가능
- 2) 순회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내실화
 - 순회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 담당교사가 학생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학습, 출석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 편성·운영하며 주 3회 수업 지원 권장
 - 학교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운영하되, 교과목을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보호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재구성
 -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 감축 운영
 - 순회교육 운영계획 및 개별화교육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학기별, 월별 교육 과정 운영
 - 학기별 개별화교육계획 및 평가, 매월 출결 상황 및 월별 평가를 소속 학교로 송부
- 3) 순회교육 담당 특수교사 연수 및 복무 관리 강화
 - 가) 순회교사의 복무 관리
 - 순회교사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담당
 - 나)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 방법 및 가족지원 등에 관한 연수 운영
- 4) 순회교육 지원 확대
 - 일반학교 순회학급(16학급), 시설파견 순회학급(5학급), 거점형 통합교육 지원실(6개소), 특수교육원(지원센터) 순회(직업)교육 교사 54명 지원
- 5) 병원파견학급 운영 지원
 - 장애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수교육 기회 확대[병원파견학급(대전해광학교) 3학급 운영]
- 6) 순회교육대상학생 학적 관리 및 성적처리
 - 가)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성적과 평가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나) 순회교육 월별 평가 및 출결

- 각종 평가 시 출결 처리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 학생의 출석관리는 소속학교 담임교사가 담당하되, 특수교육원(지원센터) 순회교육 담당교사는 매월 말 출결 현황을 소속학교에 통보

다.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 가)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공학 지원 확대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리안정실 운영
- 2)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해당 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생활기능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3)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 강화
 - 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지원 강화
 -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의료적 지원 관련 내용 포함하여 작성하고 전문 인력배치·확대
 - 다) 단위학교는 교과교육 외에 특수교육관련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의 심리·물리적 상태에 대한 지속 점검 실시

라.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내실화

- 1)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운영 지원
 -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을 위한 우수 운영 모델 발굴
 - 나)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특수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제 및 고등학교 진로·직업교육 중점학교, 학교 간 진로·직업교육 중점 운영 등과 연계를 통한 미래 진로설계 지원 강화
-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가) 학생 중심 수업 활성화 및 맞춤형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 나) 맞춤형 교원 연수 및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개발 자료 활용 지원
 - 다) 장애인 진로멘토단을 활용한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운영
- 3)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 특수교육원(지원센터)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학생 체험활동 지원 강화

마.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장애학생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원 기반 진로·직업교육 지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강화
 - 나)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 및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다) 학생 진로역량 체계적 관리 및 장애학생 직업실기 역량 강화 지원
- 2)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강화
 - 장애유형·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및 취업지원 방안 마련
- 3)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안정적 배치 지원
 - 특수학교 중등과정에 '진로진학상담' 자격교사 1명 이상 배치 및 진로상담 시간 시수 인정 및 진로교육을 위한 진로상담실 확보 지원
- 4)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체계 강화
 - 가) 관련 기관과 협의체 구성 및 지역사회 중심 윈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 나) 장애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전문인력 배치
 - 다)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운영
- 5)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지원
 - 학교기업체험센터의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현장실습 지원(특 2교)
- 6)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 교내·외 수업을 균형 있게 실시하되, 지역사회 사업체와 연계한 현장실습에 중점
- 7) 전공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자립생활·직업재활 및 현장실습 중심의 전공과 교육과정 편성·운영(38학급)
- 8) 장애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 학생보호 및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의 현장실습 전환
- 9) 다양한 진로 정보 제공 및 직업교육 역량 강화
 - 고등학교 과정의 장애학생을 위한 관련 대학 정보 제공 및 진로·진학 상담 지원

바.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1)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
 - 장애학생 문화예술 운영 교육기관 확대 및 문화체험활동 및 예술 동아리 지원 강화
-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체육교육 강화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배치
 - 나)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및 장애학생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사.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관리 강화
 - 중도중복장애 학생 우선 지원 및 교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할 업무 명확화
- 2) 특수교육실무원 역량 강화
 - 가) 특수교육실무원 역량 강화 직무연수(원격·집합연수)
 - 나) 신규 채용인력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내용 포함된 직무연수 의무 실시 (30시간 이상)
- 3) 사회복지무원 운영 지원
 - 가) 전공 및 적성,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 나) 사회복지무원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장애이해, 인권교육 포함) 실시
- 4) 기숙사 생활지도원, 수어통역사,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 운영 다양화

아. 방과후교육 지원체계 강화

- 1) 유치원 방과후학급 정규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 운영
- 2) 특수학교별 학급 수 규모에 따라 배정 및 학교 자체 방과 후 프로그램 계획·운영
- 3) 희망자 대상으로 개별 방과후교육활동비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연계 지원
- 4) 장애 영역 및 학교 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교 방학프로그램(계절학교) 운영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1) 범국민 장애 인식개선 교육 내실화

- 가)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장애이해교육(인권교육 포함)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나) 창의적 체험, 봉사활동 시간 활용 및 연수, 가정통신문, 행사 시 안내
- 다) 일반학교(유치원)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라)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 직원의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마) 시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 운영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 인력풀 구축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인권침해 대응체제 강화

- 가) 특수학교(급) 내 신고함 등을 활용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상시 감지체계 운영
- 나) 장애학생의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가) 교육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력과 지역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8명)
- 나) 정기 현장지원 및 특별지원(매월 1회), 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육 및 활동 결과 보고
- 다) 특수교사나 인원지원단 위원 등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여

3)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가)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대상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나) 관리자, 교직원(사회복무요원 포함)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 내실화
- 다)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내부규정 수립 권장

4)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내실화

- 가) 일반학교(원) 및 특수학교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실시(매 학기 1회 이상)

나) 장애학생 성추행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대상 연수 및 홍보
철저

- 5) 관할 경찰서 협력을 통한 방과 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예방
- 6) 특수교육대상학생 행동중재지원 강화를 위한 행동지원중재팀 운영 및 컨설팅 제공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특수학교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가) 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학교별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시행
 - 나) 특수학교(급)의 노후 및 낙후된 시설 개선, 취약지역 CCTV 설치 권장

라.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 확충 및 역량 강화
- 2) 공동사고를 통한 체계적인 특수교육 운영
- 3) 특수교육 교구·설비 기준에 따른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확충 지원
- 4) 특수교육 관련 교재·교구 구입 및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학급 운영비 지원

III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

- 특수교육기관 확충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22년 12월, 6학급 규모) 및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2.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특수학교(중등) 이료 부전공 자격연수 대상자(4명) 2차 집합연수 지원

3.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특수학교에 행동지원, 인권보호 등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문상담교사(상담사) 배치

울산광역시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슬로건

공존과 통합의 울산 특수교육

2. 교육비전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3. 교육목표

- 가.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 나.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

4. 추진방향

-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다.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5. 중점 추진 과제

- 가.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 및 안전 강화
-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II 2022년도 추진 실적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1) 만 3세 이상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방치되지 않도록 취학 절차 등 의무교육 적극 홍보

- 2)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과정 운영
 - 가) 연령별(만 3~5세) 누리과정을 근간으로 운영
 -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 3)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지원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지원: 60명
 - 나) 치료지원 및 심리상담 지원: 219명
 - 다) 특수교육실무사 등 지원인력 배치: 실무사 40명, 사회복지무원 20명
 - 라) 의무교육 실시 안내 및 홍보: 1회(유치원 192개원)
 - 마) 의무교육 지원 상담 담당자 지정 배치(특수센터 교육지원부장)
- 4) 특수교육대상유아 담당교원 및 관리자 전문성 신장
- 5)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 2개 유치원
- 6)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 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간의 정보교육 및 의견교환 등 협업체계 구축
 - 나)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필수 프로그램 운영
 - 입학 전 학교 견학(체험) 프로그램: 학교 시설 이용 체험
 - 입학 초기 학교적응 지원 프로그램: 장애유형 및 특성고려
 - 입학 전후 초등학교 입학적응 관련 학부모 교육: 간담회 등 집합교육
- 7)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180천 원, 사립 월 450천 원 이내

나.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

- 1)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 파악
 - 가) 구청, 보건소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부모 동의하에 실태 파악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아 수 파악
 - 다) 특수센터 홈페이지, 부모교육, 부모상담,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한 무상교육 홍보
- 2) 특수교육대상영아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
 - 가) 강북·남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영아 담당 인력 배치
 - 나) 장애영아의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 다)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실 운영 및 장애영아에 대한 순회교육 지원: 6명
- 3)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 가) 지자체 및 장애 어린이집 종사자 등 영아교육안내자료 배부 및 홍보
 - 나) 장애영아교육에 대한 홍보 실시: 홍보리플릿 보급

- 다) 유관기관 연계 및 협조 체제 구축을 통한 아동실태파악 및 홍보
4) 특수교육대상영아 조기교육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지원 체제 마련

다. 특수교육기관 확충

- 1) 특수학급 신·증설: 19학급(유 5, 초 12, 중 3, 고 2, 특 △3)
- 2) 특수학급 설치 현황: 설치율 67.4%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35	42	106	169	50	67	35	49	226	327

라.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신장

- 1) 통합학급 담임교사 특수교육 연수 이수 강화: 월별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안내
- 2) 특수교육 교원의 직업교육 실기연수
- 3) 특수교원대상 특수교육핵심영역 및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강화 연수
- 4) 학교별 직원 연수 시 특수교육 관련 연수: 연 1회 이상
- 5) 특수학교 관리자 장애인권 연수 강화: 연 5시간
- 6)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순회, 병원학급 제외) 특수교육 부장교사 증치: 14명

마.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장애학생 안전 및 편의를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2022년 예산 확보

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1)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신청·지원 절차 준수
- 2) 특수교육대상자 차량 이용 등에 따른 안전교육 강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일반학생 및 일반교사의 장애인식·장애학생 인권보호·특수교육 이해 증진을 위해 연 2회 이상 학생교육·직원연수 실시 및 지원활동 강화
- 2) 통합교육협의회 운영: 관리자, 특수학급 담당교사, 통합학급 담당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최소 학기별 1회 이상 운영
- 3) 특수학급을 포함하여 특수학교 시설·설비기준령 제4조 제2항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른 설비·비품을 우선 확보

- 4) 특수학급 운영비 편성·집행
 - 유치원: 400만 원 이상
 - 초·중·고등학교: 500만 원 이상

나. 통합교육 지원 강화

- 1)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지원 확대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정보 공유, 협력교수 등 협업 강화
 - 순회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배치, 관련 서비스 및 교재·교구비 등 지원 확대
 - 통합교육을 위해 특수교사와 학기별 1회 이상 협의 실시
 - 통합학급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적정 수 배치
- 2) 통합학급 운영·관리 역량 강화
 - 통합학급 관리자(교(원)장, 교(원)감) 연 3시간 이상 비대면 집합연수 실시
 -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직무연수(15시간 이상) 이수
 - 순회교육 및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 통합교육 실시 학교 관리자, 교원의 국립특수교육원 연수 참여
- 3) 지역사회 중심 통합교육 네트워크 구축·운영
- 4) 통합학급 담임교사 처우 개선 및 지원 강화
- 5) 통합학급 운영비 지원(급당 150천 원)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특수학교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우선 배치
- 2) 특수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전면 실시 및 운영 강화
- 3) 문화예술활동 지원
 - 가) 미술작품 전시회: 강북·남 특수교육지원센터 연합 1회 실시
 - 나) 문화예술 공연단 지원: 장애학생 문화예술단 '차이'
 - 다) 특수학급 문화예술동아리 운영(장애학생, 비장애학생) 지원
 - 라)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4) 특수학교 교기 운영으로 체육활동 강화

학교명	울산혜인학교	울산행복학교	태연학교	메아리학교
종목	볼링	역도	육상	수영, 역도, 스키

- 5)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특수학교 3교, 42,000천 원

라.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강화

1) 특수교육지원인력 현황

(2022. 4. 1. 기준)

구분	특수교육실무사	특수통학실무사	사회복무요원
2022년	319	27	299

2) 특수교육지원인력 연수 실시

가) 특수교육실무사

- (1) 신규 채용자: 30시간 이상 직무연수
- (2) 원격연수 지원: 국립특수교육원 위탁원격연수
- (3)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실무사: 특수학교 자체 연수(연 2회) 실시

나) 사회복무요원

- (1) 신규 사회복무요원 교육 실시: 16시간 인상 직무연수
- (2) 기존 사회복무요원 교육 실시: 4시간 이상 직무연수

마.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완전통합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1학기)

- 가)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고등 5명)
- 나)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영아 4명, 유치원 27명, 초등 21명, 중 5명)
- 다)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영아 2명, 유치원 33명, 초등 14명, 중 4명)
- 라) 총 115명(영아 6명, 유치원 60명, 초등 35명, 중 9명, 고등 5명) 순회교육 지원

2)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순회교사 운영

배치	자격 구분			소속
	유치원	초등	중등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	2	7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8	6	2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울산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7	6	2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바.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 시설 접근성을 고려한 공간 및 위생시설,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공학적인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심리안정실 등) 구축

- 2)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마련

사.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원격수업(화상강의 포함) 이용 학생 지원: 총 이용자 36명(2022. 4. 1. 기준)
- 2) 병원학교 운영

병원학교명	위치	인력 현황		이용학생
		교사	센터 순회교사	
다솜병원학교 (설치년도: 2007년)	울산대학병원 내	1명		6명

- 3) 건강장애학생 학부모 부모자조모임 운영(연간 프로그램 운영)
- 4) 건강장애학생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 6교 6명 지원
- 5) 학년말 병원학교 행사: 다솜병원학교 학예발표회 및 송년의 밤
- 6) '즐거운 병원학교' 운영: 단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 중인 건강장애학생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

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1)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 2)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정 교과(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 운영 지원
- 3) 영아 교육과정 및 전공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교육감 승인 후 적용
- 4)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강화
- 5)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발달단계·장애특성으로 고려한 교수·학습자료 지원
- 6) 학교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이해도 제고 및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7)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개별화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컨설팅단 운영
- 8) 특수교육자료개발팀 구성을 통한 특수교육 도움 자료 개발·보급

자.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가)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및 개별교육계획서 작성 관련 현황 점검
 - 나) 특수학급 미설치교 대상 개별화교육 지원 및 관리 강화

다) 개별화교육계획 및 지원팀 구성·운영에 대한 연수·컨설팅 실시

라) 개별화교육 지원을 위한 학부모교육 실시

2)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차.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설치 현황

특수교육지원센터명	상담 전화	역할	특성화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255 -6601	○ 특수학교, 고등학교 특수교육 지원	자유학기제, 인권지원, 시각장애, 청각장애, 진로·직업, 건강장애, 긍정적행동지원
울산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219 -5790	○ 유·초·중학교 특수교육 지원	
울산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227 -6604	○ 유·초·중학교 특수교육 지원	영유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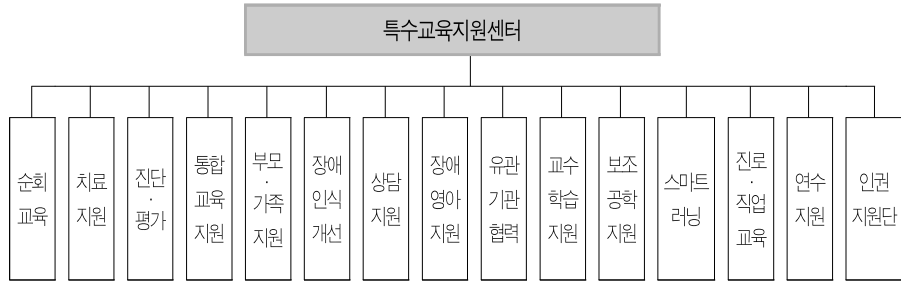
2) 시설 현황

구분	사무실	진단 평가실	치료실		직업교육실		연수실	학부 모실	조기 교육실	기타	계
			센터내	거점	센터내	거점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1	1			6		2			6	16
울산강북특수교육 지원센터	1	1		10			1	1			14
울산강남특수교육 지원센터	2	1	5	3	2		1	1	1		16

3) 인력 배치

구분	장학관	장학사	순회 교사	기간제 교사	임상 심리사	직업 재활사	치료사		행정 일반	기타	계
							재활	심리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1	2	9		1	1	4		2	2	22
울산강북특수교육 지원센터		1	16				17	3		1	38
울산강남특수교육 지원센터		1	15				13	2			31
계	1	4	40	0	1	1	39	2	3	91	

4) 기능



카. 가족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1) 가족지원: 가족상담 및 가족지원 수시 운영

가) 가족상담 프로그램 운영(울산시센터)

– 4월~11월, 10교 19명, 업무협약 전문상담기관 연계 개인, 가족, 집단 상담지원

나) 가족상담 WITH PLUS 프로그램 운영(강남)

– 4월~12월, 23교 25명, 의뢰 사유별 전문가 연계 개인, 가족, 집단 상담 지원
– 8회기를 기본으로 최대 10회기 지원, 매회 50분 지원

다) ‘함께걸음 부모상담’ 프로그램 운영(강북)

– 4월~11월, 24명, 개인별 6~10회 실시, 매회 50분 지원

2)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등의 대여: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기기 구입 및 대여

기기명	강북센터 보유 수량	강남센터 보유 수량	시센터 보유 수량
보조공학기기 (시각, 청각, 지체, 의사소통장애)	19종 145개	122종 337개	45종 370개
진단·평가 도구	18종 121개	8개 영역 51종	36종 42개
교재·교구	19종 3,178개	9종 197개	285종 424개
도서	7종 2,881개	24종 793권	25종 8,792권
직업훈련교구	1종 9개	4종 16개	16종 31개
성교육자료	1종 57개	1종 11개	2종 2개
장애이해교육자료	1종 12개	1종 36개	12종 182개
신체운동활동자료	14종 26개	20종 25개	54종 386개
컴퓨터활용 CD자료	76종 157개	0종 0개	21종 691개

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1) 치료사 현황

(단위: 명)

구분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지원센터	울산강북 특수교육 지원센터	울산강남 특수교육 지원센터	특수학교				계
					울산 행복 학교	울산 혜인 학교	태연 학교	메아리 학교	
치료사		4	20	15	4	5	4	4	56

2) 치료지원 및 관련 서비스실(거점치료실 포함) 현황

(단위: 개)

구분	운동 재활실	일상생활 재활실	언어 재활실	청능센터	감각, 운동 훈련실	상담실	계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센터		1				1	2
울산강북특수교육센터			9		6	5	20
울산강남특수교육센터			2		2	1	5
울산혜인학교	1	3	3		1		8
울산행복학교	1	2	2		1		6
태연학교	1	1	2		1		5
메아리학교	1		2	1			4
계	4	7	20	1	11	7	50

3) 치료지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치료지원 학생	209	689	77	55	1,030

파. 특수교육대상자 심리상담 지원

– 1인 10회기 지원,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개별 또는 그룹지원

하. 특수교육 장학활동 지원

- 1)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컨설팅: 1회
- 2) 특수학교, 특수학급 컨설팅(교육과정, 개별화교육): 6회
- 3) 초·중학교 컨설팅 장학 지원: 강남·북 2개 교육지원청 별도 계획 추진
- 4) 특수학교(급) 자율장학 지원 활성화: 단위학교 자체계획 및 추진

거.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정보화 교육 장소 제공(여가문화체험실, 교육정보실 운영)
 - 장소: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내 1개소 2실
 - 활용: 워드프로세서, 정보검색, 장애학생 e스포츠 활동, 현장학습 등
- 2) 홈페이지 배너로 장애학생 교육정보 지원 시스템 홍보(에듀에이블, 이압)
- 3) 특수교육대상학생 스마트러닝 지원을 위한 정보기기 지원
- 4) 2022.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 울산예선 실시, 33교 62명 참가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직업능력평가
 - 대상: 고등학교 1학년 특수교육대상자
 - 내용: 직업적 소양, 직업기능 평가 등
- 2)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운영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교육 지원
 - 대상: 중·고 특수학급
 - 내용: 제과·제빵 등 현장중심 직업교육 운영 지원
 - 방법: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교육실, 거점학교 직업교육실 활용, 발달장애인훈련센터 활용
 - 나) 직업교육 및 현장체험활동 지원
 - 대상: 고등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전공과
 - 내용: 직업교육·현장체험활동 인솔교사 및 지원인력 여비, 진로직업교육 운영비등 지원
 - 지원액: 급당 3,000천 원 지원(공립-64학급, 사립-9학급)
 - 다) 울산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특별실 대관 운영
 - 대상: 울산 관내 특수학급 및 유관기관
 - 내용: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교육실, 여가체험실 등 시설 활용 프로그램 운영
- 3)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 울산혜인학교(2011년 선정) 학교기업 설치·운영
 - 특수학교(급)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및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업체)와의 협약, 연계 운영, 민간 기업 유치 등 다양한 형태 운영

- 4) 협업을 통한 장애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 가) 특수교육-연계형 복지일자리 사업 운영
 - 대상: 고등학교 3학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 내용: 우체국 등 공공기관 일자리, 특수학교 내 일자리, 기타
 - 나) 교육청 카페 ‘청마실’ 운영
 - 대상: 전공과
 - 내용: 카페 ‘청마실’ 실습을 통한 바리스타 등 서비스업 현장실습
 - 다)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장 운영(고등학교 3학년 과정 이상)
 - 대상: 고등학교 3학년 특수교육대상자
 - 내용: 일반사업장 일자리 현장실습
 - 라) 고등학교 3학년 과정 이상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실습, 지원고용 실시 등 직업교육 연계 강화
 - 5) 장애학생 취업으로의 연계 강화
 -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계를 통한 장애학생의 실질적 취업 기회 확대
 - 나) 울산장애인복지관 위탁 맞춤형 일자리사업 사업 및 취업지원
 - 다) 나이스 연계를 위한 진로직업취업시스템 구축
 - 6) 장애극복활동프로그램 운영
 - 가)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의 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장애극복프로그램 운영
 - 나) 프로그램 내용: 현장학습, 문화유적 탐방, 환경보존 활동, 내고장 걷기, 타지역 견학, 단체활동 등 장애극복프로그램 운영
 - 다) 특수학교 교당 4,000천 원 지원
- 나. 특수학교 자유학기·자유학년제 내실화
- 1)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 자유학년제 운영학교(울산혜인학교, 울산행복학교, 메아리학교, 태연학교)
 - 2)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컨설팅단’ 구성·운영
 - 3)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 4) 진로체험자원 확충 및 학생 체험활동 지원 강화: 진로체험처 ‘꿈길’ 등록 안내
- 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교육부-교육청-대학간 유기적 연계·협조 체제 구축

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문자해독 등 교육비 지원: 2개 기관 지원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을 위한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홍보 및 진단·평가 지원
- 2) 2023학년도 진학 희망학생 진단·평가 실시: 6~8월
- 3)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전문성 강화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장애학생 성교육 강화를 통한 성폭력 피해 예방
-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3개 특수센터, 다양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활동 실시
- 3)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현장지원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피해 최소화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특수학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및 운영
 - 학생, 교직원 등에 대한 학기별 안전교육 및 학교주변 통학 환경 개선
- 2)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의 협력을 통한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강화
- 3) 재난대응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교육 실시
 - 가) 장애유형 및 정도, 주변 환경 등을 고려
 - 나) 재난상황 대비 장애유형별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상황별 대피훈련 실시
 - 다) 재난대응 조력자 지정제도(Buddy System) 운영
- 4) 학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가)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 학교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 예방·관리 철저
 - 나) 특수학교(급)의 노후 및 낙후 시설 개선, 재난위험 시설 해소
 - 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학생들의 건강 피해 예방

라. 장애공감문화 조성

- 1) 연 2회 이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의무 실시
- 2)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3) 외부강사 초빙 장애인식개선 연수: 유·초·중·고 관리자 및 업무담당교사
- 4) 장애인식개선 행사: 미술공모전(2022. 9월 예정)

마.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 1) 방과후교육활동 지원
 - 가) 외부기관 개설 강좌 참여
 - 나) 개인교육비 지원
 - 다) 1인 월 120천 원 이내 실비 지급
- 2) 특수학교 방학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립 34학급 49,300천 원, 사립 16학급 27,420천 원
- 3) 계절학교 지원: 설명회 학생 간식비 및 장애학생활동 지원

바.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과정 운영

- 1) 특수학교 및 유치원
- 2) 특수학교 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사.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 공립 특수학교 2교, 총 5실 운영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1) 의무교육 지원 및 홍보 강화
- 2) 특수교육지원센터 강사 순회교육 강화
- 3)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강화를 위한 협의회 개최

나.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

- 1) 지원방식: 1시간(40분 수업, 20분 상담)씩 주 2회 수업, 센터 내방 또는 가정 방문
- 2)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수립 및 시행
- 3) 부모상담 및 형제·자매 지원(상담), 교재교구 대여 등

다. 특수교육기관 확충

–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구 분	2019	2020	2021	2022
특수학급 수	265	288	304	327

라.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신장

- 1) 특수교육 교원의 직업교육 실기연수
- 2) 국립특수교육원 위탁 원격연수 및 직무연수

마.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장애학생 안전 및 편의를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2023년 예산 확보

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1)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신청·지원 절차 준수
- 2) 특수교육대상자 차량이용 등에 따른 안전교육 강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특수학교 경영평가를 통한 특수학교 교육의 질 제고
- 2)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구·설비 확충 지원

나. 통합교육 지원 강화

- 1) 통합교육 ‘정다운학교’ 컨설팅 지원
- 2) 통합교육지원단 맞춤형 1대1 지원 현장지원
- 3) 지역사회 중심 통합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개별 맞춤형 지원
- 4) 통합학급 운영비 지원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특수학교 교기 운영으로 체육활동 강화
- 2) 장애학생 1인 1기(技) 지원 강화
- 3) 학교별 예술 동아리 운영 지원 및 영화·연극 관람 등 기회 제공 확대
- 4)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지원 강화: 장애학생 문화예술동아리, 미술대회 및 전시회

라.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인력 장애학생 지원 능력 제고를 위한 연수: 학기별 1회 실시

- 2) 특수교육지원인력 근무 여건 개선: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
 - 3) 사회복지요원 교육 강화(성교육 및 안전교육, 장애학생 지원 교육 등): 신규 사회복지요원 및 기존 대상 직무교육 실시
- 마.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강화
 - 2) 순회교육 담당교사의 교수학습 및 상담 전문성 강화
- 바.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 2)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사.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병원학교 강사 및 보호자 교육 강화
- 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컨설팅단 운영
- 자.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 1)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활성화
 - 2) 다양한 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 등의 활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차.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2) 지역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카. 가족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1)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등의 대여: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기기 구입 및 대여
 - 2) 가족지원: 가족상담 및 가족지원 수시 운영
- 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 치료사 학교재활 및 병·의원, 사설치료기관 치료비 지원
- 파. 특수교육대상자 심리상담 지원
- 1인 10회기 지원,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개별 또는 그룹지원

하. 특수교육 장학활동 지원

- 1) 특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 고등학교 컨설팅 장학 지원: 연 30회
- 2) 특수학교 유치원, 초·중학교 컨설팅 장학 지원: 강북, 강남 교육지원청 별도 계획 추진
- 3) 특수학교(급) 자율장학 지원 활성화: 단위학교 자체 계획 및 추진

거.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 2022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 울산예선(6월) 실시 및 전국대회(9월) 참가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직업평가를 통한 직업교육의 기초선 제공
- 2) 중·고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운영 강화
- 3) 협업을 통한 장애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 가)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하여 지원고용 실시
 - 나) 특수교육-연계형 복지일자리 사업 연계: 바리스타 및 공공기관 내 일자리 직무훈련
 - 다) 학부모와 함께 장애인 채용 기업체 현장 견학 연수 실시
 - 라) 장애학생 취업기관 방문 지도를 통한 취업 후 사후관리
- 4) 진로 및 직업교육 기반 구축 및 직업교육 실무팀 운영
 - 가) 지역사회 장애인 고용 및 훈련 지원 기관 간 정보 공유체제 구축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원스톱 협의체 구성·운영
 - 다) 장애학생 취업을 위한 사업체 개발
- 5) 진로 및 직업교육 현장지원 강화
 - 전국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개최(10월)

나. 특수학교 자유학기·자유학년제 내실화

- 1)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2)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 3) 자유학년제 워크숍 및 컨설팅 확대

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참여학생 대학과 연계 지원

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1)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진학 정보 및 수험 편의 제공 강화
 - 가)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진학상담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의 진학상담 업무 담당자 역할 강화
- 2)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 가) 학력인정 문자해독 프로그램 참여 유도 및 방송통신고 활용한 교육서비스 지원
 - 나) 교육청 지정 평생교육 시설에 장애인 참여 확대 및 홍보
 - 다) 유관기관 협력 강화
 - 라) 지역사회 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강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 1)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2)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팀 연수 실시(6월)
- 3) 2023학년도 상급학교 진학 희망학생 진단·평가 실시: 6~8월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장애학생 성교육 강화를 통한 성폭력 피해 예방
-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3개 특수센터, 다양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활동 실시
- 3)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현장지원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피해 최소화
- 4)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
- 2)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 추진 및 학교별 안전계획 점검

라. 장애공감문화 조성

- 장애인식개선 미술공모전 운영(2022. 9월 예정)

마.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 1) 연중 방과후교육활동 지원
- 2) 특수학교 방학프로그램 운영: 4교, 여름 및 겨울방학 운영비 지원
- 3) 달팽이학교(여름 및 겨울 방학학교): 간식비 지원
- 4) 특수교육대상자 종일반 운영에 따른 학생 안전 철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특수교육의 추진방향

가. 기본 가치

공공성, 민주성, 창의성, 공동체성, 자발성

나. 비전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다. 지표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

라. 지향

세종의 모든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람과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하여 현재와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교육

2. 세부과제

가. 함께돌음 특수교육교육과정 운영

나.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 및 인력 지원

다. 장애학생지원체계 강화 및 운영 내실화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II 2022년도 추진 실적

1. 함께돌음 특수교육교육과정 운영

가. 장애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1) 장애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

-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정 교과(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를 중심으로 중점학교 운영 지원

- 장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 시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지원
 - 감염병 상황 등에 따른 특수학교(급) 학사운영 방안 마련
-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및 통합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일반학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운영 시 특수교사 참여 권장
- 3) 중도중복장애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 가)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및 보조공학적 지원 등 교육 여건 개선
- 나)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생활기능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진로 및 직업교육 등에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4)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 가) 순회교육 지원 대상 선정
-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순회교육대상자 선정
- 나) 순회교사 증원을 통한 순회교육 대상자 확대 및 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순회교사 16명 배치 및 현장 지원
 - ※ '21년 8명 → '22년 16명으로 8명 증원
- 다)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 작성·운영
 - 순회교사 공동체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정보공유 및 멘토-멘티 활동(매월)
- 라) 순회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신장 연수 지원
- 5) 장애학생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가)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나)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

※ 통합교육 거점유치원(1교), 유치원 통합교육동아리활동(3교) 운영

-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충, 방과후학교를 담당할 인력 추가 배치 등 지원 확대

다)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중심 전문가 인적자원 활용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청각장애 통합교육지원(13교)

6) 건강장애 운영체제 강화

가) 만성질환자 학생 중 해당자를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교육 제공

-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화상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

※ 충남 꿈빛나래학교(초등) 및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원격수업 지원

- 건강장애 운영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초등교사 배치(1명) 및 원격수업 운영지원실 설치 및 운영

나)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담임교사 연수 및 보호자 교육 강화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스쿨포유)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 운영(13명)

다)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지원

7) 자유학기제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연계 운영 지원

-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성 및 운영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시의 내실화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1학기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현황 및 회의 개최 등 개별화교육지원 현황 파악

2) 특수교육대상자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및 지원인력 제공

다.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가) 지역사회를 이용한 지원체계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학생 체험활동 지원 강화

※ 중학교 특수학교(급) 직업체험 프로그램(제빵사 체험) 운영(21교 84명)

2)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 편성 및 운영 지원

가) 각급학교 진로·직업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 각 과정 및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맞는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 및 확대
-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동아리 운영

※ 실천형 정책연구회 운영: 진로·직업교육 연구회(장애학생 취업잡(GOB)교(GO) 연구회)

- 특수교육대상학생 취업 및 유지를 위한 진로·직업교육 지원

3)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취업 및 적응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사업 지원

-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사업 참여 확대

※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참여: 보비스쿰(1명), 세종시가족센터(2명)

- 장애학생 학교내 일자리사업 추진

※ 1학기 학교내 일자리사업 참여: 세종누리학교(4명)

- 세종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직업체험 운영 지원

※ 1학기 고등학교 및 전공과 직업체험 운영: 기본체험(43명), 심화체험(16명)

- 교육청 내 장애인 일자리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협력 및 지원

※ '22년 중증장애인 학교 사서보조직(5명), 청소보조직(7명) 채용 지원

※ 장애인 일자리사업(사서보조, 청소보조)운영기관 담당자 연수(5월, 22명)

- 세종시교육청 중증장애인예술단 운영 및 지원

※ 중증장애인예술단 연습실 구성 및 운영: 타악(2명), 보컬(2명), 피아노(1명)

4) 장애학생 진로·직업 운영 지원 확대

가) 장애학생 진로·직업 전담인력 운영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1명 배치 및 역량강화 연수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취업지원실무사 배치로 현장실습 및 진로 체험활동 지원, 취업처 확대 및 관리

※ '21년 취업지원실무사 3명 → '22년 취업지원실무사 4명으로 증원

※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취업지원실무사 대상 직업평가도구 연수 실시(2회, 3명)

5) 장애학생 직업기능 및 역량 강화

- 지역사회중심 윈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계획 안내 및 특수학교(급) 운영계획 점검(5월)

2.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 및 인력 지원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지원체제 강화

1) 특수학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기회 확대

가) '22년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

- 세종시 관내 특수학급 수요를 고려한 '22년 신·증설 추진

※ 특수학급(18학급 확충): '21년 167학급 → '22년 185학급

나) 학생친화적 특수학급 교실 환경 구축(공간혁신-꿈마루교실) 지원

※ 꿈마루교실 선정 및 예산 지원: 유·초 1학급, 중·고 1학급

다) 특수학급 신·증설 시 교재교구비 지원

※ 신·증설 특수학급 환경개선 및 교재교구 구입 예산 지원: 유(8교), 초(10교), 고(1교)

2) 특수학교 설립 추진

- 제2특수학교 개교 예산 편성

3)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 확충 및 역량 강화

- 제2특수학교 설립, 세종특수교육원 직제 개편 등 특수교육 중장기 발전
업무 추진을 위한 전문직 확충(1명)

나) 특수학교(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특수학교(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사공동체 역량 강화 및 수업연구회
운영 활성화 지원

※ 교사공동체 운영(매월): 유(6권역), 초(7권역), 중(4권역), 고(2권역), 특수교육지원센터(1권역)

※ 실천형 정책연구회(4개) 운영(B.T.S, 유아특수교육연구회, 세종 특수교육 우쿨렐레수업 연구회,
장애학생 의사소통 연구회)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1) 특수교육교원 배치 및 역량 강화

- 예비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유치원특수학급 방과후기간제교사 배치(26명 → 30명)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가)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체제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및 담당교사가 보조공학기기를 교수·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 방문교육, 보조공학기기 확충 등 현장 지원 강화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제작을 위한 현장방문(2건), 보조공학기기 컨설팅(4건), 대여(49종), 구입(6종 10개)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언어재활 순회지원 실시
 - ※ 특수교육지원센터 언어재활사(6명) 학교순회 언어치료 실시(56명)
- 치료지원 승인기관 지정 확대를 통한 다양한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 ※ 외부기관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 및 기타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5월 기준 731명)

라.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역량 강화
- 2)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육교원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 교사연구회 권장 및 우수 연구회 발굴
 - ※ 실천형 연구회 지정 및 운영(세종 다름다움 통합교육 연구회)
- 3) 통합학급 지원 강화

3. 장애학생지원체계 강화 및 운영 내실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및 환경 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배치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 ※ 진단평가 역량강화 연수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학교 교사(3회, 17명)
- 2) 현장 지원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특성화
 - 특수교육운영팀, 특수교육지원팀, 진단평가팀 운영(3팀)으로 관련 업무 전문화
 - 세종특수교육원으로서의 직제 전환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 나) 교육 수요자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성과 제고를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 교육과정 및 통합학급 운영, 장애영역별 맞춤형 지원
 - 다)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인력 배치로 읍면지역 지원
 - ※ 인력 배치 및 읍면지역 지원: 교사 2명, 취업지원실무사 1명
- 3)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 장애학생 토요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세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매월)
 - ※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가족 심리상담 운영: 학생(5명), 부모(개인 10명, 집단 4명)

나.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강화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진단·평가를 위한 전문성 강화 및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준수
- 3)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 4)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및 면제, 과연령자 등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방안 강구

다.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 가)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특수학급에 기간제교원 지원
 - ※ 장애영유아 방과후과정 내실화를 위한 연수 실시(5월, 2회, 23명)
 - 나) 단위학교 유치원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교실 운영
 - ※ 상반기 돌봄강사 인건비(4교), 돌봄교실 운영비(36교) 지원
- 2) 특수학교 돌봄 지원
 - 특수학교 돌봄 희망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화
 - 돌봄전담사 배치 및 운영으로 돌봄 내실화
- 3) 지역사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가) 유관기관 연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 장애인가족지원운영 관련 기관과 연계한 토요일가족지원프로그램 위탁 운영
 - ※ 토요일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지원(1개 기관, 세종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지역아동센터 연계 돌봄 지원
 - ※ 지역사회 장애아동 돌봄교실 운영 지원(2개 기관, 세종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세종삼육지역 아동센터)

라.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1)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
 - 장애학생 1인 1기(技),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동아리 지원
 - ※ 지역사회 연계 토요일아리활동(4종목, 방송댄스, 볼링, 앙상블, 페토) 운영 지원(26명)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가) 기관 연계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세종 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한 '찾아가는 특수체육교실' 운영
- 장애학생 신체적·심리적 재활을 위한 재활 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 ※ 기관 연계 장애학생 방과후 수영 운영 지원(72명)
 - ※ 재활승마 자격을 갖춘 승마클럽과 연계한 재활승마 활동 운영 지원(유~전공과 100명)

마.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인력 운영 강화

1) 특수교육실무사 운영 및 역량 강화

가) 특수교육실무사 운영·관리 강화

- 특수교육실무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현장 방문 및 계획 수립(~6월)
-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실무사 정원 기준 변경

나) 특수교육실무사 역량 강화

- 특수교육실무사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 연수 실시
- 신규 채용 인력의 경우 30시간 이상 직무연수 실시 여부 확인

2)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 운영 다양화

가) 지원인력 배치 및 운영 강화

- 일반학교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강화
 - ※ 특수교육자원봉사 인력풀 운영: 10명(~5월)
 - ※ 대학연계 장애학생 교육지원사업 운영: 9교 11명(~5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가. 지역사회 장애공감문화 조성

1)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장애학생 소속기관 대상 장애공감교육 지원
 - ※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교직원 교육(24교), 학생 교육(45교), 학부모교육(2교)

2) 장애인식개선 홍보 강화

- 장애이해교육 자료를 통한 지역사회 홍보 강화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 내실화

-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및 인권보호 지원 강화

-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점검 내실화
- 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및 지원
 - 교육청 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력과 지역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
 - ※ 초·중등을 분리하여 2개팀 운영: 12교 지원(~5월)
- 3)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시 장애인권교육 실시
 - 사회복지무원 배치 시 장애인권 직무교육 실시
- 4)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내실화
 - 장애학생 인권 강화를 위한 성교육 운영 지원
 - ※ '찾아가는 장애학생 성폭력예방교육': 유(19교), 초(50교), 중(18교), 고(10교), 특수학교(1교), 더봄학생(2교) 568명 지원
- 5) 기관 연계를 통한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예방 지원
- 6)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지원
 - 가) '특수교육 행동지원단' 운영 및 지원
 - 전문가, 관련 교수, 현장 교사 등으로 구성된 '특수교육 행동지원단' 운영
 - ※ '특수교육 행동지원단' 현장 지원: 4교(~5월)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장애학생 안전 강화
 - 가)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나) 특수학교(기관)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교육 실시
 - 다)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라)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 마) 특수학교(급)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따른 조치 방안 강구
 - 바) 학교주변 위험환경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함께돋움 특수교육교육과정 운영

가. 장애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23. 특수교육 세종창의적교육과정 지침서 개발
- '23. 특수교육 주요정책 공유를 위한 특수교사 연수 운영('23. 2.)
- 관내 특수학교 1학년 2학기 학생 맞춤형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e-집현전 누리집 내 특수교육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자료 탑재 및 활용 지원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시의 내실화

- 2학기 개별화교육계획 및 평가,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현황 파악(12월)

다.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취업 및 적응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사업 지원

- 2학기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및 전공과 학생(9명)
- 2학기 장애학생 학교내 일자리사업 추진: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및 전공과 학생
- 2학기 세종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직업체험 운영 지원: 고등학교 및 전공과 학생(40명)
- 장애인 일자리 지원단 컨설팅 운영

2) 장애학생 진로·직업 운영 지원 확대

- 장애학생 대학진학을 위한 사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연중)
- 대학입시 설명회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선택 지원(6월)
- 특수교육대상자 대학탐방 프로그램을 통한 안정적인 대학생활 준비 지원

2.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 및 인력 지원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지원체제 강화

1) 제2특수학교 개교 준비

- 제2특수학교 개교 준비 T/F팀 운영(6월~)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중등특수교사 장애학생 미디어교육 연수(7~8월 15시간)

- 특수교사 긍정적행동지원방안 연수('23. 1월 15시간)
- 유치원 통합학급 담임 및 방과후기간제교사 통합교육지원방안 연수(9월 2회)
- 권역별 특수교사 공동체 역량강화 연수 지원(4권역)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언어재활사 부족으로 배치정원 기준 변경 및 지원 확대
- 통학편의지원 예산 추가 확보 및 지원

3. 장애학생지원체계 강화 및 운영 내실화

가.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계절학교 운영

나.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제4회 세종장애학생체육대회 운영(10월)

다.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인력 운영 강화

- 특수교육지원인력 직무연수 운영(8월, 2023. 2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가. 지역사회 장애공감문화 조성

- 영화를 활용한 통합학급 장애이해교육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구입 및 활용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1월~6월, 29교 지원)

경기도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추진 목표)

-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역량 강화
- 학교와 마을이 함께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 공교육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추진 과제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편의 제공 강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 지원 ▪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3 진로 지원 및 직업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발전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공동체 장애인식개선 활성화 ▪ 장애학생 폭력예방교육 및 활동 강화 ▪ 장애학생 안전 강화 ▪ 장애학생 긍정적 행동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강화 ▪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제 강화 ▪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지원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강화 ▪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강화

II 2022년도 추진 실적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학교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 1) 특수학교 미설치지역과 특수학교 배치율이 낮은 지역에 지속적인 특수학교 신설 추진
 - 폐교 등을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2025. 3. 1. 개교를 목표로 안성특수학교 설립 추진)
- 2)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여건 개선 및 특수교육 수요 충족
 - 가) 과밀 특수학급 해소 및 거주지 인근 배치를 위해 신설 및 기존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 3) 복합특수학급의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
 - 가) 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 나) 장애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특수교육기관 설립 추진
 - 다)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기 위한 병원학교 설립·운영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강화

-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 가) 과밀학급 해소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 배치
 - 나)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수어통역사, 보행지도사 등 관련 자격보유 특수교사 내신 및 전보유예
 - 다) 중등과정이 있는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모두 배치
-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 가) 교실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 학교 밖 특수교육 연구회 운영 활성화
 - 지역 중심의 특수학급 공동 교육과정 개발
 -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 및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멘토링제를 통한 신규 및 저경력교사 지원

-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 가)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 및 교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편의 제공 강화

-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평가 방안 마련
-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시스템 운영
 - 나)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인력 지원 강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구축
 - 가) 교육지원청 단위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적응력과 학력 신장을 위한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연결하여 학교생활 지원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사 배치 확대를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컨설팅 강화
-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 장애유형별 거점센터 설치 운영
- 3)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 가) 특수·일반교사 협력 모형 개발을 위한 통합교육 중점학교 운영
 - 나)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보급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강화

- 1) 일반학교 교장·교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가) 일반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관련 3시간 이상, 통합학급 담임교사 15시간 이상 직무연수 이수
 - 나) 자격연수과정에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 및 장애유형별 특성과 지도 방안 관련 교과목 포함

2)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 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함께하는 우수 통합교육연구회 및 전문적학습 공동체 발굴
- 나) 국립특수교육원의 일반교사 대상 연수과정 안내 및 참여 권장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1) 장애정도와 장애특성을 반영한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가) 학교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편성·운영, 교사자율교육과정 운영
 - 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정 교과(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를 중심으로 중점학교 운영 지원
 - 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나)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일반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교육 계획 수립·반영
 - 다) 교육지원청의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책임장학 실시
- 3)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조치 지원
 -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이해도 제고 및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4) 특수교육 공동체학교 운영
 - 가) 혁신학교의 확대·발전으로 특수학교의 혁신학교 모델 구현
 - 나) 학교별·지역별 특수교육 공동연구 및 실천을 통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5)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 운영 및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준비
 - 가) 장애정도를 고려한 고교학점제 운영 모형 마련
 - 나)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고교학점제 참여 지원 활성화 및 지원 체제 마련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순회교육 지원 범위
 - 가) 병원학교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및 순회교육 지원 등 교육 지원 강화

-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근거 마련
- 다)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파악, 순회교육 지원
-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가) 순회학급의 여건 및 학생의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당 주 3회 이상 수업지원 권장
 - 나) 순회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 방법, 가족지원 방법 등에 대한 연수
- 마.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 1)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 가) 시설 접근성, 이동 편의성 등을 고려한 공간 및 위생시설, 신체 기능 보완 보조공학 지원
 -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심리안정실 등) 구축
 - 다) 학급당 학생 수 하향 조정 등 개인별 맞춤 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 2)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가)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와 필요에 따른 생활기능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 나) 교사 대상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도 전문성 증진 연수 실시 및 심리·정서적 지원 서비스 제공
 - 3) 특별건강관리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
 -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학교를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방문진료, 학생건강관리교육 지원
- 바.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 지원
 -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2) 다양한 학교 구성원을 활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교육과정 및 교과와 특성, 학생의 장애정도에 따른 다양한 학생집단 편성·개별화 교육 활용
 - 3)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 실행 방안 모색
 - 개별화교육계획에 구체적인 지원방법 포함,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

사.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제공
 - 가) 건강장애학생에게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
 - 나) 건강장애 선정절차 과정 중에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 선(先) 교육 지원 가능
 - 다) 건강장애학생의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 라)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학교장 책무 강화
- 2) 원격수업 운영 지원 강화
- 3)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고 근무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역량 강화 연수 기회 확대
-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 가) 지역 여건 및 센터 기능을 고려한 거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나) 특수교육대상영아를 위한 진단도구, 교재·교구, 부모 지원 및 무상교육 운영 프로그램 등 마련
 - 다) 모든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치료지원 확대 및 강화
 - 라)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 강화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 가)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적 자원 활용 강화
 - 나) 특수교육교원 양성대학과의 연계 및 지역 내 인적 자원활용을 통한 자원 봉사 인력 확보

자.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가) 장애학생 1인 1기(技),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 동아리 지원 강화
 - 나) 문화예술센터, 미술관,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원 확대

-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자용 신체능력검사(PAPS-D) 활용 권장
 - 나)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스포츠클럽한마당 개최
 - 다) 학교 스포츠클럽(스포츠 동아리, 패럴림픽 종목 활동 등) 운영 확대

3. 진로지원 및 직업교육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발전

- 1)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운영 지원
 - 가) 학교 수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자유학년제 운영 다양화
 - 나) 특수학교와 일반학기 연계학기(학년), 특수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고등학교 진로·직업교육과정 등과 연계를 통한 미래 진로 설계 지원
-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학교별 여건에 따른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을 통해 다양한 자유학기·학년 활동 프로그램 구성 지원
- 3)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 및 질 관리 지원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체험처를 지속 발굴하고 기존 진로체험처에 대한 체계적 질 관리
 - 나)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 연계 맞춤형 직업탐색 프로그램 운영
- 4)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 진로체험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지자체, 대학 등 참여)하여 지역 중심 네트워크를 구축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 가) 고등학교 과정 이상의 현장실습, 고용지원 등을 위한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나)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예술·체육 분야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중점학교 운영
 - 다) 학생, 학부모대상 진로 및 취업 등 미래 진로설계를 위한 정보 제공 강화
 - 라) 대학생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학 지원 확대
 - 마) 장애학생의 직업실기 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 취득과정 운영 확대

- 2)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착
 - 가) 현장실습을 조기취업이 아닌 직무체험 등을 통한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 방식 전환
 -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과 안전이 강화된 현장실습 운영 철저
- 3)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지원 확대
 - 중·고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진로진학상담' 전문자격을 갖춘 진로 전담교사 배치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가. 학교공동체 장애인식개선 활성화

- 1) 장애인식개선(장애이해)을 위한 교육 내실화
 - 가) 유·초·중·고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2회 실시 계획 반영
 - 나) 각급학교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한 자체 예산 편성 권장
- 2)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 가) 경기도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 직원의 장애인식개선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나) 근로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 실시
- 3) 특수학교 행사시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권장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역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특수학교의 이미지 제고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폭력예방교육 및 활동 강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 폭력예방 및 보호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폭력예방을 위한 신고센터 홍보 및 상시 보호체계 운영
- 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가) 특수학교 정기현장지원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 실시
 - 나) 매월 1회 이상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등을 방문하여 인권보호 지원 실시
 -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요청 시 진술 조력 지원
- 3)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교육·성교육 강화
 - 가) 초·중·고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 연 2회 실시 정착화

- 나) 특수학교(급)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다) 특수학교(급) 학생을 대상으로 매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 라) 통합학급에서 실시하는 성교육 포함 20시간 확보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안전 강화

-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특수학교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2)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 교육 실시
 - 재난 상황별(교통사고·화재·지진 등) 실질적 안전 대피 훈련 실시
-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4) 특수학교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안심알리미(GPS 위치추적기) 운영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긍정적 행동지원 강화

- 1) 긍정적 행동지원 지원체제 구축
 - 긍정적 행동지원 전문가 집단(대학 교수, 상담전문가, 심리치료사 등)의 자문위원 구성
- 2) 교육지원청별 긍정적 행동지원단 운영
- 3) 학교와 긍정적 행동지원단 협력을 통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 가) 장애학생의 도전행동을 위한 학교 구성원과 교육지원청 긍정적 행동지원단 협력
 - 나)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일관된 행동중재 실시
- 4) 장애학생 행동중재 프로그램 지원
 - 가) 한서중앙병원(의정부시 소재)을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지정
 - 나) 양성 교육 이수 특수교사를 특수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행동중재전문가로 활용
 - 다)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

마.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가) 의료지원 체계를 통해 장애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역 보건소 등 연계
 - 나)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홍보 강화

- 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경우,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전문가들로 진단·평가팀 구성 및 운영
 - 나) 장애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확충 및 활용 지원 강화
 - 3)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 학령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연령 장애인에 대해서 평생교육 제공 방안 강구
- 바.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교육 치료·방과후지원 운영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치료·방과후지원 확대를 위하여 통합 운영
 - 나) 치료지원 미이용시 교내방과후, 꿈이든카드(자유수강권) 사용 가능
 - 2)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
 -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 프로그램 운영
 - 3) 코로나19 단계에 따른 방역 및 운영
 - 코로나19 단계별 방과후학교 방역 체계 마련
- 사.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지원
- 1) 특수교육지도사 운영·관리 강화
 - 가) 중도·중복장애 학생 우선 지원
 - 2)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 가) 신규 채용된 특수교육지도사의 경우 반드시 30시간 이상 직무연수 의무 실시(원격연수 포함)
 - 나) 채용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직무연수 실시 권장(6개월 이내 연수 의무 이수)
 - 다) 교육현장 관계자 역할 이해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관련 협의회 실시
 - 3) 사회복지무원 배치 및 교육 강화
 - 가) 사회복지무원의 전공 및 적성,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 나) 사회복지무원 장애이해·인권 교육 실시
 - 다) 사회복지무원에 대해 장애이해·인권교육이 포함된 특수교육 관련 직무 교육 의무 실시

4) 대학연계 특수교육 봉사활동 추진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지원 전문화를 위해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 봉사활동 시행
- 나) 특수교육전공 설치 9개 대학 등과 협력하여 참여 희망교와 대학 연계·매칭 시스템 구축

아. 편의시설 설치 강화

1) 장애인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 강화

- 가) 유치원 및 학교 신·증축 시 ‘장애물 없는 환경(Barrier Free)’ 인증 의무 준수
- 나) 장애학생 안전 및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승강기 포함) 확충

2) 편의시설 확충 및 미설치 승강기 설치 지원

- 가) 지역(학교)별로 설치율이 저조한 항목에 대해 중점 설치 추진
- 나)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교 및 추가 설치, 노후 교체 지원

자.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강화

1) 특수학급 운영 관련 지원

- 가) 특수학급 운영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성 확보
- 나) 유치원 1학급당 3,000천 원, 초·중·고(전공과 포함) 1학급당 2,000천 원 (총액교부사업)
- 다) 신설·증설 특수학급(교)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특수학교(급)의 교수·학습 여건 조성

2)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지원

- 가) 특수학교 통학차량운영비 지원: 공·사립 특수학교 등 통학차량 교체 및 임차료 지원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3) 특수교육대상학생 복지 지원

- 가) 일반유치원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에 취원하고 있는 만 3~5세 특수교육 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 나)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주제별 체험학습(숙박형) 지원

- 4) 복합특수학급의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
 - 가) 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 등 전문적 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 나) 예술, 체육, 진로·직업 등 특성화된 특수학급 설치
- 5) 장애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특수교육기관 설립 추진
 - 가) 초·중·고교에 병설형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나) 중도중복장애 및 건강장애학생의 집중적인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기 위한 병원학교 설립 추진
 - 다)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규모가 같은 통합유치원 설립 운영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가. 폐교 등을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2025. 3. 1. 개교를 목표로 안성특수학교 설립 추진)
- 나. 대규모 개발사업 협의 시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사전 확보 노력
 - 2025년 이후 시흥 및 3기 신도시에 특수학교 설립 추진(고양, 남양주 등)
- 다. 특수학교(급) 운영을 위한 적정시설 확보를 위해 매년 2회 특수학교(급) 신·증설 수요조사
 - 유·초·중 8월, 11월, 고등학교 4월, 8월
- 라. 복합특수학급(중도중복장애) 7개교 운영 예정
- 마. 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확대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가.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이행조건 준수를 위한 컨설팅 실시(2022. 3월, 8월)
- 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질 제고를 위한 컨퍼런스 운영(2022. 11월)
- 다. 유관기관(국립암센터) 연계 체계적 학교 복귀 프로그램 지원
- 라. 경기도 건강장애 원격수업시스템 개발 및 구축 추진

3. 진로지원 및 직업교육 강화

- 가. 찾아가는 장애학생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2022. 5월~11월)

나.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7개소,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8교, 학교기업 5개소,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2개소 운영

다. 장애학생 직업실기역량강화 사업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자격증 취득

라.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내실화를 위한 3개년(2023~2025) 채용 계획 수립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가. 장애의 조기발견과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강화

※ 지방자치단체, 병원, 보건소, 복지관, 직업훈련학교, 산업체, 대학 등 의료·교육·보육·직업·성교육 등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나. 2022학년도 대학연계 특수교육 봉사활동 참여 대학 확대

다. 2022학년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학부모 통학비 지원(2022. 2월)

라. 2022학년도 특수학교 통학차량 임차비 및 노후차량 교체비 지원(2022. 3월)

마. 사회복지무원 책무성 제고를 위해 직무교육(장애이해·인권교육 포함) 확대

바. 2021년~2025년 중장기 예산 반영을 통하여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교 중 설치 가능한 학교 지원

사. 2022학년도 신설·증설 특수학급 교재교구구입비 수시 지원

강원도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가. 추진방향

- 1) 공교육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 2)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3)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

나. 중점 추진과제

-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 4)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공감문화 확산

II 2022년도 추진 실적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1) 특수학급 신증설

(2022. 3. 1. 기준)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급수	5	5	3	2	15

2) 지역별 특수교육대상자 수요를 반영한 특수학교 신설

구분	2020	2022
특수학교	봉대가온학교	동해해솔학교
학급수	27학급	17학급

3) 춘천권 특수학교 재구조화 추진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재구조화
- 장애유형이 아닌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춘천계성학교(유+초+중), 춘천동원학교(고+전공) 특성화·전문화 교육과정 운영
- 춘천계성학교 개축, 춘천동원학교 직업중점학교로 리모델링을 통한 미래형 학습중심 학습공간 구축

나.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1) 특수교사 배치 개선

- 특수학급 3학급 이상 특수학급 설치교의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
- 장애학생, 가족 등 상담 및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 과밀학급 해소 및 법정 정원 준수 강화

2)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

-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 및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수, 학습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가 과정 연수 실시
- 특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교육과정-수업-평가 방법 개선 및 생활지도를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교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4) 특수학교(급) 교사 보결 전담강사 운영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교사의 복지증진

다. 각급학교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철저

1) 각급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 모든 학교의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산 확보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 통학편의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 통학 지원인력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 마련

2) 각급학교 안전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규정 안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

- 각급학교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점검하여 개선방안 마련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중심 전문가 인적자원 확대(통합교육지원단 지역 17단, 도 1단)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 통합학급 운영비 지원, 통합학급 관리자 연수
- 2)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의 내실 있는 통합교육 운영
 -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춘천계성학교(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강원명진학교(시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 3)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 특수·일반교사 협업을 통한 유치원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통합교육 교육과정 중심 교육부 연구학교 운영(1교)
 - 일반·특수교사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을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3교)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권역·지역별)
 - 장애인식개선과 통합교육 이해 등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운영
 - 순회교육 및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 2)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 통합교육 관련 전문적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1) 지역 여건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 3)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 조치 지원
 - 교육과정 재구성 및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 4)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및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 연구·현장지원 활성화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2)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른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3) 주 3회 순회교육 운영 권장

마. 중도중복장애 학생지원 확대

- 1) 특수학교 내 심리안정실 구축(8교) + 동해해솔학교 심리안정실 구축(1교)
- 2)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을 위한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연계망 구축
 - 춘천동원학교, 강원명진학교, 동해해솔학교 3교 지원

바.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지원

-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지원 현황
 - 지원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유·초·중·고등학교
- 2)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 현황

구분	유급지원인력	장애학생 지원사회복무요원	계
2022	448	60	508

- 3) 특수교육 지원인력(특수교육지도사) 운영·관리 및 연수강화
- 4)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 운영 다양화

사.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 지원체제 확대

- 1) 교원학습공동체 연구회 지원을 통하여 학교급별·교과별 개별화교육 관련 우수사례 공유(연중)
- 2)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관련 연수 및 컨설팅 지원
- 3) 교육과정과 연계한 개별화교육계획 예시자료 개발(특수·통합)

아.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
 - ※ 원격화상수업은 (사)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와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로 운영
 - ※ 건강장애 선정: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개별 학생의 교육적·의료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선정 후 매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재심사)
 - ※ 특수교육대상자(건강장애) 선정·취소 시 학부모 동의 및 의사 진단서 등 확인

- 2) 병원학교 운영 내실화
 - 강릉아산병원 1교 운영(협력: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 3) 원격수업 운영 지원 강화
 - 학생의 건강 특성 및 희망 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 운영 방법을 강구
- 4)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 5)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 학습준비물 및 축하케이크 지원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강원도특수교육지원센터 및 17개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협력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 춘천특수교육지원센터	철원특수교육지원센터	- 상담·홍보활동
• 원주특수교육지원센터	횡성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및 진단·평가 지원
• 강릉특수교육지원센터	평창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활동 지원
• 속초·양양특수교육지원센터	인제, 고성 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 동해특수교육지원센터	삼척특수교육지원센터	- 통합교육 및 진로·직업교육지원
• 태백특수교육지원센터	영월, 정선 특수교육지원센터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운영
• 홍천특수교육지원센터	화천, 양구 특수교육지원센터	※ 거점 및 협력센터 공동사업 추진 권장 (예) 교사, 학부모 연수, 학생 행사 등)

- 2) 지역별 여건에 따른 전담인력 배치
 - 순회 특수교사: 46명
 - 치료사: 53명(특수학교 17명, 특수교육지원센터 36명)
 - 장애영아지도사: 2명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복지관, 직업교육 유관기관 및 산업체, 경찰, 인권보호 등 의료·교육·보육·직업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1) 장애학생 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 확대를 통한 장애학생 1인 1기(技), 문화 체험 활동 및 예술 동아리 지원 강화
 - 특수학교 대상 문화예술체육활동 운영비 지원

* 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할 수 있는 환경(인력, 시설 등)을 갖춘 특수교육기관(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등)

-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장애학생 통합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일반학교 체육교사 연수 강화
 - 특수학교 친환경 상상놀이터 구축 2교

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1) 치료지원 현황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1,425명
 - 지원방법: 치료사 지원, 치료지원비 지원 「모두사랑카드」
 - 지원방법: 120천 원×12개월, 연 1,440천 원(1인 기준)
 - 치료지원 내용: 물리, 작업, 언어, 음악, 미술치료 등
- 2) 통학지원
 - 특수학교 통학차량: 26대
 - 통학비 지원기준: 대중교통비 기준 1일 학생 2회, 학부모 4회

타.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운영

- 1) 방과후학교 운영
 -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 학생 2,225명
 - 지원내용: 교내 방과후학교, 위탁형 방과후학교, 방학 중 계절학교
 - 지원기준: 120천 원×12개월, 연 1,440천 원(1인 기준)
- 2) 방학 중 계절학교 운영
 - 대상: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기준: 방학 중 1주 범위 내에서 운영
 - 지원내용: 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3. 진로·직업교육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내실화

- 1)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체험처 발굴 관리 및 지원
 -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 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 동해, 태백, 홍천
 - 보호작업장, 사회적기업, 학교기업, 전공과 등 체험처 활동
 - 자유학년제 체험처 공유: 강원발달장애인센터 진로체험 및 강원도진로 체험처 공유, 확대
- 2) 특수학교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3)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 및 질 관리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행복한 일자리 사업 확대 운영: 학교내 일자리 사업 및 공공기관 현장실습 배치(연 150명)
- 2)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 운영
 -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 및 협의회 활성화로 지역사회 협력 운영
- 3) 특수학교(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교육 담당교사 연수 활성화
- 4)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 장애인고용공단,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업체와 MOU체결 및 협의 활성화
- 5)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
 - 2개교(태백라온학교, 속초청해학교)
 - 학교기업 직업지도사 배치로 현장실습 및 운영 지원
- 6)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효율적 운영: 영서고등학교
- 7) 전공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전공과: 특수학교 8교, 31학급, 전공과 교육과정 협의회 활성화
- 8) 전환교육지원센터

권역	거점지역	전환교육지원센터	역할
영서북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홍천	춘천동원학교	- 권역 내 특수학교(급)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영서남부	원주, 영월, 횡성, 평창, 정선	원주청원학교	
영동남부	강릉, 태백, 동해, 삼척	강릉오성학교	- 맞춤형 현장실습 지원
		동해해솔학교	- 지역사회 직업재활 전문기관과 연계·협력 추진
영동북부	속초, 양양, 고성, 인제	속초청해학교	- 특수학교(급) 교사 연수 등

- 직업지도사 배치(18명)로 전문적인 진로·직업 교육 지원
- 9)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 내 일자리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 중심 진로·직업 교육 강화
 - 10)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 11)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지원 강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연계하여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확대, 특수학교(급), 산업체 실습 확대
 - 12) 강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 훈련 및 직업체험 운영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가. 장애공감문화 조성

- 1)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인권교육 내실화
 - 일반학생 대상: 학교기본운영비 편성으로 모든 학교 지원
 - 장애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기관풀 안내(강원도교육청)
 -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대상: 문화예술 행사 활용 장애이해교육 운영
- 2) 유·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안내
- 3) 학교 및 기관의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교직원 현장체험형 장애이해교육: 강원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대상
- 4) 강원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제정(2019. 12. 27.)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
 - 특수학교(급) 재학 장애학생: 도특수교육지원센터(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부, 전공과)
 - 일반학교 재학 장애학생: 도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 지원센터
 - 성교육 연수: 강원도교육청 소속 특수(통합)교사 대상 성교육 연수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모든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대상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예방,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설치·운영
 - 정기 현장지원: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를 방문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특수학교 연 2회 중 1회는 도단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에서 운영
 - 특별지원: 특별지원 사안 발생 시 유관기관 협력 지원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안전점검의 날 연계: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안전관리 실태점검
- 2)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 교육 실시
-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4) 특수학교(급) 노후환경개선비 지원
- 5) 특수학교내 CCTV설치 완료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가) 특수교육 홍보를 통한 진단·평가 의뢰 절차의 정착

－ 진단·평가 의뢰 안내 홍보: 17개 교육지원청

－ 특수교육(무상·의무교육 포함) 등 홍보지 도내 시·군청 및 주민 센터에 배부

－ 특수교육 홍보를 위한 라디오 캠페인 진행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팀 구성 운영: 18개팀 운영

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 구성: 도교육청 1, 교육지원청 17개 운영

－ 기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에 관한 사항
-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사항

마. 특수교육지원체제 강화

1)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 확충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

2) 장애학생 방과후교육·돌봄 지원 및 연수 확대

3) 교원학습공동체 및 혁신교육연구회(특수) 운영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1)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2)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정원 내 배치 및 의무교육(통합교육) 이행 철저

3) 장애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 － 학부모, 교사 지원을 통한 장애유아의 초등학교 전이 과정 어려움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청별 계획 수립

나. 장애영아교육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지원 체제 마련

- 1) 특수교육지원센터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체계 구축
- 2)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담당 연수 및 부모 교육 제공

다.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1) 유·초·중·고 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학급 설치·운영

(단위: 학급)

추진내용		연차계획	
		2022	2023
특수학급	유	5	2
	초	5	7
	중	3	3
	고	2	3
	계	15	15

※ 신설 특수학교 별도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내실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내실화 도모

추진내용		연차계획	
		2021	2022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지원	순회교육대상자 수	130	132
	지원교사 수	46	46

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1)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운영
 - 치료지원대상자 및 지원예산 확대
 - 치료지원비 지원 「모두사랑카드」 운영 모니터링 강화

다.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확대

- 1) 특수학교(급) 노후시설 환경 개선
 - 특수학급을 포함하여 특수학교 시설·설비기준령 제4조 제2항에 의한 기준에 의한 설비·비품을 우선 확보
 - 특수학급 교실 기준 면적 확보

- 특수학급 시설·설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 운영비'에 반드시 편성·지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편성·집행지침에 포함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운영

- 1) 위탁형 방과후학교 「모두사랑카드」 현장 안착
 - 모두사랑카드 홍보 강화
 - 모두사랑카드 홈페이지 개선에 따른 연수 실시
- 2)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모니터링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운영의 질 향상과 개선방안 도출
 - 방과후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3. 진로직업교육 지원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 1)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
 - 우수업체·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연계운영, 생산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 개척지원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운영 다양화 및 활성화 지원
 - 진로직업교육 관련 컨설팅을 통해 지역과 연계한 직업체험처로 운영
- 2)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효율적 운영
 - 인근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및 컨설팅 제공
 -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직업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지원
- 3) 전공과 확충 및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지역의 수요를 고려한 전공과 설치·운영의 다양화 추진
 -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자립생활훈련 및 직업재활훈련으로 특성화하여 전공과 운영
- 4) 다양한 진로 정보 및 특수교사의 직업교육 역량 강화
 - 특수교사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연수 및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한 직업교육 역량 강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안내
-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활동 확대 지원 및 연수 실시(현장소통)

- 3)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홈페이지 홍보
- 4)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학교운영비 확대

나. 범도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 특수교육 홍보지 도내 시·군청 및 주민센터 배부
- 특수교육 홍보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라디오 캠페인 진행

다. 장애학생 체육·문화·예술활동 지원

- 1)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체육 관련 직무연수 운영 및 일반교사, 스포츠강사 등에 대한 장애이해교육, 특수체육 등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실시
- 2)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대상 체육·문화·예술활동 지원

라. 통합교육 지원 강화 및 담당교원 전문성 제고

- 1) 통합교육 내실화 및 통합학급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와 통합학급교사와의 협업을 위한 지원 강화
- 2) 통합학급 관리자, 행정직원 장애이해 연수 및 특수교육지원을 위한 워크숍 실시

충청북도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2. 추진 목표

- 가. 공교육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 나.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 다. 장애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핵심역량 강화

3. 추진과제

-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다. 진로 및 전환교육 지원 강화
-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II 2022년도 추진 실적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 1)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기회 확대 및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 가) 특수학급 신증설: 44학급(유 12, 초 31, 중 3, 고 △2)
 - 나) 특수학급 신증설 리모델링비 3,000만 원, 교재교구비 2,000만 원 지원
 - 다) 특수학교 학급 증설: 13학급(유 1, 초 2, 중 5, 고 5)

2) 특수학교(급) 설립의 다양화·특성화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추진
 - 가칭)청주특수학교 설립 추진(유·초등 과정, 2023. 3. 개교 예정)
- 나) 충북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내 특수학급 설립 추진(2022. 12.)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1) 특수교사 배치 개선

- 가) 3학급 이상 특수학급 설치교의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 권장
- 나) 특수학교(급) 보결수업 지원을 위한 순회교사 배치: 5센터 15명
- 다)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10교 10명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가) 특수교육교원 수업 전문가 양성 및 장애특성별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 (1) 특수교사 유·초·중 신규임용 직무 연수: 104명
 - (2) 특수교사 배움길(주제별·과정별) 연수: 53명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역량 강화 연수: 28명
- 나) 특수교육교원 성장과정별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기획 연수
- 다) 특수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 (1) 특수교육 연구회 구성·운영: 2팀
 - (2)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68팀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가)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을 위한 심리치유 연수
- 나) 교권보호 프로그램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통합 운영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 나)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10개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시·청각특성화지원센터
-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편의 지원
 - (1)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학생 1,517명, 보호자 1,383명, 총 2,900명
 - (2) 특수학교(급) 통학차량 지원 및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지원
 - (3) 특수학교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승하차실무사 배치
 - (4)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지원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인건비 지원

2)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점검을 통한 각급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3) 노후 특수학교(급) 현대화사업으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사항 준수·이행

- 특수학교 2교, 특수학급 43학급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통합교육 지원단 운영: 8센터

나)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1) 통합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일반학급 학급 정원 감축 권장

(2)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순회교사 배치 확대

다) 통합교육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1) 통합교육거점유치원 7개원, 통합교육거점기관 3센터, 통합교육운영비 37개원 지원

(2)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 배치: 시간제 기간제 교사 52명 배치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거점지원센터 확대·내실화

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확대

(1) 시·청각 특성화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 등 확대 운영: 3센터, 539천 원

(2) 시·청각 특성화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나) 행동중재 지원센터 운영

(1) 행동관찰 및 중재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동중재실, 심리지원실을 충북특수교육원 내 구축

(2) 행동중재 지원 자문단 운영: 행동중재 대상자 선정 및 컨퍼런스, 중재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3)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특수교사 15명

3) 특수교사·일반교사 협력 강화

가) 특수교사·일반교사의 협업을 통한 유치원 통합교육 성과 제고

나) '정다운학교' 운영으로 협력수업 등 다양한 통합교육 협력모형 개발

· 선도학교 6교(초등학교 3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1교)

다) 충북형 맞춤형 통합교육 모델 및 지원체제 개발 연구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가) 통합학교 관리자 집합 및 원격연수: 367명

나) 통합학급 담당교사 집합 및 원격연수: 99명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1) 학교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강화
-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 학습자료 개발 지원 확대
- 4)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 5) 2022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추진
 - 특수교육 교육과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개정 연구 및 도움 자료 제작
- 6)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준비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순회교육 주 3회 이상 권장(특수교육지원센터 대표교사 6시간 이내, 순회교사 16시간 내외)
- 2) 소속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추어 순회교육 실시하여 수업공백 최소화

마.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 2)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 3)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
- 4) 장애특성에 맞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특수학교 10교, 100백만 원

바.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관리 강화
 - 가)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중도중복장애학생 우선 지원
 -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 순환근무제 확대 추진
- 2) 특수교육지원인력 역량 강화
 - 가) 특수교육지원인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집합 연수
 - 나) 특수교육지원인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원격 연수(15시간 또는 30시간)
- 3) 사회복지무원 배치 및 교육 강화
 - 가) 신규 사회복지무원: 3개월 이내 장애이해·인권교육이 포함된 직무연수 16시간 이상 실시

- 나) 기배치 사회복지요원: 연 2회 이상 장애인권·직무역량 직무연수 실시
- 4) 유급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 운영 다양화

사.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2) 다양한 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 등을 활용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3) 행동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지원 사항을 개별화교육계획에 반영
- 4) 개별화교육 현장 모니터링 실시: 도교육청, 특수교육원, 10개 특수교육지원센터

아.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운영 및 원격수업 지원
- 2) 종합병원 내 병원학교(충북대병원) 운영
- 3) 원격수업 운영 지원 강화: 꿈사랑학교(사단법인 더불어하나회), 스쿨포유(한국교육개발원)
- 4)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특수학교 1교, 700백만 원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사 배치 확대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처우개선 인센티브 제공: 승진가산점 및 이동가산점 부여
-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 가) 지역 여건 및 요구를 고려한 거점지원센터 운영
 -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가족 지원 강화: 10센터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1)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특수학교 10교, 특수교육지원센터 10센터, 140백만 원
- 2)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3. 진로 및 전환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발전

- 1)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내실화 운영 지원
 -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등 특수학교 진로교육 강화: 10교, 80백만 원
 - 나) 거점센터(청주·충주센터)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 및 교원·학부모 인식 개선을 통한 참여 공감대 확산
-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가) 전문적학습공동체, 교과협의회 등을 통한 자유학기 프로그램 구성 등 교실수업 개선
 - 나) 담당 교원 맞춤형 교원 연수 및 특수학교 자유학기 프로그램 개발자료 활용
- 3)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체험 지원 강화
 - 가) 진로체험망 ‘꿈길’을 통한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 및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질 관리
- 4)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 가) 특수교육원,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청주·충주)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
 - 나) 양질의 체험처 및 프로그램 확충으로 학생 체험활동 지원 강화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가) 전공과 운영: 특수학교 10교, 고등학교 1교
 - 나)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3교, 90백만 원
 - 다)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고등학교 3교, 120백만 원
 - 라)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특수학교 4교, 40백만 원
 - 마) 전문직업인 양성 특화교육과정 운영: 특수학교 2교, 40백만 원
 - 바) 진로교육 집중 학년제 운영: 특수학교 4교, 20백만 원
 - 사) 학교간 진로·직업교육 운영: 특수학교 1교, 15백만 원
 - 아) 특수학교 고등부 및 전공과 직업교육: 특수학교 10교, 고등학교 1교, 190백만 원
 - 자) 중·고·전공과 학생의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진로계획 지원: 특수교육원

- 2)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 가)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으로 학생보호 및 특수교육(진로직업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나) 관계부처(기관) 연계 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효율화 도모
 - 다) 충청북도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지침 안내 및 현장실습 설명회 개최
 - 라) 현장실습지원단 운영: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현장실습 모니터링 및 컨설팅
- 3)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강화
 - 가) 장애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및 취업지원 방안 마련
 - (1)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40백만 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계, 일반사업체에서 현장중심 직업훈련, 훈련지원인이 직무지원
 - (2) 장애학생 학교내 일자리 사업: 369백만 원
 - 장애인고용공단 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학교내 직무훈련을 통한 직무적응능력 개발
- 4)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 확립
 - 가) 진로전담교사의 진로교육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 (1)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10교 10명 배치
 - (2) 운영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 협의회 및 평가회 4회, 역량강화 연수 4회
- 5) 진로·직업교육 현장지원 체계 강화
 - 가) 지역사회중심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나이스 장애학생 취업지원 시스템 운영 지원
 - 나) 장애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전문 인력(취업지원관) 배치
 - 다) 학부모에게 진로·취업 등 자녀의 미래 설계를 위한 정보 제공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전환교육 지원 강화

- 1) 다양한 진로별 맞춤형 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가) 진학, 취업, 장애인 서비스 등 정보제공을 위한 전환교육 매뉴얼 개발 보급
 - 나) 대학 진학 정보제공 및 진학상담, 대학생활 체험 제공
 - (1) 특수교육대상학생 대학입학 설명회: 15개 대학, 교사 및 학부모 139명
 - (2) 특수교육대상학생 대학입학 자료집 제작 및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지원

- 다) 취업 후 지속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전환교육 지원
 - (1) 경제교육, 직장예절 및 스피치 교육,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 노동인권 교육
 - (2) 유관기관 및 사업체와 함께하는 고3, 전공과 대상 모의면접 및 컨설팅 실시
 - (3) 직업체험, 취업 정보제공 등 충북 장애학생 직업박람회 개최
- 라) 지역 특색 및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여가·문화생활 체험프로그램 지원
- 2)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여건 조성
 - 가) 전환기 학부모교육을 통한 학부모 자조모임의 토대 마련
 - 직장이해교육 및 현장탐방, 취미·창업클래스, 우리 자녀 성장스토리 연수 연계 운영
 - 나) 전환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및 전환교육 연수
- 3)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관련 유관기관 연계 협력 강화
 -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과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 (1) 업무 지원 인력 파견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 관련 사항 유기적 협력
 - (2) 고등학교 및 전공과 학생 대상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나) 취업지원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운영
 - (1) 지자체, 취업지원기관, 취업처, 장애관련단체 등 19개 기관으로 구성, 연 2회 정기협의회
 - (2) 장애학생 취업지원 관련 기관간 교류 및 협력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 1)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가) 유·초·중·고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 포함) 학기별 1회 이상 의무 실시
 - 나) 일반학교 장애이해교육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다) 장애인권교육 및 장애체험 운영 온·오프라인 장애이해체험관 운영: 충북특수교육원
 - 라) 기관별 직장교육으로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2)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홍보 강화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 내실화

- 가)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및 특수학교 내 신고함 설치 운영
- 나) 장애학생 인권 실태조사 실시
- 다) 특수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10센터 11개 지원단 운영
- 나) 월 1회 이상 정기지원을 통한 학교별 인권보호 현장 점검 및 지원
- 다) 인권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2회, 컨설팅 4회
- 라)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장애학생 학교(성)폭력 예방 교육 및 상담 실시

3) 장애인권교육 강화

- 가) 유·초·중·고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인권교육 포함한 장애이해교육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 나) 장애학생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다)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학칙 등 신설·강화

4) 특수교육대상학생 행동지원 강화

- 가) 충청권 거점 행동중재 지원센터 운영: 10백만 원
- 나) 개별 차원의 행동중재 지원 프로그램 운영: 80백만 원
- 다) '긍정적 행동지원단' 운영을 통한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3센터, 28백만 원
- 라)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을 통한 행동중재 및 지원: 4교, 80백만 원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계획 수립·운영
- 2)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안전교육 실시
-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 1) 홍보 및 상담 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2)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 3)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매뉴얼 준수 등 선정·배치 절차 강화

- 4) 입학적응프로그램 운영 등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 5)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지정·배치

마.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및 치료지원 체계 강화

1) 방과후학교 운영

가)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1인당 월 12만 원 이내 지원

나) 종일반 방과후학교

(1) 44학급(특수학교 30학급, 특수학급 14학급) 운영

(2) 종일반 1실당 특수교육 종일반 전담사 1명 배치, 급당 운영비 7백만 원 지원

다) 유치원 통합형 방과후학교: 시간제 기간제교사 52명 배치, 급당 운영비 2백만 원 지원

2) 치료지원

가) 일상생활 기능향상 및 사회적응력 신장을 위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강화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1인당 월 12만 원 이내 지원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 확충 및 역량 강화

가) 도교육청 특수교육팀: 전담 장학관 1명, 장학사 2명

나) 충북특수교육원 전문직 배치: 연구관 2명, 연구사 5명

다)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직 배치: 전담 장학관 1명, 전담 장학사 3명, 겸임 장학사 7명

2)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가) 특수학급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목적성 예산 지원

• 유·초 450만 원, 중 550만 원, 고·전공과 650만 원

나) 신규 및 저경력 교사 배치 시 경력교사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멘토교사제 운영

3)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강화

가) 충북장애인교육발전협의회 운영: 연 2회(1월, 7월)

나) 충북특수교육갈등소통협의회 운영: 정기회(4월), 사안 발생 시 수시 개최

II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노력

-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기회 확대
 - 가) 특수학교 설립 추진 시 교육대상 학부모, 학교 관계자,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 구성
 - 나) 특수학급 운영을 위한 적정시설 확보를 위해 매년 2회(8월, 1월) 특수학급 신증설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에 맞는 교육시설 확보 노력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1)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연수 기회 확대
 - 가) 특수학교(초) 정교사(1급) 자격연수
 - 나) 특수교사 배움길 연수: 주제별, 과정별 10시간 이상 운영
 - 다) 특수교육교원의 마음 건강 및 심리적 소진 예방을 위한 심리치유 연수 운영: 2회
 - 라) 특수교육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 (1) 교권보호지원센터와 연계한 교권 및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 법률 상담 등 지원
 - (2) 마음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교원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심층심리 검사 및 심리상담 지원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1) 정당한 편의제공 환경 구축
 - 가)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구축
 - (1) 도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보유 현황 및 대여 안내(충북 특수교육원 홈페이지 통합 배너 활용)
 - (2)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및 현장 활용 지원 강화(시각, 청각, 학습, 의사소통, 이동 및 보행, 자세유지, 일상생활 등)
- 2) 특수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제공 강화
 -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의 기준에 맞는 시설·설비 확보를 위한 노후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 실시

2. 통합교육·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순회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 조정, 정기상담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컨설팅 강화
- 2)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정보 지원 등 통합교육 지원 강화
 - 가)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통합교육지원단 확대 운영
 - 나) 통합교육 관련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강화
- 3) ‘거점 행동중재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장애학생 학교적응력 신장 및 통합교육 지원 강화
- 4)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 가)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보급
 - 나) 충북형 맞춤형 통합교육 모델 및 지원체제 개발 연구 결과를 반영한 통합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가)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 나) 국립특수교육원 연수과정에 일반학교 관리자 및 교사 참여 권장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1) 2022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추진
 - 교육과정 개정 연구 및 교육과정 도움자료 제작
- 2)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컨설팅
- 3) 앱 해설 프로그램 개발 제공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에 맞는 콘텐츠 발굴 및 활용방법 지원

라. 개별화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 1) 개별화교육계획 자체 점검 실시 및 특수학교 모니터링 실시

3. 진로 및 전환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역 내 일자리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 중심 진로·직업교육강화

- 가) 각급학교 내 장애학생 장애인일자리 운영
- 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와 연계 지원
- 2) 충청북도교육청 '어울림방 카페' 운영
 - 가) 성신학교 고3, 전공과 재학생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고3, 전공과 재학생
 - 나) 발달장애영역 학생의 직업능력 향상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체험기회 확대
- 3) 충청북도교육청 어울림 '休' 운영
 - 가) 청주맹학교(시각장애) 전공과 재학생
 - 나) 시각장애 학생의 직업능력 향상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체험기회 확대
- 4)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
 - 가) 참여 학교: 꽃동네학교, 청주맹학교, 청주성신학교
 - 나) 진로·직업체험의 날 운영: 11월 중, 특수학교, 직업교육 거점학교 및 학교 기업
- 5)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효율적 운영
 - 청주농업고등학교,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제천제일고등학교 컨설팅 실시
- 6) 충북특수교육원 전환교육팀 운영을 통해 충북 전환교육 역량 강화
 - 가) 장애학생 학교 졸업 이후 지역사회 적응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
 - 나)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협력 체제 구축
 - 다) 진학 및 취업 정보 지원을 통한 사회 전환 능력 향상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1)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확대 운영
 - 가) 일반학교 비장애학생 대상으로 한 장애이해교육
 - 나) 장애이해교육 전문 강사 학교 방문교육 실시
- 2) 교육기관 내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매월 1교 이상 방문)
 -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협의회 및 간담회 실시: 각 2회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컨설팅 실시
 - 다) 특수학교 대상 인권지원단 정기현장지원 연 2회 이상 실시
- 2) 전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다.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 1) 선정배치 매뉴얼 개정 및 개정 내용 안내
- 2) 상급학교 진학 선정·배치 안내 및 추진

라.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특수학교(급) 교육환경 개선 현대화 사업 연차적 추진
 - 가) 특수학교의 장애유형, 교육과정 운영현황, 교육환경시설·설비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 교육환경 개선('19.~'22.)
 - 나) 특수학급 설치연도, 통합교육 환경(편의성), 특수학급 시설·설비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한 연차적 교육환경 개선('19.~'22.)
- 2) 특수학교(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맞춤형(컨설팅) 장학 및 사업별 모니터링으로 지원 역량 강화

충청남도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비전

현장공감 특수교육으로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추진목적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장애학생 인권 존중 및 사회 참여 역량 강화

중점추진과제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 및 특수교육 기회 확대
나.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강화
다.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라.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나. 일반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다.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 강화
마.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바.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사. 특수교육 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아.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지원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카. 특수교육 스마트 교육 내실화
타. 특수교육 지원장학 활성화

3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발전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다. 장애인 평생교육 안내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마.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제 강화

II 2022년도 추진 실적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 및 특수교육 기회 확대

1)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기회 확대

- 특수학교(1교)와 특수학급 신·증설(63학급)로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및 과밀학급 밀집도 완화: 2022. 3. 1.자 예산꿈빛학교 개교(영·유·초·중·고·전공과, 20학급)

※ 특수학교 현황 2020년 8교 → 2021년 9교 → 2022년 10교(공립 8교, 사립 2교)

※ 특수학교(급) 학급수(4. 1. 기준)

구분	영·유아		초	중	고	전공과	계
특수학교	3	10	92	55	54	40	254
일반학교	98		408	160	114	-	780
계	111		500	215	168	40	1,034

※ 특수학교(급) 학생수(4.1. 기준)

구분	영·유아		초	중	고	전공과	계
특수학교	8	36	414	258	254	298	1,268
특수학급	386		1,809	672	580	-	3,447
일반학급	62		265	100	84	-	511
계	456		2,488	1,030	918	298	5,226

- 나) 가칭)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지원 강화

- 기본계획수립(2022) → 부지 정밀안전진단(2022) → 자체·중앙투자심사(2022~2023) → 개원(2026)

2) 특수학교(급) 설립의 다양화·특성화

- 가) 소규모·단일과정 특수학교,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등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나) 지역 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추진
- 다) 유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유치원(2개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4개원, 2센터)

- 3) 특수학교(급) 법정 학생 정원 준수 및 과밀학급 지원
가) 유치원(4명), 초등학교(6명), 중학교(6명), 고등학교(7명), 전공과(9명)
나) 과밀학급 교사 추가 배치(11명), 법정 정원 초과 특수학급 교사 추가 배치(14명), 중증장애 지원(6명)
- 4) 특수교육 교원 확보 노력: 학생 4명당 교사 1명
- 5)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확충 지원
- 6) 특수학교(급) 학생 정원 준수 및 재정지원 (급당 4,000,000원, 학교급별 정원 초과 1명당 500,000원)

나.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강화

- 1) 전문성 신장 연수기회 확대: 특수교사 1회, 신규 특수교사 1회 이상 운영
- 2) 통합교육 관련 연수 기회 확대: 연구회(3), 학습공동체 운영(42개)
- 3) 상반기 역량강화 연수 추진(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연수 1회, 인권지원단 담당자 연수 1회, 현장실습 담당교사 연수 1회,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연수 1회, 특수교육 교육과정 네트워크 연수 1회)
- 4) 특수학급 담당 교원 부장교사 임용확대(고등학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2교, 12명 지정 배치)
- 5) 특수교육 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 1) 정당한 교육편의 환경 구축
- 2) 각급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라.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 확충 및 역량 강화
- 2)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통합학급당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적정 배치 및 일반학생 수 감축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1~3명 감축권장
- 2)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확대
- 통합교육지원단 운영(5센터), 통합교육지원실 운영(58교)
- 3)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과정 지원(순회교육 181명 실시)

- 4)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 가)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학급 정원 감축
 - 나) 통합유치원(2개원) 교원 통합교육 연수 실시
 - 다)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유치원, 유치원 통합 교육 거점기관(유치원 2개, 특수교육지원센터 2센터) 운영
 - 라)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과정 시간제 기간제교사 지원(78명)
- 5)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 가) 특수·일반교사 협업을 통한 유치원 통합교육 성과 제고
 - 나) 특수·일반교사 통합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4교)
- 6)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 가) 장애유형을 고려한 지원센터(시·청각, 중도중복장애) 운영
 - 나)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통합교육지원단' 운영(5센터)
 - 다) 5개 대학연계 예비특수교사-학생 학습지원 도움단 운영(대학생 47명, 학생 52명)
- 7) 통합교육지원을 위한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 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장애이해수업
 - 나) 문화예술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교육(38교)
 - 다) 장애공감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활용: 국립특수교육원 개발 자료(에듀 에이블 탑재)

나. 일반교육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책무성 강화
 - 가) 일반학교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강화(관리자 3시간, 통합학급 담임 15시간 이상)
 - 나) 통합교육 및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연수 참여
- 2) 일반교육 교원 연수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강좌 개설
- 3) 일반교육 교원의 특수교육 연수기회 확대: 장애학생 인권보호 직무연수 (국립특수교육원 연수정보시스템 상설 연수 활용)
- 4)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2개 연구회 운영)

다.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1)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이해도 제고,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학습공동체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2) [특수학교] 지역 여건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가)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 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정 교과(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를 중심으로 중점학교 운영 지원
- 3)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4) 특수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에 4,500여 개 교육자료 탑재, 콘텐츠 제작 탑재 활용
 - 가) 특수학급: 초-국어, 수학 / 중-진로와 직업 수업안
 - 나) 맞춤형 특수교육 수학 콘텐츠: '도니머니, 어서와 화폐공부는 처음이지?' 영상자료 제작 탑재
 - 다) 주제 중심 수준별 학습 콘텐츠: 3개 주제(표지판 알기, 시간 개념, 개인위생 관리) 코딩 콘텐츠 제작 탑재
- 5)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 내실화 지원: 영유아의 발달단계·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 6) 2022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추진(유·초·중 특수교육 교육과정 네트워크단 운영)
- 7) 고교학점제 시범운영(1교) 및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해 준비

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 교육 강화

- 1) 매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그 결과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 2) 매 학년 시작일 부터 2주 이내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매 학기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진학 및 전출 시 전입학교로 14일 이내 개별화 교육계획 송부
- 3)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인근 특수교육지원 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

마.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강화

- 1) 지원 범위: 각급학교,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181명)

-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가)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 교육계획을 작성·운영
 - 나)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음
 - 3) 순회교육 담당교원 연수 강화
 - 가)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방법, 가족지원, 성교육, 인권보호 등에 관한 연수 강화
 - 나) 학기 초 순회교육 대상 학교 관리자, 통합학급 교사 연수 지역별 추진
- 바.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 1)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보조공학기 지원, 심리안정실 등 구축
 - 2)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특수학교 7교)
 - 3) 의료적 지원 필요 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3교), 의료적 지원을 위한 보건교사 추가 배치(1교), 치료지원전담팀 운영
- 사.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 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
 - 2) 병원학교 운영: 3기관(단국대학교 천안병원, 국립공주병원, 아람메디컬병원)
 - 3)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병원학교 강사 및 보호자 교육(1회)
 - 4) 원격수업 운영 지원 강화: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 5) 건강장애학생 학적·성적처리 지침 이행
 - 6) 건강장애학생 학교 복귀프로그램 운영: 건강장애학생의 소속학교 교원 및 또래 학생을 포함하여 운영
- 아.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지원
- 1) 지원인력 1인당 특수교육적 보조가 필요한 학생 2~3명 지원(610명)
 - 2) 특수교육지원인력 역량 강화: 신규 연 30시간 이상 의무 실시, 기배치 지원인력 연 1회 이상 지원청별 실시

3) 사회복지무요원: 신규 배치 3개월 이내 장애인권교육 포함 직무교육 16시간 이수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충남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및 역할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장학사 16명, 교사 96명)
-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성 신장(상반기 연수 1회)
- 4) 현장중심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강화(본청 1, 교육지원청 14센터)
- 5)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중심의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 6)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치료지원 및 의료적 지원 강화
- 7) 가족지원
 - 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지원 강화
 - 나) 가족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14개), 지역 장애인 부모회(7개)
 - 다) 부모자조프로그램 운영(7센터)
 - 라) 대학 연계 맞춤형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4개 대학)
- 8)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운영
 - 가) 수어통역(5명), 문자통역기(7명), 보청기·인공와우용 배터리(91명), 보청기·인공와우용 부품(6명), 보조공학기기(33명), 대체교과서(15명) 지원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보조공학(학습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기기 사용방법과 관련 정보 제공
 - 다) 지원학생 졸업 또는 전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선정 취소된 경우 즉시 기기 반납
- 9) 통학편의 지원
 - 가) 원거리 통학생의 통학편의를 위한 통학차량 적정 배치(49대), 통학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통학편의 제공(733명)

- 나) 통학지원인력 배치: 특수학교와 통합유치원에 통학차량지도원(48명), 운전원 배치(공무직 1명)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1)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 장애학생 1인 1기(技),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 동아리 지원 강화
 - 가)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활성화: IT결합형 타악기 어울림 연주단, 사물놀이 연주단, 합창단, 오케스트라 운영
 - 나)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 활용 및 관계기관, 문화예술인 재능기부 등을 통해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체험 기회 제공 및 문화향유권 확대(10교)
-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및 장애학생 스포츠클럽 운영
 - 가) 장애학생 체육꿈나무 육성 사업으로 장애학생 우수 선수 발굴·육성(18교)
 - 나) 장애인 체육대회 종목별 선수 조기 발굴: 희망 학교 중심으로 체육 육성 종목 발굴 지원(7개 종목)
 - 다) 장애인체육회와 삼성SDI 스포츠클럽을 연계한 선수 육성(42명)
 - 라)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체육교실 운영 사업 연계 지원(12명)
 - 마)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결과(선수 145명, 메달 116개(금 29, 은 46, 동 41), 종합 2위 달성)
-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연수 강화
- 4) 특수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강화(10교)

카. 특수교육 스마트 교육 내실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 확대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설 및 기기 지원 (17교, 4센터)
 - 나) 특수교육 교원의 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연수
 -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스마트기기 활용 교수 모형 적용 및 자료 보급
- 2)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정보 접근권 강화('보이스아이'앱 구축)
- 3) 장애학생 교육정보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 가) 순회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 나) 장애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교수·학습지원 사이트 운영

- 4) 「장애학생 스마트교육」 지원: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e-스포츠실' 구축
- 장애학생 스마트교육 지원: 29교, 4센터
- 5) 특수교육대상학생 상상이름교육 및 충남형 인공지능교육(AI) 활성화(예산
꿈빛학교)
- 6) 국립특수교육원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애학생 교육 지원강화

다. 특수교육 지원 장학 활성화

- 1)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장애유형,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장학 실시(상반기
특수학교 3교 실시)
* 특수학급은 교육지원청에서 실시(14개 지원청)
 - 나) 배움중심 수업 및 수업나눔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지원(10교)
- 2) 특수학교(급) 단위학교 자율장학 실시
 - 가) 학교 자체 행복나눔 장학 계획 수립 시행: 학교자체 자율장학 지원 조직
구성·운영
 - 나) 단위학교 자율적 전문적교사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 장애맞춤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장학
· 수업나눔 활성화,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적교사학습공동체 운영
(42개)

3.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발전

- 1)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내실화
- 2)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년제 운영: 자유학년제 운영(특수학교 9교), 거점특수
교육지원센터(8개) 지정·운영
- 3)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중점
 -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9교)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활용하여
학교 여건에 따라 운영
 - 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136시간 이상 자유학기 활동으로 편성·운영
가능하나, 교과(군)별 시수는 50%이상 확보
- 4) 교원 및 보호자 교육을 통한 참여 공감대 확산
 - 가) 교사연구회 등 학습공동체 구축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 지원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특성을 고려한 학생중심의 수업 방법 적용
- 다) 학교장, 핵심 교원,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연수 과정 운영 및 컨설팅 추진

- 5)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 및 질 관리
- 6)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 강화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장애학생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가)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
 - 나) 특수학교 초 5~6학년 진로교육 집중 학년제 운영(1교)
 - 다) 장애학생 사회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8교)
- 2) 장애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 가) 교육과정 내 안정적인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운영
 - 나) 직업평가를 통한 학생의 적성·흥미·요구 등에 맞는 직무를 고려한 현장실습 운영
 - 다) 산업체 및 장애맞춤 훈련기관과 학교 등이 협업하여 학생의 현장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체 도제교육형 현장실습’ 과정 운영(10명 예정)
- 3)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강화
 - 가) 장애유형·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및 취업지원 방안 마련
 - 나) 중증 발달장애학생들을 위한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참여 확대
- 4) 중등과정 이상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9교) 및 진로전담교사 전문성 강화
- 5)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체계 강화
 - 가)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현장실습 담당교사 연수:(상반기 1회)
 - 나) 현장중심 맞춤형일자리 사업(48명), 중증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134명)
 - 다) 현장중심 맞춤형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확대 운영(4기관)
 - 라) 장애학생 취업지원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운영(본청 1개단 25명, 14센터)
 - 마) 대학연계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지원(3개 대학 8월, 12월)

다. 장애인 평생교육 안내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3개월), 장애인 평생교육단체 지원(한빛장애인평생교육원)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 공감 문화 조성

- 1) 교과서의 장애 관련 내용 교육 충실
- 2)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가)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단체 소속 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3) 장애인식 개선 행사 추진
- 4) 장애이해·체험활동 등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 5)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 구성·운영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 내실화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15개단 운영(도교육청 1, 교육지원청 14), 인권지원단연수(1회)
 - 나) 도교육청·교육지원청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력과 지역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8명 이상)
 - 다)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실태조사 실시(초 4학년 이상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 2)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지원 강화
 - 가) 행동중재 거점지원센터를 구축·운영(1센터)
 - 나) 심각한 위기행동은 학교관리자, 행동중재 인력풀(전문상담교사, 대학교수, 행동중재전문가 등)과 행동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원강화
- 3) 더봄학생(학교폭력이나 성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 인권침해 예방 관리 및 지원 강화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운영
 - 가) 특수학교의 학교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10교)
 - 나) 장애학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통학 환경 개선(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 2)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교육 실시
 - 가) 현장실태를 고려한 상황별(교통사고, 화재, 지진 등) 실질적 안전 대피 훈련 실시
 - 나) 학교별 재난상황별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학생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학교 단위 재난 대응 매뉴얼정비
- 3) 교내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 4)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 노력 지속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과 진단·평가 체제 구축

-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제 구축
 - 가)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교육적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제 구축
 - 나)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실태 파악(2023학년도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배치 안내)
-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진단·평가 실시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전문성 확보(연수 2회)
- 3)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 4)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 5) 취학의무 면제·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마.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제 강화

- 1) 특수교육 돌봄참여: 공립유치원 시간제기간제교사 배치를 통한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78명)
- 2) 특수학교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배치 운영(9개 특수학교, 24명)
- 3) 장애전담 어린이집,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한 종일반 운영
- 4) 지원이 필요한 가정(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중 희망자 우선 지원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
 - 특수학급 신설 22학급, 특수학급 증설 34학급 환경개선 지원

나.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강화

- 1) 특수교육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 기회 확대
 - 가) 특수교육 교사 직무연수 실시: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연구회, 교육지원청 주관
 - 나) 충남 특수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특수교육 신규교원 2022. 7월 중 실시
 - 다) 특수교육 교원의 교과지도, 특수교육 핵심영역, 장애유형별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평가조정 연수 확대 및 평가조정 우수사례 공유
- 2) 중도중복장애 학생,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평가 방안 마련·적용
- 3) 각급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하반기 특수학교(급) 교육환경개선(23교 예정))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 강화

- 1) 유치원 통합교육 거점기관 자문상담, 통합유치원 지원단 운영
- 2) 관리자 통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 연수(3시간)

나.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지원

- 1) 특수교육지원인력 역량 강화(직무교육 등)
 - 가) 신규 배치 사회복지무요원 대상 직무교육 16시간 이상 교육지원청별 실시
 - 나) 기 배치 사회복지무요원 대상, 연 2회 이상 장애이해·인권교육 실시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 가) 건강보험공단,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사설특수교육실, 복지관, 직업훈련 학교, 산업체 등 의료·교육·보육·직업 등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나) 주민센터, 시·군·구별 장애인 복지관련 부서와의 교류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운영·지원하는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활용
 - 다) 특수교육교원 양성대학 등 인근 대학, 지역 내 인적자원과 연계하여 자원 봉사 등 교육기부 인력 활용

라) Wee 센터 등 교육지원청 내 센터 간 업무 협력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강화

마) 특수교육지원센터 현장 맞춤 지원 장학(14개 센터)

– 2023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계획 및 진단·평가 시행

라. 장애학생 문화 예술·체육 지원 강화

1)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우선 배치 노력

나)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장애학생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다) 장애학생 체육꿈나무 육성 사업으로 장애학생 우수 선수 발굴·육성

라) 충남장애학생e페스티벌 운영(7. 9. 예산꿈빛학교, 학생 100여명)

마) 전국장애학생e페스티벌 참가(9월, 온라인, 학생 25여명)

바) 충남장애학생체육대회 운영(10월 계룡시 일원, 선수 및 지도교사 1,500여명)

3.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발전

1)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 강화

가)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양질의 체험처·체험프로그램 확충으로 학생 체험활동 지원 강화

나) 지자체, 대학 등과의 진로체험지원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다) 거점센터-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학교 진로체험처 매칭, 안전한 체험처 관리

라) 꿈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진로체험버스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 협의체 운영 및 실습처 컨설팅 실시

가) 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과 협업을 통한 현장 실습 활성화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2) 하반기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한국장애인개발원 연계, 4개 수행기관)

- 3) 충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체험 프로그램 하반기 운영(장애인고용공단 연계)
- 4)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지원관 배치(센터 6명 추가 배치) 예정
- 5) 장애학생 진로진학 설명회 개최
- 6) 장애학생 대학생할 체험 지원(3개 대학, 8월, 12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 공감 문화 조성

- 1) 장애인식개선 행사 추진
 - 가) 교육지원청과 지역 주민이 연계한 작은 음악회, 콘서트, 연극, 사물놀이 등
 - 나) 특수학교(급)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체육대회, 학예회 등
 - 다) 장애인식 변화 조사: 설문조사, 감상문 작성 등
 - 라) 장애 이해 주간 운영: 모든 교직원·학부모 대상 다양한 장애인식개선 행사 운영
- 2) 충남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 운영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 조사(대면조사 등) 실시 및 조치, 예방대책 수립
 - 나) 특수학교 인권교육의 날 운영
 - 다) 인권지원단 상시 현장지원 실시(14개 지원단)
 - 라) 초·중·고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 연 2회 실시 의무
 - 마)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바)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 등 신설·강화
 - 사)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교사와 협업 체계 구축
- 2) 장애학생 성교육 내실화: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 3) 특수학교(급)와 관할 경찰서의 협력을 통해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다.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제 강화

- 1) 특기·적성 계발과 학습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 가) 장애개선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

- 나) 꿈과 끼를 키우고, 발달 요구에 적합한 방과후학교 운영
 - 다) 장애학생 특기·적성, 문화·예술·체육 중심 프로그램 운영
- 2) 방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가) 여름·겨울 방학 프로그램 운영 형태의 다양화
 - 나) 장애 특성, 학부모의 요구, 지역 실정을 고려한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다) 대학연계 예비특수교사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봉사활동 참여 권장
 - 라) 체육·문화·예술 등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전라북도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사회통합 실현

2. 추진 목표

- 가.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로 교육의 질 강화
- 나.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 다.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핵심역량 강화

3. 중점추진과제

- 가.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
- 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 라. 특수교육지원 지원체제 구축
- 마.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강화

II 2022년도 추진 실적

- 특수교육과정 운영지원
- 통합교육 여건 조성
-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
-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1.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1) 연도별 특수학교(급) 신·증설 학급 현황

(단위: 학급)

연도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계
	유	초	중	고	소계		
2021	15	6	2	1	24	△4	20
2022	7	9	4	△2	18	0	18

2) 신·증설 특수학교(급) 지원 및 노후 환경 개선

가) 신·증설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지원: 26개교 37학급/
516,925천 원

나) 노후된 특수학교(급) 환경개선비 연차적 지원: 32개교 38학급 / 483,000천 원

3) 특성화된 특수학교 설립

- 전북 동부권 특수학교: 중·고·전공과 과정 10학급(중 4, 고 4, 전공과 2),
2025. 3. 1. 개교 예정

나.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강화

1) 특수교육 운영 계획 설명회: 2022. 2월

2) 특수교육지원단·지역별 통합교육지원단 구성과 운영(36명)

가) 저경력 교사 행복동행 맞춤형 컨설팅 운영: 34명, 2회

나) 유·초·중등 신규 특수교사 맞춤형 연수 운영: 1회

-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동아리 지원: 4개 영역, 26개 동아리

지원 영역	동아리 수	필수 운영 내용
진로·직업	10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동아리
정보예술	10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한 교과 연계 e-콘텐츠 개발 등 교사 동아리
교과교육	4	장애영역별, 교과별 교실수업개선 연구 등 교사 동아리
정보화연구회	2	정보화대회, e-스포츠대회 운영 등 정보화 역량 연구회

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1)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비 지원: 9개교 / 54,000천 원

2) 특수학교(급)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자율선택과제 운영): 특수학급 79개교,
특수학교 10개교 /144,000천 원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교육과정운영위원회 운영: 3회

라.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교육 내실화

1) 통합교육 유치원 운영 확대: 2개원(익산맑은샘유, 익산부송유)

2)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 관리자 연수 1회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지원 강화

1) 장애학생 문화예술거점센터 운영: 3기관 / 30,000천 원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운영지원: 특수학교 10개교 / 30,000천 원

3) 특수학교 중증장애학생 정보예술 운영 지원: 특수학교 10개교 / 100,000천 원

- 4) 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 운영: 전북e페스티벌대회 운영, 연구회 2팀 / 15,200천 원

2. 통합교육 여건 조성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및 운영: 14개 지역 구성, 찾아가는 지원 담임제 운영
- 2) 통합학급 프로그램 운영: 100학급 / 100,000천 원
- 3) 통합교육 거점·중점기관 운영: 14개 기관 / 98,000천 원

나. 일반학급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통합학급 교사 원격직무 연수: 1,000명(15시간 이상) / 20,000천 원
- 2) 특수교육 이해를 위한 연수: 관리자(교장, 원장), 3시간 이상(원격연수) 안내
- 3) 장애이해교육 연수: 유·초·중·고등학생 대상 학기별 1회 이상

다.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 1) 특수학교 심리안정실 운영: 특수학교 10교
- 2) 특수학교(급) 중도중복학생 교육 및 의료적 지원: 28명 / 43,000천 원

라. 각급 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강화

-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 승강기, 장애인 전용 화장실 및 기타 / 3,418,000천 원

3.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운영 지원

가.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지원

- 1) 직업교육 거점·중점학교 운영지원: 특수학교 5개교 / 50,000천 원
- 2) 학교(급)간 진로교육 연계 교육 활성화: 특수학교 1개교 / 15,000천 원
- 3) 특수학교 중증장애학생 직업교육: 9개교 / 90,000천 원
- 4)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지원: 1개교 / 21,000천 원

나.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와 취업지원

- 1)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2개 기관 / 40,000천 원
- 2) 산업체 도제교육형 현장실습: 10개 기관 / 50,000천 원
- 3) 희망드림 직업실습: 특수학교(급) 학생 40명(연 2회) / 319,620천 원
- 4) 장애학생 직업실기 역량강화 지원: 100명 / 30,000천 원
- 5) 진로교육 집중학년제 운영 지원: 2개교 / 10,000천 원

4.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인력 전문성 강화: 87명
- 2) 특수교육지원센터 환경개선 지속적 추진
 -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교육버스 지원: 무주·진안·장수 3개소 / 56,000천 원
- 3) 특수교육지원센터 거점 운영
 - 가)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거점 운영: 3개소 / 434,780천 원
 - 나) 장애유형별 거점센터 운영: 3개 센터 운영(시각, 청각, 지체)
 - 다)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및 거점센터 운영: 20명, 1개소 / 60,000천 원

나.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체제 강화

- 1) 장애유형별 거점센터 운영: 3개 센터 운영(시각, 청각, 지체)/ 45,100천 원
- 2) 특수학교 보조공학기기 지원: 10개교 / 100,000천 원

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14개단/ 175,000천 원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2회
- 3) 장애학생 인권실태 조사 매년 실시

라.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지원: 14기관 / 70,000천 원

5.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3,400명 / 4,896,000천 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1,280명 / 640,000천 원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운영: 2,687명 / 3,740,400천 원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80명 / 365,760천 원

마.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65개 학급 / 2,165,483천 원

바. 시각장애 대체교과서 지원: 5명 / 15,000천 원

사. 건강장애(보호필요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지원: 3기관 / 201,841천 원

아.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지원: 397명 지원

Ⅲ 향후 추진 계획

1.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

가. 특수교육기관의 확충

- 특수교육 교재교구 지원 및 컨설팅 실시

나.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강화

- 1) 신규·저경력 특수교사와 함께하는 특수교육지원단 ‘행복동행’ 운영 및 컨설팅: 연중
- 2) 2022년 하반기 특수교육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11월 중
- 3) 특수교육대상학생 고등학교 배치를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7~12월
- 4) 교사전문성 신장을 위한 동아리 사례 나눔: 11월
- 5)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연수: 7월 중
- 6) 특수교육운영위원회·교육과정운영위원회 운영: 3회
- 7) 특수교육 관련 지침·자료 제작: 3종 / 4,000천 원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1) 전북 정보화대회, e스포츠대회 운영: 6월, 9월
- 2) 특수학교, 일반학교 문화예술체육 운영 나눔: 11월 중

2. 통합교육 여건 조성

가. 통합교육지원체제 강화

- 1) 통합교육 운영방안 워크숍: 8월
- 2) 통합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학교 컨설팅: 연중
- 3) 통합교육지원단 컨설팅 및 역량강화 연수: 6~12월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연중
- 2) 통합학급 교사 자체 연수 및 원격연수 실시: 연중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지원

- 1) 특수교육 진로직업 담당교사 연수 운영: 10월
- 2) 특수교육 진로직업 교사 동아리 운영 평가: 11월
- 3)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육 분야별 사업 평가회: 12월 중

나.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와 취업지원

- 1)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운영 지원: 9~12월
- 2)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현장 모니터링: 10~11월
- 3) 특수행정실무사 기관별 수요조사 및 배정: 10~12월 중
- 4) 장애학생 희망드림 직업실습 하반기 운영 지원: 9~12월

다.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지원: 고3, 전공과 2022. 9.~2023. 1.

라. 전국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대회: 예선전(7월), 대회 출전(10월)

4. 특수교육지원 지원체제 구축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 특수교육지원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 지원: 6~12월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거점 운영

- 1) 장애유형별 거점센터 운영: 연중
- 2) 장애학생 행동중재 거점센터 운영
 - 가) 행동중재 자문단 컨설팅: 연중
 - 나) 행동중재 현장지원가 연수 운영: 원격, 집합 연수로 운영(8~11월)

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및 특별모니터링 실시: 연중
- 2)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 3) 장애학생인권지원, 문화예술체육, 가족지원 운영 사례 나눔과 평가회: 11월 중

5.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6~12월

가. 치료지원, 통학비,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

나.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운영 강화

다.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지원

- 1) 특수교육지원인력(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지무원) 인건비 지원
- 2) 특수교육지원인력(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지무원) 지역별 연수: 8월 중

전라남도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목표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2. 추진 목표

- 가. 국가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 나.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 다.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

II 2022년도 추진 실적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가)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문제 해소

구분	개교일	학교명	규모	비고
특수학교	2022. 3. 1.	광양햇살학교	19학급 85명	통합

나) 특수학교(급) 현황

(단위: 학급)

구분	유	초	중	고	전공과	계
특수학교	5	71	50	55	32	213
특수학급	59	382	149	91	-	681

다) 유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유치원' 설립 기반 마련

- 유치원 관리자 대상 통합교육 활성화 연수를 통한 통합유치원 설립 공감대 형성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1) 특수교사 배치 개선

2)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 및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 나)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44팀)
- 다) 특수교육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연찬회
 - －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운영(6회, 6~11월)
 - － 장애이해 및 통합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자과정 연수 운영
- 라) 신규 특수교육 교원과 유경력 특수교육 교원 간 멘토링제 운영
- 마)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현장지원단 운영
- 바)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2회 예정)
 - －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교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평가 방안 마련
 - 나) '전라남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지침'의 평가조정 관련 조항 및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도움자료'를 참조하여 장애학생 평가·기록 방법 등 명시
 - 다)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 2)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편의 제공
 - 가) 통학차량 및 통학차량실무사 지원
 - 나)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 학부모 통학비 지원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가)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통합교육지원단' 운영(22개단)
 - 나)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컨설팅 강화
 - 다)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2원)
-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거점지원센터 운영: 3개청(목포, 나주, 순천)

3)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 가)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정보 공유, 협력수업 등 다양한 협력 모형 개발을 위한 통합교육(정다운학교) 중점학교 운영(3교) 및 컨설팅(2회, 3교)
- 나) 통합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및 우수사례 발굴·보급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가) 일반학교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
 - － 관리자 연수 방법 다양화: 강의, 체험, 문화예술 관람 등
 - － 통합학급 교원 대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 지원: 950명
- 나) 통합교육 및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연수 과정 운영
- 다) 예비교사 통합교육 소양 강화

2)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 가)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권장: 학교업무 경감, 성과급 반영 등
- 나)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육교원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 교사연구회 운영(2팀)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1) [특수학교] 지역 여건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 나) 전면등교 원칙에 따른 학교·개인방역 철저 및 지도 강화

2)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지역

- 가) 학교교육과정에 통합교육 계획 수립·반영
- 나)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운영 시 특수교사 참여 확대
- 다) 특수(일반)학급: 해당학교 학년 편제와 시간배당 적용하되, 특수교육 교육 과정을 고려하여 조정·운영 가능
- 라) 순회교육 대상학생: 해당학교 교육과정의 편제를 고려하여 학생의 장애 특성과 정도에 맞게 편성·운영

3) 특수학교(급) 운영을 위한 전남특수교육 플랫폼 '셀피' 활용

- 4) 2022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전남특수교육교육과정 편성 지원
- 5)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

- 6)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 내실화 지원: 발달단계·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자료 지원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순회학급 운영: 재택 장애학생 순회교육, 복지시설 순회교육,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 2) 순회교육 담당 교원 연수 및 컨설팅

마.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 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심리안정실 등) 구축
 - 나) 시설 접근성, 이동 편의성 등을 고려한 공간 및 위생시설,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공학적 지원 확대
- 2)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가) 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생활기능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진로 및 직업교육 등에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다) 교사 대상 중도중복장애학생 지도 전문성 증진 연수 실시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 3)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
 - 가) 학교와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과 업무 협약체결 등 연계 지원
 - 나) 학교 보건교사의 의료조치 협조 방안 마련 및 간호사 면허가 있는 지원인력 등 배치·활용
 -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의료적 지원 관련 내용 작성

바.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지원

-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관리 강화
 - 가)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 우선 지원 및 기준 마련
 -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 채용 시 성범죄 범죄이력 조사 철저
 - 다)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명확히 하여 민원 발생 예방

- 라) 특수교육 지원인력 업무평가(근무성적평정 연 2회) 철저 및 업무일지 작성 강화
- 2)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 가) 신규 채용 인력의 경우 반드시 30시간 이상의 연수 실시(원격연수 포함)
 - 나) 지원대상 학생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법 연수 실시
- 3) 사회복지무원 배치 및 교육 강화
 - 가) 사회복지무원의 전공 및 적성, 지원대상의 성별, 연령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 나) 사회복지무원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실시 의무화
- 4) 특수교육대상학생 한시적 방역인력 및 지원인력 제공(1학기-160, 2학기-76)

사.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가) 법령에 의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철저
 - 나) 특수교육대상자 개인별 요구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 다) 개별화교육계획 나이스 시스템 작성 권장
- 2) 다양한 학교 구성원을 활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아.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만성질환 학생 중 해당자를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교육지원 제공
 -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 치료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
-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지원 내실화
 - 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홍보 및 행·재정 지원
 - 나) 병원학교 설치·운영

병원학교명	설치 장소	운영교	비고
여미사랑병원학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화순오성초	림프성 백혈병, 소아암 등
		화순세일중	
느티나무병원학교	국립나주병원	나주이화학교	우울에피소드, 적응행동

- 다) 원격수업 운영: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 라)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부상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장기결석이 예상 되는 학생(요보호학생)은 교육(지원)청이 허가한 경우 지원 가능

- 3)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연수, 병원학교 강사 및 보호자 교육 강화
 - 가) 교과교육·심리적응지도 등을 위한 담임교사, 병원학교 강사, 보호자 대상 연수 강화
 - 나) 보건실, 도서관 등에 건강장애학생 이해 자료 상시 비치
- 4) 건강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강화
 - 가)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기관별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 나)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적응력 신장 및 학업격차 최소화 등 안정적 학교 복귀 지원
- 5)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 가)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 나) 소속학교 출결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을 포함하여 처리
 - 다) 대상학생이 원격학교 평가기간 동안 결석하고, 화상수업기관의 원격수업 참가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간만 질병결석으로 처리하고, 성적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산출
 - 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의 출결, 성적관리 등에 관한 소속학교 담임 및 평가담당교사 연수 연 1회 이상 실시 운영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가) 센터 운영 현황

구분	센터장	장학관	장학사	순회교사	운영강사	치료사	주무관	계
교육지원청	22		22	64	19	25	-	164
도교육청	1	1	1	6	1	-	2	

- 나) 센터 전담인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연 2회 실시(2월, 8월)
- 다) 센터 관리자 및 교육전문직 연수 연 2회 실시(5월, 8월)
- 라) 센터 사업 추진 총괄 및 체계적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지원내실화 및 실적 관리 강화
- 마)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확대(6명 증 배치)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 가) 기능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나) 일반학교 배치(일반학급, 가정, 시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등 지원 계획 수립
- 다)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 라)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특수교육대상자와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운영
- 마)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팀 구성 및 운영
- 바) 포스트코로나 이후 학습결손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교육회복 프로그램 운영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 가) 주민센터, 시·군별 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와의 교류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활용
- 나) 특수교육교원 양성대학 등 인근 대학 및 지역 내 인적자원과 연계하여 자원봉사 인력 활용
- 다) Wee센터, 진로체험센터 등 교육지원청 내 센터 간 업무협력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효율성 강화
- 라)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과의 협력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및 원스톱 진로지원 강화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1)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가) 장애학생 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 운영(22청, 9교)을 통해 장애학생 1인 1기(技),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동아리 지원 확대
- 나) 장애학생 문화예술 동아리 사업 → 도교육청 방과후예술교육팀과 통합 운영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확대

-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수립 시, 체육교육 내실화 계획 포함
- 나) 특수학교(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 교육 지원
- 다) 특수학교(급) 1교 운동부 및 장애학생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가)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 관련 직무연수 참여 권장

나) 일반체육교사, 스포츠강사 등에 대한 장애이해교육, 특수체육 등 직무연수 참여 권장

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1) 치료지원

가) 치료지원 운영 실태조사, 지역여건 및 장애영역 등을 고려한 치료지원 개선 방안 마련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치료지원 전담인력), 특수학교(치료사 채용), 공공보건 의료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 실시 가능

2) 가족지원

가) 자녀의 성공적인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실질적 조력자인 가족에 대해 다양한 지식 및 기술을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협력체제 구축

3)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등의 지원

가) 장애학생의 보조공학기기 활용 능력 신장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제공을 통한 학습 편의성 및 성과 제고

나) 시·청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목포, 순천, 나주)

4) 특수교육대상자 취학편의를 위한 통학지원

가) 특수학교 통학차량 및 지원인력 운영 확대(29대, 29명)

나)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 보호자 통학비 지원: 원거리 통학생 1일 2회, 동행 보호자 4회, 수업일수 기준으로 대중교통비 지원

다)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라) 개별화교육계획에 통학지도 계획을 첨부하여 통학지도가 될 수 있도록 책무성 강화

타.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기간제교사 지원

1) 특수학급 보결수업지원 기간제교사

- 학교 현장의 수업결손을 적시에 보충하여 교육권 확보(유-3, 초-5, 중-5)

2) 초등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

- 과밀학급 및 중도중복장애학급 중심 교육지원(특수학교-7, 특수학급-3)

과. 특수교육대상학생 행동중재 지원

- 1)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을 통한 위기행동에 대한 즉각적 중재 및 효과적인 지원 (15명)
- 2)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부적응행동 감소 및 예방(22청, 9교)

3.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발전

- 1)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현장 안착 및 운영 내실화
 - 자유학년제 확대·운영에 따른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우수 운영 모델 발굴·보급
- 2) 특수학교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가) 장애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학생중심의 수업 활성화 및 교실수업 개선
 - 나) 담당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자유학기 프로그램 개발 자료 활용 지원
- 3)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4) 지역사회 중심 진로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장애학생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가) 학교급간 진로교육 연계 활성화(진로인식→진로탐색→진로설계)
 - 나)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지원 및 직업실기 역량 강화
 - 다) 특수학교 전공과 확대 운영(9교 32학급) 및 특수학교 학교기업(2교) 운영
 - 라)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3교) 운영
 - 마)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등 유관기관 및 산업체 연계를 통한 현장 중심 진로·직업 교육 지원 강화
- 2) 현장실습 활성화 및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 가) 학교내 일자리 및 장애청년 드림워크 사업(160명) 운영
 - 나)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취업 지원(2개소)
 - 다) 인권과 안전이 강화된 현장실습 운영 및 우수산업체 선정·운영
- 3)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지원(9교)
 - 가) 특수학교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자격연수 지속적 추진
 - 나) 진로전담교사 역할 강화를 통한 맞춤형 진로설계 추진

- 4) 고등·평생교육 참여 여건 조성
 - 가) 학부모 및 특수학교(급) 진로·진학 담당교사 대상 진로설명회 운영
 - 나) 부모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진로레터’ 활용 안내
- 5) 직업 및 전환교육 지원을 위한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7개 권역별 센터 운영
 - 나) 생애주기에 맞는 직업·전환교육 지원 및 교사·학부모 지원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 1)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가) 유·초·중·고 학생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다) 교육기관 공무원 및 소속 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2)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홍보 강화
 - 가) 유·초·중·고등학생 및 교사, 학부모의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및 홍보 콘텐츠 활용
 - 나)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참여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지원 강화
 - 가)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및 상시 감지체계 운영
 - 도교육청 홈페이지 / 참여 민원 / 전남청렴신문고 /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
 - 나)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점검 내실화
 - 다)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담당 인력 확충
- 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가)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설치·운영 강화
 - 나)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기능 수행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육, 연수 및 지역 내 학교 지원 활동
 - 다) 특수학교 정기현장지원 연 2회 실시 및 장애학생 및 교사 표집면담을 통해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

- 라) 유관기관 연계 관할 경찰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을 통해 장애학생 학교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 마)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시, 진술조력 기능 포함
- 3) 장애인권교육 강화
 - 가) 초·중·고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 연 2회 실시 정착화
 - 나)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다)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 등 신설·강화
 - 라)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교사와 협업 체계 구축
- 4)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내실화
 - 가)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 나) 일반학생 성교육 시 장애학생에 대한 성추행 예방교육 병행 실시
 - 다) 교직원 대상 장애학생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 및 홍보 철저
- 5)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예방: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의 협력을 통해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강화
- 6)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통합교육지원단 운영을 통해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 나) 가족과 전문가 협력을 통한 문제행동 예방 및 조기 대처 지원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가) 특수학교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나) 장애학생 이동 및 안전 보장을 위한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학 환경 개선
-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교육 실시
 - 가) 교육현장특성을 고려한 상황별(교통, 화재, 재난) 안전교육 수시 실시
 - 나) 재난상황 대비 장애 유형별 위험요소 사전파악 및 상황별 매뉴얼 재정비
-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가)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점검 강화
 - 나) 특수학교(급)의 노후 및 낙후된 시설 개선 및 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다) 특수학교 재난위험 시설 해소 및 소방시설 개선 지원

4)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제 구축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체제 구축

가)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나)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적극 홍보

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경우,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강화

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진단·평가 수행,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나) 장애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확충 및 활용 지원 강화

3)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영아의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를 통해 유치원 입학 과정 지원

나) 부모 대상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안내

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 처리 지침 적극 활용

5) 과연령자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가)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지 않고, 의무교육 기간을 경과한 자나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학령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연령 장애인 지원

나) 교육지원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등 교육기회(평생교육 포함)제공을 위한 방안 강구

마.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제 강화

1) 특수교육 영유아 방과후과정 운영

가) 지원대상: 특수학교 유치부, 유치원 특수학급 영유아

나) 운영: 주 15시간 미만, 영유아 방과후과정의 취지와 유치원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이용하여 보육, 특기적성교육 등을 주 내용으로 하여 계획 수립 운영

- 2) 특수교육 초등 보육교실 운영
 - 가) 지원대상: 특수학교 초등(중학)부, 초등 특수학급 재학생 중 희망자
 - 나) 운영: 주 15시간 미만, 학교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 운영 이외의 시간 이용
- 3)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운영
 - 가) 분야: 소질·적성 계발, 사회적응력 신장, 직업교육, 치료지원 등 학생, 학부모의 요구 및 여건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나) 교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특수학교, 특수학급은 통합교육과 함께 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권장
 - 다) 교외 방과후 활동 지원: 치료지원, 소질·적성 계발 관련 지원(교과관련 학습 제외)
- 4) 돌봄 지원체제 강화(토요 프로그램 포함)
 - 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돌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나) '나홀로 가정' 특수교육대상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사회 실정을 고려한 토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5) 방학프로그램 운영
 - 가) 특수학교(급)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한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권장
 - 나) 학생 안전지도 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철저
 - 다) 예산(학교운영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유관 기관 적극 활용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확충 지원
 - 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구·설비 확충 지원
 - 나) 특수학급 교실 기준 면적(66㎡) 확보
- 2) 특수학급 재정 지원
 - 특수학급 시설·설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 운영비'에 반드시 우선편성·지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편성·집행 지침에 포함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학교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가. 특수학교 과밀, 원거리 통학 해소,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 나. 고등학교+전공과 과정의 직업교육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 추진
- 다. 특수학교(급) 노후 및 낙후된 시설 환경 개선
- 라. 교실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조직·운영
- 마.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확대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가. 특수교육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 연구 기회 확대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정보 지원 등 통합교육 지원 강화
- 다. 특수교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
- 라.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전남특수교육교육과정 개발 지원
- 마.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바. 특수교육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역 상생형 특수교육진흥원 설립 추진

3.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내실화
 - 1)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연계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화 지원
 - 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체험활동 자원 발굴 및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체험의 질 관리
-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 2)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운영 내실화
 - 3) 지역사회중심 윈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제 구축
 - 4) 직업 및 전환교육 지원을 위한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5)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착
 - 6)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 내 일자리 참여 확대
 - 7)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성과관리 강화

8) 학부모 대상 진로·직업교육 정보 제공을 통한 이해도 및 협력적 분위기 확산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가.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전문가 그룹 구성·지원
- 2) 장애 체험 활동, 관련 행사 참여 등 체험중심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유관기관 연계 관할 경찰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을 통해 장애학생 학교 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 2)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예방
- 3) 예방활동 위주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강화

다. 장애학생 체험형 안전 교육 활동을 통한 안전 강화

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돌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축

마.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확충 및 재정 지원으로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경상북도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성공적 사회 통합을 위한 맞춤형 특수교육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특수교육 환경 개선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특수교육지원인력 확대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교구 지원 -통합예약시스템 활용	특수학급 신증설 지원 특수학교(급) 공간 혁신	(가칭) 칠곡 공립 특수학교 설립 추진
------------------------------	--	------------------------------	--------------------------

● 통합교육 지원 강화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공감 문화 확산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안전 강화
----------------------	------------------------	----------------------

●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장애학생 맞춤형 직업훈련 및 체험으로 취업률 향상	특수학교(급)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전환 교육 지원체제 구축
--------------------------------	-----------------------	---------------------------

2. 특수교육 맞춤형 지원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특수교육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 23개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배치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 조사 실시 - 통합교육 지원 및 관련 서비스 지원 - 특수교사 전문성 신장 연수 - 가족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 및 통합체육 활동 지원 - 지원인력 배치·지원 ▶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4개 청 (포항, 안동, 구미, 경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인력 역량강화 연수 - 보조공학기기 대여 - 관리자·통합학급담임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지원 예산지원: 월 17만 원 이내 실비 지원 ▶ 방과후학교 예산지원: 월 12만 원 이내 실비 지원 ▶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월 14만 원 이내 실비 지원 ▶ 1가정 2자녀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 연 120만원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통학 지원 ▶ 대송교통(버스)요금 기준 지원 ▶ 계절학교 운영: 8개 특수학교(9학급, 23개청10학급) ▶ 특수학교 중·고 신입생 활동복 지원: 1인당 3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 운영: 1기관 ▶ 장애학생 직업훈련 체험 운영: 경북발달장애인 훈련센터, 학교기업 3교 ▶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지원: 22명 ▶ 장애학생 직업실기역량강화: 140명 ▶ 장애학생 신림복지사업 운영: 4개소 ▶ 건강장애학생 위탁교육 지원: 2개 기관 ▶ 재활승마 가족캠프 운영: 1기관 ▶ 장애학생 전환교육관 운영: 1개소

II 2022년도 추진 실적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기회 확대
 - 가) (가칭) 칠곡 공립 특수학교 설립 추진(2027. 3. 1. 개교 추진)
 - 나) 특수학교(급) 환경 개선 지원: 급당 2,000만 원 내외
- 2)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비 학급당 3백만 원, 정원초과 1인당 50만 원 지원
 - 나) 초·중·고등학교 일반학급에 배치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20만 원 통합학급 교재비 지원
 - 다) 유·초등 특수학급 수업 지원 교사제 시범 실시
 -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포항, 구미, 안동, 경산) 각 1명 운영
- 3)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1) 특수교사 배치 개선
 - 가)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의 특수교육 부장교사 권장
 - 나) 특수학교(급) 교육과정(진로 및 직업교육분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공 특수교사 우선 배치
-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가) 특수교사의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 및 장애특성별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기회 제공
 -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을 위한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20명)
 - 장애학생 인권보호 선도교사 양성 연수 및 역량강화 연수
 -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확대
 - 교실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등 적극 권장
-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가)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교원보호 프로그램 운영
 - 나)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및 외부기관 업무협약 체결(전문치료 기관 및 상담센터 8개소)

- 다) 경상북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라)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교권보호 및 힐링 연수, 교권보호주간 운영 (5월 3주)
- 4) 특수교육교원 마음 건강 회복 연수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평가 방안 마련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 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 편의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 지원
 -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격수업 편의 제공(학습기기 및 학습자료 제공 등)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강화
 - 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중심 전문가 인적자원 활용 확대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학 등의 통합교육 지원 인력풀 구축 및 협력체 구성
 - 다)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 입학 전·후 학교적응지원 프로그램 적용, 입학 전·후 학부모 교육 학교 자체 실시
 - 라)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거점 권역별 통합교육 거점기관 선정
 - 오천초병설유치원(포항), 울빛유치원(김천), 경산꽃재유치원(경산), 꿈빛유치원(안동)
-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 가) 23개 시군교육청에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특수교육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수 교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하여 특수학급 미설치교 지원

나)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포항, 구미, 경산, 안동) 운영 내실화

3) 특수교사·일반교사 협력 강화

가) 특수·일반교사의 정보공유, 협력교수 등을 통한 유치원 통합교육 성과 제고

나) 특수·일반교사 통합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

－ '정다운학교' 운영·확대 및 컨설팅 강화

도지정 연구학교(2교): 인덕초, 점촌중앙초, 공모학교(2교): 재산초, 쌍림중

－ 특수·일반교사 협력수업 등 다양한 협력 모형 개발·운영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가)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연 1회 이상 실시

나) 자격 연수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1개 이상 포함하여 운영

다) 순회교육 및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통합학급 교사 연수 실시

라) 통합교육 및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과정 운영

마) '찾아가는 장애이해 교실'(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바) 신규교사 및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2)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육교원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 연구회 등 다양한 주제 중심의 우수 학습공동체 권장 및 발굴

나) 통합교육지원단 활동을 통한 통합학급 담당교사 컨설팅 실시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1) 지역 여건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나)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다)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지원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가) 특수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는 일반학교의 학년·학급 교육과정에 통합교육 계획 수립 및 편성·운영,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운영 시 특수교사 참여 확대
- 3) 장애학생 미래교육 준비를 위해 첨단기술을 적용한 실감형 콘텐츠 체험 교실 조성 및 운영
 - 안동영명학교, 경북영광학교(2교) 운영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순회교육 지원 범위
 - 각급학교,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가)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 작성·운영
 - 나) 순회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학생당 주 3회 이상 순회 수업 확대 권장

마.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 1)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 가) 시설 접근성, 이동 편의성 등을 고려한 공간 및 위생시설,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공학적 지원 확대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 지원
 - 다) 특수학교 중·고등부 신입생 활동복 지원: 학생 1인당 30만 원
- 2)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생활기능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3)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과 업무 협약(MOU) 체결: 경북권역재활병원, 경북재활병원
 - 나)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의료적 지원: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소속한 특수학교(급)에 인력 지원 또는 의료 컨설팅 지원
 - 다)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지원전담팀을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 컨설팅 제공
 - 라)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 배치·운영

바.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실무사 운영·관리 강화
 -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우선 지원
 - 나) 특수교육실무사 업무평가(근무성적평정 등) 및 업무 일지 작성 철저
 - 다) 일반학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 2) 특수교육실무사 직무연수
 - 가) 신규채용자는 30시간 이상 직무연수 실시(채용일로부터 1주일 이내 실시 권장)
 - 나) 특수교육실무사 연수 실시
 -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도 단위 집합연수 실시
 - 거점교육지원청(권역별) 및 해당 교육지원청 주관 연 1회 집합연수 실시
 - 각급학교 및 교육지원청별 자체 계획 수립
 - 장애학생 인권보호,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지원 방법, 복무규정, 성폭력 예방교육, 행동중재, 심리상담, 응급처치 등을 포함
 - 다) 도교육청 주관 전체 특수교육실무사 대상 집합연수 실시
- 3) 사회복지요원 배치 및 교육 강화
 - 가) 사회복지요원의 전공과 적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 성별(남학생 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치
 - 나) 사회복지요원 사전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
 - 신규 사회복지요원 사전교육 실시, 배치 3개월 이내 직무교육 실시
 - 소속 사회복지요원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사회복지포털 입력
 - 신규배치 사회복지요원 60시간 이상, 기배치 사회복지요원 30시간 이상 (연 2회 이상) 직무교육 실시
- 4)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 운영 다양화
 - 2022학년도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수요를 조사하여 지원 학교를 선정하고, 해당 학교에서 위촉(모집)공고를 통해 자원봉사자 위촉·운영

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1) 치료지원
 - 가) 1인 월 17만 원(연 204만 원) 이내 실비 지원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치료사(9개 센터, 11명)의 순회 치료지원
- 다) 외부치료기관 이용 시 방과후 시간 이용하여 실시
- 2) 가족지원
- 가) 학교별·교육지원청별로 가족상담, 양육 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운영
-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특수학교 8교, 23개 지역청
- 나) 재활승마 가족캠프 운영
- 재활승마 가족캠프 운영기관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된 단체(기관)에 위탁교육 예정
 - 교육지원청 및 특수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 80가족 240명(2회기 운영)
- 3)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등의 지원
- 가) 지역 또는 해당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각종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을 구비하여 각급 학교에서 대여·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 나)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예약시스템 활용 시범 운영: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안동·구미)
- 4) 통학 지원
- 가) 중증장애학생으로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통학이 불가능하며, 자부담으로 통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생 통학을 지원해야하는 보호자의 통학 편의를 위한 지원
- 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통학 실태를 파악하여 실제 통학 일수 및 대중교통(버스)요금 기준 통학비 지원
- 다)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운전원과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지원인력 등 연수 실시
- 5) 1가정 2자녀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 1가정 2자녀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의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 적응 능력을 신장하고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가정당 연간 120만 원 지원

아.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사항과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 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지원인력 역할·지원내용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
 - 나)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해당교에서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
- 2) 다양한 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 등을 활용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자.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건강장애 교육지원 제공
 - 가)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병원 학교 또는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단, 정신과적 질환은 제외)
 - 나) 건강장애 선정절차 중에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 선교육 지원 가능
 - 다) 건강장애학생 교과교육·심리적응지도 등을 위한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및 보호자 교육 실시(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연 1회 이상 연수 실시)
- 2)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강화
 - 가) 한국교육개발원(스쿨포유) 수강을 기본으로 하되 기존 꿈사랑학교 위탁 학생은 꿈사랑학교 위탁 유지
 - 나) 학생의 건강 특성, 희망 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 운영 방법을 강구하고, 위탁 교육의 경우 신학기 이전에 해당 지역 및 기관에 위탁여부 통보
-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의 출결, 성적관리 등에 관한 소속학교 담임교사 연수 연 1회 이상 실시 운영
- 4)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적응력 신장 및 학업격차 최소화 등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 학교복귀 지원

차.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기능 강화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 3) 권역별 기능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가) 목적: 지역여건과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지원을 위해 특성화 센터 운영
 - 나)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포항(동부), 구미(서부), 경산(남부), 안동(북부)
 - 다) 도교육청, 거점 내 특수교육지원센터(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별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 협의회 실시
 -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컨설팅 실시(도교육청 및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 4)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순회교사, 치료사의 복무 관리 등 센터운영에 대한 총괄 관리 담당
 - 나) 경북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정비를 통해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지원센터 지원 강화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표준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보급('22. 1.)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증대
- 5) 특수교육지원센터 장기 근무를 위한 여건 마련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사에게 전문직 전형 가산점 제공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22명 증원 배치

카.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1)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
 - 가) 장애학생 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 확대를 통한 장애학생 1인 1기(技),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 동아리 지원 강화
 - 나) 장애학생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33교(급)
 - 다) 장애학생 예술교육 거점학교 지원: 2교
 - 라) 경북 장애학생 e페스티벌 운영: 7월 중
-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가)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및 장애학생 스포츠클럽 운영
 - 나) 전국 단위 체육대회 우수 선수 조기 발굴 및 육성
 - 다) 장애학생 체육 동아리 활동 지원

- 라) 특수체육 및 통합체육 교실 사업 운영
- 마)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학생 훈련비·격려금·시상금 지급

3.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발전

- 1) 교육지원청 중심의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교원 및 학부모 인식 개선을 통한 참여 공감대 확산
- 2) 교육지원청 및 학교별 여건에 따른 교사연구회, 교수·학습공동체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자유학년 활동 프로그램 구성 지원
- 3)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체험 지원 강화
 - 가) '꿈길' 시스템을 통한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 온라인 매칭 확대 및 진로 체험처 점검·활용 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질 관리
 - 나) 도내 특수학교(8교) 대상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직업탐색 프로그램 운영
- 4)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질 높은 자유학기·학년제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양질의 체험처와 프로그램 확충 노력 지속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장애학생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가) 지역사회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 경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꿈길 등을 활용하여 진로체험활동 지원 강화
 - 경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장애학생 최초 독도 수비대 특별체험 실시
 - 나) 특수학교 학교기업(3교) 및 고등학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2교)의 지역 중심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내실화
 - 다) 진로취업 서비스 제공 및 개인별 진로·직업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나이스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시스템 적극 활용
- 2)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직업교육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여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3)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및 취업 지원 강화
- 4)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안정적 배치 지원

- 5)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위한 전환교육관 운영(2022. 9. 예정)
- 6) 도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중심 원스톱통합서비스지원 협의체를 운영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연계·협력 강화
- 7) 직업실기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 고등학교(급) 특수교육대상학생 148명
- 8) 고등학교과정 장애학생 전환지원 프로그램 운영: 16교(급)
- 9) 장애학생 대학생생활 체험 실시: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및 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22명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 1)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교육 내실화
 - 가) 유·초·중·고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 포함)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나)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산하기관 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다) 유치원 및 각급학교 교직원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2)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홍보 강화
 - 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백일장, 장애이해 사진·홍보영상 공모전 적극 참여
 - 나) 유·초·중·고등학생 맞춤형 장애이해교육·홍보 콘텐츠(동영상, e-book 등) 배포·활용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 내실화
 - 가) 온라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통한 장애학생 인권 침해 관련 사안 접수 및 조치
 - 나) 장애인권교육 및 행동지원 전문 핵심교원 양성을 위한 직무연수 강화
 -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매년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 조사 실시

-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및 역할 강화
 - 가) 교육지원청 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력과 지역 내 전문가로 구성(8명 이상)
 - 나) 정기현장지원 및 특별현장지원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 활동 및 인권보호 관련 교육, 연수 제공, 기타 학교 지원 활동 등 실시
 - 다) 매월 1회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활동(정기·특별현장지원) 결과 보고
 - 라) 전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성과 보고회 실시(2022. 11. 경북 도내 개최 예정)
- 3) 장애인권교육 강화
 - 가)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 학생(비장애)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 내용을 포함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나)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자기권리인식, 자기보호 등)을 함양 하고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다)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조항 신설·강화
 - 라) 학교 단위 장애 공감 문화 조성을 위한 어울림 인권동아리 운영: 14교(급)
- 4) 특수교육대상학생 행동지원 강화
 - 가) 도교육청 및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행동중재지원단 운영
행동지원지원단 양성(20명)을 통해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 나) 가족과 전문가 협력을 통한 문제행동 예방 및 조기 대처 지원
- 5)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 변경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조회 실시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2)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3)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 4)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 1)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체계 구축
 - 나)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 파악

- 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강화
 - 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진단·평가 수행,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 4)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영아의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를 통해 유치원 입학 과정 지원
 - 나) 유치원 - 초등학교 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진학 과정 지원
 - 5)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 마.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운영
 - 가) 특수학교,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운영
 - 나)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교내 또는 교외) 운영: 1인 월 12만 원 이내 실비 지원(경북 i짱짱카드 활용)
 - 2) 특수학교 토요프로그램 운영
 - 3) 특수학교(급)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한 방학 중 프로그램(계절학교) 운영
-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 특수교육 운영 계획 수립
 -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를 위한 특수학교(급) 맞춤형 예산 지원
 - 통합학급 단위 어울림 행사,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비,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 여건 확보
 - 2) 현장 맞춤형 특수교육 장학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
 - 3) 경북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보급
 - 4)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확충 및 환경 개선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비전: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1. 추진과제

-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다.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2. 중점추진과제

-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1)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특수학교(급) 환경개선
 -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3)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2)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4)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 5)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 6)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지원
 - 7)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 8)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9)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0)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다.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 1)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발전
- 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 1)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 2)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3) 장애학생 안전 강화
- 4)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 5)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제 강화
- 6)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II 2022년도 추진 실적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특수학교(급) 환경개선

- 1) 특수학교(급) 확충으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 요구에 적합한 특수학교 설립 및 권역별 특수교육 기회 제공
 - 2022. 3. 1. 밀양아리솔학교 개교, 2025. 3. 1. 진해지역 특수학교 개교 예정
 - 특수학급 신·증설(72학급 신증설)
 - 나) 지역별 균형적인 특수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공감대 형성
- 2) 신·증설 특수학교(급) 환경개선 및 교재교구비 지원
 - 가) 신·증설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 환경개선 및 교재교구비 지원(70교)
 - 나) 장애학생의 학습 및 편의를 위한 학급 내 시설 보완, 교재교구비 등 지원

나.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 1)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운영
 - 가) 특수교육 전문가 심화교육 및 자기계발 연수 운영(집합 및 실시간 온라인 375명)
 - 나)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요원 연수 운영(실습 및 혼합 49명)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연수 운영(집합 및 실시간 온라인 105명)
 - 라) 교실수업개선 및 미래교육 역량 강화 연수(집합 및 실시간 온라인 80명)

- 마)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원격연수 지원(원격 2,000명)
- 2)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 가) 통합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지원: 5개동아리 지원(1동아리당 200만 원)
 - 나) 특수학교: 학교별 예산 지원(교사 1인당 4만 원)
 - 다) 특수학급: 소속학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예산 지원(교사 1인당 4만 원)
 -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지원청별 전문적학습공동체 예산 지원(교사 1인당 4만 원)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장애학생) 평가조정 및 대안평가 지원
- 2)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 가) 보조공학기기 통합지원시스템 운영(보조공학기기 통합검색지원사이트 활용)
 - 나) 장애 유형별 보조공학기기 대여(360종 809점 대여)
 - 다) 찾아가는 맞춤형 보조공학사 지원 서비스(135개 학교, 544명 지원)
-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학편의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통학버스 용역비, 기숙사 숙식비, 기숙사 운영비 지원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가) 도단위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및 18개 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나) 통합교육지원 순회교사 운영: '20년(85명) → '21년(122명) → '22년(139명)
 - 교육과정적 지원, 사회적관계 지원, 지역사회연계 지원
 - 다)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
 - 장애유아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3개 유치원)
 - 장애유아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중심 통합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교육 연수 실시
- 2)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가) 시청각장애 특성화센터(특수교육원, 창원, 김해, 함안)를 활용한 통합교육 지원
 - 나)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 지원(청각장애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 3)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 강화
 - 가) 교육부 요청 통합교육 정책연구학교운영[거제유치원(1/2), 산청초등학교(2/2)]

나) 운영주제

- 거제유치원: 달그락 나눔공동체를 통한 PLAY 운영으로 모두가 행복한 통합교육 실현
- 산청초: 온누리 협력교수 프로그램을 통한 통합학급학생 소프트스킬 신장 방안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통합교육 지원 연수

- 가)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원장) 연수 운영(혼합 및 집합 4기, 1,000명)
- 나)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감(원감) 연수 운영(5월 집합연수, 323명)
- 다) 통합교육 행정지원(행정실장) 연수 운영(5월 집합연수, 233명)

2)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역량 강화 연수

- 가) 순회교육 및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통합학급 담당교원 연수 강화
- 나)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장애이해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운영(8월 집합연수, 60명)
- 다) 국립특수교육원 위탁 원격 연수 실시(연중,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에서 전액 부담)
- 라) 통합학급 담임교사 특수교육 집합(원격)연수 이수 독려(최근 10년 이내 누적 15시간 이상)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1) [특수학교] 여건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가) 고등학교과정 진로와 직업 중심 중점학교 운영지원
- 나)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다)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지원

2)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에 통합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 나)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확대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확대

- 가) 교육지원청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보완자료 및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 다) 시각장애학생 대체교과서 확대 지원 및 대체자료 추가 지원
- 4) 경상남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지침 발간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위원회 개최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순회교육 대상과 지원 범위 확대
 - 가) 복지시설, 의료기관, 가정 등에서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실시
 - 나)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순회교육 지원 강화
-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가)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순회교육계획 작성 및 운영 지원
 - 나) 순회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 방법, 가족지원 방법 연수 강화

마.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 2) 중도중복장애학생 학급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 3)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15학교, 37명)

바.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지원

- 1) 특수교육실무원 배치
 - 가)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실무원 배치: 611명
 - 나) 특수교육실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집합 및 원격연수: 1,483명(1월, 8월 및 수시 원격)
- 2) 사회복지무원 배치
 -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특성,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치
 - 나) 사회복지무원 직무교육 실시 강화

사.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가)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학년 초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을 위한 안내 및 지원 강화
- 전출입 업무 처리 시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처리 기간 준수 안내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지원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연수 지원(온라인 연수)

- 경상남도교육청 온라인전달연수(<https://www.gnlec.kr/main/index.jsp>)
- 연수기간: 2022. 3. 1. ~ 2023. 2. 28.
- 통합학급교사, 특수교사, 관리자, 학부모, 개별화교육지원팀 참여자 등에 대해 연수이수 독려

아.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

- 가) 건강장애 또는 기타 외상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입원 및 통원이 필요한 학생의 학습결손 방지 및 출석 인정을 위한 원격 수업 지원
- 나) 건강장애학생 담당 통합학급 교사에 대한 연수 실시(4월)
- 다)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지원(2022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준수)
- 라) 건강장애학생 학교 복귀프로그램 운영 지원(9교)

2) 병원학교(급) 운영

- 가) 부산대학교어린이병원학교(양산희망학교, 2학급) 및 경상대학교어린이병원학교(진주혜광학교, 1학급) 운영 지원
- 나) 학생의 건강 상태와 치료 상황에 따라 병원학교와 원격수업 병행 지원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가) 특수교육 전문인력 배치 확대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순회교사 증원(139명 배치), 교육지원청 일반직 증원(2명 배치)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등 담당인력의 맞춤형 연수 운영(진단평가 연수 등)

-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 3)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가) 교육지원청 및 특수학교별 치료지원전담팀 운영(5명 이상 구성)
 - 나)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120명 배치)
 - 다) 병원 치료(물리, 작업, 청능훈련)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치료지원비 지원(월 15만 원 이내 실비 지원, 치료지원 전자카드 활용 및 영수증 청구)
 - 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가족 지원 프로그램(가족 상담 15가족, 가족 캠프 20가족 참여)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1)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강화(19학교, 23팀)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제 '슈퍼스타, YOU!' 개최(10월)
-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가) 장애유형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 나)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5월, 92명) 및 경상남도교육감기 장애학생체육대회 운영(11월)
 - 다) 2022년 경남 장애학생 e페스티벌 개최(6월) 및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참가(9월)

3.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 1)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내실화
 - 가) 자유학년제 운영: 전 특수학교(11교)
 - 나)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운영(8월 직무연수)
- 2)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지원단 운영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특수학교 6개교 배치
 - 가)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창원천광학교
 - 나)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아림고등학교

2) 전환교육지원실 운영

가) 7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 운영(창원, 진주, 사천, 김해, 거제, 양산, 함안)

나) 직업교육 및 현장실습 등을 위한 스페셜코디네이터 배치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1) 장애인식 개선 및 인권교육 강화

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포함)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나) '학교 가는 길', '장애인의 날' 특별 기획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교육 실시

다) 범국민 장애공감 콘텐츠 개발 및 확산 보급(주관교육청)

2) 인권지원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실시

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전문 인력 활용 교육 실시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 내실화

가)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안 신속 대응 및 감지 체계 강화

나) 장애학생 인권 침해 실태 점검 내실화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설치·운영(도단위 1센터, 지역단위 20센터)

나) 매월 정기현장지원 1회 이상 실시(특수학교는 연 2회)하고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 실시

3) 장애인권교육 강화

가) 학생 대상 장애인권교육 내용 포함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나) 교직원 대상 교육 강화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조항을 학교 학칙에 반영 및 추가

4) 특수교육대상학생 행동지원 강화

가) 바람직한 행동형성을 위한 학교, 학급, 개별 차원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나) 장애학생 행동중재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특수교육대상학생 80명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및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2) 지역사회 지원을 통한 체험중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생활체험 프로그램 제공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지원 체계 구축

-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2)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영아지원실 운영)
- 3) 입학적응프로그램 운영: 해당학교별 신입생의 적응을 위한 입학적응프로그램 운영
- 4)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체계 확립: 선정 및 배치 관련 지침서 개발 및 현장 보급

마.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1인당 월 10만 원 이내)
- 2) 특수학교 및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과정 운영(특수학교 6교 13학급, 유치원 62원 74학급)
- 3) 토요일프로그램 운영(민간위탁) 및 방학중 희망나눔학교 운영 지원(지방보조금)
- 4)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특수교육대상자 지원(62교, 66학급)
- 5) 특수학급 미설치 공사립유치원 지원 강화(46원, 61학급)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 및 일반직 확충 노력: 일반직 증원 및 교육지원청 추가 배치(1명)
- 2)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3) 특수교육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현안 과제 협의체 운영(협의회 연 2회)
 - 가) 학부모, 특수학교 교원, 전문직, 유관기관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장(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소관 부서장) 협의회를 통한 특수교육정책 의사소통 및 현안과제 협의, 연 2회 정기협의(상·하반기) 추진
 - 특수교육 담당 교육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 협의회 실시(각 1회)

- 4) 특수교육 자료 개발 지원
 - 가) 특수교육 수업(원격)지원을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 150편
 - 나) 자료활용을 위한 자료탐재 및 지원체계 강화: 경남교육청 미래교육 플랫폼 아이톡톡에 개발자료 탑재
- 5)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체험관·수련관 운영
 - 가) 특수교육체험관 운영(112회, 2,881명 체험)
 - 특수교육원 방문 체험, 매주 월~목요일(1일 체험형): 안전생활체험(21회, 706명), 진로체험(10회, 280명), 공학체험(21회, 652명), 장애체험(56회, 1,158명)
 -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 찾아가는 안전체험(4회, 85명)
 - 나) 특수교육수련관 운영(30회, 897명)
 - 매주 월·수·금요일(1일 체험형 수련활동)
 - 특수학교(급) 초·중·고등학생(30회, 897명)
- 6) 국제교육교류협력 사업 지원(베트남 특수교육 지원 사업)
 - 가) 베트남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연수 지원 및 자문
 - 나) 중장기적 지원 전략으로 차년도 지원 및 베트남 특수교육 발전 방향 모색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특수학교(급) 환경 개선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22	'23	'24	
특수학교 설립	1	-	-	2025. 3. 1. 진해나래울 개교 예정
특수학급 신·증설	72	50	50	
노후특수학급 환경개선	35	35	35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22	'23	'24	
특수교육교원 연수 지원	580	600	620	연수지원 인원 수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5	5	5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수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22	'23	'24	
특수교육실무원 증원	48	45	45	특수교육실무원 증원 수
보조공학기기 지원	580	610	640	보조공학기기 대여 인원 수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22	'23	'24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19	19	19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수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	3	3	3	거점유치원 운영 수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22	'23	'24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75	77	80	전체 학교수 대비 운영 학교 비율(%)
시청각장애 대체자료 지원	30	30	30	시청각장애 대체자료 지원 학생 수

다.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22	'23	'24	
건강장애학생 지원	180	200	200	원격 수업 지원 인원 학생 수
학교복귀 프로그램 지원	9	10	10	지원 대상 학교 수

라. 통합교육 역량 강화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22	'23	'24	
일반학교 관리자 연수 지원	1,000	1,000	1,000	통합교육지원연수 참여 인원
통합학급 담당교원 연수 이수	90	91	92	특수교육연수 이수율(%)

3.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22	'23	'24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11	11	11	자유학년제 운영학교 수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지원단 운영	1	1	1	운영지원단 구성 수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담당교원 역량강화 연수	1	1	1	담당자 연수 횟수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22	'23	'24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3	1	2	진로전담교사 증원 수
전환교육지원실 프로그램 운영	67	69	70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참여율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22	'23	'24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70	75	80	장애이해교실 지원 학교 수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행사 개최	400	430	460	장애인식개선 참여인원 수

나. 특수교육지원체제 강화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22	'23	'24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운영	95	95	95	입학적응 프로그램 참여율
유치원 방과후교육활동 지원	74	120	120	방과후교육 운영 학급 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2. 추진목표

- 가. 국가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 나.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조성
- 다.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

3. 중점 추진 과제

-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다.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4. 제주특수교육의 강조점

- 가. 생애단계별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을 길러 성공적인 사회통합 능력을 기른다.
- 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과 통합교육 지원 내실화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주적인 생활 능력을 기른다.
-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알맞은 교육활동을 통하여 사회 적응력, 문제해결력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교육에 충실을 기한다.
-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를 만들어 간다.
- 마.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탐색하고 직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능적 생활 중심 교육활동으로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한다.
- 바. 우리 고장의 생태와 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아름다운 제주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4.3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한다.

II 2022년도 추진 실적

1. 균등학교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1) 특수학급 신설

가) 유치원: 3학급(도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아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표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

나) 초등학교: 1학급(재릉초등학교)

2) 특수학급 증설

가) 초등학교: 2학급(도남초등학교, 서호초등학교)

나) 중학교: 3학급(아라중학교, 제주서중학교, 서귀포중학교)

3) 특수학교 학급 증설

가) 특수학교: 2학급(제주영지학교 1학급, 서귀포온성학교 1학급)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1)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원 직무연수: 473명

2) 자유학기·학년제에 따른 특수교사 수업 활성화 역량강화 연수(4시간, 115명 참가)

3) 서귀포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지도방법 역량강화 교원 직무연수(15시간, 18명 참가)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1)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2) 장애인편의시설 컨설팅 및 실태점검 1개원(제주미래교육연구원)

라.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특수교육실무원 165명, 안전실무원 6명, 사회복지무원 69명, 특수교육자원봉사자 243명)

2) 특수교육지원인력 역량강화 연수(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원 직무연수 151명)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남광초, 일도초, 도평초, 위미초, 세화중, 남원중, 표선중

- 2) 정다운학교 운영: 서귀중앙초등학교병설유, 삼성초, 이도초
- 3) 치료지원전담팀 구성·운영: 6개팀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통합교육담당교원연찬회: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교원, 44명 참가
- 2) 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도교육청 직원, 292명 참가
- 3) 장애이해교육: 제주시 소속 교원(비대면), 147명 참가
- 4)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직원 연수: 제주시 소속 교원, 109명/55명 참가
- 5) 각급학교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 6) 통합교육수업연구회 지원: 1개 동아리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1) 도교육청 특수학교(급) 컨설팅 장학
 - 가) 학교교육컨설팅 5교(특수학교 1, 특수학급 4)
 - 나) 수업컨설팅 1교(특수학교 1)
- 2) 제주시교육지원청 특수학급 컨설팅 장학
 - 가) 학교교육컨설팅: 42교(유치원 4, 초등학교 29, 중학교 9)
 - 나) 수업컨설팅: 37교(유치원 6, 초등학교 29, 중학교 2)
- 3) 서귀포시 특수학급 컨설팅 장학
 - 가) 학교교육컨설팅: 25교(유치원 2, 초등학교 15, 중학교 8)
 - 나) 수업컨설팅: 2교(유치원 1, 초등학교 1)
- 4) 유치원 통합교육 거점기관 운영: 월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
- 5) 특수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컨설팅: 특수학교 3
- 6)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컨설팅: 제주영지학교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특수학교 재택 순회학급 운영
 - 가) 제주영지학교(6학급), 서귀포온성학교(3학급)
 - 2)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 가) 유치원(36명), 초등학교(56명), 중학교(9명), 고등학교(17명)
- ※ 고등학교 13명은 사립고 파밀 특수학급 학생 수업 지원

마.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 특수학교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운영: 제주영지학교, 서귀포운성학교

바.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건강장애 학생 원격수업 지원
 - 가) 한국교육개발원: 15명(초등학교 4명, 중학교 3명, 고등학교 8명)
 - 나) 꿈사랑학교: 20명(초등학교 10명, 중학교 8명, 고등학교 2명)
- 2) 어린이 환우 상설 병원학교 지정 운영
 - 가) 협력병원: 2개원(제주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
 - 나) 협력학교: 2개교(일도초등학교, 동홍초등학교)
 - 다) 이용학생: 코로나19 관련으로 이용자 감소
- 3) 제주대학교병원학교 운영: 제주영지학교(초등 1명)

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가) 제주특별자치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182명
 - 나) 제주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387명
 - 다) 서귀포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126명
- 2)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가) 제주특별자치도특수교육지원센터 89명(민간위탁 2개 기관)
 - 나) 제주시특수교육지원센터 60명
 - 다) 서귀포시특수교육지원센터 68명
- 3)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대여
 - 가) 제주시특수교육지원센터 31회
 - 나) 서귀포시특수교육지원센터 16회
- 4)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운영: 3개소
- 5) 방학 중 계절학교 운영: 3개교, 2기관
- 6) 토요프로그램 운영: 2개소

아.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 1)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 가) 특수교육실무원 165명
 - 나) 안전실무원 6명

- 다) 특수교육자원봉사자 279명
- 라) 사회복무요원 69명
- 2)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679명
- 3) 특수교육대상자 안심서비스 지원: 36명
- 4)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월 120,000원 한도)
 - 가) 재활치료 지원 제공기관 이용: 1,031명
 - 나) 병·의원 이용: 77명
- 5)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실 운영
 - 가) 제주시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실: 3실
 - (1) 순회치료: 유치원 4명,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2명
 - (2) 내방치료: 영아 7명, 유치원 1명, 초등학교 4명
 - 나) 서귀포시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실: 3실
 - (1) 순회치료: 유치원 1명,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6명
 - (2) 내방치료: 초등학교 4명, 중학교 1명

3.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특수학교 직업교육 운영비 지원: 112,000천 원
- 2) 특수학급 직업교육 운영비 지원(중학교 29학급 58,000천 원, 고등학교 21학급 46,600천 원)
- 3)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3개교(120,000천 원)
- 4)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3개교(제주고, 표선고, 함덕고)
- 5)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8개교(제주중앙여자고, 제주제일고, 제주여자상업고, 중문고, 성산고, 서귀포산업과학고, 한림공업고, 대정고)
- 6) 장애학생 윈스톱 취업지원 협의체 운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등 8개 기관

나.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 1)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특수 3교
- 2) 교실수업개선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3개 동아리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 문화 조성

- 1)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 공연: 코로나19로 동영상 자료개발 보급(191교)

- 2) 장애이해교육 자료 개발 보급: 우리가 꿈꾸는 세상(동영상 자료)
- 3)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강사 지원(175학급)
- 4) 블루라이트 캠페인 참가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운영: 3개팀
- 2) 특수교육대상자 성교육 109교(유치원 11, 초등학교 58, 중학교 23, 고등학교 14, 특수학교 3)

다. 방과후교육 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3개교
- 2)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138학급(유치원 12, 초등학교 79, 중학교 29, 고등학교 18)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주말학교 운영
 - 가) 행복충전 주말학교(제주시): 60명(초등 46명, 중등 14명)
 - 나) 토요일프로그램 운영(서귀포시): 40명(초등 32명, 중등 8명)
- 4) 특수교육지원센터 방학 중 계절학교
 - 가) 푸른솔 계절학교(제주시)
 - (1) 겨울(비대면): 유 76, 초 424, 중 150, 학부모 10 / 여름(대면): 유 10, 초 30, 중 10
 - 나) 방학 중 계절학교(서귀포시)
 - (1) 겨울(비대면): 유 12, 초 105, 중 19 / 여름(비대면): 유 8, 초 81, 중 11
- 5) 특수학교 방학 중 계절학교 운영: 3개교
- 6)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54명(민간위탁 2개 기관)
- 7) 장애학생 계절학교 운영: 61명(민간위탁 2개 기관)

라. 장애영유아교육비 지원

- 1) 장애유아교육비 지원(만 3세~취학 직전)
 - 가) 제주시교육지원청: 공립유 1, 사립유 18
 - 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사립유 6

마. 특수교육지원체제 강화

- 1) 신·증설 특수학교(급) 교육환경 개선: 11학급(유 3, 초3, 중 3, 특수 2)

- 2) 노후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 3학급(초 1, 고 2)
- 3)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 140학급(유 12, 초 79, 중 29, 특수 20)
- 4) 사립특수학교 통학편의 지원: 임차버스 2대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학교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기회 확대
 - 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신·증설 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
 - 나) 2022년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한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
- 2) 특수학급 설립의 다양화·특성화
 - 가) 제주대학교병원학교 초등 1학급 운영지원
 - 나) 유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추진
 -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역량강화 및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및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증원
 - 가) 시·청각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특수·일반학교)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전보 유예 권장
 - 나) 도서 지역, 읍·면 단위에 속한 특수학급에 정교사 우선 배치
 - 다)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의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 권장
-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가) 장애영역별 전문성을 고려한 특수교육교원 배치 권장
 - 나) 현직교사 중 특수교육 관련 자격증(점역·교정사, 한국수어통역사, 한국수어능력인증자 등 소지 교원에 대한 우선전보 및 전문역량강화)
 - 다) 특수교육교원의 교과별 수업 및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마)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확대
 - 바) 특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사) 교실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등 적극 권장

-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가)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교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 나) 특수교육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평가 방안 마련
 - 나)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 다) 학교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 편의를 위한 통학 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 지원 등 통학지원 대책 마련
- 2) 각급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제공 강화
 - 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교육을 통해 적정 설치율 제고
 - 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실태점검 및 연차별 개선계획 수립·시행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 1)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 나)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제도 홍보 및 실태 파악
 - 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경우, 조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 상담을 강화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무상교육 지원
- 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강화
 - 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진단
-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 4)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영아의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를 통해 유치원 입학과정 지원
 - 나) 유치원-초등학교 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진학 과정 지원
 - 다)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
- 5)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 가)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및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나) 과연령자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는 교육(지원)청의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등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방안 강구

마.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2) 병원학교 운영 내실화
 - 가) 제주대학교 병원학교 운영 지원: 건강장애학생의 원인별 유형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병원학교 운영
 - 나) 주책임 의료진의 명예교장 역할 부여 및 병원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운영
- 3) 원격수업 운영 지원 강화
 - 가) 학생의 건강특성, 희망 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 운영 방법을 강구하고, 위탁 교육의 경우 신학기 이전에 해당 위탁교육에 위탁 여부 통보
 - 나)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 등 교육지원 내실화
- 4) 건강장애학생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 가)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복귀 후 학교적응력 신장 및 학업격차 최소화 등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 학교 복귀 지원
- 5) 어린이 환우 상설 병원학교 지정·운영
 -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학교교육과)과 제주특별자치도(디지털융합과) 협력 사업
 - 지정병원: 3개소(제주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 나) Blue Band 시스템 구축
 - 다) 어린이환우원격수업지원시스템 운영 관리
 - 지정학교: 2개교(일도초등학교, 동홍초등학교)
 - 라) 대상: 제주도내 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하거나 정신건강분야 관련치료를 위해 제주대학교병원에 30일 이상 입원 예정인 제주도내 초등학교 재학생
 - 마) 수업과목 및 수업방식: 실시간 영상수업 및 녹화수업 제공(국어: 동홍초, 수학: 일도초)
 - 바) 출석인정: 입원기간 동안 1일 최소 1교시 이상 학습 시 인정(녹화수업 포함)

2.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1) [특수학교] 학교 여건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가) 제주특별자치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적극 활용
 - 나) 학교의 특성, 학생·교원·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 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교과중점학교(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 운영 지원
 - 라) 중등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마) 감염병 상황 등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와 관련하여 특수학교(급) 학사운영 방안 마련
- 2)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원 강화
 - 가)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나) 일반학교는 학교교육과정에 통합교육계획을 수립·반영
 - 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운영 시 특수교사 참여 확대
-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확대
- 4)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조치 지원
- 5) 2022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추진
 - 가) 통합교육 확대에 따른 일반 교육과정과의 연계,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개정
 - 나)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개발 추진
- 6) 고교학점제 시범운영 및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준비
- 7)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가) 장애학생 원격교육 플랫폼 활용·지원
 - 나) AI기술 기반 음성인식 자막 지원 서비스 제공
 - 다)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구축·운영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순회교육 지원 범위
 - 가) 각급학교,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나)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실시
- 다)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 가)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 작성·운영
 - 나) 순회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수업지원을 학생당 주 3회 이상으로 확대 권장
 - 다) 순회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방법, 가족지원방법 등에 대한 연수 강화

다.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여건 개선
- 2)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3)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의료적 지원 관련 내용 포함하여 작성
 - 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에 보건교사의 지원과 간호사 면허가 있는 지원인력 등 전문인력 배치·확대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에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지원전담팀을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 컨설팅 제공

라.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관리 강화
 - 가) 특수교육지원인력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 학생 우선 지원
 - 나) 특수교육지원인력 채용 시 장애인확대, 성범죄 등 범죄이력 조사 철저
 - 다) 특수교육지원인력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업무 명확화
 - 라) 특수교육실무원 업무평가(근무평정 등) 연 1회 실시
 - 마) 특수교육실무원 순환근무제 확대 추진
- 2) 특수교육실무원 역량 강화
- 3) 사회복지무원 배치 및 교육 강화
- 4)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 운영 다양화

마.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가)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 교육담당교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 나)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사항과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 다)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학생 또는 보호자, 통합학급 교사에게 통보
 - 라) 매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매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 마)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
 - 바)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시 일반교육교원의 참여 및 역할 확대
- 2) 다양한 학교 구성원을 활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구체적인 연계성 강화

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및 지원체제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 4) 특수교원 전담 전문직 확충 및 역량 강화
- 5)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6) 특수학교(급) 운영지도 강화
- 7) 특수학교(급) 컨설팅 장학 실시

3.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 운영 지원

- 1)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 운영 지원
-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3)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 체험 지원 강화

4)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2) 장애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 가)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여 학생보호 및 특수교육(진로 및 직업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나) 관계부처(유관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효율화 도모
 - 다) 일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채용 시기 탄력적 조정
 - 라) 장애학생의 인권과 안전이 강화된 현장실습 운영 철저
- 3)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강화
 - 가) 장애유형·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및 취업 지원 방안 마련
- 4)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안정적 배치 지원
 - 가)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의무 배치를 위한 진로교육법 시행
 - 나) 특수학교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자격연수 추진
 - 다)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사연구회 및 연수 등 운영 권장
- 5)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체계 강화
 - 가) 지역사회중심 윈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 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 다) 학부모 대상 자녀의 진로·취업 등 미래 설계를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
- 6) 제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 운영
 - 8개 체험관(호텔린넨서비스, 의류매장서비스, 외식서비스, 유통서비스, 사서보조, 사무행정, 바리스타, 가상모의면접)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능력 고취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1)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가) 장애학생 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 확대를 통한 장애학생 1인 1기, 문화 체험활동 및 예술 동아리 지원 강화
 - 나)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 활용 및 유관기관, 문화예술인 재능기부 등을 통해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체험 및 문화향유권 기회 제공

다)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공연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및 통합 교육 확산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운영계획 수립 시 체육교육 내실화 계획 포함

나)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우선 배치

다)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우선 배치

라)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및 장애학생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마) 토요스포츠클럽, 스포츠재능반, 패럴림픽 종목 활동 등 장애유형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 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라.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1)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추진체제 구축

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한 평생교육 지원체제 마련

나)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업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 지원

다)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나)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

4.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특수교육 관련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나)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완전통합)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강화

다)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3)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 강화

가) 유치원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통합교육 성과 제고

나)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을 위한 통합교육연구학교, 정다운학교 운영

- 다) 교육부 지정 통합교육 연구학교 운영
- 4)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가) 일반학교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
 - 나) 통합교육 및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연수 과정 운영
 - 다) 예비교사 통합교육 소양 강화
- 5)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나.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 1)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가) 유·초·중·고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 포함)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나) 일반학교 장애이해교육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 운영
 - 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인력풀 지원
 - 라)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소속 산하기관 포함) 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마) 학교 대상 장애인식 수준 진단·치방을 위한 학교 장애인식 지수 도구 개발·활용으로 장애이해교육 효과성 제고
- 2)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홍보 강화

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신속 대응 및 감지 체계 강화
-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 3) 장애인권교육 강화
- 4)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내실화
- 5) 특수교육대상학생 행동지원 강화
 - 행동지원전문가단 운영을 통해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라.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운영
-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4) 학교주변 위험환경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마.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방과후학교 운영

- 가) 지원이 필요한 가정(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 중 희망자 우선 지원
- 나)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에 의거 지원규모 및 우선 지원 대상 선정
- 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2) 돌봄 지원 체계 강화

- 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돌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대비 지원방안 마련
- 나) 나홀로 가정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방치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사회 실정을 고려한 돌봄 지원 체계 강화
- 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연계 지원 활성화

3) 방학프로그램(계절학교) 운영

- 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학교 및 지역실정을 고려한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 나) 유관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4) 방과후 교육·돌봄 프로그램 담당자 지원

- 방과후학교·돌봄 프로그램 담당 인력 연수 등 역량강화 지원 및 처우 개선 노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부록 II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367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381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 39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2021. 12. 28.>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 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 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 3. 23.>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조 【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3. 23.>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1.>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2. 19.>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16. 2. 3.>

제6조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 제6조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신청인·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교원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제9조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10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제1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제12조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1. 12. 28.>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 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 12. 10.>

제13조 【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2.>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2.>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19. 12. 1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2019. 12. 10.>

제13조의2 【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14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

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 2. 3., 2021. 3. 23., 2021. 12. 28.)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제16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18조 【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보호자의 의무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6. 7.>

③ 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제20조 【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2. 10., 2021. 7. 20.>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③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통합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③ 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22조 【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3조 【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①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4조 【전공과의 설치·운영】 ①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전공과를 설치한 각급학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공과의 시설·설비 기준, 전공과의 운영 및 담당 인력의 배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순회교육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담당 교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21. 12. 28.>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학급이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21. 12. 2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2020. 10. 20.>

제26조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① 「유아교육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인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제목개정 2012. 3. 21.]

제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021. 12. 28.>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4. 5.>

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신설 2013. 4. 5.>

⑧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5.>

제5장 고등교육 <개정 2016. 5. 29.>

제29조 【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둬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1. 3. 23., 2021. 12. 28.>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직원·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②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④ 대학의 장은 제1항 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8.>

제32조 【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1.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 삭제 <2016. 5. 29.>

제34조 삭제 <2016. 5. 29.>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35조 【대학의 심사청구 등】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제16조 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3. 제17조 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
4.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

② 제17조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③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에서 정하는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 제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본조신설 2016. 5. 29.]

[중전 제38조는 제38조의2로 이동 <2016. 5. 29.>]

제38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2. 21.>

1. 삭제 <2016. 5. 29.>

2.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3. 삭제 <2016. 5. 29.>
4. 제4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
5. 제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을 한 자
[제38조에서 이동 <2016. 5. 29.>]

부칙<제18637호, 2021. 1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조인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조인력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인력으로 본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22호, 2022. 6. 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1.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제3조 【의무교육의 비용 등】 ①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조 【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私立)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관할 구역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교육 가능한 인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그 특수교육기관의 장(특수학급이 설립된 사립학교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 6. 28.>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 및 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교원의 자질 향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특수교육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

는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③ 당연직위원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⑦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중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 【위촉위원의 해촉】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7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⑤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 29.>

-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별 현황
-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분배·활용 현황
-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 7. 삭제 <2021. 4. 20.>
-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②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1. 29.>

- 1.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현황
- 2.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현황
- 3. 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및 장애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위한 수단의 제공 현황
- 4.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학칙의 규정 현황
- 5. 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운영 현황

③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12. 8.>

-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별 현황
- 2.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현황
- 3.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현황
-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④ 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2020. 12. 8.>
- ⑤ 교육감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필요하면 해당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제8조의2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① 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과 항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

제9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이하 “영유아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8., 2012. 8. 31.>
-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하여야 한다.
-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한 결과 영유아 등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제10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1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2. 6. 28.]

제11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와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13조 【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이하 이 조에서 “장애영아”라 한다)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영아학급 등의 교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장애영아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별표에 따른 보통교실을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갖추어야 한다.

④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제14조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관할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6. 28.]

제16조 【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17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의 자격(각각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2.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제18조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 ① 중학교 과정 이상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제19조 【전공과의 설치·운영】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66제곱미터 이상의 전공과 전용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시설·설비의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이 포함된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전공과의 수업 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전공과를 전담할 인력은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한다.

제20조 【순회교육의 운영 등】 ①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하기 위하여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③ 삭제 <2016. 6. 21.>

제20조의2 【원격수업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위하여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20조의3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학급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학급 담당 교원 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지원

3. 순회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지원
4. 그 밖에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

[본조신설 2022. 6. 28.]

제21조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 ①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4. 20.>

②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 4. 20.>

③ 교육감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제목개정 2012. 4. 20.]

제22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6. 28.>

제23조 【가족지원】 ①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제24조 【치료지원】 ①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 【지원인력】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인력

의 채용·배치 등 지원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6. 28.>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원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6. 28.>

③ 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2. 6. 28.>

[제목개정 2022. 6. 28.]

제26조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교육감은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7조 【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법 제28조 제5항에 따른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 【기숙사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 제6항에 따른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숙사 시설·설비 기준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은 국가자격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5장 고등교육 <개정 2017. 5. 29.>

제30조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이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 구성 및 회의 개최 시기 등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31조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일정 인원”이란 9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은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실을 장애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편의제공】 ①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영상물의 화면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또는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언어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청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3. 청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② 대학의 장이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수업 영상물”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편의를 영상의 형태로 제작하여 수업영상물에 포함하는 방법
2. 교육지원인력을 배치하거나 학습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편의를 수업영상물과 함께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법

[본조신설 2022. 6. 28.]

제6장 보칙

제33조 【심사청구 절차】 법 제35조 제3항 및 법 제3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및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각각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2016년 1월 1일
2.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사실을 장애학생에게 알릴 의무: 2016년 1월 1일
3. 삭제 <2017. 5. 29.>

[전문개정 2016. 12. 30.]

부칙<제32722호, 2022. 6. 28.>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별표] <개정 2022. 6. 28.>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21.] [교육부령 제269호, 2022. 6. 2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단·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에 따라 진단·평가의 결과를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삭제 <2022. 6. 29.>

제4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 2022. 6. 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6. 29.>

[제목개정 2022. 6. 29.]

제6조 【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28조 제6항 후단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0. 4.>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법 제28조 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의2 【간호사 등의 배치기준】 법 제28조 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하되,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0. 4.]

제7조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그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269호, 2022. 6. 29.>

이 규칙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6. 6. 23.>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제2조 제1항 관련)	
구분	영역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1. 사회성숙도검사 2. 적응행동검사 3. 영유아발달검사
진단·평가 영역	시각장애·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1. 기초학습기능검사 2. 시력검사 3. 시기능검사 및 측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4.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지적장애 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적응행동검사 4. 기초학습검사 5. 운동능력검사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1. 적응행동검사 2. 성격진단검사 3. 행동발달평가 4. 학습준비도검사
	의사소통장애 1. 구문검사 2. 음운검사 3. 언어발달검사
	학습장애 1. 지능검사 2. 기초학습기능검사 3. 학습준비도검사 4. 시지각발달검사 5. 지각운동발달검사 6.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비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진단·평가 시 장애인증명서·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 6. 30.>

(앞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접수번호	-			
대상자	성명 (한자)			성별 남, 여
	주소			
	소속			
보호자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의 ()
	주소	전화번호		
<p>「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인) (학교장) (인)</p> <p>시·도교육감(교육장) 귀하</p>				

(자르는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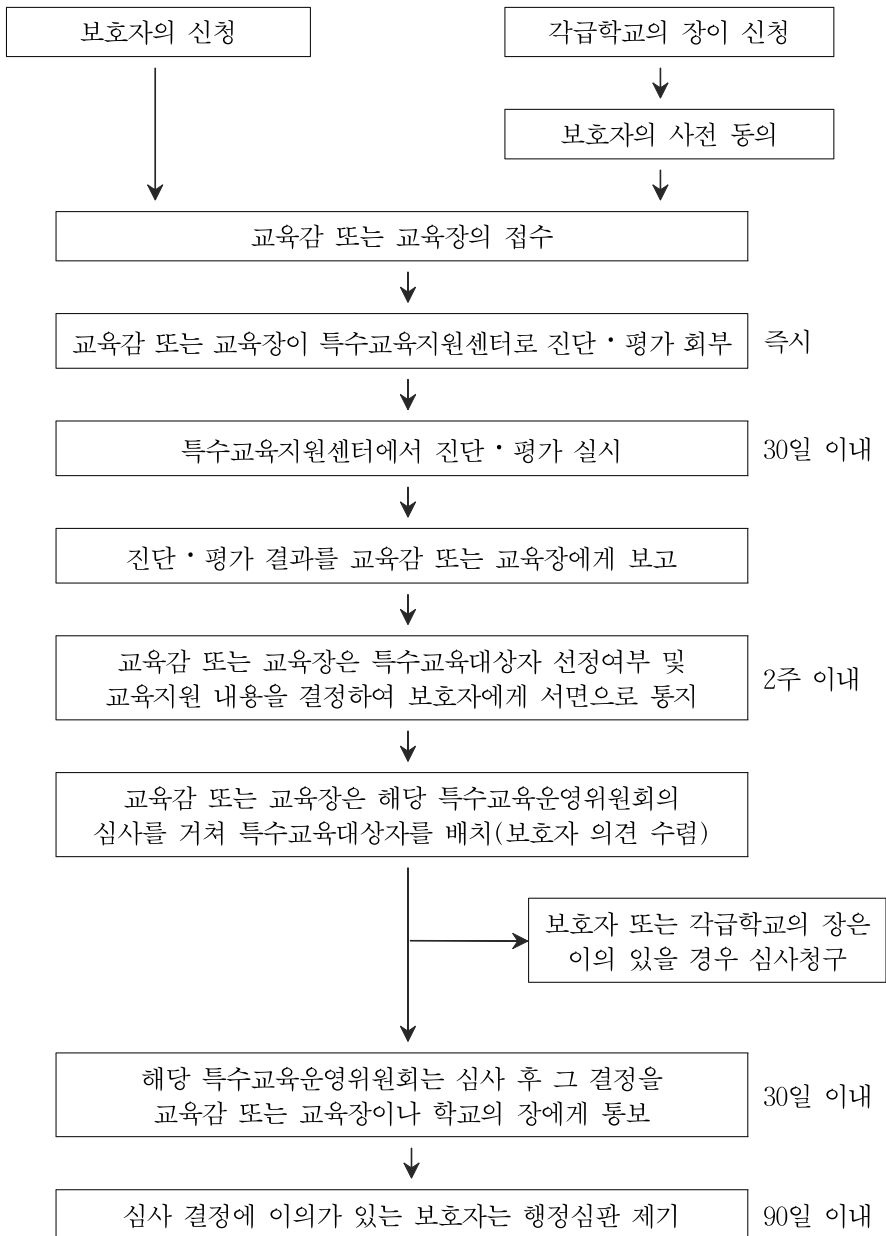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고등학교 과정 이하)접수증

접수번호

소속	학생명	성별	비고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증명함.			
접수자	년 월 일 성명 서명	년 월 일	
시·도교육감(교육장) (인)			

(뒷면)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2. 작성시 유의사항

- (가) 각급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작성한 동의서를 첨부할 것.
- (나) 접수번호: 시·도(하급)교육청에서 부여하므로 지원자는 기재하지 않음.
- (다) 의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의 날인이 있어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교부번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 등
결정 사항

성 명 : 성별(남, 여)

주 소 :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현재 소속기관: 학교 부 제 학년 재학(졸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진단·평가 결과를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 ㉠

년 월 일

시·도교육감(교육장) ㉠

[별지 제3호 서식]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교부번호:

배정학교

학교 부 제 학년 (학급)

성 명 : 성별(남, 여)

주 소 :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현재 소속기관: 학교 부 제 학년 재학(졸업)

위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위의 학교로 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 (인)

년 월 일

시·도교육감(교육장) (인)

2022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발행일: 2022년 8월

발행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우편번호 30119
전화 044) 203-6236

인쇄처: 에프앤(주)
(08591)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2, 1201호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전화 02) 6445-2250 / Fax 02) 6445-2262
